

# 韓國學生 集團行動의 政策不應要因分析\*

이상안, 김해동, 박형태, 최평길\*\*

〈目 次〉	
第1章 序 論	第3章 規制對象과 集團行動의 영 향변수
第1節 研究의 背景	第1節 集團行動의 概念과 類型
第2節 研究의 目的	第2節 集團行動의 行態類型
第3節 研究方法 및 範圍	第3節 韓國大學生의 集團行動 接近
第2章 規制政策의 패러다임과 政 策失敗	第4節 集團行動 規制政策의 過 程分析
第1節 規制政策의 概念과 特質	第4章 우리나라 學生集團行動의 行態分析(80年代)
1. 概 念	第1節 集團行動 패러다임 變遷
2. 特 質	第2節 集團行動의 動因
第2節 規制政策의 政策哲學	第3節 集團行動의 趨勢 및 性格
1. 政策問題의 規範論的 根據	第4節 集團行動과 順應決定要因
2. 規制政策의 保護主義 哲學 과 研究傾向	第5章 結語 및 提言
第3節 規制政策의 不應要因	
1. 政策對象의 順應과 不應	
2. 規制政策의 不應 및 順應 要因	
第4節 分析의 틀	

\* 본 연구는 1987년도 문교부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와 대학자체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이상안(책임연구자: 경찰대학교수), 김해동(서울대학교수), 박형태(경찰대학교수), 최평길(연세대학교수)

## 第1章 序 論

### 第1節 研究의 背景

歷史段階 속의 近代化는 市民이 實踐主體로 승인되면서 동시에 國家의 기능과 구조가 社會經濟的 環境과 政治體制의 變化에 따라 복잡하게 擴大된 社會變動의 歷史的 의미에서 생긴 概念이다.

특히 西歐의 近代化와는 달리 開發途上國의 近代化는 政治體制化와 參與間의 괴리가 심화되어 國家의 기능과 구조의 조화보다는 不均衡的 갈등과 逆機能的 현상이 속출하여 국가기능의 擴大는 오히려 국가에 대한 도전과 危機를 야기시켰다. S. P. Huntington과 J. I. Dominguez의 政治發展論에 의하면 國家는 産業化 過程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더욱 억압적 역할을 가중하고 대중의 政治 參與는 넓어지며 國家에의 대중의 요구가 증대함으로써 그 結果 亂分的으로는 暴力과 不安定이 더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sup>1)</sup> 그런데 이때 國家가 正體性, 正統性, 經濟, 參與 그리고 配分의 制度化의 能力을 순서대로 발전시킨다면 보다 낮은 억압의 정도를 近代化 과정에서 유지하게 된다. 이에 L. Binder는 近代化의 정후와 政治發展의 危機間의 關係를 圖式化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危機(crisis)란 國家와 社會間의 不一致(discongruity) 혹은 괴리(gap)에 의해 야기되는 변수라기보다는 狀況(situation)이라고 보고 國家가 社會의 要求(social demands)를 수용관리할 能力을 가진 때에는 國家와 社會間의 갭(gap)이 줄어들고 국가는 既存國家體制 內에서 社會要求를 수용하게 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國家의 對處能力은 社會要求를 수용 관리할 수 없게 되어 그때 危機가 일어나며 社會는 국가로 하여금 구조를 바꾸게 하거나 國家가 社會要求를 억압하게 된다.

1) S.P.Huntington & J.I.Diminguez "Political Development (Menlo park, Cal : Addison-wesley 1975 ), p.14.

즉,  $H_0$  : Capacity  $\approx$  Social demands

$H_1$  : Capacity  $\begin{cases} > \\ < \end{cases}$  Social demands ..... 붕괴 또는 억압

이와 같은 의미의 政治危機(Political crisis)의 주요형태는 正體危機(identity crisis), 正當性 危機(legitimacy crisis), 分配危機(distribution crisis), 浸透危機(penetration crisis), 參與危機(participation crisis)로 나누어지며 남은 경우 經濟危機는 政治行動으로 표현된다.<sup>2)</sup>

그런데 問題는 이 다섯가지 變化形態는 國家의 政治制度의 強化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으며 近代化 추진중에 있는 국가에서 大衆的 正統性의 이데올로기적 획득과 또 國家의 正統性 확립이 될 수 있다해도 대중의 正體性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지배 elite들이 변화과정에서 近代化 과업을 수행한다해도 國家는 漸次的으로 또는 急激하게 稼動力을 상실하게 되어 近代化 過程에서 국가의 機能은 擴大되나 危機 對應能力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기 쉽다는 점이 問題의 焦點이 된다.

이와 같은 問題는 1950年代를 前後하여 列強國의 식민상태를 벗어나 國際社會에 參與하게 된 대부분의 新생국가군은 이른바 「期待의 革命的 上昇」(revolution of rising expectation) 속에서 「近代化」라는 社會變動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新生國들이 대부분 急變하는 社會變動에 對應하는 對處能力 不足으로 좌절의 혁명적 상승(revolution of rising frustration)에 휘말려 近代化 주역인 엘리트와 大衆間의 심리적 단절상태를 야기하게 되어 危機를 자초하는 경험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既存體制의 變動에 따른 危機를 1945~1988 간에 여러번 체험했으며 이는 주로 학생들의 集團行動과 軍의 危機介入行動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近代史的 意味에서 규명되어야 할 과제를 갖

2) L.Binder, Crisis and Sequences of Polical Development (Princeton University, 1971), p.65.

게 된 것이다.

특히 이 問題와 關聯하여 本 研究의 課題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近代化라는 社會變動 과정에서 歷史發展의 段階別로 야기되어 온 學生集團行動에 대한 規制政策의 適合性 내지 效果性의 문제이다.

다시말하면 學生集團行動의 問題가 그것이 하나의 大衆社會 속에서 야기된 社會病理現象의 성격을 띠든 또는 大衆社會를 창조하기 위한 歷史的 계기에 기인되었든 오늘날 우리社會 變動過程에서 커다란 반응을 불러일으킨 變發要因이 되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社會現象이 되었다. 그런데 問題는 韓國社會의 社會變動(social change)을 社會的 行動의 한 類型인 集團行動의 論理로만 설명이 제약되어 있거나 大衆社會=集團行動이란 公式으로 歷史的 狀況이 주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近代化 및 이로 인한 大衆社會 속의 集團行動은 오늘의 우리사회 發展을 추진시킬 수 있는 肯定的인 歷史에너지로 定向시키기 위한 規範論理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것이 바로 集團行動에 대한 規制政策의 效果性의 문제인 것이다.

一般的으로 많은 사람들은 規制政策의 成功的 執行이 秩序維持의 바람직한 政策目標을 達成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集團行動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 大學生의 集團行動의 경우에는 이를 規制·抑制하는 政府의 政策이 비록 秩序維持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政策目標의 達成이 과연 國家發展·政治發展·社會發展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는 疑問點이 생긴다. 즉 學生들의 集團行動의 힘이 歷史的·肯定的 힘을 지닌 社會變動의 원동력이었다면 이에 대한 規制政策은 成功的 執行의 結果보다는 오히려 失敗가 國家·社會發展에 기여하는 모순을 歷史的 發展段階에서 찾을 수 있다는 點이다. 이것이 바로 日帝 以後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韓國의 學生集團行動인 것이다. 그러나 1987년 소위 6·29선언 이후의 學生集團行動은 그 性格이 변모되어 과거의 광범위한 民主化의 國民的 지지를 받던 상태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는 바로 6·29 以後의 學生集團行動에 대하여는 規制의 失敗가 成功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成功的 規制가 要請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위하여 과거의 學生集團

行動에 대한 規制政策의 失敗要因을 파악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 第 2 節 研究의 目的

本 研究는 다음과 같은 具體的 目的達成을 위하여 行한다.

첫째, 해방이후 學生集團行動에 대한 社會問題 解決手段인 規制政策과 集團行動의 惡循環過程을 縱斷的·橫斷的으로 分析한다.

둘째, 規制政策의 不應要因을 政策對象集團인 學卒의 社會心理學的 要因 중심으로 說明하고 있는 外國의 理論들을 우리나라에 適用하여 그것의 限界點을 규명함과 동시에, 政策對象集團이 學生集團이라는 對象의 特殊性을 지닐 때의 理論的 특수성을 밝힘으로써 전자적 의미의 實踐的 課題解決과 후자적 의미의 理論的 發展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以上の 本 研究를 위하여 學生集團行動 動機要因은 政治·經濟·社會의 巨視的 觀點(Macro-approach)에서 그리고 이에 對應하는 規制政策에 대한 政策對象集團 즉 學生 등의 政策反應에 대하여는 人口環境의 觀點과 微視的 觀點(Micro-approach)의 政策反應知覺을 B/C的 要因 分析들에 의해 봄으로써 政策對象集團의 不應態度 決定要因과 이에 對應하는 規制政策의 失敗要因을 동시에 규명하는데 目的을 둔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人口社會學的 要因으로 大學生의 學年, 專攻, 家庭의 生活程度, 卒業後 就業可能期待率,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중심으로 學生데모에의 參加類型(의도적 참가, 단순참가, 비참가)를 變주화 해보고 이를 토대로 集團間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며 또한 規制政策 反應의 知覺態度要因을 正當性, 法行政의 規制, 政治的 이데올로기적 規制, 經濟的 規制, 信賴性·一貫性·道德性의 一般的 評價 등 政策變因을 통하여 순응과 불응정도에 미치는 關係를 규명하는데 있다.

다만 B/C的 要因 分析에는 限界가 있다. 즉 충동에 의한 비합리적 行動에 의한 集團行動 등의 說明에는 제약이 있으나 B/C적 정도의 측정을 個人行動決定基準으

行動에 대한 規制政策의 失敗要因을 파악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 第 2 節 研究의 目的

本 研究는 다음과 같은 具體的 目的達成을 위하여 行한다.

첫째, 해방이후 學生集團行動에 대한 社會問題 解決手段인 規制政策과 集團行動의 惡循環過程을 縱斷的·橫斷的으로 分析한다.

둘째, 規制政策의 不應要因을 政策對象集團인 學卒의 社會心理學的 要因 중심으로 說明하고 있는 外國의 理論들을 우리나라에 適用하여 그것의 限界點을 규명함과 동시에, 政策對象集團이 學生集團이라는 對象의 特殊性을 지닐 때의 理論的 특수성을 밝힘으로써 전자적 의미의 實踐的 課題解決과 후자적 의미의 理論的 發展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以上の 本 研究를 위하여 學生集團行動 動機要因은 政治·經濟·社會의 巨視的 觀點(Macro-approach)에서 그리고 이에 對應하는 規制政策에 대한 政策對象集團 즉 學生 등의 政策反應에 대하여는 人口環境의 觀點과 微視的 觀點(Micro-approach)의 政策反應知覺을 B/C의 要因 分析들에 의해 봄으로써 政策對象集團의 不應態度 決定要因과 이에 對應하는 規制政策의 失敗要因을 동시에 규명하는데 目的을 둔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人口社會學的 要因으로 大學生의 學年, 專攻, 家庭의 生活程度, 卒業後 就業可能期待率,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중심으로 學生데모에의 參加類型(의도적 참가, 단순참가, 비참가)를 變주화 해보고 이를 토대로 集團間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며 또한 規制政策 反應의 知覺態度要因을 正當性, 法行政의 規制, 政治的 이데올로기적 規制, 經濟的 規制, 信賴性·一貫性·道德性의 一般的 評價 등 政策變因을 통하여 순응과 불응정도에 미치는 關係를 규명하는데 있다.

다만 B/C의 要因 分析에는 限界가 있다. 즉 충동에 의한 비합리적 行動에 의한 集團行動 등의 說明에는 제약이 있으나 B/C적 정도의 측정을 個人行動決定基準으

로 하는 人間 內面世界를 가정하며 理論的 側面에서 順應政策의 새로운 기억에 의의를 두고자 하는 것이다.

以上の 核心的 의도를 그대로 볼 때 本 研究에서는 規制政策의 失敗要因을 政策의 構成要素로 분리하는<sup>3)</sup> 政策目標, 政策手段, 政策對象集團(target group) 中 前2 者의 因果的 推論에 의한 內的 妥當性과<sup>4)</sup> 그 沮害要因에서도 찾아 볼 수는 있지만 政策手段의 政策對象集團에 의한 對應的 反應에서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政策의 失敗는 政策目標가 아무리 바람직하고 正當性 있게 設定되어도 政策手段이 잘못 선택되어 일어나기도 하며 反對로 政策手段이 가장 合理的으로 선택되었더라도 政策目標가 그 社會의 價値配分이나 選好가 반영되지 않을 때 바람직한 것으로 설정될 때도 政策의 執行은 失敗할 수 있지만 이 論文에서는 政策對象集團이 不應할 때 일어나는 政策의 失의에 초점을 두고 研究를 進行한다. 한편, 政策對象集團의 政策自體 不信과 政策對象集團에 의한 政策認知가 잘못되거나(誤解 등) 受容되지 않을 때, 예컨대 政策의 道德性(morality)과 誘引性(incentive)이 없거나 處罰(Penalty)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에 그 政策이 失敗하게 된다는 側面에 초점을 둔다. 즉 政策對象集團이 政策의 具體的 形態인 法(law)과 處罰(penalty)에 대하여 어떻게 反應(responsiveness)하는가의 의의가 그 政策의 政策對象集團에 대하여 順應을(compliance) 확보하는 關鍵이 되고 이것이 政策執行의 成功에 重要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3) 鄭正吉, 政策決定論, 大明出版社, 1988, pp.44 ~ 45.

4) 內的 妥當性은 從屬變數에 대한 政策效果로서 탐지된 것이 다른 競爭要因 즉 虛偽變數와 混亂變數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政策에 기인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政策과 政策執行對象集團의 變化間의 관찰된 關係로부터 도출하게 된 因果的 結論의 適合性 程度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는 說明도 있으나(노홍준, 政策效果 評價의 論理와 內的 妥當性 問題, 考試研究, 86.3, pp.148 ~ 150) 政策目標(예컨대 청소년의 선량화)와 政策對象集團(青少年 集團) 間에는 概念上 區分하여 論하는 것이 本 研究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았음. 정정길教授는 對立關係에 있는 目標中 社會全體의 立場에서 가장 바람직한 目標決定을 目標의 適合性이라 부름(政策評價論, 典廣出版社, 1987, p.301).

이다.

이때 順應의 基礎要因(base)은 대체로 道德性(morality)과 處罰(penalty) 그리고 誘因(incentive)의 次元에서 發見하되 B/C 認知가 뚜렷하여 行動決定이 명백히 일어날 수 있고 또 규명될 수 있는 incentive와 penalty에 대하여는 B/C 順應認知를 分析함으로써 規制政策의 成功을 위한 要因把握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心理經濟的 研究課題의 先行研究로 이들의 關係를 把握하려는 것이다.

특히 犯罪豫防 내지 違法行動 抑制을 위한 保護的 規制政策 내에서도 經濟活動規制 中心의 汚染規制(pollution prevention)에 動員되는 incentive-penalty 政策과 犯罪豫防(crime prevention)에 動員되는 Penalty 위주의 規制政策 그리고 學生들의 變換분위가 助成을 위한 incentive-penalty 保護規制 政策間에는 그 政策對象集團의 屬性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또한 先進國 國民의 penalty 規制政策에 대한 B/C Rule이 順應함으로써  $B > C$ 라고 판단됨에 反하여 後進國 내지 權威體制下의 國民의 penalty 規制政策에 대한 B/C Rule이 不應抵抗 함으로써  $B > C$ 될 것이리 期待를 갖게되는 그 差異 능이 규명될 것이다. 즉 政策決定過程에서 參與가 보장되어 道德性이 있는 先進國에서는 強制에 대한 B/C Rule이 說得力이 있으나 政策決定過程 自體가 폐쇄성을 띠어 道德性이 없는, 즉 道德的 說得力이 弱한 後進國 등에서는 B/C Rule에 의한 強制를 어떻게 보는가(과의, 택시합승도 같은 경우임)를 밝히 보고자 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4 반세기 이상 지속해 온 韓國大學生 集團行動의 研究素材 속에서 이의 의미를 發見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Sellin 研究 등 은 極刑(capital punishment) 일지라도 犯罪抑制效果가 없다는 주장인 반면 Gibbs Study<sup>5)</sup>와 Tittle Study, Becker's Model과 Ehrlich's Mo-

5) William A. Luksetich & Michael D. White, Crime and public policy (Little Brown and Company 1982) p.100.

del<sup>6)</sup>에서는 處罰(punishment)의 犯罪抑制效果가 있음을 理論的·經驗的으로 증명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研究에서는 政策對象集團을 단측적으로만 보아왔다. 즉, 決定된 規制政策에 順應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個別的 결정만을 行하는 수동적 存在로만 보아 온 것이다. 그러나 政策對象集團은 政策決定體制에 對하여 積極的 行動을 할 수 있다. 政治體制의 要求나 支持를 積極的으로 行할 수 있는 環境的 要因으로(policy determinants theory) 政治體制에 커다란 影響을 미친다.<sup>7)</sup> 이와 같은 要求와 支持가 非制度的 集團의 行動으로 나타난 경우가 本論文에서 研究하는 學生集團行動이다. 따라서 規制政策의 順應與否를 決定하는 個別的 對象者로서가 아니라, 일면 規制對象者이면서, 타면 政策決定體制이 積極的 影響力을 行使하는 특수한 性格을 지닌 政策對象으로서의 學生集團에 適用되는 既存 先進理論의 한계성을 밝혀보는 것도 이 論文의 重要的 目的의 하나이다.

### 第3節 研究方法 및 範圍

일반적으로 社會現象을 연구대상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는 본질적으로 人間の 社會的 行態(human behavior)에 관한 어떤 規則性(regularity)을 발견할 수 있다는 假定에서 출발하게 된다. 즉 인간행태의 規則性和 상황 및 사건과의 因果關係인 왜(why)를 설명적 방법(explanatory research)을 통하여 행함으로써 인간의 社會的 行態에 관한 관찰, 기록 및 資料間的 先後關係, 趨勢, 影響要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미래를 쉽게 예측하여 대처하는 힘을 갖

6) D. J. Pyle, The Economics of Crime and law enforcement (The MacMillan press LTD, 1983) pp. 9 ~ 15.

7) Thomas R. Dye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Policy: Challenge to a Discipline" in R. N. Spadaro(ed), The Policy Vacuum (Lexington: D. C. Heath and Company, 1975), p. 44의와 鄭正估 op. cit., pp. 102 ~ 137.

del<sup>6)</sup>에서는 處罰(punishment)의 犯罪抑制效果가 있음을 理論的·經驗的으로 증명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研究에서는 政策對象集團을 단측적으로만 보아왔다. 즉, 決定된 規制政策에 順應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個別的 결정만을 行하는 수동적 存在로만 보아 온 것이다. 그러나 政策對象集團은 政策決定體制에 對하여 積極的 行動을 할 수 있다. 政治體制의 要求나 支持를 積極的으로 行할 수 있는 環境的 要因으로(policy determinants theory) 政治體制에 커다란 影響을 미친다.<sup>7)</sup> 이와 같은 要求와 支持가 非制度的 集團의 行動으로 나타난 경우가 本論文에서 研究하는 學生集團行動이다. 따라서 規制政策의 順應與否를 決定하는 個別的 對象者로서가 아니라, 일면 規制對象者이면서, 타면 政策決定體制이 積極的 影響力을 行使하는 특수한 性格을 지닌 政策對象으로서의 學生集團에 適用되는 既存 先進理論의 한계성을 밝혀보는 것도 이 論文의 重要的 目的의 하나이다.

### 第3節 研究方法 및 範圍

일반적으로 社會現象을 연구대상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는 본질적으로 人間の 社會的 行態(human behavior)에 관한 어떤 規則性(regularity)을 발견할 수 있다는 假定에서 출발하게 된다. 즉 인간행태의 規則性和 상황 및 사건과의 因果關係인 왜(why)를 설명적 방법(explanatory research)을 통하여 행함으로써 인간의 社會的 行態에 관한 관찰, 기록 및 資料間的 先後關係, 趨勢, 影響要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미래를 쉽게 예측하여 대처하는 힘을 갖

6) D. J. Pyle, The Economics of Crime and law enforcement (The MacMillan press LTD, 1983) pp. 9 ~ 15.

7) Thomas R. Dye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Policy: Challenge to a Discipline" in R. N. Spadaro(ed), The Policy Vacuum (Lexington: D. C. Heath and Company, 1975), p. 44의와 鄭正估 op. cit., pp. 102 ~ 137.

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本 研究에서는 우선 인간의 社會的 行動 중 集團行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概念規定과 이를 어떤 관점에서 관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接近方法을 여러 시각과 견해에서 일별해 본 다음 우리나라 大學生의 集團行動實體를 分析한 文獻 및 資料에서 規制政策과 關聯된 暫定假說을 導出, 이를 경험적으로 檢證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한편, 우선 이를 토대로 對應戰略을 마련하는 데도 本 學術研究의 目的이 있으므로 集團行動의 診斷이 先行課題가 됨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다.

어떤 行動을 작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건, 부작위적으로 그 반대로 행하건 그것은 個人水準에서 일어나는 理性的 人間의 독특한 현상이므로 集團行動의 연구는 個體의 本質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大學生의 集團行動 研究도 大學生 個個人의 性格, 態度, 社會化 과정을 중심으로 참가와 불참 그리고 온건과 暴惡을 토대로 行動過程을 연구할 수 있겠으나, 동시에 集團의 規範이나 性格, 패닉(panic) 현상에 의한 참가의 증용, 엘리트즘(elitism)에 의한 그룹적 변수 그리고 歷史的 變遷에 의한 또다른 類型的의 集團行動의 說明이나 단순한 個體 모임이 아닌 ‘基’ ‘團’의 原子의 構成員으로서의 특성과 성격으로 集團行動의 結果를 說明하는 경우에는 그 分析水準이 상이하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特徵的 현상의 설명에서는 個人水準의 理論과 社會水準의 이론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人類學·社會學에서는 地域社會를 分析單位로 하고 教育學 등에서는 個人과 組織을 分析對象으로 삼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 하겠다.<sup>8)</sup> 이는 바로 個人水準에서의 行動이 集團水準의 行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이 個人水準에서의 行動이 集團水準의 行動으로 波及될 수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大學生들의 教育 外적 행동에 관한 어떤 規則性을 파악하기 위하여 研究의 성격상 서대별로 나누어 분석수준을 보기로 했다.

즉 1900년 이후 1945년까지는 日帝下의 民族의 自主·獨立이라는 행동 측면에

8) 朴龍治, 革新의 擴散過程, 고려원, 1983. p.18.

서 집단적 수준이 강조될 수 있고 解放 이후 70년대 말, 즉 제 4 공화국 때까지는 政治·行政·社會體制에 대한 統制的 feedback 의미의 행동성이 集團的 水準을, 그리고 80년 이후 제 5 공화국 때에는 그 行動의 양상이 個別利益化 되어가고 있는 屬性에서 個體水準이 강조된 점이다.

이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接近方法 및 分析의 單位와 水準을 결정함에는 종래 科學哲學者들 간에 論爭이 되어 온 方法論的 個體主義(methodological individualism)와 形而上學的 神秘主義(metaphysical holism)의 觀點에 따라 그 見解를 달리할 수 있다. 즉 個體主義的 입장에서는 모든 집단의 속성이 개인속성들의 관계에 의하여 구성되고 集團理論이 個體理論으로 還元(reduction)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學生들의 集團行動 또한 個體의 單位와 水準에서 최소의 本質的 요소로 설명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반면, 神秘主義的 입장을 보면 集團은 그 自體의 독특한 屬性이 있고 이런 속성 중에는 個體屬性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絕對的 生成(emergence) 속성이 있기 때문에 研究對象을 하나의 全體(whole)次元에서 보고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국 이 論爭은 研究對象을 무엇으로 해야하며 그 水準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Eulau는 이의 양극화를 배제하고 하나의 連續線上에서 相對的으로 보아 分析單位와 分析水準을 결정하고 또 對象單位와 主題單位도 區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9)</sup> 이에 따라 보면 대상단위의 속성을 根本的 單位에서 구성할 수도 있으며 또 還元할 수도 있고 높은 수준의 주제단위로부터 그 맥락적 속성을 歸屬시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集團行動의 分析水準은 集團인 集合體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Eulau의 주장에 따라 集團行動의 주제단 '學生集團'을 對象單位(object unit)로 택한다면 그것은 그 自體水準에서도 연구할 수 있고 또 이의 下位水準인 學生集團 內部的 結束體 내지 核心團體인 學生會, 서클, 파벌, 개인 등의 主題單位(sub-

9) H. Eulau, *Micro-Macro Political Analysis: Accents of Inquiry* (Chicago) Aldine Publishing 10, 1969, pp.8 ~ 13.

ject unit)로 환원하여 연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다음에 集團行動의 수성으로 再構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학생의 集團行動이 기본적으로는 個人水準의 學生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것이 結集合(aggregate) 됨으로써 附和雷同되어 본래 個人水準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생성적 양상이 나타나 집단 내지 社會水準에서 보지않으면 안될 特性이 있음도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80년대 자율화 이후의 양상과는 별개로 日帝下와 50~70년대의 學生集團行動은 개인적 수준의 행동과 같은 屬性의 크기(isometric)가 아닌 흐름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生成의 屬性(emerging properties)이 發見될 수 있으며, 범사회적 현상화되어 있는 이 문제를 個體 및 부분중심의 micro-approach로서는 만족할 설명이 어렵고 사회현상 자체가 그리하듯 學生集團行動이 有機體的 聯關作用으로 장기적으로는 역사적 맥락과 사회구조, 제도 그리고 정책결정의 要因과도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集團行動을 일으키는 集團體의 구성이 조각난 부분(segmented parts)으로 모아진 것도 있지만 그 核心勢力은 分化된 부분(differentiated parts)으로 구성된 수도 있는 것이므로 單純合計的 의미로 學生集團行動을 論하고 규정할 경우 합성상의 오류(error in synthesis)를 피하기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學生의 集團行動을 통한 行態의 社會的 產出物 資料를 분석함으로써 이 產出物 生産에 關與된 行爲主體의 行態를 유추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때 Eulau의 주장에 따라 설명하려는 단위인 對象單位는 학생의 集團 및 集團行動으로 하고 이 대상단위인 집단행동을 규명하기 위한 觀察單位로는 학생서클 및 그 個體單位인 學生個人으로 하되 자료수집이 가능한 日帝下 및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구분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分析水準 및 分析單位의 결정에 따라 본 연구에 필요한 資料蒐集은 시간적으로는 1910년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縱斷的 資料(longitudinal data)에 의존함으로써 集團行動의 동인을 파악함에 短見의 偏見을 예방함은 물론 이 행동의 뿌리 내지 맥이 대한 설명력과 기술력을 높여야 할 반면, 80

년대 이후의 集團行動에 대하여는 單層的 資料(cross-sectional data)에 의거 심층적 分析을 시도하였다. 이런 방향에 따라 요청되었던 자료는 주로 既定化된 mass comm의 보도자료와 정부의 發表資料 그리고 內部的으로 기초자료로 조사되었던 raw data 등이 근간을 이루었으며 여기에 조사자료로 해석이 어려웠던 부분은 실제로 集團行動者의 行態를 조사한 경험이 있는 治安關係者와의 면접을 통하여 수집, 자료의 先後關係와 因果關係를 발견하고 자료관계의 一貫性 維持를 위해 內容分析(content analysis)으로 體系性과 客觀性을 유지하였다. 이 技法은 커뮤니케이션 問題解決의 주요 도구였으나 최근 人間의 심리상태와 政治集團의 目的 및 行態把握 등에 널리 使用되는 보편성 때문에 이에 의하였으며 集團行動의 主動因을 찾는 本 研究의 주목적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相關關係 및 집단행동 집단간 유형의 差異檢證에 의한 計量的 分析은  $X^2$ 와 ANOVA에 의한다. 公理的 理論 探索의 本 研究에서 50년대~80년대 間에 각종 자료중 報道의 중단 등으로 다소간 연결이 불가능한 자료수집이 있었음은 본 연구의 제약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集團行動이 어떤 因果의 論理에 따라 誘發되고 있는가를 理論的 배경과 개념규정에서 봄으로써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實際 集團行動을 일으켰던 사건을 검토함으로써 公理的 理論設定에 필요한 一般論的 性格의 假說을 얼마나 잘 형성함으로써 實證的 檢證은 물론 나아가 처벌을 얼마나 잘 誘導해 낼 수 있는가로 연결되는데 이는 바로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를 위한 順應 및 不應要因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大學校 학생에 대한 survey를 行하고 이를  $X^2$ 와 ANOVA에 의해 分析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調查方法은 해당 章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끝으로 本 研究는 우리나라 大學生의 人口社會學的要因이 대모(학생 집단행동)의 의도적 참가집단, 단순참가집단, 미참가집단에 속하게 하는 要因으로 작동하는가 하는 문제와 우리나라의 정책일반에 대한 태도와 집단행동규제정책(형벌, 분교부동의 行政罰 및 大學의 學則 등)에 대한 態度 즉 자각요인중 어떤 독립변수 要因

이 데모에의 참가를 의도적, 우발적 그리고 불참케 하는데 作用하는가를 밝히는데 한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변수간의 영향도와 B/C의 크기에 의한 行動決定要因分析은 차기의 研究課題에서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비참가집단은 학생데모에 1회도 參加하지 않은 집단을 말하며 단순참가집단은 의도적 計劃없이 우연하거나 우발적으로 참가한 경우로써 1회~2회 정도 참가한 경우를 말하며 의도적 참가집단은 3회 이상 다수참여의 경험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

## 第 2 章 規制政策의 패러다임과 政策失敗

### 第 1 節 規制政策의 概念과 特質

#### 1. 概 念

政策에 대한 定義는 다양하다. 이는 政策의 제 側面중에서 제각기 重要的 概念要諦를 달리하기 때문에 現代政策學의 창시자로 알려진 Lasswell는 「政策은 目的價値와 實行을 投射한 計劃」<sup>1)</sup> 「問題解決 및 變化誘導를 위한 活動」<sup>2)</sup> 이라고 定義함으로써 政策目標와 手段으로서의 行動을 核心으로 지적함으로써 대부분 學者의 공통적 見解로 合一된다.

한편 Dror는 「政府機關에 의하여 결정된 未來의 行動指針」<sup>3)</sup>이라고 定義하고 있으며 유훈교수는 政策을 「각종의 政治的·行政的 過程을 통하여 權威있게 결정

1) Harold D. Lasswell and Abraham Kaplan, Power and Socie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p. 71.

2) Harold D. Lasswell, "Research in Policy Analysis: The intelligence and appraisal function" in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6 (Montrey: Addison-Wesley, 1975).

3) Yehezkel Dror, Policy-making Reexamined (San Francisco: Chandler Publishing Co., 1968), p. 12.

이 데모에의 참가를 의도적, 우발적 그리고 불참케 하는데 作用하는가를 밝히는데 한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변수간의 영향도와 B/C의 크기에 의한 行動決定要因分析은 차기의 研究課題에서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비참가집단은 학생데모에 1회도 參加하지 않은 집단을 말하며 단순참가집단은 의도적 計劃없이 우연하거나 우발적으로 참가한 경우로써 1회~2회 정도 참가한 경우를 말하며 의도적 참가집단은 3회 이상 다수참여의 경험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

## 第 2 章 規制政策의 패러다임과 政策失敗

### 第 1 節 規制政策의 概念과 特質

#### 1. 概 念

政策에 대한 定義는 다양하다. 이는 政策의 제 側面중에서 제각기 重要的 概念要諦를 달리하기 때문에 現代政策學의 창시자로 알려진 Lasswell는 「政策은 目的價値와 實行을 投射한 計劃」<sup>1)</sup> 「問題解決 및 變化誘導를 위한 活動」<sup>2)</sup> 이라고 定義함으로써 政策目標와 手段으로서의 行動을 核心으로 지적함으로써 대부분 學者의 공통적 見解로 合一된다.

한편 Dror는 「政府機關에 의하여 결정된 未來의 行動指針」<sup>3)</sup>이라고 定義하고 있으며 유훈교수는 政策을 「각종의 政治的·行政的 過程을 통하여 權威있게 결정

1) Harold D. Lasswell and Abraham Kaplan, Power and Socie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p. 71.

2) Harold D. Lasswell, "Research in Policy Analysis: The intelligence and appraisal function" in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6 (Montrey: Addison-Wesley, 1975).

3) Yehezkel Dror, Policy-making Reexamined (San Francisco: Chandler Publishing Co., 1968), p. 12.

된 公的 目標(public goal)」라고 정의하고 있다.<sup>4)</sup>

이와 같은 다양한 政策의 概念定義는 다음과 같은 政策의 類型化에 의하여 規制 政策의 概念定義에서는 공통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Almond와 Powell은 體制理論에 입각하여 政策을 4가지 類型으로 分類하고 이중 個人이나 集團의 行動에 대하여 政府가 가하는 統制와 관련된 政策을 規制政策으로 定義하였으며<sup>5)</sup> Lowi는 Almond와 Powell의 分類와 비슷하다. 意思決定論에 입각하여 私人的 活動 및 私有財産에 대하여 政府가 통제를 가하는 것과 관련된 政策이라고 하고 政策의 類型이 달라짐에 따라 政策過程도 달라진다고 주장했다.<sup>6)</sup>

한편 Lowi의 分類와 유사하나 관점을 달리하는 Salisbury는 要求패턴의 統合성과 分散性, 決定體制의 統合성과 分散성의 조합에 의하여 4가지로 類型化하고 이중 要求패턴이 分散의이나 決定패턴이 統合的인 것이 規制政策이라고 보고 용납되는 行態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인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損失을 입히는 政策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自律規制政策이라는 독특한 類型을 제시하여 개인이나 집단에게 規制基準設定權限을 부여하고 집행까지도 위임함으로써 규제정책과는 統制類型을 달리하고 있다.<sup>7)</sup>

Lowi의 分類가 包括的이지 못하다는 점과 그의 分類를 參考로 Ripley와 Franklin은 政策執行을 中心으로 國內政策을 4가지로 類型化하면서 Lowi의 規制政策을 保護的 規制政策과 競爭的 規制政策으로 나누었다. 이중 保護的 規制

4) 俞焄, 政策學原論, 法文社, 1986, p.38.

5) Gabriel A. Almond and G. Bri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 Co., 1966, pp.195~196.

6) Theodore J. Lowi,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 Studies, and Political Theory", World Politics, July 1984, pp.677~715.

7) Robert H. Salisbury, "The Analysis of Public Policy : A Search for Theories and Roles", in Austin Ranney(ed),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Policy (Chicago: Markham 1968), pp.151~175.

政策(protective regulatory policy)은 私的인 活動을 制限하는 條件을 設定함으로써 一般國民大衆을 保護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具體적으로 一般大衆을 保護하기 위하여 個人이나 集團의 權利행사 또는 行動을 拘束·統制하는 政策으로<sup>8)</sup> 예컨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獨寡占企業을 規制하는 公正去來法, 勤勞條件과 勞動者의 團體活動을 規制하는 勤勞基準法 및 각종 刑法, 行政法, 行政規則 등이 있다. 끝으로 Mitchell과 Mitchell은 政策은 社會內의 각종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구상되며 결정되는 것이라 보고 그는 이중 他人의 行動에 影響을 미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政府의 行動을 規制 및 통제정책이라고 보았다.<sup>9)</sup>

일반적으로 規制는 相對方의 行爲를 強요, 禁止, 制限, 拘束하기 때문에 自由民主主義 社會에서는 신중을 요하며 規制의 條件을 公益과 公正性 등의 몇가지 기준을 두게 된다. 이와 같은 規制에는 傳統的인 것과 現代的인 것의 두가지가 있는데 傳統的인 規制(traditional regulation)는 주로 經濟 또는 産業分野를 規制하고 現代的인 規制는 公共福利(public welfare) 分野를 規制하는데<sup>10)</sup> 前者의 經濟規制는 獨占과 不公正去來와 같은 市場失敗(Market failure)를 보상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며 後者의 福祉的 規制는 勞使問題, 消費者保護, 環境汚染防止, 犯罪豫防 등을 위한 것이다. 특히 法學者들은 犯罪를 社會共同生活에 反하는 行爲를 대상으로 그 豫防과 진압의 대책을 强구하는 것으로 보고있다.<sup>11)</sup>

## 2. 特 質

### 1) 法律形態로서의 政策

規制政策은 一般的으로 法律의 形態를 취한다. 따라서 學生集團行動에 대한 規

8) Randall B. Ripley and Grace A. Franklin, Bureaucracy and Policy implementation (Homewood, Ill: The Dorsey Press, 1982), pp.132~156.

9) Joyce M. Mitchell and William C. Mitchell, Political Analysis and Policy (Chicago: Rand McNally, 1969), pp.41~56.

10) 白完基, 行政과 國民經濟, 考試研究, 1984.12, p.99.

11) 鄭榮錫, 刑事政策(서울: 法文社, 1982), p.64.

制政策의 내용은 이와 관련된 法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의 合目的性과 安定性 및 一貫性 側面에서 고찰한다.

이때 규제정책의 특징은 그 形態와 方法이 다양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해지거나 간접적으로 가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前者의 경우는 被規制者가 政府로부터 法規나 지시를 받으며 이에 順應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 자극을 받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행동하는 상황이나 環境에 政府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統制에는 制裁가 수반되는데 대체로 處罰(Penalty)과 補償(Incentive Reward)으로 區分되며 이때 明確性과 統一性을 기하기 위하여 政府의 大部分의 규제활동은 어느 정도 成文化되어 있거나 公式統制와 非公式統制가 併用되는 경우가 많다.<sup>12)</sup>

Stone教授에 의하면 法은 人間行動을 規制하는 社會規範을 항상 포함하고 이 規範은 強制力을 보유하고 制度化된 것이라고 한다.<sup>13)</sup>

J. Rousseau의 社會契約 概念에서 비롯된 法은 人間들간의 權利·義務關係를 약속이행으로 유도하며 行動을 규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의미의 法은 人間行動에 대한 豫測可能性을 높이고 公正한 社會體制와 실서유지를 目的으로 하고 있다. 文化現象으로서 法概念을 정의하는 G. Radbruch는 法은 인간의 作品이며 人間の 작품은 目的없이 把握될 수 없다고 보고 法概念의 고향을 文化의 世界에서 찾는다. 그래서 그는 法은 價值關聯的인 태도의 範圍內에서만 把握될 수 있다고 보고 法은 文化現象 즉 價值關聯的인 事實로서 法價值·法理念에 이바지하려는 의미를 가지는 現實이라고 보았다.

또한 Radbruch는 效力問題로서의 法理念에의 근거를 주장하여 무엇이 正當한 것인가를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면 무엇이 正當한 것이어야만 하는가를 누군가 확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아 의지와 힘을 강조하였다. 그래야만 法的 安定性이라

12) 俞焄, op. cit., p.57.

13) Paul Bohannon, "Law and Leg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9, p.73.

는 가치가 보장되며 실정법의 效力은 法的 安定性 즉 평화·질서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sup>14)</sup>

이러한 法律은 規制政策과 本質的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즉 法的 目標이 있고 최후수단으로서 強制力이 보유하고 對象集團으로 規制될 個人 또는 集團이 있으며 法的 內容을 실현할 政府의 強力한 의지가 있으므로 특히 規制政策은 法과 同一한 경우가 많다.<sup>15)</sup>

그러나 모든 政策이 法形式을 갖지 않듯이 모든 法形式을 政策으로 볼 수는 없다. Lowi의 政策分類는 모든 法律을 對象으로 研究對象을 선정했으므로 政策과 法律을 同一視하는 입장을 취했고 또 많은 研究者가 주로 企業規制의 勞動法이나 公正去來法 등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

또 특히 강제력을 지닌 規制政策으로 國民의 權利나 行動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侵害의 可能性을 줄이고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法律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또 國會라는 최고정책결정기관의 의결을 요하도록 하는 등 節次를 구체화하여 執行自體의 요건을 제한하는 점이 配分政策에서의 權利·利益을 나누어줄 경우의 추상적 결정과 行政府의 재량에 위임할 경우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이상과 같은 政策과 法律의 同一視 觀點은 결국 政策의 安定性·繼續性 유지와 靜態的 및 時間的 一貫性(consistency) 維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私的活動制約條件 실정으로 一般大衆을 보호하려는 보호적 規制政策으로서의 純粹公共財 供給의 制度化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sup>17)</sup>

그리고 政策에 관한 公式的인 表明(articulations)은 法律, 大統領令, 總理令, 部令, 規程, 法院判決, 政府關係者의 聲明 등으로 실현되는데<sup>18)</sup> 이와 같은

14) Gustav Radbruch, *Rechtphilosophie* 편 沈憲燮, 法哲學(法文社, 1986), p.33. 재인용.

15) 김정길, *op. cit.*, p.87.

16) *Ibid.*, p.88.

17) 柳漢成, *財政學*, 博英社, 1985, p.90.

18) *Ibid.*, p.43.

政策聲明(policy statements)이 있음으로써 政策의 目標을 明確히 하고 따라서 政策執行이나 평가에도 도움이 된다.<sup>19)</sup>

## 2) 體制的 投入特質

또한 保護的 規制政策을 하나의 體制的 觀點에서 分類하면 政治體制에 대한 投入와 產出을 要求와 支持, 要求對應 政策과 支持獲得 政策으로 나눌 수 있다. 國民이 政治體制인 政府에게 要求하는 것은 民間部門에서 民間人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問題에 대한 해결요구로서 Lowi의 分類에 따르면 强者나 포약자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는 國民을 이들을 규제함으로써 보호해 주는 것이다. 예컨대 強도·살인의 犯罪行爲로부터 재산·생명의 보호나 不公正한 價格引上이나 과대광고로부터의 소비자보호, 기업주의 僥倖으로부터 노동자권익보호 등이 그 예이며<sup>20)</sup> Franklin과 Ripley가 말하는 保護的 規制政策을 의미한다.

한편 政府에 대한 국민들의 規制政策 支持는 體制的 유지와 운영에 必要한 人的·物的 資源을 제공하는 것으로 Almond와 Powell이 말한 抽出政策을 의미하는 한편 또 다른 하나의 支持獲得政策은 順應確保政策이다. 즉 政府에 대한 國民들의 支持는 人的·物的資源의 抽出을 容易하게 하고 規制政策 등에서의 公權力의 行使에 被規制者들이 政策에 順應하게 하는 것이다.<sup>21)</sup> 이 속에는 Almond와 Powell이 말한 상징정책이 포함되며 Lowi의 구성정책과 더불어 下位政策으로 構造化되며 이에 後進國은 PR 등의 여론조작정책을 택하기도 한다.<sup>22)</sup>

이상은 토대로 規制政策의 특징을 보면 Lowi의 주장과 같이 規制政策의 마지막 順應確保 手段은 強制力(coersion) 즉 實行的 政策手段에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強制力은 規制政策의 특징중의 하나지만 規制政策의 本質이 強制力에 있는 것이 아니라 一部の 行動이나 權利行使의 自由制限으로 他人을 保

19) James E. Anderson, Public Policy-Making, 3rd ed. (New York: Holt, 1984), p.3.

20) 鄭正估, 政策決定論(大明出版社, 1988), p.78.

21) 鄭正估教授는 이를 順應確保政策이라 부름. Ibid., p.79.

22) Ibid., p.81.

護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規制政策은 前述한 바와 같이 法律形式으로 說明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3) 公共財의 特質

이때 公的供給이란 問題를 하나의 經濟制度에서 把握하면 그것은 個人이 自發적으로 共同의 目的을 가지고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集畧的 行動(collective action)을 하려는 경우로 볼 수 있다. 統合이란 組織化이고 組織化란 規律化를 뜻하므로 規律化에 의해 組織에서의 權限과 役割이 規定되고 이 規律化는 많은 경우 強制體系를 수반하여 각 주체의 行爲의 不確實性을 축소하여 構成員의 組織에 대한 支持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러한 制度를 거쳐 財貨 및 서비스가 供給될 때 個人은 최종적인 財貨 및 서비스에 대한 效用을 갖는 동시에 이러한 制度 그 자체가 갖는 環境維持라는 서비스에도 效用을 갖게 된다. 예컨대 경찰이라는 治安公共財는 犯罪人の 체포와 取締이라는 직접서비스로 대다수인의 安全價値에 對한 效用을 높여줄과 동시에, 여러분야의 環境維持라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外部效果(externality)도 파급시킨다. 이는 公共財의 生産供給에 있어서 無賃乘車者<sup>23)</sup>(Free Rider)를 예방하고 지속적 一貫性 있는 供給을 적절하게 하는데 있으며 특히 規制政策은 그 目標가 一般大衆의 보호에 있고 手段이 強制的 體系에 의존함으로써 純粹公共財로서 전혀 民間的 供給의 餘지를 가질 수 없는 특질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公共財의 概念은 厚生經濟學의 分析의 弱點인 效用의 個人間의 比較可能性을 전제 한데 대한 反省에서 등장하였다.<sup>24)</sup>

Samuelson은 1954年 그의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s」에서 公共財를 集合消費財(Collective Consumption goods)로 표현했다가<sup>25)</sup> 1958년에는 公共財(public goods)와 純粹公共財(pure

23) 金東建, 現代財政學, 博英社, 1984, p.76.

24) 俞好根, 公共經濟學, 法文社, 1984, p.40.

25) P.A.Samuelson,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54, Vol. 36, pp.387~8.

public good)으로 바꾸었으나 명확한 區分은 힘들다.<sup>26)</sup>

Buchanan은 公共當局이 供給하는 것이 公共財라고 하여 모든 個人의 共同體가 集團組織(Collective organization)을 통하여 供給하도록 결정하는 어떤 財貨 및 서비스도 公共的이라고 하였다.

그후 그는 純粹公共財와 純粹私的財 間에서 準集合財(Quasi-Collective goods)란 概念을 도입하여 結合供給(Joint Supply)이 特徵이라고 指摘하였다.<sup>27)</sup>

J. Margolis는 公共財 대신에 公共用役(public service)이란 말로 公共當局에 의한 供給을 강조함으로써 Buchanan과 유사한 定義를 내리고 있으며<sup>28)</sup> 끝으로 R. Musgrave는 財의 側面이 아닌 Wants의 側面에서 社會的 欲求(Social Wants)를 中心으로 定義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의해 等量消費될 用役에 의하여 充足되는 欲求이고 用役의 代價를 支拂지 않는다는 이유로 排除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前者를 非競合性(non-rivalness), 後者를 非排除性(non-excludability)으로 그 性質을 규정짓고 있다. Musgrave는 後에 社會財(social goods), 純粹社會財(Pure Social goods), 混合財(Mixed goods), 混合便益財(mixed benefit goods)으로 分類하면서 治安財를 純粹公共財로 類型化시키고 있다.<sup>29)</sup>

이상의 學者들의 견해를 토대로 公共財의 特徵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Samuelson → 集合的 消費(Collective Consumption)

Buchanan → 結合供給(Joint Supply)

26) P.A. Samuelson, "Aspects of public expenditure theo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ov., 1958.

27) James M. Buchanan, Public finance in Democratic Process, Chapel hill, 1967.

28) J. Margolis "Comment on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37, 1955, pp.347~349.

29) R.A. Musgrave & P.A.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McGraw-Hill, 1980, p.56.

Margolis → 公共當局의 供給(Public Service)

Musgrave → 非競合性, 非排除性

이상과 같이 公共財는 供給과 消費自體는 結合 즉 不可分離性을 띠 뿐 아니라 受益과 費用負擔間에 직접적인 關係가 없으므로 자칫 供給의 과소 내지 과잉으로 負擔의 과잉 내지 欲求不滿이 생길 소지가 있는 財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問題는 Buchanan<sup>30)</sup>, Downs<sup>31)</sup>, Niskanen<sup>32)</sup> 등이 政綱政策(platform)을 통하여 選舉行態를 經濟學的으로 分析함으로써 個個人的 利益動機를 발견하게 되었고 Ostrom의 public choice는 바로 이 分析의 代表的인 人으로서 이 理論에서는 有機體的 國家觀과 階級的 國家觀을 부정하고 個人主義의 合理主義에 人間觀을 고정함으로써 個人的 公共活動의 근거를 說明하고 있다는 점과 公共財의 特性中 이것이 外部性(externality)를 지녔다는 점이다. 즉 이 公共財의 外部性은 어느 한 經濟主體의 消費·生産 또는 分配가 市場交換 過程에 參與치 않고 있는 他 消費者와 生産者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效果 즉 非價格效果(non price effect)로서 이를 波及效果(spillover effect) 또는 隣近效果(neighborhood effect)라고도 하는데 이는 外部的 費用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政策效果를 지닌다.<sup>33)</sup>

이를 바꾸어 말하면 公共財 次元의 規制政策은 本質的으로는 公共財의 特質에서 보일 不可分性이 있어 效用의 個別化가 不可能하며 個人的 動機를 發見하기 힘들 뿐 아니라 또한 波及效果로 인하여 그 政策의 公共財의 의미를 評價하기 어렵다. 그러나 政綱政策을 통하여 發見된 公共選擇理論家들의 個人動機의 확인이나 外部性에서 發見된 波及的 損益(外部不經濟) 등은 集團行動에 대한 規制政策의 強壓的

30) J.M.Buchanan & G.Tullock, The Calculus of Consent (Ann Arbor: The Univ. of Michigan Press, 1974).

31) A.Downs,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1957.

32) W.A.Niskanen, Jr., Burea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Chicago : Aldine Publishing Co., 1971), pp.45~48.

33) 김동건, op.cit., pp.96~100.

要素에서는 panic 현상으로 잘못하면 非參加그룹에도 충동적 誘發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公共財가 外部經濟的 效果를(外部的 便益) 지낼 때에는 規制政策이 社會安全과 平和, 自由와 權利的 伸張을 가져오고, 集團行動 등에 감정유발적 要因으로 作用할 때에는 集團行動을 促發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는 外部經濟的(外部費用)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規制政策의 公共財의 特質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公共財의 特質은 뒤에서 보듯이 學生들의 행동 動因의 하나로도 작용하게 된다.

## 第 2 節 規制政策의 政策哲學

### 1. 政策問題의 規範論的 根據

政策問題定立은 政策過程의 始發을 의미하며<sup>34)</sup> 價値期待를 包含한다.<sup>35)</sup> 그러므로 政策問題定立은 政策의 前提, 內容, 性格까지도 규정해 주며<sup>36)</sup> 政策意志를 公式的으로 표명하는 重大한 意識的·意圖的인 決定過程이다.<sup>37)</sup>

이렇게 볼 때 政策問題指向性 즉 政策問題에 대한 認識과 接近이 政策指向性(Policyorientation)의 核心이며 政策學의 Paradigm은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의 政策問題는 단순히 存在하거나 豫測되는 社會的 現象이 아니라 어떤 판단의 評價基準 예컨대 社會的 平等性, 基本的人權, 文化的 삶 등을 充

34) E.S.Quade, Analysis for Public Decisions(New York: Elsevier, 1975), pp.67~82.

35) E.S.Quade and W.I.Baucher(ed.), Systems Analysis and Policy Planning (New York: Elsevier, 1968), pp.35 ~ 40.

36) 許範, 韓國公共政策論, 成均館大, 社會科學研究所, 大旺社, 1984, pp.15 ~ 17.

37) Russell L.Ackoff and Fred E.Emery, on the Purposeful Systems (Chicago: Aldine 1972), pp.108 ~ 109.

38) 許範, op. cit., p.20.

要素에서는 panic 현상으로 잘못하면 非參加그룹에도 충동적 誘發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公共財가 外部經濟的 效果를(外部的 便益) 지낼 때에는 規制政策이 社會安全과 平和, 自由와 權利的 伸張을 가져오고, 集團行動 등에 감정유발적 要因으로 作用할 때에는 集團行動을 促發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는 外部經濟的(外部費用)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規制政策의 公共財의 特質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公共財의 特質은 뒤에서 보듯이 學生들의 행동 動因의 하나로도 작용하게 된다.

## 第2節 規制政策의 政策哲學

### 1. 政策問題의 規範論的 根據

政策問題定立은 政策過程의 始發을 의미하며<sup>34)</sup> 價値期待를 包含한다.<sup>35)</sup> 그러므로 政策問題定立은 政策의 前提, 內容, 性格까지도 규정해 주며<sup>36)</sup> 政策意志를 公式的으로 표명하는 重大한 意識的·意圖的인 決定過程이다.<sup>37)</sup>

이렇게 볼 때 政策問題指向性 즉 政策問題에 대한 認識과 接近이 政策指向性(Policyorientation)의 核心이며 政策學의 Paradigm은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의 政策問題는 단순히 存在하거나 豫測되는 社會的 現象이 아니라 어떤 판단의 評價基準 예컨대 社會的 平等性, 基本的 人權, 文化的 삶 등을 充

34) E.S.Quade, Analysis for Public Decisions(New York: Elsevier, 1975), pp.67~82.

35) E.S.Quade and W.I.Baucher(ed.), Systems Analysis and Policy Planning (New York: Elsevier, 1968), pp.35~40.

36) 許範, 韓國公共政策論, 成均館大, 社會科學研究所, 大旺社, 1984, pp.15~17.

37) Russell L.Ackoff and Fred E.Emery, on the Purposeful Systems (Chicago: Aldine 1972), pp.108~109.

38) 許範, op. cit., p.20.

足하지 못하는 政治的 與件이라 볼 수 있으며 政策問題意識은 期待와 狀況의 괴리 間에서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sup>38)</sup>

政策問題定立에 있어 작용하는 期待의 內容은 正義實現의 道德的 期待와 心理行 態의 選好性, 가치판단의 情緒的 期待 그리고 現實的 要求充足에 대한 必要的 期待 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本質的으로 각각 다른 性格을 지닌다. 즉 道德的 期待가 規範的일때 必要的期待는 認知的이며 情緒的 期待는 이 두가지의 混合形態이다. 이 세가지 類型的 期待間에 必然的으로 유발되는 갈등이 政策問題意識을 갖게 하 며 한 社會가 政策의 形成, 執行·評價를 올바로 하기 위하여는 期待類型間 갈등 과 이로 인한 政策問題意識을 把握하는 것이 중요하다.<sup>39)</sup> Lasswell의 政策問題指 向性 軸점은 人間의 尊嚴性 實現에 있었으며 이런 관점에서 價値觀狀況, 科學的 方法을 內包하되 價値觀과 科學的 方法의 統合에 치중하였다.<sup>40)</sup>

이와 같은 관점은 Dror와 Jantsch에게도 같은 것으로 Dror는 meta- policymaking에 價値觀을 包含시키고<sup>41)</sup> Jantsch는 價値觀의 發見과 實 踐的 行動을 組織化함으로써<sup>42)</sup> 모두 規範指向的 政策問題指向性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은 政策問題指向性 本質認識에는 차이로 나타난다. 즉 Lasswell 은 後期行態論的 認識論의 차원에서 價値觀을 取扱한 反面 Dror는 주어진 價値 觀의 실현을 極大化하려는 도구주의적성향이 강함을 찾아볼 수 있어 政策問題指向 性에 있어 後期行態論的 認識次元에 있는 Lasswell보다 좁아 限界性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反面 Jantsch는 이들과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本質的으로 나 른 입장을 취한다. 즉 價値批判的 관점에서 既存價値觀에 구애되지 않으므로 政策 問題를 보는 시각과 評價基準이 規範探索의이다. 따라서 그것은 政策學의 基本Pa-

39) 許範, op. cit., p.20.

40) H.D.Lasswell, The Policy Orientation The Policy Scienc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1), p.3.

41) Y.Dror, Proley men a to policy sciences, 1970, p.135.

42) E.Jantsch, Forecasting and Planning to Policy Sciences(New York : Elsevier, 1970), pp.31 ~ 47.

radigm으로 規範指向性(Narmative Orientation)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볼 때 價値觀과 科學의 統合에 있어 價値를 認識하는 次元이나 접근방법을 달리한다. 라스웰과 드로어는 後期行態論的 인식의 次元에 있는反面 Jantsch는 價値批判的 觀點을 가진 政治哲學的 認識의 次元에 있다. 이와 같이 政策學 主張자들의 Paradigm 논쟁은 상호보완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次元의 政策分析도 政策學의 基本 패러다임 즉 政策指向性(policy orientation), 脈絡性(contextuality), 統合接近性(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政策學의 概念化는 다음과 같은 認識論的 前提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政策學의 當爲指向性和 價値批判的 觀點의 확보 둘째, 價値觀과 사실의 실질적 統合 셋째, 當爲指向的 價値認識과 政策形成의 政治性的 統合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sup>43)</sup>

## 2. 規制政策의 保護主義哲學과 研究傾向

政策問題를 보는 시각과 觀點을 政策哲學的 次元에서 볼 때 政策이 지향하는 窮極的 價値는 公益, 效率性, 合法性, 民主性 등에 둘 수 있다. 그런데 이들 價値는 어떤 性格의 政策哲學의 立場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內容이 달라지기 때문에 Bozeman의 견해에 따라 이들 政策哲學의 여러가지 立場과 이에 따른 研究傾向을 糾明한다.<sup>44)</sup>

이 때 政策哲學(policy philosophy)이란 政府의 目的價値와 手段價値의 集合體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政策哲學을 保護主義(Protectionism), 合理主義(Rationalism), 仲介主義(Brokerism), 實用主義(Pragmatism), 移轉主義(Transferism), 利己主義(Egoism)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規制政策이 政策目標로 설정하고 있는 一般大衆의 保護 즉 公益保障을 위한 規制性과 強

43) 許範, 價値認識과 政策學, 現代社會科學의 이해, 大旺社, 1982, p.291.

44) Barry Bozeman, Public Management and Policy Analysis (New York : St.Martin's Press, 1979), pp.60 ~ 80.

制性和 關聯된 哲學的 觀點을 중심으로 보기로 한다. 本質的으로는 政府活動이 規制的이며 強制的이면 規制政策은 保護主義를 基本的 哲學背景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規制政策이 政策目標를 達成함에 있어서는 仲介主義와 利己主義 요소가 補完性을 이루어야 가능한 것이다.

環境汚染의 規制에서 規制基準을 설정함에 있어 政策對象集團과 의견을 조정하는 경우는 진자의 예이며 公務員罷業에 대한 처벌을 하더라도 참가를 실효하고 유인하는 이기적 政策要因의 介入없이는 問題解決의 實效性(철도교통 원활화)을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이는 후자의 예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保護主義를 中心으로 規制政策의 本質을 把握하고 기타 仲介의 이기적 요소는 보조적 집행수단으로 把握하고자 한다.

保護主義의 基本假定은 人間에 대한 否定的 前提에서 비롯된다. 人間의 知識과 能力의 限界, 天性的인 惡한 存在觀, 人間의 利己性·打算性에서 오는 生存秩序 등에서 보아 社會秩序維持의 窮極的 裝置는 Hobbes의 주장대로 Leviathen이 되어야 하며 이것에 의한 強制力이나 罰이 전제된 政策이야말로 다른 사람 및 자기 자신을 保護할 수 있다고 본 것이 保護主義의 基本前提이다. 이러한 保護主義에 입각한 政策哲學은 모든 사람이 參與하는 開放的인 政治體制는 實質的인 機能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保護主義의 근원을 찾아 볼 수 있는 Platon의 哲人政治나 Hobbes의 1人君主統治와 閉鎖社會의 주장은 統治行爲를 少數人에게 法的 信託한 것으로 보고 政府의 行動을 規制的이며 強制的인 것으로 限定하여 보았다. 保護主義를 주장하는 現代學者로는 Banfield를 들 수 있는데 그는 道市問題를 개선하기 위한 計劃을 제안함에 있어 規制와 強制에 依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45)</sup>

그러나 現代的 意味의 自由民主主義에 입각한 民主政治秩序를 확립한 나라의 憲法規範은 人權保障規範으로서의 특성과 權力制限規範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國民의 基本權을 秩序維持, 公共福祉를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만 法律로써 제한

45) Edward Banfield, The unheavenly city (Mass : Little, Brown, 1968), 安海均 政策學原論, 다산출판사, 1984), p.536. 再引用.

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人間으로서尊嚴과價値를 가지며幸福을 추구할權利를 갖도록 기본권보장의大原則을 선언하고 있다.<sup>46)</sup> 그러므로人權의制限과 관련된規制의發動은 必要한 最小限度內에서 尙상되어야 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됨을 의미할 뿐 아니라 現代人은 현저한自由·平等思想과 國民의 主權에 대한 의식이 강하므로 우선 善導한 다음에 必要한 最後의 手段으로서 權力動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47)</sup> 따라서 우리나라 憲法의 基本原理도 憲法前文 總綱 등에서 根本思想과 哲學을 明示하고 있어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확고히 할 뿐 아니라 人間의 基本權保障을 천명하고 또한 基本權制限의 一般原則도 規定하고 있다.<sup>48)</sup>

이때 國家의 安全保障, 秩序維持의 概念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明示하지 않으나 憲法이 지향하는 基本秩序로서 民主的 基本秩序와 國家의 安全保障으로서 國家의 存立外 他人의 權利維持, 道德秩序維持, 社會의 公共秩序維持 등이 내포된다고 보고 있다.<sup>49)</sup>

이상과 같은 保護主義觀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規制政策의 具體的 研究活動은 積極的 保護規制政策對象으로서 企業活動등의 規制와 消極的 保護規制政策對象으로서 犯罪規制의 側面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의 研究傾向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積極的 保護規制政策과 研究傾向

一般的으로 規制政策은 個人이나 集團의 行動 및 私有財産에 대한 政府의 統制와<sup>50)</sup> 關聯된 政策을 말하나 이중 保護的 規制政策은 最低賃金制, 航空料金, 鐵道料金 등의 策定 食品添加物에 대한 規制 등과 각종의 民間活動이 許容되는 條件을 인정함으로써 國民을 保護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政策을 말한다.<sup>51)</sup> 이와 같은 保

46) 김철수, 신헌법개설, 박영사, 1980, p.29.

47) 김철수, op. cit., p.121.

48) 松井茂, 警察의 權本問題(東京, 警察講習所學友會, 1929), p.25.

49) 憲法 37條 2項: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 秩序維持 또는 公共秩序를 위해 必要한 경우에 한하여 法規로서 制限할 수 있다」

50) Almond & Powell, op. cit., pp.196 ~ 197 : T.J.Lowi, op. cit., pp.677 ~ 715.

51) 上掲書

護政策은 다시 上記의 許容條件을 제한적이지만 積極的으로 認定하는 것을 積極的 保護規制政策이라 規定할 수 있다.<sup>52)</sup> 이 類型의 規制政策은 政策의 形成段階나 合法化 段階에 있어서, 被規制企業은 規制의 신설 또는 강화를 주장하는 개인이나 團體에 대한 적대 관계에 서게 되며 政策의 執行段階에서는 規制機關과 鬪爭하거나 도리어 동정적인 지지편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한다. 대체로 이 保護的 規制政策은 個人의 私的 活動을 금지하거나 특정조건하에서 許容하는 것으로, 政策執行이 피규 제자에 대하여 위협적, 강제적, 직접적, 대면적(hand-on activity)일 뿐 아니라 제약받는 고객에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명령, 처벌, 행동제약을 받게 됨 으로 적대감을 야기한다.

또한 增加되고 있는 抵抗의 다른 형태로는 規制(Regulation)에 대한 必要性을 공격하고 脫規制(Deregulation)를 요구함으로 대부분 價格政策에 대한 規制緩和에 그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외 참여자가 많아 중앙통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規制內容이 복잡하여 規則的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어려워 政策執行者들은 積極的인 자세인 反面 規制對象者들은 Nonimplementation 抵抗인 소극적인 태도, 行政機關과 紐帶形成, 議會, 利益集團, 訴訟을 통한 行政機關과 鬪爭으로 規制緩和, 脫規制의 요구 등을 행하게 된다.<sup>53)</sup>

그런데 積極的 保護政策의 保護主義哲學은 후술하는 消極的 保護政策의 保護主義와는 특성을 달리한다. 다시 말하면 積極的 保護政策下에서의 上記와 같은 抵抗, 脫規制의 요구 등이 多元化 社會의 集團間利益의 調整 및 協商이라는 政治的 過程으로 이루어짐으로 仲介主義政策哲學의 觀點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최근의 科學, 福祉, 住宅, 環境, 保健 등 여러 분야에서 實證的 研究를 통하여 仲介主義政策哲學

52) 필자가 許容과 禁止의 概念을 基準으로 前者를 積極的 保護規制政策이라 規定하고 後者를 消極的 保護規制政策이라 본 것임.

53) Randall, B. Ripley and Grace A. Franklin Bureaucracy and Policy Implementation (The Dorsey Press.1982) pp.133 ~ 140.

찾아 실제 政策決定에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sup>54)</sup> 물론 이에는 問題가 있다. 즉 保護的 規制政策이 保守化되어 強者と 弱者간의 權益配分에 不均衡問題가 생기며 犯人의 수용집단의 非組織化에 대한 이익 표명의 不在 및 非道德的 行動에 대한 政治的 合理化 등의 非道德性 등이 問題가 된다.

美國의 경우 많은 規制委員會가 保護的 規制政策의 執行을 擔當하고 있는데 그 代表的인 것이 聯邦交易委員會(FTC)의 獨寡占規制政策의 執行과 環境廳의(EP A)의 環境汚染防止政策의 執行이다.

이와 같은 保護的 規制政策은 財政的 利害關係를 가진 者의 그렇지 못한 者의 規制反對態度가 다르며 決定過程이 길고 規制對象들이 決定過程에 참여하지 못하고 規制가 一貫性이 없이 變化하거나 規制內容이 사소한 것일 때에는 적대감을 갖게 되며 議會가 基準決定을 外部機關에 위임함으로써 利益集團의 다양한 의견으로 결성모달이 힘들 뿐 아니라 예산의 80%가 다른 政府機關 또는 私機關의 契約에 의해 分權化 되어있어 豫測可能한 一貫性있는 執行規則을 수립하거나 統制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競争的 規制政策과는 달리 規制廢止는 쉬운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規制緩和가 自動車의 Performance Standard, Self-regulation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상의 保護的 規制政策의 執行은 本質的으로 流動的이며 따라서 많은 논란 때문에 Routine化가 어렵고 被規制者와 規制要求集團의 政治力, 影響力으로 大統領이나 國會의 관심이 클 뿐 아니라 執行者도 成功的인 執行을 위하여 깊이 관여하고 있는 執行上 特徵을 찾아볼 수 있다.<sup>55)</sup>

## 2) 消極的 保護規制政策과 研究傾向

### - B/C分析의 등장 -

#### ① 法에 대한 經濟的 接近

法律에 대한 經濟的 接近이 北美에서 정착될 때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54) 安海均, 政策學原論 茶山出版社, 1984, p.540.

55) Ripley and Franklin, op. cit., pp.175 ~ 176.

된 사람은 이 아이디어에 대하여 적의적이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은 Chicago approach로 알려진 법과 經濟學의 다양성에 反對하기도 했다.<sup>56)</sup> 法學과 經濟學의 결합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經濟學的 接近은 Beccaria-Bonesara, Bentham, Marx, Commons 등의 美國制度論者의 저서에서 發見되었는데 法에 대한 經濟的 分析의 再出現이 差別問題에 대하여는 Becker, 財產權에 대하여 Alchion과 Demsetz, 고분에 대하여는 Calabresi 등이 있었다.<sup>57)</sup> 이와 같은 法에 대한 經濟的 接近에 內包된 기본 아이디어는 效用極大化(Utility Maximization)와 安定的 選好(Stable Preference) 및 機會費用(Opportunity Cost)의 概念들이며 이 接近은 分析의 單位를 個人으로 삼아 人間의 利己性 및 效用極大化 假定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經濟的 接近의 다른 2가지 特徵은 限界接近(Marginal approach)으로서 法과 社會의 급격한 變化를 다루지 않고 漸進的 變化를 分析하는데 초점이 두어지며 그리고 ex ante 接近으로 未來期待를 주는 法의 變化에 사람들의 豫測反應과 誘引에 重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즉 個人은 不確實한 사건에 대하여 그들의 信念의 보대위에 期待效用을 極大化하는 것이 가정된다. 이 基本프레임을 보대로 經濟學者는 2가지 分析 즉 Positive and Normative analysis로 나누어 학분전통을 수립하였다. 前者의 經驗的 檢證을 中心으로 하는 研究는 여러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犯罪의 決定을 職業的 選擇(occupational choice)의 實行으로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個人은 선택적인 合法的 職業에서보다 더 큰 利益을 얻게 됨으로 犯罪行動에 參與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犯人은 富가 아닌 기대효용을 極大化하는 選好를 가진 合理的 個人으로 特徵된다. 그리고 또한 犯罪에 대한 經濟學的 分析의 초점은 理論的·經濟的으로 節制效果의 假定이 檢證된다. 즉 刑法에 의해 처벌이 기대잠재이익을 줄이는(처벌의 가혹성과 횡수) 要因이 된다고 보고 이것이 犯罪를 줄이고 보

56) Paul Burrows & Cento G. Veljanovski, The economic approach to Law, Butterworth & Co. LTD. 1981, p.1.

57) Ibid., p.2.

다 큰 억제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Normative Economic Analysis는 個人 및 社會의 자원배분적 能率의 目的과 관련되는 것으로 完全한 私的 競爭市場은 能率이 保障되고 따라서 資源配分이 모든 參加者에게 效率的으로 配分된다는 假定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것은 前述한 바 있는 外部效果가 없을 때 社會的 能率性이 있는 것으로 去來의 外部費用과 外部使益이 있으므로 市場의 失敗를 초래한다.

法에 대한 能率的 接近은 活動의 總社會費用의 最小化를 目的으로 設定함으로써 可能해 진다. 즉 사건비용이나 회피비용의 總額을 줄이는 것이 關聯法의 主要機能이라고 보고 3가지 前提를 제시한다.

첫째, 모든 손실은 화폐로 表示될 수 있으며 둘째, 사건은 사전예방에 더 많은 資源을 投入함으로써 줄어들 수 있으며 셋째, 潛在事件은 Cost 압박에 더욱 反應的인이다(58)

백커모델(Becker's Model)에서는 人間の 犯罪行態를 經濟的 理論으로 說明하는데 있어 特徵的 要素는 犯罪과 결부된 報償의 本質的 不確實性에 있다. 즉 犯罪行爲로부터 얻게 될 不確實한 代價인 구속과 그 다음의 刑罰의 可能性을 合法的 經濟活動에 종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代價와 比較하게 된다는 것이다. Becker의 主張은 個人은 犯罪를 行함으로써 얻게 될 期待效用(Expected utility)이 代案的 合法活動에 종사함으로써 얻게 될 效用보다 할 때 犯罪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text{즉 } EU = PU(Y - f) + (1 - p)U(Y)$$

(EU : 個人期待效用, P : 체포구속될 주관적 확률)

f : 犯人으로 기소될 때 처벌의 金錢相當價値

Y : 犯罪로부터 얻는 利益)

58) Ibid., p.11.

59) David J. Pyle, The Economics of crime and law enforcement(N.Y.:The Macmillan Press, 1983), pp.10 ~ 11.

이때 EU가 肯定的인면 個人은 犯罪을 저지르고 EU가 否定的으로 판단되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59)</sup> 또는 Becker는 이를 토대로 人間行動을 B/C 要因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B/C 要因으로 犯罪의 刑罰政策을 도출하여 처방하고 있다.

또한 Becker는 刑罰의 罰金化의 擴大를 통한 社會的 損失의 最小化, 刑罰政策의 最適供給決定을 주장한다. 그럼으로써 犯罪增加, 豫算不足에 직면한 刑事司法行政官의 결정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刑罰의 最適選擇의 經濟的 分析이라 볼 수 있는 Becker's model을 통하여 決定行態를 고찰함이 유의미하다.

Becker는 社會는 정책무기의 적절한 選擇을 통하여 犯罪로부터 야기되는 社會的 損失을 最小化하는데 目的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犯罪가 zero水準에 머무는 最適結果는 없겠지만 政策이 費用과 便益의 均衡을 가져오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前提를 설정하고 있다.

즉 犯罪의 減縮費用은 犯罪減縮으로부터 과생되는 便益과 비교되어야 한다고 보고 罰金은 犯法行爲에 의해 일어난 害惡과 동등하게 될 때 적정하게 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Backer는 社會費用函數를 결정하는 요인을 3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犯罪의 直接費用으로 이는 犯罪行爲로부터 받는 확실한 社會的 純粹害惡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損失과 加害者의 利得間의 差異로 나타나게 되며,

둘째, 수사 및 유죄의 確率과 侵害行爲水準과 관련된 逮捕·搜查費用이다. 비용은 수사와 犯罪數 및 수사기관에 의해 사용된 投入費用과 이의 活用效率性에 의해 결정된다.

끝으로, 刑罰의 社會的 費用으로 감금·구치의 경우 커질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Becker's model에서는 犯罪과 관련된 社會的 費用을 줄이기 위하여 政府나 政策決定機關은 2가지 변수 즉 搜查 및 유죄의 確率과 刑罰의 가혹성을 통제 가능한 變數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이런 接近은 문제를 處理可能케 하나 部分最適化일 뿐이다.

그리고 Becker는 犯罪處理機關은 犯罪의 社會損失을 감축하기 위하여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고려했으나 政府의 他經濟·社會 program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外部效果는 무시하고 社會損失函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L(p, f) = D(O) + C(p, o) + bfpo$$

L : 犯罪로부터 야기된 社會損失

D : 犯罪로부터 생긴 社會의 純損失害惡[D : 害惡(harm)-이익(gain)]

C : 逮捕 및 有罪 認定 費用

O : 犯罪數

p : 搜查 및 有罪의 確率(可能性)

f : 刑罰의 金錢代價性(罰金相當額이나 金錢으로 推定)

b : 刑罰의 社會的 費用과 犯罪者의 私的 費用間의 調整係數

여기에서 b parameter는 最適政策決定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Becker의 罰金擴大에 대한 주장의 核心要因이 된다.<sup>60)</sup>

같은 배가는 犯罪로부터 일어나는 社會的 損失을 최소화할 수 있는 p와 f요인의 組合을 刑事政策次元에서 결정해야 하며 다른 刑罰에 대해 벌금의 장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며 犯法者自身の 경제환경보다는 犯罪에 의해 일어난 손해와 깊게 되어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sup>61)</sup>

上記의 犯罪行動決定을 規制政策의 penalty를 中心으로 수요공급 측면에서 보면 개인은 犯罪行動으로부터 넓고 다양한 이익을 실현한다. 물론 이런 것중엔 金錢的인 利益도 있다. 잠재적인 이익은 作業環境을 改善하는 것을 包含하고 일생을 통한 생활력을 증가시키고 作業時間의 감소를 包含한다. 거기에는 또한 犯罪를 制止하는 것으로부터 잠재적인 心的 利益(만족감)이 있다. 사람은 남에게 肉體的인 害를 끼침으로 인해 이익을 얻어내고, 남에게 또는 組織, 法的 標準에 의한 권위에 對항하는 것에서 심리적으로 복수한다.

60) David, J. Pyle, The Economics of Crime and Law Enforcement, N.Y.: Macmillan Press, 1983, p.91.

61) Ibid., p.98.

心的인 利益은 반드시 전통적인 인식에서 기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메조키즘(masochism)은 아마 그들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즐기지는 않을 것이다.

犯罪에 있어서의 喪失은 자신의 희생으로부터 오는 혜택의 박탈이다. 물리적인 고통은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反面, 犯罪行爲를 범하는 개인에게는 한정된 비용들이 있다. 시간은 犯罪를 計劃하고 遂行(실행)하는데 필수적이다. 犯罪後에 犯法者는 다른 行動들을 줄여야만 할지도 모른다. 犯罪를 범했다면 이 시간에 행해졌을 다른 일은 그만 두어 버린다. 거기에는 또한 事業(doing business)에 대한 直接的인 費用들이 있다. 많은 경우 받아들일 급료들이 있고, 財政的인 消費와 다른 金錢的인 經費가 있다. 그리고 醫療費用도 있을 것이다. 많은 不法行爲는 현저히 육체적 손상을 犯罪者에게 입힌다.

예로서, 창녀는 자주 학대를 당하게 된다. 이것이 犯罪의 費用을 의미하며 또한 法的 制裁로 생기는 費用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有罪判決을 받거나 투옥되던 재소기간 동안 수입을 잃게 되고, 미래의 돈벌 能力도 前過가 있으면 줄어들 것이고 裁判費用과 罰金을 내야한다. 그는 또한 自由의 喪失과 그의 투옥으로 인한 惡影響으로 하여 精神的 費用도 내야한다. 犯罪의 費用은 犯罪供給의 기초가 된다.

만일 犯罪의 期待費用이 특정액수라면 犯罪는 期待所得이 그 액수를 넘는 경우에만 실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量의 犯罪와 관련된 期待費用의 표는 犯罪供給 圖表이기도 하다.

한편 Ehrlich's Model은 Becker's Model보다 더 정교한 Model을 사용하여 왜 殺人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키 위해 2가지 전제를 제시했다. ㉞ 殺人은 비움, 절투, 금전, 비금전동기의 인간간의 갈등과 ㉟ 期待利益과 期待喪失에 의해 影響을 받는다는 것이다. Ehrlich는 이 두 가정을 經濟選擇理論으로 統合했다.<sup>62)</sup> 즉 개인은 그들의 만족감(효용)을 極大化하기 위하여 行動할 것이다. 따라서 人間이 不法行動과 合法行動間에 利用可能한 時間을 어떻게 할당해야 하는가를

62) W.A. Luksetich, op.cit., pp.104 ~ 107.

決定해야 된다고 보고 여가나 消費에 시간을 많이 할당한 것으로 假定하고 不法活動에 얻은 利益과 處罰의 크기는 그 活動에 바친 時間의 總量에 全적으로 依存한다고 假定하고 期待活用을 極大化하기 위한 函數  $EU = PU(Xa) + (1-P)u(Xb)$  를 제시했다.<sup>63)</sup>

## ② 處罰과 誘因에 의한 政策執行

市民으로부터 措置를 要求받을 때 政策決定者는 法이 무엇이며 어떻게 運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가지 前提를 가지고 運用하게 된다. 現代美國에서의 legal policy는 한편으로는 道德性의 지각에 의하여 또 다른 한편으로는 社會效用函數 또는 效果性에 의해 形成된다.<sup>64)</sup>

政策執行과 法의 影響力을 檢證함에 上記의 評價基準이 상이한 方法으로 作用한다는 점도 發見되지만 그러나 各各은 政策의 成功과 失敗에 부분역할을 하며 相對的 的 的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個人效用과 결부된 incentive는 그것이 社會規範을 반영하지 않으면 行態構成에 失敗할 수 있으며 個人效用과 연관된 規範을 法執行檢定置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sup>65)</sup>

이를 토대로 볼 때 規制政策의 戰略은 情報戰略, 促進戰略, 規制戰略, 誘因戰略으로 나눌 수 있는데 規制政策은 處罰(punishment)과 그것의 위협을 통해 作用하는데 이 戰略의 前提는, ㉠ 處罰이 이 行動을 억제할 수 있다. ㉡ 效果的 處罰을 위해 자주 반복되어야 하고 광범한 행동감시가 必要하며 ㉢ 處罰의 積極的 強制가 적절히 조작될 때 가장 잘 作用하게 된다는 것이다.<sup>66)</sup>

反面, Deterrence theory는 복지경제학자에 의해 支配되어 왔는데 이들의 기본가정은 犯人과 法遵守 市民間의 차이에 관계없이 양자는 誘因에 對應한다는 것이다. 個人效用極大化는 그들의 期待利益을 토대로 選擇하고 利用할 수 있는 擇一

63) D. J. Pyle, *op.cit.*, p.15.

64) John Brigham & Don W. Brown, *Policy implementation: Penalty and incentive*, Sage publication Beverly Hills London, 1980.

65) *Ibid.*, p.8.

66) *Ibid.*, p.43.

的 機會를 비교함으로써 處罰은 法服從을 유도함에 있어 潛在犯人이 직면한 費用과 使益을 조작할 수 있는 手段이 된다는 것이다.

Silberman은 處罰의 위협이 사람마다 다른 억제가치를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犯罪率에 대한 여러 변수 즉 法에 대한 道德心, 處罰의 確實性, 동료관계의 영향을 보았다. 이중 moral commitment가 犯罪率의 변이를 가장 잘 설명하고 peer involvement가 다음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았고 certainty of punishment는 가장 적은 犯罪決定要因임을 알고 大部分의 사람이 法에 服從하고 犯罪를 저지르지 않는것이 道德的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發見하였다. 그리고 Silberman은 계속 경험적 연구에서 處罰의 위협이 道德的 履行을 生成시키고 응징에 토대를 둔 處罰은 道德的 履行을 배양시킴으로써 犯罪를 저지시킨다는 것을 發見하고 犯罪를 줄이려던 응징 및 처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sup>67)</sup>

또한 Brown과 Stover는 效用理論이 順應의 여러 分析을 統合했다고 주장한다. 즉 效用理論은 人間行動이 基本的으로 快樂을 追求(快樂追求, 苦痛回避) 한다는 가설을 토대로 함으로써 順應行動은 順應과 非順應의 상대적 B/C의 函數로 관찰된다고 보았다.<sup>6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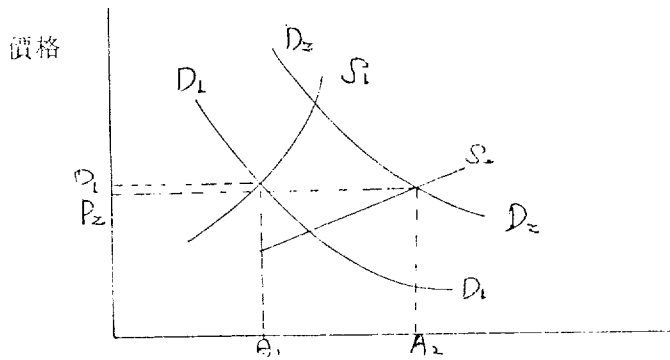
$$\text{즉 } Bc - Cc > Bnc - Cnc .$$

어떤 行爲가 不法化될 것인가에 대해 낙태억제정책의 강제와 비강제의 예시적 설명에서 情報를 얻기로 한다. 最近 美國의 많은 주에서 낙태를 不法化하고 있는데 이 法이 강조하는 것은 道德性(Morality)이라는 것이다.

反낙태주의자들은 낙태가 Human life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는 反面 지지자들은 애기가진 것에 대한 選擇權을 갖는 것이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經濟的 分析이 道德性에 대해 아무것도 제공못하지만 그것이 合法的일 때에 비해 不法化되었을 때 販賣·購買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67) Ibid., p.99.

68) Ibid., pp.187 ~ 201.



〈낙태合法化의 經濟的 效果〉

이때  $D_1, D_1$  과  $S_1, S_1$  은 낙태가 不法化되었을 때 需要供給曲線이라면 낙태가 不法하다는 사실은 모든 잠재낙태 고객을 추방하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價格으로 낙태시키려는 사람의 수는 줄일 수 있다. 供給도 完全히 제거하진 못해도 醫療專門家에게 影響을 미친다. 물론 그중 일부는 無許可醫師에게 간다. 따라서 대부분의 不法낙태자들이 나쁜 醫療施設에서 낙태하게 된다. 이때 가격도 낙태시설의 제약, 낙태시설로 인한 逮捕·拘束時 보상을 위해 타의료서비스에 비해 높아진다. 부자에게는 가난한 자보다 덜 문제되고 낙태가 성행하게 된다. 그러나 反面 낙태가 合法化될 때 需要는 늘어나  $D_2, D_2$  로 되고 不法에 대한 위험부담이 제거된다. 그러나 이성들에게는 道德的 制約은 있게 된다. 따라서 供給은 衛生施設이된 病院에서 이루어지며 增大된다. 구속기소에 대한 위험이 줄뿐 아니라 낙태供給費用이 줄어든다. 결국 낙태合法化에 대한 經濟的 影響은 간 生産供給이 需要를 增大시키나 供給이 增加한 만큼 늘어나지 않으며 ㉔ 去來量은 늘지만 價格은 낮아지고 ㉕ 가난한 사람도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며 ㉖ 醫療供給의 질이 개선된다는 論理的 理論的 전개이다.<sup>69)</sup>

이와 Sellin의 研究結果는 極刑(capital punishment)이 犯罪阻止效果가 없다는 증거에 대해 經濟的 研究結果를 제시하고 있으나 檢證妥當性的 缺如를 비판함과 동시 최근의 몇몇 研究는 이에 정면으로 도전적 主張을 하고 있다.

69) Ibid., pp.136 ~ 140.

이것이 Gibbs Study와 Tittle Study이다.<sup>70)</sup> Gibbs는 殺人과 逮捕의 可能性 및 투옥의 고통간의 관계를 檢證하였다. 즉 처벌의 犯罪억제효과가 있다면 逮捕可能 및 투옥의 可能性 및 苦痛이 큰 刑罰制度를 갖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殺人率을 1/3 이상 줄이는 것으로 檢證되었다. 한편 Tittle Study는 Gibb's Study를 發展시켜 殺人率에 미치는 他 影響變수(도시화, 연령구성, 性 差)를 統制하여 왜 處罰이 犯罪抑制效果를 갖는가에 대해 理論的 說明을 제공했다. 尙 labeling theory에 따라 處罰받는 個人은 낙인이 찍히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억제된다는 것이며 尙 exchange theory가 의미하는 人間行動과 연관된 費用과 報償이 있다는 것이다. 犯罪行動에 대한 處罰은 비용(cost)을 증가시키므로 行爲參加를 억제시키고 尙 social learning theory에서는 處罰이 法遵守行動에 대한 부정적 강제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에서와 같이 消極的 保護規制政策은 本質上의 接近에서 볼 때 規制의 順應 및 不應의 問題를 Brown과 Stover가 주장한 바와 같이 效用理論에 統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政策對象集團의 行動決定이나 規制政策에의 順應의 問題는 效用理論에 토대를 둔 順應 및 不應의 相對的 B/C兩數로 分析할 수 있으며 다음의 政策代案 즉 違法行動抑制政策의 決定에도 이 理論의 適用可能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3. 制度的·政策的 接近

첫째, 刑事政策的 意味와 資源配分面에서의 研究傾向이다. 犯罪의 크기는 犯罪制度 및 기구의 運營에 크게 影響을 받는다.<sup>71)</sup> 法執行의 比率, 즉 警察 및 其他 司法機關의 豫算이 늘어나면 犯罪의 逮捕·有罪로 될 確率이 증가되고, 이는 犯人이 갖고 있는 犯罪期待利益을 감소시켜 犯罪量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社會에 대한 犯罪費用이 줄어든 반면 法執行에의 豫算支出을 늘린 것

70) W. A. Luksetich and M. D. White, *op. cit.*, pp. 100 ~ 103.

71) William A. Luksetich & Michael D. White, *Crime and public policy : An Economic Approach*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1982), p. 180.

이 되므로 社會費用을 부과시키는 일이 된다. 즉, 法執行의 증가에 쓰인 資源은 다른 財貨의 생산에서 代替使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法執行에 사용된 資源은 機會費用問題를 갖게 된다. 따라서 社會는 가치상충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犯人逮捕에 많은 豫算을 投入함으로써 犯罪의 크기도 줄이고, 犯罪로 인한 社會費用도 줄일 수 있는 점이 있으나, 이에의 資源投入으로 代替利用이 可能했던 他財貨의 생산을 포기해야 하는 비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政府나 社會는 순이익을 極大化하기 위하여 法執行에 쓰인 資源의 機會費用과 法執行으로부터 나온 總利益間의 차이를 極大化시키는 그런 크기의 資源總額을 法執行에 使用하도록 決定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자원의 적정배분의 달성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리고 刑事司法制度運營의 여타 문제에도 經濟分析이 適用된다.

우선, 협상을 통한 犯罪處理의 관례로서 피고와 검사간의 협상(plea bargaining)을 法院이 수락함으로써 피고인에게는 活動時間과 금전손실을 보상할 수 있고(법률 소송수수료), 형무소내에서 보낼 시간의 심리비용, 개인간의 人間關係 손해, 정력손해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美國에서 10% 정도만 법정에 서게되는 현상은 바로 여기에 기인된 것이다.

다음으로 재판의 시간 配分方法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양이 利用可能한 것을 초과할 때, 그것을 행정, 출서기, 가격을 통하여 배당하는 方法을 쓰고있다. 이 모든 것은 각각 bargaining, 資源割當, 機會費用과 연관되어 있어 經濟分析的 意味의 刑事司法制度(criminal justice system) 運營이 檢討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犯罪管理의 最適化이다.

犯罪는 現在 자행되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낮출 수 있다. 시카고대학의 經濟學者는 社會에서 犯罪를 추적하고 搜查하고 逮捕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sup>72)</sup> 사회에서는 犯人을 逮捕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과 資源을 供給하지 않는다

72) George J. Stigler, "The Optimum Enforcement of Law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May/June 1970, pp. 526 ~ 536.

다. 이것은 犯罪의 최적의 양, 적당한 정도는 전혀없는 것이 아니고 약간 있는 것이라고 사회는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犯罪의 적당한 정도는 法執行에 드는 추가적인 비용과 犯罪防止의 利益의 純利益을 最大化시키는 量이다. 즉, 法을 執行하는데 드는 限界費用과 일치시킴으로써 얻는 犯罪防止의 限界利益이 같아야 한다. 이것에 대한 도표적 설명도 상상할 수 있다.

限界費用은 限界利益과 同족에, 法을 지키게 하는데 수단과 재원의 量은 同족에 표시한다. 限界利益(marginal benefits)은 法執行의 크기(ammunt of law enforcement)가 증가하면 감소한다. 이것은 法執行이 社會에 가장 惡影響을 미치는 犯罪에 投資된다는 가정을 증명해 준다. 限界利益은 犯罪者를 逮捕하고, 犯罪를 막는데 어려움이 증가하기 때문에 減少하는 경향이 있다. 犯罪의 量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은 逮捕하기 어려운 犯罪者, 搜查하기 어려운 犯罪를 잡아야 한다. 限界費用은 法執行活動이 증가할 수록 증가한다.

### 第 3 節 規制政策의 不應要因

#### 1. 政策對象集團의 順應 및 不應

近來에 와서 政策執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政策執行의 核心的 課題인 順應(compliance) 및 不應(noncompliance)의 問題에 대한 研究가 進行되었다.

Kaufman과 Anderson이 不應問題에 언급하고 있으나 Coombs의 Allport 등의 社會心理學者들이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했다. 따라서 우선 여기에서는 順應 및 不應의 概念을 同一範疇의 tautology로 파악코자 한다.

Young은 「順應이란 特定の 行動規定(behavioral prescriptions)에 일치하게 되는 行動者의 모든 行爲를 말하며 反對로 不應이란 이런 規定要件에 일

다. 이것은 犯罪의 최적의 양, 적당한 정도는 전혀없는 것이 아니고 약간 있는 것이라고 사회는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犯罪의 적당한 정도는 法執行에 드는 추가적인 비용과 犯罪防止의 利益의 純利益을 最大化시키는 量이다. 즉, 法을 執行하는데 드는 限界費用과 일치시킴으로써 얻는 犯罪防止의 限界利益이 같아야 한다. 이것에 대한 道표적 설명도 상상할 수 있다.

限界費用은 限界利益과 同족에, 法을 지키게 하는데 수단과 재원의 量은 同족에 표시한다. 限界利益(marginal benefits)은 法執行의 크기(ammunt of law enforcement)가 증가하면 감소한다. 이것은 法執行이 社會에 가장 惡影響을 미치는 犯罪에 投資된다는 가정을 증명해 준다. 限界利益은 犯罪者를 逮捕하고, 犯罪를 막는데 어려움이 증가하기 때문에 減少하는 경향이 있다. 犯罪의 量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은 逮捕하기 어려운 犯罪者, 搜查하기 어려운 犯罪를 잡아야 한다. 限界費用은 法執行活動이 증가할 수록 증가한다.

### 第 3 節 規制政策의 不應要因

#### 1. 政策對象集團의 順應 및 不應

近來에 와서 政策執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政策執行의 核心的 課題인 順應(compliance) 및 不應(noncompliance)의 問題에 대한 研究가 進行되었다.

Kaufman과 Anderson이 不應問題에 언급하고 있으나 Coombs의 Allport 등의 社會心理學者들이 이 問題를 심층적으로 연구했다. 따라서 우선 여기에서는 順應 및 不應의 概念을 同一範疇의 tautology로 파악코자 한다.

Young은 「順應이란 特定の 行動規定(behavioral prescriptions)에 일치하게 되는 行動者의 모든 行爲를 말하며 反對로 不應이란 이런 規定要件에 일

치하지 않는 行爲를 말한다」고 正義하고 일반적으로 特定行爲者에 의한 特定行動 規定에의 順應 또는 不應은 選拔行動을 內包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73)</sup>

그는 또한 行動者의 行爲가 一般화된 行動規定에 대한 反應인가 特定人의 權威的 命令에 대한 反應인가에 따라 順應과 服從을 區分하고 있는데 後者의 경우를 服從으로 보아 順應과 區別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Duncan은 順應을 受容(acceptance)과 同調(conformity)와도 區別하는데 順應이 「外面的 行動이 特定の 規範 또는 規則에 一致하는 것」인 반면, 受容은 「內面的 價値體系와 態도의 具體的 變化」를 의미한다고 보아<sup>74)</sup> 受容을 外面的 表面的 行動의 變化뿐 아니라 內面的인 가치·태도의 變化까지도 의미한다고 넓게 보았다.<sup>75)</sup>

반면 同調란 「明示的 또는 默示的 規範에 一致하는 方向으로 行動을 修正하는 것」으로 보아 順應과 受容의 概念을 包含하는 개념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sup>76)</sup> 즉 그는 順應과 受容을 일종의 同調性으로 보았고 受容을 外面的 行動의 可視的인 것과 內面的 價値와 態도의 行動以前段階의 變化까지를 관심의 초점으로 삼았다. 이와 Anderson은 政策지시에 대한 적용대상자의 행동일치로 보았고<sup>77)</sup> 安海均教授는 政策決定者에 대한 政策策執行者의 行動一致 與否에서 보았다.<sup>78)</sup>

Kiesler와 Kiesler는 同調(Conformity)를 「集團의 壓力이 구체적 형태로 존재하는 假想的 상태이든 그 결과로 개인의 集團에 대한 行動 또는 信念體

73) Oran R. Young, Compliance and Public Authority : A Theory with International Applications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pp.4 ~ 5.

74) W. Jack Duncan, Organizational Behavior,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p.192.

75) 安海均, 政策執行과 順應, 考試界, '87.2, pp.117 ~ 118.

76) W. J. Duncan, op. cit., p.192.

77) James E. Anderson, public Policy-Making, 3rd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4), p.88.

78) 安海均, 政策學原論 (서울: 茶山出版社, 1984), p.468.

系의 變化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79) Sampson은 대상의 행동기능에 의하여 사람이 새로운 상태로 變化해 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80) 한편 Krech, Crutchfield, Ballachey는 집단의 社會的 壓力에의 복종이라고 정의함으로써 81)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이 同調의 概念속에서 前述한 Duncan의 順應과 受容이 內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Festinger 역시 同調를 2가지 概念으로 나누어 順應(Compliance)과 個人的 受容(Private acceptance)으로 區分하여 前者는 集團要求行動양식에 따르는 것으로 후자는 개인의 태도와 신념이 集團의 태도와 신념의 方向으로 變化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82)

요컨대, 지금까지의 一般的 의미에서의 順應概念을 類似概念과 同異性을 中心으로 보았는데 이를 政策執行의 脈絡속에서 볼 때 특히 規制政策과 같이 受惠 및 費用負擔의 主體는 公共財의 특질상 不特定多數人인 國民大衆이 될지라도 구체적으로 規制의 政策執行對象이 明白히 規定되고 개인의 權利와 行動을 제한 구속하는 制裁性이 法律規程 등의 形態를 띠는 뿐 아니라 制裁의 質(제포의 質)을 基本權 次元에서 주장하는 경향에서 보면 83) 順應 및 不應의 概念이 一般的 의미의 政策對象으로서의 의미와는 다소간의 차이를 갖게 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자 한다.

즉 順應은 政策目標達成을 위하여 設定된 政策指針이나 指示 등의 行動規程에 대하여 政策執行者의 外面的 行動이 內心的 態度지각에 의하여 一致하는 方向으로 일

79) C.A.Kiesler and S.B.Kiesler(1970), Conformity,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p.2.

80) E.E.Sampson(1978), Social Psychology and Contemporary society (N.Y.: John Wiley & Sons, Inc.), p.296.

81) Kreac, Crutchfield, and Ballachey(1962), Individual in Society (Kogakusha-McGraw-Hill), p.505.

82) L.Festinger(1953), "An Analysis of Compliant Behavior", in M.Sherif and M.O.Wilson(eds.) Group Relations at the Crossroads (N.Y.:Harper & Row), pp.232 ~ 256.

83) W.C.Rich "The municipal civil service under pressure", PAR, Vol.37 (No.5, 1977), p.56.

어나고 또한 政策對象者의 행동도 이에 一致하게 일어나는 反應行動이라 볼 수 있으며 反對로 이에 대해 어떤 不一致의 行動이 일어날 때 이를 不應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政策에서의 順應은 同調的 意味의 順應概念으로 規定할 수 있게 된다. 다만 理論上으로 볼 때는 順應의 程度는 實在의 順應行動과 可能한 順應行動과의 比(Ratio)<sup>84)</sup>를 의미하지만 順應과 不應의 측정이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sup>85)</sup>

그뿐 아니라 規範에의 適應類型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즉 政策決定者와 執行者의 關係에서의 同調的 適應類型에서 目的規範을 無視하고 手段規範만을 지키는 盲從과 手段을 內面的으로 포기한 채 外形的으로만 충실히 이행하는 것처럼 꾸미는 各색 분장적 적응은 形式主義的 逆機能으로 規定되는데<sup>86)</sup> 上司에 全的으로 의존하는 盲從은 集團 및 조직의 公式統制에만 의존하는 경우 표준화된 役割에 대한 적응행위를 나타내며 조직의 意思決定에 公式參加者로 參與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最下業務層의 政策執行者에게는 주로 手段을 目的시하면서 나타난다. 한편 政策執行機關의 actor 간의 階層通路가 길어 役割부여자와 執行者가 役割測定이 어렵고 그럼으로써 왜곡·단합등의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분장·各색 행위를 쉽게 지속할 수 있는 問題點이 있다.

그리고 또한 政策決定者集團中心의 同調가 不可能해질 때 個人의 자기방어수단으로 또는 奉仕와 친절과 같은 추상적 目標達成을 관료적 方法으로 劃一統制하거나 成果에 대한 報償보다 過誤에 대한 處罰爲主로 統制하되 자기과오의 은폐수단으로 各색 분장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同調的意味의 順應에서는 同調過剩에 의한 形式主義도 政策執行過程에서 제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84) O.Young, op.cit., p.104.

85) Ibid., p.108.

86) R.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London : The Free Press, 1957), pp.195 ~ 206.

Merton은 目的과 手段의 規範에 대하여 個人이 적응하는 方法을 上기의 變種분장의 同調・革新 改革등을 다음 表와 같이 區分하고 同調외의 革新에 의한 手段代  
替나 改革에 의한 目的 및 手段規範의 代替가 規範에 대응하는 個人 또는 集團間  
에 發生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同調에 의한 順應確保가 아닌 경우의 不應의 범  
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表II-1> 規範에 대한 適應 類型

適 應 類 型	目 的 規 範	手 段 規 範
① 同 調	受 容	受 容
② 革 新	受 容	代 替
③ 改 革	代 替	代 替
④ 盲 從	拒 否	受 容
⑤ 분장 및 각색	拒 否	拒 否

逆機能的  
形式主義

전국 일반적으로 볼 때 順應과 不應은 完全順應, 完全不應의 概念化가 어렵듯이 連續線止의 相對的概念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判斷은 執行者 政策對象集團 中間媒介集團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本 論文에서는 政策對象集團의 不應에 연  
구의 着점을 두었다. 또한 연구주제가 規制政策에 대한 것이므로 順應・不應의 概  
念이 同調性意味의 順應・不應으로서 廣義의으로 보게 된다.<sup>87)</sup>

## 2. 規制政策의 不應 및 順應要因

### 1) 研究傾向

우선 順應에 관한 研究는 同調의意味, 受容의이며 그리고 양자의 結合의意味中  
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心理學者와 政策學者들의 研究對象과 範  
疇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心理學者들 중심의 集團影響力에 의한

87) 이하 이 概念은 「同質性順應」으로 用語를 사용함.

反應으로서의 同調의 順應과 個人的 態도와 行動의 不一致를 설명하는 認知不調理論 그리고 人間의 內面的 세계를 설명하는 道德性에 관한 理論을 정리한 다음 不應要因과 順應要因은 政策的 觀點에서 研究傾向과 더불어 각각 규명하기로 한다.

첫째, 集團影響력에 대한 反應으로서의 順應研究傾向이다.

Allport 는 다른 사람의 존재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實驗的研究를 한 심리학자로서 사람의 존재사실만으로도 개인심리에 變化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sup>88)</sup> 그리고 Asch 는 개인이 사실과 反對된다고 인식하는 集團壓力에 대하여는 어떤 反應을 보일 것인가의 실험을 통하여 ① 자극상황의 특성 ②集團의 특성 ③ 個人의 特性차이 등이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sup>89)</sup>

한편 同調의 順應을 動機面에서 본 Festinger 는 사람이 자기의견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2 가지 원천으로 物理的事實과 社會的事實을 들면서 인간은 전자가 불확실해지면 점점 후자에 의존하게 된다고 보고 그 이유를 그 상황에서는 집단의 壓力에 동조하는 것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up>90)</sup>

또한 Hoffman 은 자신의 의견과 행동이 다른 집단의 壓力은 그 개인에게 심리적 고립감을 주게 되고 위협의 두려움을 갖게 하므로 이때의 同調의 順應은 공포를 덜어줄뿐 아니라 그것을 피하게 하는 방어적인 기능을 담당해 준다는 것이며<sup>91)</sup> Cartwright 는 長・短期的側面에서 集團影響력을 分析 장기적측면에서 보아 處罰은 順應을 용이하게 確保할 수는 있으나 적개심을 야기시키며 報償은 壓력을 향상시킬

88) F.Allport, Social Psychology, Boston: Houghton Mifflin 1924.

89) S.E.Asch, Soci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Ch.6.

90) L.Festinger, "Informal Social Communic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950, 57, pp. 271 ~ 272.

91) M.Hoffman, "Conformity as defense Mechanism and a form of resistance to genuine group influence," Journal of personality, 1957, 25, pp. 412 ~ 424.

수 있다고 보아 집단영향력의 장기적 안목에서의 償罰體系를 설명하였다.<sup>92)</sup>

둘째, 認知不調和狀況에서의 態度變化를 통한 不調和縮小와 이에 따른 順應研究이다.

사회현상속에서 人間行動의 이해에 필수적인 態度變化研究는 認知不調和理論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代表的研究者인 Cohen은 不調和는 한 개인이 調和되지 않은 認知들중 하나에 행동적으로 관여되었을 때에만 強力한 動機를 가진다고 보았으며<sup>93)</sup> Rosenberg는 Cohen과 유사한 실험을 하여 Cohen과 反對의 결과 즉 誘因理論과 일치되는 결과를 얻었다.<sup>94)</sup> 이와같은 反對되는 연구결과로 여러가지 混亂이 있었으나 Linder 등의 연구에 의하여 선택의 자유가 많은 상황일수록 不調和效果가 上昇하고 그 反對일 때에는 低下되며 상대적으로 補償效果가 높아진다는 것을 發見하였다.<sup>95)</sup> 따라서 認知不調和를 줄이기 위하여 順應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째, 道德性發達을 통한 行動決定으로서의 順應研究이다.

道德性은 흔히 내면적의지 및 양심의 측면과 集團 및 社會秩序·遵守의 義務와 支配의 측면에서 동시에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道德性發達이란 基本的인 文化的規範을 內面化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內面化라는 현상속에서 行動의側面, 情緒의側面, 判斷側面中 이

92) D. Cartwright and A. Zander (1968), "Pressures to Uniformity in Groups: Introduction, in Cartwright and Zander (eds.), Group Dynamics (N.Y.: Harper & Row; 3rd edition) pp.35 ~ 36.

93) A. Cohen, An Experiment on Small Rewards for Discrepant Compliance and Attitude Change: Explorations in Cognitive Dissonance (New York: Wiley, 1962, pp. 73 ~ 78.

94) M. J. Rosenberg, "When dissonance fall: On eliminatory evaluation apprehension from attitude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5, 1, pp.28 ~ 42.

95) D.E. Linder, J. & Cooper, E.E Jones, " Decision freedom as a determinant of the role of incentive magnitude in attitude change,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7, 6, pp.245 ~ 54.

느낌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理論이 달라지는데 行動的側面을 강조하는 學習理論에서는 道德性을 報償과 處罰에 의한 학습된 回避反應으로 정의하고 이속에는 正直性, 責任, 自制 등의 文化的 規範이 內包된다고 보았다. 또한 情緒的側面을 강조하는 精神分析學의 理論은 內面的 規範을 超自我로 표현한다. 이것은 文化的 行動規範의 위반뒤에 가책으로서 느끼는 自發的・自己批判的 反應이 犯法行動의 충동을 방해하며 따라서 道德性을 發達시킨다는 것이다.<sup>96)</sup> 그리고 標準에 의한 判別能力 및 그 標準을 통한 正當化能力을 강조하는 認知發達理論에서는 道德性의 本質을 個人의 社會秩序나 規則에 대한 존경, 호혜성, 평등성을 포함하는 정의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으며 인체의 道德性은 規則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을 초월하는 規則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規則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하여서만 發達될 수 있다고 했다.<sup>97)</sup>

따라서 이전의 의미의 道德的 判斷이란 사람들과의 社會相互作用속에서 왜 그 規則을 근거로 行動方向 및 行動規定을 決定하는가를 判斷하는 能力이라고 볼 수 있다.

## 2) 順應影響

政策執行에 있어서의 不應(non compliance) 問題에 대하여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학자들의 연구발표가 이루어져 왔다.<sup>98)</sup>

그런데 政策執行過程은 복잡한 參與者와 介入動機들로 구성된다. 關與動機面에서 보면 相互利害關係의 調整이 主宗을 이루나 關與者의 種類와 範圍는 政策決定者, 政策執行機關, 中間媒介集團, 費用負擔集團, 受惠集團, 利益集團의 로비스트 등 多樣하다. 이들이 모두 不應問題를 야기시킬 수 있는 可能性이 있으나 대체로 公式執行者 政策對象集團 그리고 中間媒介集團(intermediaries)으로 大別할 수 있다. 이기에서 公式政策執行者란 政策指示(policy directives)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

96) M.L. Hoffman (1962), "The Role of the Parent in the Child's Moral Religious Education, Vol.57, No.p. 5 ~ 27.

97) J. Piaget,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London: Routledge Kegan Paul, 1932), p.121.

98) Nakamura and Smallwood, op.cit., p.47.

法的權威와 責任을 公共資源등과 함께 부여받은 政府內의 行爲者(actors)<sup>99)</sup> 들을, 中間媒介集團은 公共政策遂行을 委任받은 個人 또는 集團으로 地方政府 또는 私企業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sup>100)</sup>

한편 不應要因을 發生原因面에서 보면 政策自體, 對象集團의 態度 및 能力 그리고 執行體制의 內·外的自然要因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①政策 ②對象集團 ③執行者의 順으로 보기로 한다.

### (1) 政策自體要因

政策執行過程의 不應問題를 깊이있게 연구한 Coombs는 政策對象集團의 政策에 대한 不應發生原因을 ①커뮤니케이션 ②資源 ③政策 ④行動 ⑤權威로 나누어 으며 특히 政策對象集團의 政策自體에 대한 不應을 「政策으로 인한 不應」(policy-based noncompliance)이라 칭하고 이를 다시 目標로 인한 不應(Goal-based noncompliance)과 信念으로 인한 不應(belief-based noncompliance)으로 區分, 政策目標가 社會의 既存價値體系와 배치·갈등하거나 政策對象集團의 價値體系와 상치될 때에는 不應이 發生한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政策對象集團이 政策의 目標自體를 反對하거나 政策目標의 우선순위를 낮게 부여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보았다.<sup>101)</sup> 그리고 信念으로 인한 不應은 對象集團이 政策의 目標自體에는 反對하지 않으나 政策決定者 및 執行者의 假定에 찬성치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sup>102)</sup> 한편 Anderson도 法規에 대한 任意的不服從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어떤 法

99) Ibid. p. 47.

100) H. Kaufman, Administrative Feedback (Washington:Brookings Institution), 1973; J.E. Anderson, Public Policy-making (New York:Praeger 1975), pp. 12 ~ 130.

101) Fred S. Coombs, "The bases of noncompliance with a policy", in John G. Grumm and Stephen L. Washy(eds.), The Analysis of Policy Impact (Lexington:Heath 1981), pp.55 ~ 59; Fred S. Coombs, "The Bases of Noncompliance with a policy, "Policy Studies Journal, Vol. 8, No.6 (Summer,1980), p. 889.

102) Nakamura and Smallwood, op. cit., pp. 34 ~ 39.

規範에 대하여는 拘束力을 덜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였다.<sup>103)</sup> 이와같은 政策目標에 대한 가치상치는 대부분 고전적 不應에서 나타나며 유훈교수는 인종차별지역에서 통학버스 승차거부를 예시로 들고 있다.<sup>104)</sup>

다음으로 政策目標나 기준이 명료하지 못하여 政策對象集團이 정확하게 이행하지 못할 때에도 不應이 發生된다. 政策目標나 政策內容이 不分明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政治的協商過程에서의 目標修正으로 인한 當初目標의 變更, 政策問題의 概念定義에서 야기될 수 있는 情謀의 왜곡, 그리고 技術的 制約性 등을 들 수 있으나<sup>105)</sup> 특히 제 3세계에서의 政治的參與와 競爭 그리고 同意確保를 위한 政治的意味 등이 政策의 重要부분을 모호하게 해주는 경우에 야기될 수 있다.<sup>106)</sup> Anderson은 法規의 예외보호함이 不應을 야기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107)</sup> 그리고 끝으로 政策이 正當한 절차와 權限에 문제가 있어 正當性의 權威가 결여될 때 또한 不應이 發生하며 이것은 不應의 根本的 問題가 되기도 한다.

## (2) 政策對象集團(Target Group) 要因

政策不應의 직접적인 反應主體는 政策對象集團이다. 政策對象集團 또는 政策對象者로 불리우는 이 對象은 어떤 政策으로 인하여 직접영향을 받는 사람과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行態의 變化가 요구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나<sup>108)</sup> 政策의 類型에 따라서는 예컨대 規制政策의 경우 勞使關係의 경우에는 第3者的 立場에서 介入되므로 勞使雙方이 政策對象集團이 되기도 하며 環境汚染規制, 獨占規制, 犯罪

103) Ibid., p.39: Merilee S. Grindle, "Policy content and context in Implementation," in M. S. Grindle (ed.), *Politics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third worl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p. 15 ~ 25.

104) 유훈, op cit, p.333.

105) J.E. Anderson, op.cit., p.105.

106) Coombs는 이를 豫想效果(probable effect)에 대해 讚成하지 않는 경우로 보았으며 차在公교수는 이를 效果에 대한 의실으로 用語化하였다.

107) J.E. Anderson, op. cit., p.104.

108) E.S Quade, *Analysis for public Decisions*, 2nd ed., (New York: Elsevier Science Publishing Co., 1982), p.310.

規制등에서는 政府와 對象集團이 직접 弱者立場에 서게 되며 環境汚染者, 獨寡占企業群, 犯罪者 또는 集團이 직접 규제대상이 되는 政策對象集團이 되는 反面 一般國民大衆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비용부담 또는 수혜집단이 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 政策對象集團은 個人, 組織, 集團, 少數人, 國民全體등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같이 政策對象集團은 規模나 범위 종류가 다양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경계가 不分明하여 누가 政策對象인지를 把握하기 困難한 경우도 많다. T.B.Smith는 政策에 의하여 새로운 상호작용의 패턴에 적용하도록 요구되는 集團을 政策對象集團이라 보고 組織化, 리더쉽, 과거경험을 집행영향요인으로 보았다.<sup>109)</sup> 따라서 政策對象集團으로부터 發生 가능한 不應要因은 政策對象集團의 態度要因과 能力要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政策執行에 있어서 對象集團이 發生시킬 수 있는 態度要因으로는 執行機關에 대한 權威의 正當性인 정부여와 執行機關에 대한 友好 및 敵對의 態度與否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sup>110)</sup>

즉, 政策執行機關의 政策對象集團에 대해 평소 投入과 支持도가 낮거나 폐쇄적이고 노력이 부족할 때 적대적인 태도로 변하게 된다. 또한 政策對象集團이 不應함으로써 얻는 개인적 이익이 클 때<sup>111)</sup> 와 현상을 變更코자 하는 壓力에 대하여 현상을 유지하려는 모든 행위 즉, 變化에 대한 抵抗 등이<sup>112)</sup> 不應을 야기시키게 된다.

둘째, 政策對象集團의 能力要因으로는 知的·物質的·情報등의 問題解決能力을 中心으로 들 수 있으며 Coombs의 資源 Communication<sup>113)</sup> 行動에서 찾아볼수 있는 不應要因들이다. 즉 政策이 그들에게 어떤 行態變化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政策

109) Thomas B. Smith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Policy Sciences, June 1973, pp.202 ~ 204.

110) F.S. Coombs, op. cit., pp. 55 ~ 59.

111) J.E. Anderson, op. cit., p. 105.

112) Gerald Zaltman and Robert Duncan, Strategies for Planned Chang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7), p.63, p. 62 ~ 89.

113) Edward는 後註 139에서 communication의 녕료성, 일관성을 강조하였음.

對象集團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不應이 發生하는 것으로 政策對象集團의 無知程度, 情報의 터득, 전달인 지능력이 부족할 때 發生되며 知的·肉體的 能力이 낮을 때 問題가 된다. 한편 政策對象集團이 政策이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行動規定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으나 要求에 順응하는데 必要한 資源을 動員할 수 있는 能力때문에 不應이 發生하게 된다.

Edward III는 資源으로서 人員, 情報, 權限, 建物과 소모품 등 施設을 두고 있으며<sup>114)</sup> Coombs는 金融財源, 人力, 時間, 에너지, 技術, 精神能力을 들고 있다.<sup>115)</sup>

이중 政策執行過程中에 요청되는 政策對象集團의 能力은 우선 政策을 이해할 수 있는 情報, 技術 그리고 경제적 자원 등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밖에 Coombs이 不應要因으로 본 것은 政策對象集團이 政策目標과 政策手段에 대한 同意에는 문제를 갖지 않으나 政策이 요구하는 行動規定上의 實行行動의 負擔이 있기 때문에 不應이 發生한다고 본 것이다. 이때의 負擔은 經濟的 心理的 負擔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政策變化는 對象集團의 行態變化를 원하는데 蓄性으로 行態變化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sup>116)</sup>

세째, 政策對象集團의 不應을 촉진·유발시키는 環境的 要因은 利益集團, 壓力團體, 議會, 政黨, 우리나라 學生集團行動과 관련된 在野勢力, 言論 등에 의한 영향력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 (3) 公式執行者要因

政策執行過程中에서 公式執行擔當者가 不應하게 되는 상황은 대체로 公式執行者가 政策指示의 내용이 指示意圖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實行할 수 없을 때와 고의적으로 저항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Smith는 政策執行을 擔當하는 組織의 집행에 영향을 미쳐 不應을 야기시킬 수

114) George C. Edwards III, *Implementing Public Policy* (Washington: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1980), pp. 53 ~ 78.

115) F.S. Coombs, *op. cit.*, p. 888.

116) 박호숙, 政策執行에 있어서 順應確保의 戰略開發研究, 서울大 行政大學院 碩士論文, 1984, p. 33.

있는 要因을 組織構造의 安全性과 人員의 資力에서 찾아 이 수준이 낮을 때 執行力의 저하를 초래하여 行政組織의 leadership 및 業務擔當能力이 政策執行에 中 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sup>117)</sup>

한편 Edwards 은 政策이 效果的으로 執行되기 위하여는 執行者가 무엇을 해야 할 지 알고 있어야 하며 能力이 있을뿐 아니라 特定政策에 好惠의 態度를 가져야 한다고 執行者의 性向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Edwards 는 또한 執行擔當組織의 構造로 집행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SOP (표준운영절차)가 시간을 절약케 하고 관료제 반응의 信賴性을 부여하는 반면 變動을 저해하고 신축성 결여로 집행을 어렵게 하며 割據性 또한 政策間의 調整을 困難케 할 뿐 아니라 資源과 權限이 분산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118)</sup>

#### (4) 中間媒介集團要因

中間媒介集團(Intermediary Group)은 關聯政府나 中央政府의 政策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위임 委託機關등을 의미하는 政府執行機關으로서 이들이 政策執行過程에 많이 介入될수록 이들의 態度나 性向 資力등이 政策執行의 不應要因을 크게 左右한다. 이는 執行過程上의 意思決定點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Wildavsky 와 Pressman 은 집행과정의 단순해야 정책집행이 效率性을 確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19)</sup> 여기에서는 文敎部의 教育政策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大學의 中間政策集團의 特性을 보고자 한다.

### 3) 順應決定要因

#### (1) 要因性

政策對象集團이 요구하는 行動規定에 어떤 動機的 要因에 의하여 順應과 不應의 行動을 결정하는가에 대하여 論하는 것은 政策執行過程에서 核心的 位置를 차지할 뿐 아니라 政策執行의 成功과 失敗를 左右하는 要因을 發見하고 그 政策對象集團

117) T.B. Smith, op. cit., pp. 204 ~ 205.

118) G.C. Edwards III, op. cit., pp. 88 ~ 141.

119) J.L. Pressman and A. Wildavsky, op. cit., pp. 143 ~ 149.

에 適合한 政策代案을 探索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研究課題이다.

따라서 規制政策에 대한 順應認知와 行動決定要因은 前述한 바와같이 法律에 대한 經濟學的 接近努力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Chicago Approach로 알려진 이 學問的 努力의 기본아이디어는 效用 極大化, 安定的 選好와 機會費用의 概念으로서 이 概念들에 의해 違法한 行動 내지 犯罪行動을 規制政策 특히 法律의 形態를 띠는 處罰政策과 關聯하여 說明하고 있다. 다시 말하던 犯罪의 決定을 職業的選擇의 實行으로서 이루어진다고 보아 개인은 선택적인 合法的 직업에서 보다 더 큰 利益을 얻게 될 期待利益을 信念으로 犯罪行動에 參與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規制政策에 의한 處罰이 期待潛在利益을 줄일 수 있게 執行될 때 犯罪抑制 및 豫防效果를 갖게 된다고 볼 것이다. 이와 관련 Silberman은 處罰의 위협이 사람마다 다른 抑制價値를 가지는 이유를 說明하기 위하여 犯罪率에 대한 變數를 ①法에 대한 道德性, ②處罰의 確實性, ③동료그룹의 영향으로 보고 이에서 道德性이 犯罪率변이를 가장 잘 說明하고 있고 處罰의 確實성은 가장 적은 決定要因이었음을 發見하고 大部分의 사람이 法에 服從하는 것은 道德性 약속 때문임을 입증하였는데 그러나 犯罪을 줄이려면 응징 및 處罰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sup>120)</sup>

한편 Brown과 Stover는 效果理論이 順應의 여러 분석을 통합한 것으로 주장하고 順應行動을 順應 및 不應의 相對的 B/C함수로 보았다.

또한 Sellin의 極刑이 지니는 犯罪非抑制效果의 연구와 이에 반박하는 Gibbs와 Tittle Study의 처벌의 犯罪抑制效果와 Becker's Model의 犯罪行動決定 B/C理論과 Ehrlich's Model 등이 있다.<sup>121)</sup>

이의 一般的으로 順應 및 服從을 연구한 학자들이 제시해 온 要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O.R. Young은 順應의 기초로서 ①個人的 利益(Self-interest) ②法執行

120) W.A. Luksetich and M.D. White, op. cit., pp. 99 ~ 103.

121) Ibid. p. 104.

強制(enforcement) ③誘因(inducement) ④社會的壓力(Social Pressure) ⑤義務感(Obligation) ⑥習慣·慣例(Practice)를<sup>122)</sup> J. E. Anderson은 順應의 原因으로서 ①權威에 대한 존경 ②政策의 正當性 ③個人的 利害 ④合理性和 妥當性 ⑤制裁 ⑥時間의 경과를 들고 있다.<sup>123)</sup>

그리고 H. R. Rodgers와 Bullock은 ①法の 명료성 ②處罰의 確實性和 程度 ③法에 대한 正當性認識 ④強制執行 ⑤政策에 대한 同意 ⑥強制執行機關의 존재 등을<sup>124)</sup> D. R. Morgan은 환경요인, 강제요인, 태도요인을 들고 個人的 利益을 態度要因으로 본 반면 동료집단압력(Peer Group Pressure)은 강제요인으로 보았다.<sup>125)</sup>

反面에 조직심리사회학자인 A. Etzioni는 強制, 補償, 規範性을<sup>126)</sup> 그리고 오석홍교수는 正當性, 制裁, 補償, 強制力, 個人的親和 등을 순응의 기초로 들고 있다.<sup>127)</sup>

질국 上記의 一般的意味의 政策에 대한 順應基礎要因이 ①個人的 利益性 ②法執行의 強制性 ③政策의 正當性 ④補償 등의 誘因性이 共通의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犯罪規制政策 즉 處罰에 의한 犯罪抑制效果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에서도 ①法에 대한 道德性 ②處罰의 確實性 ③동료그룹의 영향을 들고 있어 다음 4가지 요인을 規制政策에의 順應要因의 기초로 보고자 한다.

즉 이말은 規制政策은 處罰의 內容이 道德的 正當性을 가진 強制手段에 의존함

123) B.R. Young, op. cit., pp. 18 ~ 25, pp. 4 ~ 5.

124) J.E. Anderson, op. cit., pp. 101 ~ 103.

125) Harrel R. Rodgers and Charles S. Bullock III, Coercion to Compliance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76), p. 5.

125) Kenneth J. Meier and David R. Morgan, "Citizen compliance with public: The national maximum speed law",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35 (June 1982), pp. 260 ~ 262.

126) Amitai Etzioni,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ns: On Power, Involvement, and Their Correl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61), pp. 4 ~ 14.

127) 吳錫泓, 組織理論 (서울: 博英社, 1981), pp. 347 ~ 349.

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개인은 利益的으로 反應하므로 規制政策의 成功的 執行은 執行主體와 順應主體間의 相互作用속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一方的 單一方向으로는 確保하기 힘든 요인이 內在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상의 요인을 政策執行에 있어서 Incentive System Concepts 으로 統合體系化하여 보는 경향도 있다.<sup>128)</sup>

### ① 强制性

強制는 外部的 힘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 또는 集團이 順應을 하게 되는 한 요인으로서 外部的 強制作用이 順應과 不應의 判斷過程에서 費用과 便益(Cost and Benefit)에 대한 期待値에 變化를 미치게 될 것이라는 豫告的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前述한 Sellin, Gibb, Tittle 등의 연구가 處罰의 犯罪抑制效果를 다룬 것이라든가 Silberman, Becker, Ehrlich 등의 연구들이 順應의 相對的 B/C 率을 行動決定要因으로 본 것은 모두 處罰이라는 强制性 要因이 어떻게 順應을 確保하는가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에 Anderson은 制裁(Sanction)가 다른 順應要因을 補完해주는 機能을 갖고 있으므로 補完的 手段으로 이해하고 있으나<sup>129)</sup> 이는 非強制的 順應을 증시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規制政策에서는 強制에 依存하는 경우가 많다. 強制的 종류나 手段은 行動規定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 다르나 그 기본전제는 不應의 기대치를 적게 하고 順應에서 오는 기대치를 높임으로서 規制政策의 執行力을 크게 하는데 있으며 이와같은 執行力 確保方法에는 公式的強制外 社會的壓力이 順應誘發로 작용하는데 除名, 忌避 등의 부정직 壓力과 認識, 地位 擴張등의 肯定的 壓力도 한 요인이 된다.<sup>130)</sup>

또한 執行上의 順應을 確保하기 위하여 強力한 規制手段을 中間媒介集團에 사용

128) Barry M. Mitnick and Robert W. Backoff, "The incentive relation in implementation", George C. Edward III (ed.), Public Policy.

129) J.E. Anderson, op. cit., p. 102.

130) O.R. Young, op. cit., p. 22.

하게 되는데 이에는 일정한 限界를 두어야 한다. 너무 強力한 規制手段은 一線執行機關인 仲介集團 (intermediaries)에 사용하게 되면 政策執行을 지연하거나 中斷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處罰(Penalty)과 같은 強制된 順應手段은 短期的 問題解決로 보아야 하며 補助的 手段으로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의 Penalty는 道德的·倫理的 正當性을 가지고 있어야 順應을 確保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나 政策執行은 강제보다는 自發的 同調의 誘導가 중요한 과제이다.

## ② 權威에 대한 信賴: 正當性

一般的으로 權威라는 것은 正當性이 부여된 權力으로 정의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政策이나 制度, 法 등이 대하여 그것에 따르는 것이 正當하다고 同意할 때에 順應하게 된다. 이와같은 의미의 正當性은 價値의<sup>131)</sup> 이해 또는 價値의 形성과<sup>132)</sup> 관련되어 있어 規則이나 政策指示 등이 反應主體의 가치와 조화될 수 있는 可能性이다. 前述한 Anderson의 「權威에 대한 존경」과 O. Young의 「義務感」등은 이 正當性 規範性의 범주에 속한다. 특히 Young은 順應의 期待值가 不應의 期待值와의 相對的比較價値와는 關係없이 義務感이 順應의 기초가 된다고 보고 이 義務감의 規範的 권천을 義務감을 갖게 된 동기인 規範的 價値와 연계시키고 있다.<sup>133)</sup> 또한 Meier와 Morgan도 「政策에의 同意」<sup>134)</sup> 즉 政策의 正當性을 믿는 信念으로 인해 順應이 確保된다고 봄으로서 결국 이들의 관점에 따르면 이 正當性(legitimacy) 正義(Justice) 道德性(Morality), 倫理性(Ethics)의 概念은 規範性의 기초가치로 볼 수 있으며<sup>135)</sup> 이것이 順應主體가 가장 기본적으로 自發的 順應을 決定하게 되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131) Amitai Etzioni, *The Active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 355.

132) Karl Deutsch, *Politics and Govern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0), p. 13.

133) O.R. Young, *op. cit.*, p. 23.

134) K.J. Meier and D.R. Morgan, *op. cit.*, p. 260.

135) 朴在公, 政策執行에 있어서 對象集團의 順應確保에 관한 研究, 명지大 博士學位論文, p. 32.

## ③ 個人的利益 : 利益法

개인적이익성은 가장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順應確保要因이다. 특히 經濟政策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자신에게 개인적인 得이 되면 그 政策의 執行에 順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順應과 不應間에 發生할 비용과 便益을 고려하여 개인이 선택을 내리는 상황을 말한다.<sup>136)</sup> 여기에서 말하는 利益은 단순한 物質的 利益外에 無形의 權利, 명예등을 包含할 뿐 아니라 장래의 기대이익도 包含하는 概念으로 自發的 順應誘發의 強力한 要因이 된다.<sup>137)</sup>

따라서 個人的 利益要素는 個人이나 集團이 行動規定의 요청에 일치되게 順應할 경우 직접적으로는 이익이 發生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래순응의 기대가치를 높여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誘因과는 區別된다.

## 4 誘因法

誘因은 구체적인 금전적 補償과 같은 형태를 띠기도 하나 약속, 장래의 기대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이것은 강제와 마찬가지로 個人的 費用과 便益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個人行動選擇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大前提는 不應의 기대가치에 順應의 기대가치의 相對的 가치에서 順應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作用하게 된다.<sup>138)</sup>

## (2) 順應 決定 B/C 決定 Mechanism

여기에서 말하는 順應 B/C 決定 Mechanism은 順應主體가 前述한 順應基礎 (Base) 要因을 토대로 어떤 기준에 의하여 順應과 不應을 決定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規制政策이 強制性, 正常性, 利益性, 誘因性的의 4個要件의 기초를 두고 이루어지므로 이에 의한 剝奪의 기초요인이 각각 치증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統

136) Charles E. Lindblom, The Policy - Making Process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80), p. 46.

137) O. Young, op. cit., p. 24.

138) O. Young, op. cit., p. 21.

합적으로 일어나서 順應主體는 道德的 정당성을 제외하고 특히 B/C의判斷이 분명한 ①強制的處罰性, ②利益性, ③誘因性 등에 대하여는 人間의 合理者의行動基準에서 볼 때 이에 의한 行動決定이 效用함수와 B/C要因比較 Mechanism에 의해 일어나게 됨을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이 代表的 Model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B/C順應 Mechanism을 들 수 있다.

前述한 소극적 보호규제정책의 연구경향에서 보았듯이 B/C順應決定은 順應主體가 자신에게 돌아올 便益을 基準으로 하여 順應과 反應을 決定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요소는 便益 (Benefit)과 費用 (Cost)이다. 즉 順應費用 (Cc)과 順應便益 (Bc)의 차이가 不應便益 (Bnc)과 不應費用 (Cnc)의 차이보다 클 경우에는 순응하며 적을 경우에는 不應한다는 것으로 Brown과 Stover가 效用理論이 順應分析을 統合할 수 있다고 보고 순응과 불응의 상대적 B/C함수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sup>139)</sup>

$Bc - Cc > Bnc - Cnc$  : 順應

$Bc - Cc < Bnc - Cnc$  : 不應

Bc : Benefits of Compliance

Cc : Costs of Compliance

Bnc : Benefits of noncompliance

Cnc : Costs of noncompliance

O. Young은 이러한 順應主體는 順應選擇에 있어서 자신의 利益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他人의 이익을 고려치 않고 자신의 이익을 기초로 B/C를 계산하여 여기에 割引率을 적용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행동한다고 假定하였다.<sup>140)</sup> 따라서 이와같

139) Charles A. Johnson and John R. Bond, "Coercive and Noncoercive Abortion Deterrence Policies". In John Brigham and Dorr W. Brown (eds.), Policy Implementation: Penalties or Incentives? (Beverly Hills, London: Sage Publications, 1980), pp. 187 ~ 201.

140) O. Young, op. cit., pp.16 ~ 18.

은 B/C 順應 Mechanism 의 특징은 의사결정의 일반 Model 중 합리 Model 에 가장 順應主體를 合理的行動者로 가정했을 뿐 아니라 모든 規範의 평가를 正當性이 確保된 權威를 토대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政策對象集團가운데 利益追求動機가 강한 집단일수록 B/C 順應 體制가 지배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企業活動에서 자주 發見하게 되나 반드시 이에 限定되는 것은 아니고 利益的要素가 같하게 작용할 수 있는 非正常的的經濟活動, 예컨대 犯罪(절도죄 등) 등에서도 강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正常的的活動에 의한 이익추구와 非正常的的活動에 의한 이익추구는 상대적으로 對稱關係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Becker's Model 을 보다 정교하게 개발한 Ehrlich's Model 은 극형이 殺人 등의 犯罪行爲에 抑制效果를 지닌다고 보고 不法活動에서 얻는 이익과 處罰의 리키는 그 活動에 바친 시간의 總量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가정하고 期待效用을 극대화하기 위한 함수로  $Eu = pU(xa) + (1 - p)U(xb)$  를 제시했으며 犯罪豫防을 위한 Becker's Model 에서는 犯罪處罰機關은 犯罪의 社會損失을 감축하기 위하여 社會損失函數를 제시하였다.<sup>141)</sup>

$$L(p, f) = D(o) + (Cp.o) + bfpO$$

이와 Gibbs study 를 발전시킨 Tittle study 는 왜 처벌이 犯罪抑制效果를 갖는가에 대해 理論的說明을 하면서 exchange theory 을 원용, 人間行動에 대한 비용과 보상을 B/C 로 설명한 바 있다.

이상의 견해들에 의한 犯罪의 수요와 공급행위를 각각 B/C 의 概念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

犯罪需要 및 供給決定要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41) D. J. Pyle, op. cit., p. 15.

〈表II - 2〉 順應 B / C 要因

犯罪需要 決定要因		犯罪供給 決定要因	
개	犯罪利益 : Benefit (B) ○ 금전이익 ○ 작업 환경개선	개	犯罪費用 : Cost (C) ○ 형벌집행의 고통 (Suffering) ○ 機會費用 (opportunity cost)
인	○ 平生所得力增加 ○ 작업시간 단축	인	○ 체포 · 구속의 不安 (Risk) ○ 刑罰의 크기와 最高刑
수	○ 심리적 보상 · 他人에 대한 육체적 해악	수	· 生命의 犧牲 · 가족의 불안
준	· 제도나 타인에 대한 복수 · 권위에 대한 도전		
사	○ 정치적 업신		· 주민생활 고통 (환경 및 영업)
회	· 제도개선		· 산업활동지체
수	· 民主化		· 예산낭비
준			· 치안서비스 편중

#### 第 4 節 分析의 틀

以上의 規制政策패러다임에 관한 연구와 政策의 順應, 不應, 失敗要因과의 관계에서 도출할 수 있는 政策對象集團의 規制政策에 대한 行動決定要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順應影響變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政策對象集團이 規制政策에 대하여 順應決定을 행할 때 영향을 미치는 變數는 一般政策에서와 같은 順應要因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대체로 政策自體에 대한

〈表II - 2〉 順應 B / C 要因

犯罪需要 決定要因		犯罪供給 決定要因	
개	犯罪利益 : Benefit (B) ○ 금전이익 ○ 작업 환경개선	개	犯罪費用 : Cost (C) ○ 형벌집행의 고통 (Suffering) ○ 機會費用 (opportunity cost)
인	○ 平生所得力增加 ○ 작업시간 단축	인	○ 체포 · 구속의 不安 (Risk) ○ 刑罰의 크기와 最高刑
수	○ 심리적 보상 · 他人에 대한 육체적 해악	수	· 生命의 犧牲 · 가족의 불안
준	· 제도나 타인에 대한 복수 · 권위에 대한 도전		
사	○ 정치적 업신		· 주민생활 고통 (환경 및 영업)
회	· 제도개선		· 산업활동지체
수	· 民主化		· 예산낭비
준			· 치안서비스 편중

#### 第 4 節 分析의 틀

以上의 規制政策패러다임에 관한 연구와 政策의 順應, 不應, 失敗要因과의 관계에서 도출할 수 있는 政策對象集團의 規制政策에 대한 行動決定要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順應影響變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政策對象集團이 規制政策에 대하여 順應決定을 행할 때 영향을 미치는 變數는 一般政策에서와 같은 順應要因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대체로 政策自體에 대한

目標과의 가치갈등 不信, 不明瞭性, 正當性權威의 문제등과 관련되므로 上記 順應要因의 道德性을 기초로 不應要因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가 됨을 알 수 있다.

2. 政策失敗要因에서의 政策執行의 일관성유지와 正當性의 確保는 一般政策執行上의 成功 및 失敗에서도 중요요인이 되지만 특히 權利, 義務를 부과하고 자유와 行爲를 제한하는 規制政策의 집행상 갈등을 크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順應要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政策對象集團이 不應의 期待費用보다 順應의 期待利益이 크다고 생각을 할 때 順應을 하게 된다. 이 行爲의 특성은 利益性이 기초를 둔 것으로 補償 및 incentive 등의 제공이 이를 촉진한다.

둘째, 처벌에 의한 順應確保는 政策對象集團의 道德性, 利益性등에 의한 自發的 順應의 實現이 不可能할 때 非自發的 順應을 確保하는 것을 말하며 이 行爲의 특성은 處罰性에 기초를 둔 것으로 刑罰, 行政罰, 大學의 懲戒罰 등이 기초수단어 된다.

셋째, 道德性에 의한 順應確保는 政策對象集團의 內面的意志, 良心, 秩序維持에 대한 義務와 책임등에 기초를 둔 政策價値와 文化的規範과의 일치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 行爲의 특성은 道德性에 있으며 正當性, 倫理性등과 더불어 規範性의 범주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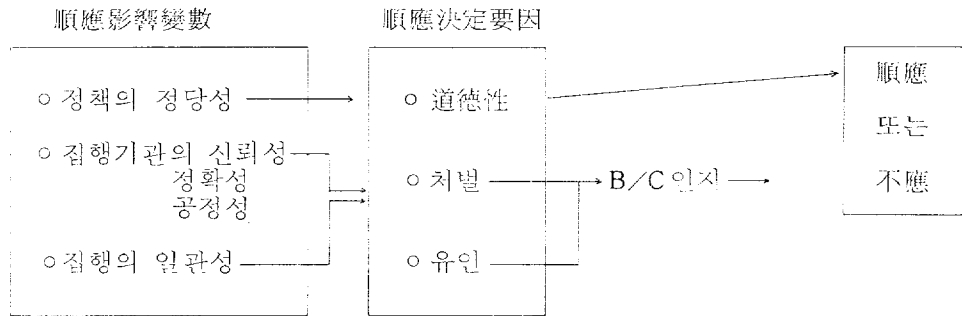
네째, 유인에 의한 順應確保는 政策對象集團이 實際的 補償이나 約束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誘因에 의하여 順應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sup>142)</sup>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補償에 대한 認識變化관으로도 順應을 確保할 수 있는데 이 補償(reward) 이 威脅(threats)과 不分明할 경우가 있다. 즉 補償에 의한 順應인지 不應의 경우 가치박탈에서 오는 심리적 위협감에서 온 順應인지의 區分이 어려우나, 補償이 위약이나 처벌에서 오는 特定行爲要求나 禁止보다는 수용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政策對

142) Lindblom, op. cit., p.47.

象集團에는 順應確保의 重要요인이 된다.

이상의 內容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 表와 같다.

<그림 II-1> <規制政策順應 B/C 분석틀>



本 論文에서는 順應影響變數를 確認하기 위하여 제 3 장에서 학생운동의 역사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즉 해방이후의 학생운동과 그에 대응한 정책결의내용 및 집행과정을 분석하여 집단행동을 일으킨 학생들이 정책에 불응하게 된 이유를 거시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이어서 제 4 장에서는 학생들의 면접에 의하여 순응 Mechanism의 심리적증거를 B/C 분석틀에 의하여 분석할 것이다. 즉 학생들에게 질문하여 그들이 왜 정책에 불응하게 되었는지를 橫斷分析을 통하여 밝힐 것이다.

이상의 規制政策과 失敗의 Paradigm이 제시한 理論的基礎와 分析의 틀과 變數의 설명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內容이 分析될 것이다.

즉, 道德性에 의한 自發的順應과 規制政策執行의 주요 手段인 處罰 (penalty)에 의한 強制的順應 그리고 補償등의 利益性에 의한 誘因的 (incentives) 順應의 行動決定 Mechanism이 後者의 두 요인 즉 Penalty와 incentive를 中心으로 B/C 順應認知에 의해 어떻게 설명되는가 다시 말하면 Penalty와 incentive가 規制政策의 執行過程에서 政策對象集團에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B/C 분석틀에 의하여 설명될 것이다.

### 第3章 規制對象과 集團行動

#### 第1節 集團行動의 概念

集團行動의 概念形成은 近代社會 → 市民社會 → 大衆社會로 바꾸어 놓은 歷史的 意味에서 생겨난 概念이라고 볼 수 있다. 歷史段階 속의 近代社會의 主體는 市民으로 代表되었으며 이와 같은 西歐的 意味의 市民社會를 우리는 解放 以後에 체할 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西歐近代化 습득과정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意味의 市民勢力은 抵抗과 創造의 歷史主役으로 역할을 갖게 되었고 절대군주에 대항하는 反抗 elite(Counter-elite)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때 elite에 의한 독립적 사회가치는 비록 Mass(大衆)에게는 제외되었지만은 近代社會의 全市民에게 향유될 보편가치였으며 이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닌 새로운 질서로 변형시키는 창조 elite power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가치의 보편화는 자유민주주의 본래의 擴散으로 連結되어 단순한 市民社會를 벗어나 多衆에 의한 의미나 행동의 표시유형이 지배하는 大衆社會로 이행되면서 集團行動은 때로는 大衆社會의 病的 現象으로, 때로는 創造的 現象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變動過程에서 볼 때 이 두가지 의미의 社會現狀은 重要한 意味를 지니게 되었으며 行動의 社會的 類型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社會의 變動過程에 重要한 役割을 해온 學生集團을 단순한 安逸追求의 막대한 多數로만 본다면 지 현존 권력 elite에 대항하는 反抗的 意味의 elite나 民衆으로만 볼 수 없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意味에서 우선 集團行動의 概念부터 보기로 한다.

##### 1. 集團概念의 여러 側面

일반적으로 集團은 그룹(group)을 의미하며 複數의 人間이 서로 同類 意識과 공통적인 思考方式을 가지고 또 일정한 規範을 공유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을 지칭한다.<sup>1)</sup>

이와 같은 의미의 집단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는 두 가지의 가능한 接近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즉, 하나는 客觀的인 行動面에서 규정할 수 있는 構造·機能的 側面과 다른 하나는 構成員의 주관적 의식 및 감정에서 규정하는 심리적 측면이 있는데 社會學的으로는 이를 社會關係의 존재로서 어떤 패턴(pattern)이 持續的인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호만스(Homans)와 맥키버(Maciver)의 관심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 構造·機能的 側面(functional theory)

이는 T.Parsons의 구조기능론의 한 지파인 사회학적 이론(sociological theory)의 觀點으로서 集團을 일정한 社會關係 패턴의 집합이라고 보고 그 社會關係를 對面的 關係(face to face relationship)에 한정하면 그것은 제 1차 집단(primary group) 혹은 小集團(small group)을 의미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社會集團의 특성을 발견하려는 接近法이다. 이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全體社會(whole system)에 대한 部分下位社會(sub system)를 의미하며 T.Parsons는 이것을 集合體<sup>2)</sup>(collectivity)라고 하였고, G.Homans는 1차 사회(elementary society)라고 하였다.<sup>3)</sup>

이 下位社會는 2人行爲者의 최소단위까지 분해하여 관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행위자 간에 社會關係가 존재하는 한 社會集團이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시적 혹은 정형적인 사회관계의 집합인 群集[예컨대 폭도(mob) 및 군중(crowds)]과 구별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과정에서 역할분화가 있고 規範이 發展되어 成員의 행동을 규제하게 되며 보다 上位의 集團에서도 制度化되어 公式集團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社會集團(corporation)이며 이의 연합이 결사(asso-

1) 東亞世界大百科辭典, 東亞出版社, 1983, pp.172 ~ 173.

2) 政治學辭典, 博英社, 1980, p.792.

3)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1980. Vol.6.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p.259.

ciation)로 발전되는 것으로 본다.

## 2) 心理的 側面(psychological theory)

集團은 成員을 集團內에 머물게 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의 強度를 誘意性(valence) 혹은 凝集性(cohesiveness)이라고 하며 자기가 속한 集團에 자기를 동일화하는 自我包容(ego involvement)인 것이다. 이때 集團의 行爲者에게 公同의 태도를 형성시키며 이런 태도의 형성은 行爲의 예측에 있어서 媒介變數로서 作用한다는 것이다.

이상 1) 2)에서 집단개념을 규정할 때 중요한 概念變數로 類型化할 수 있는 것은 集團意識과 集團規範임을 알 수 있다. 즉, 集團意識은 相互作用의 反復, 規範的 行動樣式의 共有慣行 및 言語의 文化共有를 의미하므로 이는 결국 成員間의 糾帶意識의 형성을 촉진하고 集團의 입장에서는 凝集力을, 構成員의 입장에서는 일체감을 확보하는 것이 되며 여기에 價値判斷이 결합되면 '集團精神'이 성립된다. 반면 集團規範은 成員間의 行動·態度의 기준으로서 集團의 存續 및 內部相互 작용의 不可缺의 요인이 되어 統一性을 유지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그 집단이 學生集團, 근로자집단 그리고 공식조직내의 小集團이든 이 두 개념이 집단행동문제에의 요체가 됨을 의미한다.

## 2. 集團의 概念構造와 定義

### 1) 集團의 概念(concepts)

group은 어느 정도 크기를 가져야 하며 무슨 특징을 지니느냐에 대하여 순격들이나 특정한 목적을 갖지 않고는 규정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이는 심리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리라 생각한다.

E. Schein은 사람들이 모여 ① 對面的 접촉(face to face relationship)을 통하여 交互作用(interact)하고 ② 相互心理적으로 알며(aware of) ③ 같은 집단의 構成員임을 認知(perceive)하는 조건을 갖추고 ④ 共同

目的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4)</sup>

이를 다시 規模, 集團目的, 相互作用, 集團文化의 觀點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規模(size) 집단(group)을 大集合體의 集團 내지 組織(organization)과 區別하기 위하여 小集團(small gro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用語의 原語가 시사하는 것처럼 ‘構成員의 數’가 변수개념으로 됨을 알 수 있다. 즉 여기서 의미하는 規模(size)는 둘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위로는 제한이 없으나 너무 많지 않은 사람들의 集合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group의 속성인 상호작용과 상호인지(awareness)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對面的 關係에 의해서 限定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集團의 具體的(specific purpose) 集團도 조직과 마찬가지로 목표를 갖는다. 그러나 集團의 경우에 있어서의 目標은 보다 實質的이고 具體的이며 명확하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i) 개인의 능력과 비교하여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의 도전이 용이하고 좌절이 없도록 目標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ii) 目標은 모든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특정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명백성은 集團의 凝集性을 높일 뿐 아니라 目標의 受容 達成도 용이해진다.

(iii) 끝으로 目標은 測定可能하고 實踐可能해야 한다.

따라서 盲目的으로 불분명한 目標下에 모인 것은 집단이 아니다.

③ 相互作用과 認知(interaction) 집단은 지속적인 社會交互作用이 있어야 한다. 일정한 사람이 지금까지 interaction을 가져왔고 장래에도 交互作用이 기대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日常的인 交互作用은 集團成立의 가장 기초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集團成員間에는 서로 안다는(awareness) 느낌(feeling)을 가지고

4) op. cit., E. Shein p.81.

한 集團의 성원이라는 歸屬的 認知作用을 동시에 가져야 집단이 形成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交互作用하고 잘 안다고 생각해도 같은 집단의 성원이라는 지각이 없으면 集團形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i) 小集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정규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나 대규모 조직에서는 이의 社會化 과정이 어렵고,

(ii) 小集團은 구성원들은 상호의 존감을 가지나 집단규모가 커지면 심리적인 의존감이 줄어들게 되고

(iii) 대규모 조직의 성원들은 他成員을 자기가 속한 小集團의 일부로서 생각하지 않으므로 집단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④ 集團特有文化(idioculture) 集團은 특유하게 생성·유지시키는 文化要素를 갖게 되는데 이를 idioculture라 개념지을 수 있다. 이 idioculture는 5가지의 특징을 지니는데

(i) 상호작용 group 구성원에게 알려져야(knowc)하고

(ii) group 상호작용과정에 이용가능해야(usable)하고

(iii) group 目標과 個人욕구를 지지하는 機能的(functional)인 것이어야 하며

(iv) group의 地位階層(status hierarchy)을 지지함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appropriate)

(v) group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 유발되는(triggered) 文化形態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狀況에 잘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상의 특징요인은 group culture의 內容에 영향을 미치는 文化內容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이 5가지 구성요소(components)는 구성원간의 相互作用的 협상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이 협상은 또한 구성원간의 communication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곧 文化는 구성원의 意見一致的 의미

를 갖는 體制(system)에 바탕을 둔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sup>5)</sup>

이상 문화의 특징을 中心으로 집단문화를 규정함으로써 이를 known culture, usable culture, functional culture, appropriate culture, triggered culture라 하기도 한다.

## 2) 集團의 概念構造(conceptual scheme)

理論構成의 기초는 理論的 概念으로서 어떤 개념을 찾아내는가가 문제이나 이 중에서 현상의 category나 종류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비변수개념(non-variable concept)이 있고 또 現象의 局面(dimensions)을 가리키는 變數概念(variable concept)이 있다. 非變數概念(non-variable concept)은 分析의 單位, 基本的 要素(basic elements), 質(quality)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理論 구성에 있어 불가결한 점이 있는 반면 특정문화나 時代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편 변수개념은 양적 의미를 지는 것으로 어느 文化나 어느 시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다.<sup>6)</sup> 따라서 이 論理에 따라 본고에서는 分析單位(unit of analysis)를 quality의 非變數 개념인 '公式集團'을 理論構成이 더 편리한 變數概念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의 양적 의미를 지닌 변수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바꾸어 說明하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公式集團이라는 비변수 개념을 여러 가지 변수개념으로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집단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5) Gary Alan Fine, Small Groups and Culture Creation :  
The idioculture of little league Baseball tea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79, Vol.44 oct, pp.733~745.  
6) 姜信澤, 社會科學研究의 論理, 博英社, '81, pp.173~177.

<表2-5> 集團의 集合의 屬性

集 合 的 屬 性	操 作 的 基 準	
	group	organization
○ 사람의 수	2人 이상~小數	大多數
○ 지위와 활동	2 position a few acts 單純分化 즉 simple division of labor	多數의 position 다양한 活動  복잡분화 즉 complex division of labor
○ 통합 mechanism	informal(비공식적)	formal(공식적)
○ 실적과 산출		業務成就의 關心으로 instrumental 함
○ 공간과 시간		fixed(고정)

<表2-6> 集團의 量과 質

수준 (dimension)	양태	mode	
		formal	informal
數	價	급여(salary)	心理的 만족
權	力	권환(authority)	영 향 력
統 制 規 則		규칙(rules)	습관·윤리
情	報	명령(order)	相互依存 감정
目	標	직무(task)	凝集 및 歸屬
相 互 作 用		규 칙 적	불 규 칙 적
出 發 點		단순한 분업(simple division of labor)	복잡한 분업(complex division of labor)
時 間 · 空 間		非 多 樣 性	多 樣 性
comm channel		계층(hierarchy)	상호작용(interaction)

上記 <表2-5>의 집단의 속성을 확인함으로써 分析單位(analytical units)

를 組織(organization)과 상이한 점에서 發見할 수 있다.

즉 이를 <表2-3>의 여러 既存理論에서 발견한 變數概念과 더불어 概念構造(conceptual scheme) 속에 배열함으로써 集團(group)이 무엇인지에 대한 嚴格한 定義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의 配列을 통한 개념구조화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typology(類型表)를 사용하여 여러 原語들의 結合을 통하여 특정한 概念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表2-3>과 <表2-5>를 집단을 modes(즉 qualities)와 dimension(즉 quantities)으로 나누어 集團을 分解시켜 分析單位를 確定하고 <表2-6>을 토대로 集團의 定義를 내리고자 한다.

### 3) 集團의 定義(definition)

집단 집단이란 歸屬感과 愛情욕구가 내면적으로 전제가 되면서 活動, 相互作用, 感情이 交互的으로 作用하여 이루어진 인간의 특수한 文化形態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 의미의 복수의 인간이 서로 同類 의식과 共通의인 사고방식, 그리고 일정한 규범을 공유하는 사람 등의 모임을 의미한다.

### 3. 行動의 概念과 特性

行動이란 인간과 동물이 내·외적인 자극에 대하여 보이는 反應의 總稱으로 이때 行動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관찰이 가능한 身體的인 行動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고나 認知 過程, 精神的 行動까지도 포함한다. 이에 行動主義(behaviorism)와 新行動主義(new-behaviorism)의 경향이 각각 입장을 달리하나 心理的으로 평가할 때는 認知的 領域(cognitive domain), 情意的 領域(affective domain), 心理連動的 領域(psychomotor domain)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행동인 情意的 行動評價를 말하고 이때 행동은 民主社會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필요한 자질을 나타내는 生活行動의 습관을 의미한다.<sup>7)</sup>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하여는 그 이전단계인 태도, 성격, 그리고 社會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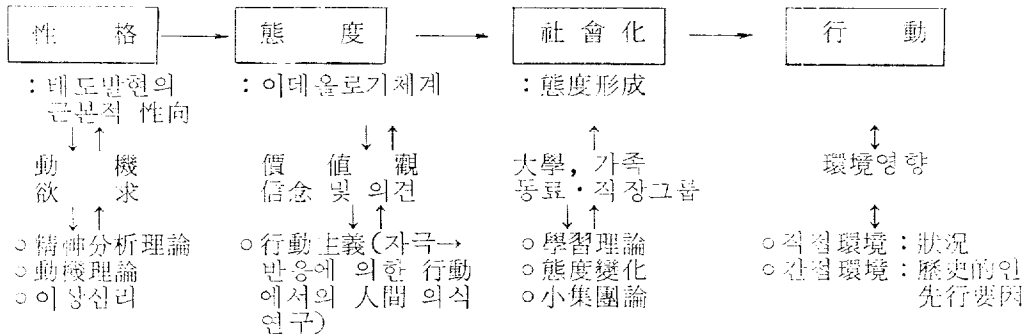
7) 東亞世界大百科辭, 東亞出版社, 1983. Vol. 30, pp. 68 ~ 69.

段階에서 어떤 요인의 作用이 있었는지의 규명도 중요하므로 결국 이 행동연구의 媒介變數가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이를 行動化 연구의 變數類型으로 나누어 概念分析의 틀로서 제시하면 다음 도식과 같이 된다.

즉 이 圖式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行動’은 그 사람의 성격 요인, 태도 요인, 社會化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들의 각각 구체적 관심 요인은 다음 도식의 하단에 있는 이론들에 의해 설명될 과제들이라 할 수 있다.

<表2-7>



出題 : F.I. Greenstein, Personality and Politics, New York : Norton & Co. Inc. 1975, p.27의 그림을 필자가 變形시킨 것임.

展段階를 구조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에서 특히 政治權力的 變動方式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① 平和的 수단에 의한 교체와 ② 物理的 強制的 手段에 의한 것으로 크게 分類할 수 있는데 대체로 전자는 合法的 범주에, 후자는 非合法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데 전자에 의한 변동을 改革(reform)이라고 할 때 후자의 것을 ‘革命’(revolution) 또는 쿠데타(coup d'é-tat)라 할 수 있다. 특히 革命은 被支配 계급이 기존체제를 변혁시키려고 非合法的 方法으로 政治權力을 지배계급으로부터 빼앗는 權力交替의 양식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支配勢力間的 權力 탈취투쟁인 쿠데타

와는 구분된다.<sup>8)</sup>

그러므로 혁명은 民衆의 광범한 支持를 요하는데 반해 쿠데타는 민중의 지지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권력변동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집단행동의 전개 과정은 반드시 어떤 公式(formula)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룹적 행동(group)이 多衆示威(mass)로, 그것이 다시 集團化하여 과격화됨으로써 혁명적 봉기로 연결되는(revolutionary) 것이 보통이나 그 예외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어떤 형태의 집단이 어떤 행동과 手段을 취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집단행동이 ‘그룹활동’인지 ‘데모행동’인지 또는 집단행동 중 단순한 ‘군집행동’인지 ‘혁명’ 내지 ‘테러’인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第 2 節 集團行動의 行態類型

이상에서의 같이 集團 및 행동개념이 규정될 때 이는 그룹적(group)의 의미의 集團 즉 小集團 중심의 集團行動을 일컫는 狹義의 개념정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現實的으로 發生·行動하는 集團行動의 통상적 개념은 이와 같은 소집단이 주체가 되어 일어나는 행동이 관심의 質·量面에서 대중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외 개체와, 개체와 집단, 집단과 집단이 단순한 畵計的 의미로 集合(aggregate)

### 4. 集團行動의 定義와 特性要因

集團行動이란 ‘集團’에 의한 ‘行動’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이를 특성요인별로 추출하여 보면 集團行動의 特性을 이해할 수 있고 이 특성을 다시 하나의 類型(typology)으로 分類하고 行動手段과 결부하여 보면 다음 圖式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8) 이극찬, 政治學, 法文社, 1978. p. 168.

와는 구분된다.<sup>8)</sup>

그러므로 혁명은 民衆의 광범한 支持를 요하는데 반해 쿠데타는 민중의 지지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권력변동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집단행동의 전개 과정은 반드시 어떤 公式(formula)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룹적 행동(group)이 多衆示威(mass)로, 그것이 다시 集團化하여 과격화됨으로써 혁명적 봉기로 연결되는(revolutionary) 것이 보통이나 그 예외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어떤 형태의 집단이 어떤 행동과 手段을 취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집단행동이 ‘그룹활동’인지 ‘데모행동’인지 또는 집단행동 중 단순한 ‘군집행동’인지 ‘혁명’ 내지 ‘테러’인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第 2 節 集團行動의 行態類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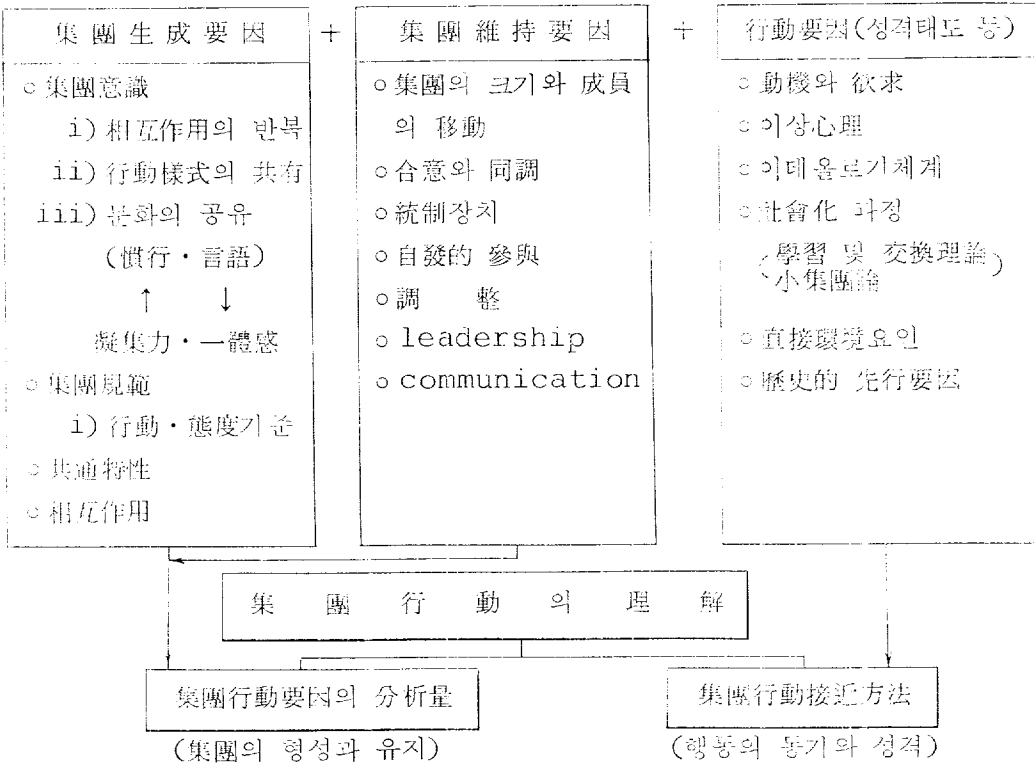
이상에서의 같이 集團 및 행동개념이 규정될 때 이는 그룹적(group)의 의미의 集團 즉 小集團 중심의 集團行動을 일컫는 狹義의 개념정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現實的으로 發生·行動하는 集團行動의 통상적 개념은 이와 같은 소집단이 주체가 되어 일어나는 행동이 관심의 質·量面에서 대중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외 개체와, 개체와 집단, 집단과 집단이 단순한 畵計的 의미로 集合(aggregate)

### 4. 集團行動의 定義와 特性要因

集團行動이란 ‘集團’에 의한 ‘行動’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이를 특성요인별로 추출하여 보면 集團行動의 特性을 이해할 수 있고 이 특성을 다시 하나의 類型(typology)으로 分類하고 行動手段과 결부하여 보면 다음 圖式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8) 이극찬, 政治學, 法文社, 1978. p.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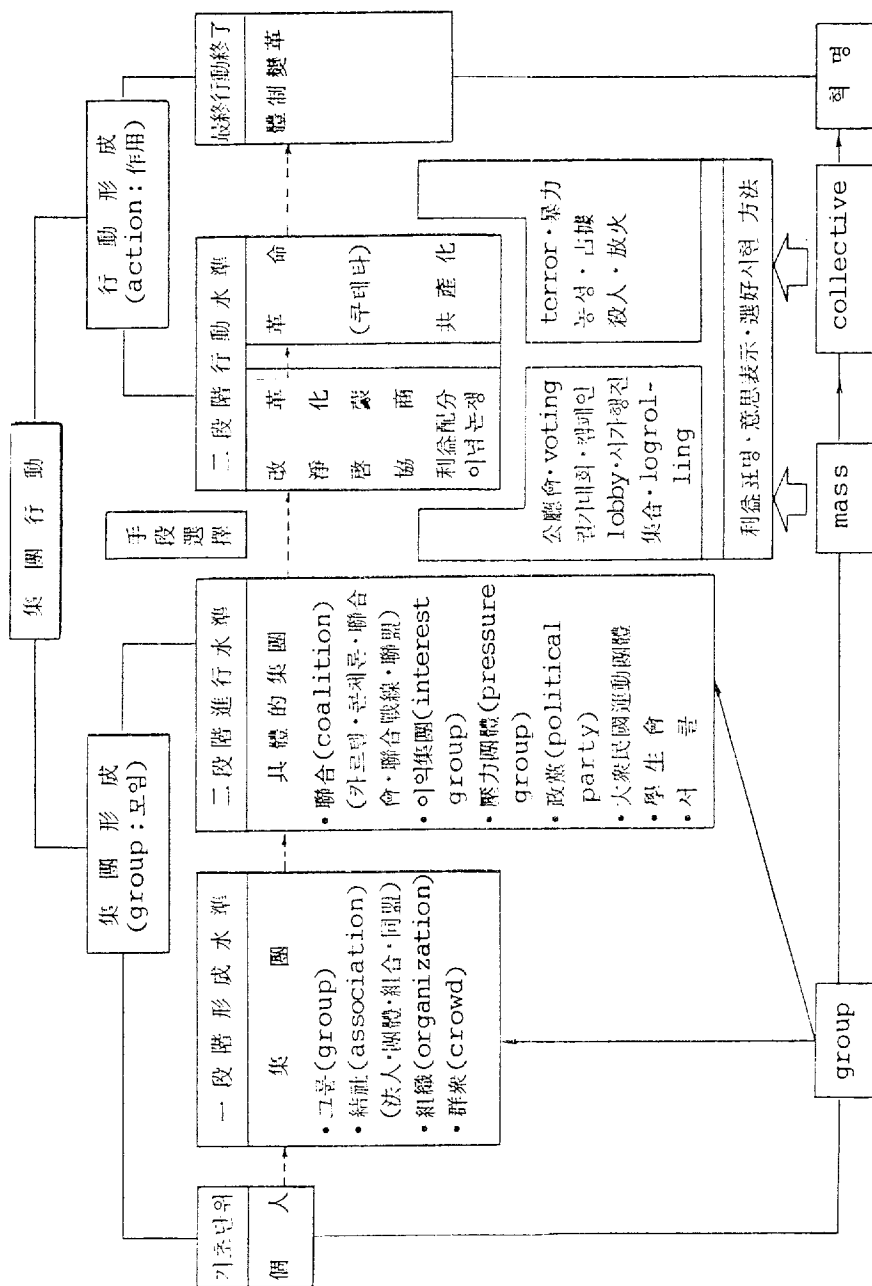
<表 2-8> 集團行動의 行態特性



이와 같이 볼 때 결국 Homans의 활동(構成員의 하는 일), 相互作用(한 구성원의 활동의 因果關係: 빈도, 기간, 순서) 그리고 感情(구성원의 일과 관련된 內的 느낌: 反感, 친밀감, 존경 등)의 行態要素間의 相互依存性은 行動方式 및 人間의 行態와 集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分析方式이며, Truman의 概念圖式에 의한 집단들이 이익경쟁→방해교란→안정·균형→이익추장의 行動樣式 및 한 중요한 分析單位가 되므로 이들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수단의 선택을 고려한 集團行動의 發 내지 群集(crowds)되어 덩어리(lump sum)를 형성하여 일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廣義的 개념으로 보던 小集團 中心의 개념은 그 일부만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는 결국 集團行動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어떤 共通結束要因이 있어 小集團을 형성

集團行動의 概念 分析量



成하며 이에 의해 行動이 주체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의 개체나 집단이 눈덩어리처럼 모여 集團行動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前者的 의미의 것으로는 ‘group’, ‘基’<sup>9)</sup> ‘團’이 있으며 後者的 의미로는 ‘mass’, ‘collectivity’가 이에 해당되는 개념들이다. 이를 형태와 연결하여 크게 3가지로 類型化(typology)하면 ‘group behavior’, ‘mass behavior’, ‘collective behavior’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 범주 내에서 social movement 개념과 흔히 融合化된 데모, 즉 demonstration의 行態類型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때 대체로 그룹(group)은 共有 모임적 의미를 지니며 mass는 大衆 혹은 多衆으로 해석되면서 동시 발생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고 collective는 集合體의 共同·協力的 의미로 說明하기도 하나<sup>10)</sup> 이를 상세히 그 屬性要因에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1. 그룹行態(group behavior)

그룹적 의미의 集團行動行態는 전술한 小集團的 의미의 집단개념이 가장 강한 것으로 구성원의 이익과 目標間에 단순한 目標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지적 집착요인인 어떤 共通特性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심리적 연계는 凝集性(cohesion)을 가지게 된다. 즉 group은 다음의 현저한 기준의 多小로 이루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① 하나 이상의 공통속성을 가지고 ② 현저한 실체로 구성된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③ 그들의 목표와 관심이 상호의존적임을 알고 ④ 상호의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하고 ⑤ 일정기간 지속하고 ⑥ 구성원 상호작용을 규제하고 지도하는 규범을 개발하여 ⑦ 역할로서 각각의 구체적인 활동의부·권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共通特性 때문에 分類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aggregate, class 등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group

9) ‘基’란 化學變化에 있어서 두 物質分子가 마치 한 原子와 같이 行動하는 原子集團을 의미함.

10) 東亞原色世界大百科辭典, 東亞出版社, 1983, pp. 172 ~ 173.

의 차이를 가져오는 척도(criteria)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前述의 集團生成特性과 維持特性의 구분에서 다음 8가지 변수로 설명하기로 한다.<sup>11)</sup>

<表2-10>

크기(size)	構成員의 數로서 構成員의  만족감이 그룹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構成(composition)	構成員의 個人特性(能力, 지식, 자원, 태도, interest, 퍼스널리티, 나이 등)
構造(structure)	公式權威의 상호관련 패턴(communication, leadership 등)
凝集(cohesiveness)	構成員을 group에 결속시키는 이익의 type과 強度
職務와 環境(task environment)	group이 가지고 있는 과제와 환경
相互作用過程(interactional process)	작업 환경과 構成員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양식
文化(culture)	규범, 기준, 역할유형, 전통, 습관
效果性(effectiveness)	직무성취, 生存能力, 만족 등

이상의 그룹기준 변수는 결국 小集團內에서 他人의 영향하에 행동이나 의견을 바꾸는 요인은 무엇이며 構成員 對 構成員, 학생 對 학생, 근로자 對 근로자간에 집단규범을 따르지 않게 하거나 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무엇이 他人을 지배할 power를 주는가 하는 것이 주요 문제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group을 대상으로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size가 커짐에 따라 자원(인지능력, 기록능력, 정보능력, 기술 등)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돈 같은 총자원은 집단의 크기가 변함에 따라 같이 변하는 1차 함수로 증가하나 이용가능한

11)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1980, Vol.6.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pp.266 ~ 271.

자원은 일과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용가능한 자원은 증가된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는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크기가 증가하면 구성원당 平均 이용자원은 감소될 것이므로 총생산은 증가하더라도 그룹구성원당 생산에 의하여 측정된 group 성과는 size가 증가하여도 감소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둘째, 구성원의 高水準能力, 훈련경험이 많은 구성원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效果性이 크고 사람은 내로 기위, 배경, 관심 등이 유사한 사람끼리 상호작용하고 사귀기 좋아하고 유유상종의 상호작용 패턴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셋째, 同質性이 통합된 힘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즉 동동운명, 質量的 유사성, 시간·공간의 인접성, 과거 경험과 습관 등이 그것이며, 넷째, 구성원 간의 연결은 구성원의 목표와 관심이 경쟁적 내적 관계를 가질 때 보다는 협조적일 때 더 응집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외 구성원의 관계가 적극적이고 직무가 명백하고 잘 구조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도자가 잘 규정화된 보상과 징계 권한을 가질 때 상황전개는 호의적이며, 공유가치·기대·규율 등의 규범적 습관을 구성원은 원하며, 이를 개발하여 活動·권리·책임의 役割을 규정하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2)</sup>

## 2. 多衆行態(mass behavior)

多衆現象(mass phenomena)은 mass behavior와 collective behavior로 구분된다.

Brown은 mass 현상의 변수로서 크기(size), 빈도, 집합의 규칙성, 관심분극화의 규칙 및 빈도, 그룹과 개인 간의 일체감의 지속성을 두고 있다. 따라서 mass는 large의 개념이며 mass phenomena는 동시에 많은 사람(large)이 현저한 규칙성 및 사회적으로 제재된 행동을 방해하는 사회사건의 부류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sup>13)</sup>

12) *ibid.* Vol.6. p.267.

13) *ibid.* Vol.10. p.55.

- ① 정보가 대상집단의 구성원에게 거의 동시적으로 제공되며
- ② 제공된 정보는 개인의 현재 상태와 과거, 미래의 것 간에 차이가 기술되어야 하고
- ③ 그 차이는 생명, 건강, 자존같은 중요가치의 극적인 획득 및 상실을 가져옴이 충분해야 하고
- ④ 현재와 미래의 상실은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인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多衆 의미의 형태는 같은 지역 등에서 사람들이 전원 혹은 한꺼번에 다 발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集團行態 (collective behavior) 와 유사하기도 하나 다음의 略部類型 (subtype) 에서 구분된다. 다시 말하면 mass behavior 는 다음 5 가지의 subtype 으로 構成되는 行態라 할 수 있다.

<表 2-11>

세부유형 (subtypes)	내 용
부 감 각 (apathy)	受動性, 감정의 침묵, 무감각한 행동
부 화 뇌 동 (panic)	공포, 위협에 의한 부화뇌동
폭 도 (mob)	파괴, 공격의 격양된 집단 (riots, lynching 등)
일시적 대열광 (craze)	多數人에 의한 가치, 대상을 얻어내거나 숭배하려는 조직된 노력
사회개혁 (social movement)	이는 다중현상의 가장 긍정적이고 잘 조직화 되고 가장 심사숙고한 형태이다. 종교나 정치, 혁명적이거나 개혁적이거나 다른 것을 채택하기 위해 어떤 관습·실행을 버리도록 지역사회 구성을 유도하는 움직임 (revitalization, movement), 조심스런 캠페인, 선한 사회의 구성 등

### 3. 集團行動行態 (collective behavior)

#### (1) 특성과 유형

集團行動의 行態는 다수의 共同化, 協同化, 協力化의 뜻이 강한 類型으로 문제

상황에 나타난 相互作用의 패턴과 發生順序 및 段階(sequence)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 현상은 個體와 集團이 여러 가지 組合(combination)으로 결합할 수 있으며 단순한 反應에서 무질서한 거리의 폭도와 급진적 사회 붕괴의 탈선 형태로 발전되면서 집단으로 여론이나 유행 및 취향 등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pains, booms, crazes, psychic epidemics, revolutionary uprisings와 같은 폭발적 유행징후를 나타내기도 한다.<sup>14)</sup>

collective behavior가 基本的으로 內包하고 있는 脫線行動은 많은 사람에게 改竈이나 苦痛의 해소 등을 표방하면서도 선동과 적극적 관심을 갖도록 하여 행동체함으로써 이때의 相互作用은 공인된 규범 및 행동기준에 비하여 자연발생성(spontaneity)과 변동폭발성(volatility) 그리고 일시성(transitoriness)의 큰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表 2-12>

서부유형 (Subtypes)	내 용
자연발생성 (spontaneity)	극심한 공포(panics)
변동폭발성 (volatility)	벼락일기 (booms)
일시성 (transitory)	일시적 대열광(crazes)
	심리적 유행병 (psychic epidemic)
	혁명적 붕괴 (revolutionary uprisings)

그리고 集團行動(collective action)은 choice (선택의 자유와 다른 행동을 할 대안이 존재할 때), novelty (경험적 선택이 없고 미숙한 상태의 진기함에서 만들어짐), crisis (위기 때 특이한 요구로 부터 발생), attrition (집단적 노력이 약화될 때), compactiveness (협동적 해결방해), conflict (지배력을 강화한 때

14) 上掲書, Vol. 2, pp.556 ~ 557.

15) 上掲書, Vol. 2, p.556

관동성이 도진받는 것)로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본래적인 不安定 (unstable) 이 있는 곳에서 가장 잘 관찰된다.<sup>16)</sup>

이와 같이 볼 때 collective behavior 는 特性要因面에서 持續性和 安定性이 있는 group behavior 와 다르며 社會改革이나 運動 그리고 受動的 행동이 주종을 이루는 mass behavior 와 區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collective behavior 는 그 下位行態가 상호작용관계 중에서도 폭력적 手段과 결부될 가능성을 가장 크게 가진 행동유형으로 볼 수 있다.<sup>17)</sup>

## (2) 형성과정과 유형

이상에서 기술된 6 가지의 문제상황요소는 각각 새로운 선그룹속성으로 이어지거나 이미 확립된 사회형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순간적으로 폭발하거나 사회구조를 영구히 개선하기도 하는데 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여러 환경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과 변형과정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즉 쉽게 말하면 集團化의 과정과 형태를 6 가지 변형과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sup>18)</sup>

- ① 그 첫째의 과정은 수렴 (convergence) 으로서 물리적이거나 형태적으로 핵심있는 반응을 보인다.
- ② 혼란과 타락 (demoralization) : 혼란과 타락은 사기 및 규율이 정당한 목표의 집단력 추구인 반면 分子化된 반응으로 나타나며 목표추구의 배력을 잃게 된다.
- ③ 집단방어 (collective defence) : 개인 反作用의 자발적 협동을 통하여 혼란에 대처하는 견고한 反應을 보인다.
- ④ 양극화 (polarization) : 상대방 행동에 따라 反作用的 反應을 보인다.
- ⑤ 집단전향 (mass conversion) : 집단적으로 변절자적 反應을 보인다.

16) 上掲書, p.557.

17) 集團生成要因의 相互作用 展開過程 參照.

18) op. cit., IESS Vol. 2, p.558.

⑥ 소외적 일탈결정 (crystallization) : 분리적 反應을 보이는 소외적 일탈결정은 불안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일탈경향으로 갭, 분파 그리고 분파단체 내에서 일어나며 이런 그룹은 이들 개인에게 우정과 이해를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집단행동은 각자의 태도와 수렴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물리적 수렴양상은 사건 현장에 모여들거나, 같은 일차에 타기 위해 쇄도하거나, 시장 같은 곳을 동시에 순례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휴가를 취하는 群集(crowds)의 형태를 취하는데 형태적 수렴양상으로는 동일한 목표로 향하는 일치성, 같은 사건의 이해 당사자 등으로 순수한 다수의 개인에 의한 형태적 수렴으로서 crowd보다는 mass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도덕성이 높으면 문제해결의 협동을 유지할 수 있으나 혼란성은 협동성을 더 유인하지 못하고 反應을 각각 개회화시켜 버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확고한 反應은 혼란성과 대한 집단방어의 성공적 발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집단방어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개선적 방어와 흥분에 대처한 표준관례를 개발, 안정장치를 취하고 있다.

집 단 화 형 태	구 체 적 반 응 형 태
수렴 (convergence)	분리적, 형태적 同一장소와 동일대상에 모임
혼란 (demoralization)	개별화된 반응
집단방어 (collective defence)	방어구축적 반응
양극화 (polarization)	반작용적 반응
집단전향 (mass conversion)	변절자적 반응
소외적 일탈결정 (crystallization)	분리 소외적 반응

특히 이상의 집단행동을 crowds 의미의 群集행동으로 볼 때 이에 대하여는 G. Le Bon의 사회병리적 형태관과 R.E Park의 결함 있는 사회의 변동을 조망하는 진초적 기능과 갈등해결 과정에서의 집단결속과 이로 인한 사회안정, 그리고 압박한 변동제어의 안정장치로서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며 이는 다음의 理論의 接近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을 살펴 볼 수 있다.

(3) 집단행동의 이론들

1) 感染理論 (contagion theory)

Le Bon 은 집단행동을 폭도론으로 전개하여 심리전염을 통한 사고마비의 정신상태이며, Freud 는 개개인의 부모, 그리움의 심리가 소수 지도자에게 주어지고 스스로 지도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여 행동하는 것이라 보고, H. Blumer 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입각하여 군중의 사회심리적 과정을 떼지어 빙빙돌기 (milling) → 순환반향 (echo) → 집단적 흥분 → 사회적 전염으로 설명하고 있다.

2) 收斂理論 (conversion theory)

Allport 는 각 개인은 群集行動에서 평소에 잠재해 있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개개인이 이성을 완전히 잃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3) 부가가치 접근이론

Smelser 는 군집행동이 다음 6 가지 요인이 순차적으로 그리고 부가적 누적적으로 충족되어야 일어난다고 보았다.

즉, ① 구조적 조장요인 → ② 구조적 긴장 → ③ 일반화된 신념의 확산 → ④ 조상유인 → ⑤ 행동참여자의 동원 → ⑥ 사회통제장치의 실패요인이다.

4. 群衆行態 (crowd behavior)

(1) 군중행동의 발생과정

集團行動 (collective behavior) 의 한 과정으로서의 群衆행동은 자연 환경 속에서 집단적인 문제해결 활동을 관찰함에 전략적 위치에 있는 연구소재가 되는 행동이다. 어떤 한 장소에 많은 사람이 (large) 모인 것이 '群集' 혹은 '群衆' 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들의 행동은 주로 참석자들의 상대방 행동이나 태도에 따라 일어나는 反作用으로 자기의 관심을 표출하며,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은 고도의 감성적이고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보임으로써 이런 행동이 걸맞은 人命과 재산에 중대한 손상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責任을 논한 가장 잘 알려진 학자로는 Gustave Le Bon 으로서 이는 集團心理, 즉 群衆理論

의 원조이다.

그는 정치적 요소, 증가하는 산업체에서의 갈등, 민족적 개국적 열병이 심리적 군중(crowd)과 집단행동의 한 형태인 다중(mass)을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은유적 논리의 외연에 의하면 이 개념들은 거리의 무질서한 폭동(mob)의 행동뿐 아니라 의회, 言論, 金融市場과 같은 부조조아사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의 불합리한 일들까지 적용되고 군중의 病理的 전염이론(contagion theory)이 알려진 뒤로는 사회·문화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오늘날 군중이론은 신비감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폭동(riots), 혁명적 군중(revolutionary crowds), 흥분된 청중, 소란한 시위, 신경질적 분노, 패싸움, 경쟁력 패주 등의 다양한 현상이 다중의 특수심리적 힘에 기인된다고 보는 대신에 그들의 문화, 사회, 역사적 환경에서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비록 참가자들의 감정이나 사상을 지배하는 이미지나 집단개념이 군집상황 속에서 비칠 수 있고 정교해지고 더욱 강화될 수도 있지만 이런 개념들이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전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가 바로 사람을 그 환경이나 장소에까지 오게 하는 아이디어와 이미지를 포함한 군중행동(crowd)의 생태적 토대(ecological base)와 행동의 動態性으로 설명되는 집단과정(collective process)과 구분되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군집은 조직사회의 단순한 對句가 아니라 실제로 기준그룹이나 사회 내의 분리와 분열에서 발생된다.

## (2) 군중으로서의 집단화 과정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나 보이는 장소에서는 대체로 빨리 많은 구경꾼을 모으게 된다. 이들의 모임은 집단적으로 군중(crowd)을 형성하게 된다.

보통 이들의 상호작용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고 만족하기 위한 순간적 호기심 외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희소하고 높이 평가할 만한 목적을 가진 다중의 모임이라고 생각될 때는 그때 그 참가나 모임은 단순한 反應 이상의 뜻을

갖게 된다. 예컨대, 약장수가 약을 선전할 때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경하다 지나갈 수 있지만 특별한 의도가 있고 자기 판단에 이유있는 것이라 생각되는 집회일 때는 그렇지 않고 중요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망치는 폭도들 속에서도 개인적 목적을 가진 자는 사회통제 기능이 붕괴되는 줄만 알면 더욱 이들의 목적달성을 피하게 되는 현상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좁은 문을 향하는 우연적 이동이나 경쟁적 利益추구를 할 때는 같은 목적을 지닌 다른 사람의 이동에 방해로 주는 군집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 독자적인 행동은 목표지향적인 것으로 계속될 수 있으나 이들의 상호작용이 함께 일어날 때 혼란(chaos)과 무질서(disorder)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혼란(demoralization)의 형태이며 개인의 반응들이 分子化한 채로 남는 이유이다. 집단적으로 이런 반응들은 협동적 행동을 방해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crowd는 4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개인주의자적 군중(individualistic crowd)

이 모델은 군중행동 연구에 적접치 못하다. 첫째, 구경꾼 같은 군집은 그 행동의 발단이 아주 우연적이며 특별한 환경요인에 달려 있으며 둘째, 다른 군집 행동에 폭도, 런치, 약탈자로서 참가한 사람들이 보통 공동목적의식을 고백함으로써 아무리 군중형성 초기일지라도 군중의 심리적 동일은 그것이 재구성되고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발전될 수 없다는 구성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째, 많은 경우 무질서는 물리적 수렴보다는 형태적 수렴의 의미를 가지는 c-crowd로 간주된다. 집단적 행위양상은 한 지역에서의 그룹의 행태가 다른 지역에서 반복됨으로써 생기기 때문이다.

#### 2) 방종적 군중(licentious crowd)

집단적 방종은 효과적인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충동에 의해서 유발되었는데 이들은 자기탐닉의 기회를 찾고 처벌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규범위반을 용인받을 수 있는 상황을 포착함에 지나치게 노련한 계성을 지닌 자들이다. 그리고 많은 모임이 심리적 성향이 일치하는(형무소 내의 동료) 사람을 유인하여 자주

주요 수요를 야기시킨다.

계성이 행위의 원인이 되는 유일한 조건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有罪의 효과적인 중립성 유지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조건이 된다. 즉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규범적 억제가 실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지 및 억제력의 실추는 결정적으로 군집행동이 묵시적으로 용서될 수 있는 행위라는 인상을 낳게 되고 법집행력의 약화를 행동자가 인식할 경우 군집행동을 자행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3) 광란적 요소가 폭발을 일으키는 핵심은 흥분을 일으키는 문자의 성격이 참가자들에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수용할 수 없고 그들이 느끼는 것이 그룹내의 다른 동료에 의해 동일하게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압도당하는 위험을 느낄 때 일어날 수 있다. 광란적 전염병의 진통직형태에 있어서는 사람의 흥분이 내부 갈등을 경현함으로써 육체적 수요로 진행되는데 스테레오 타입적인 특성을 관통기로 한다고 보았다.(panicky crowds).

계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 고도의 억압된 분위기 예컨대 엄격한 감독하의 기숙사, 갱생원 등은 전염병적 광란의 폭발이 용이한 곳이다.

많은 주요 사회 轉倒現象은 심리병리학적 징후를 대량으로 수반하고 있으며, 정권·말작·기타 광란증세는 집단반응을 억압할 때 유발된다.

#### 4) 활동적 군중(acting crowd)

집단명어로서의 군중형태의 특성은 억압받은 국민들이 적적 행동하고 기존 권위 체제에 대항하는 그들 자신의 규범을 위압적으로 주장하도록 할 때 가장 확실한 것이다.

이런 행동이 때때로 권위체제의 도전, 법의 고위적 위반, 위협, 폭력, 파괴와 연관될 때는 있지만 그것이 사회통제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활동적 군중의 형태는 불평의 제도적 표현 통로가 非効率적이거나 전적으로 결여되었을 때 형성된다.

런치폭도들은 흔히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안다. 즉 demo 로 그들의 주장인정

을 강제하고 파괴행동이 사회불평의 관신유발에 성공했다고 알고 있지만 1964년 Rude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편집은 양갈음을 축적해 온 대상선정에 무차별적인 것은 아니고 그들의 위협과 파괴성은 위협성을 내포한 사람에게 한정된다고 보았다.

집단 운동에 의한 직접행동이 그룹행위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은 어떤 懷疑集團의 불평과 흥분을 이용하려는 선동가들(agitator)에 의해 유혹으로 연결된다. 즉 거리의 싸움은 과대방상지도자에 의해 그룹간의 충돌로 또는 정치 蠶優는 전문 분업선동가의 산출로서 비난되는데, 이런 설명은 단순한 편집내용이 여러 전환을 거쳐 지나갈 수 있는 내부 동태과정을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변화는 이질한 심리적 힘에 의존하지 않고 설명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편집의 구성은 문제해결의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혼란과 무질서는 몇몇 사람들이 他人에게 불안과 공포를 깨우치는 기회로 이용한다.

이상과 같이 운동행동을 관찰함으로써 collective behavior 중 그 일부 행동은 crowd 행동으로써 광란적이고 무질서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볼 수 있었고 학생행동의 일부도 crowd의 한 단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crowd는 집단행동의 특수한 형태와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80년 이후의 학생집단 행동은 그룹 형태(group behavior)와 公利集團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일반, 학생, 근로자, 일반시민이 群衆(crowds)으로 參與하여 集團行動(collective behavior)을 이루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때 편집의 모입성격이 주로 방종적, 광란적, 활동적으로 작용하게 될 경우 상황을 과격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群衆(crowd)은 개인들 사이에 최소한의 친화관계가 나타나고 동일한 대상에 주의가 이끌여 공동의 태도가 생긴 집합이고, 多衆(mass)은 넓은 시야에 흩어진 개인들이 mass-comm 등에 의해 유사한 심리적 영향을 가지고 수동적인 群衆반응을 보이는 경우의 집합을 말하며, 公衆(public)은 어떤 사회문제에 대해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간접적인 매체를 통해서 의견을 상호교환하면서 토론하는 집

합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集團行態(collective behavior)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crowd는 관객·칭중의 행동과 폭도(mob)의 행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mob은 다시 aggressive mob, cscape mob, acquisitive mob으로 나눌 수 있고 mass는 fads, fashion crazes, mass hystcria 등의 형태를 취하며, public에는 propaganda, rumor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형태유형에서 보면 이 형태들은 그룹형태(group behavior)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collective behavior는 우연적으로 발생하여 비구조적이며 일시적 현상으로 각 개인 개성을 망각하고 익명성에 의존해서 극단의 행동을 하기 쉬우며, 암시성에 대해 민감하여 풍문에 잘 휩쓸리며 사회적 傳染度가 높은 社會的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범주화(categorize)할 때 collective behavior와 이 속의 crowd, 그리고 mass behavior와는 구분하여 관찰하고 그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중으로서의 집단에 대한 문제는, 때로는 집단 속에 있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자 있을 때에는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그러한 행동에는 미국 남부에서의 린치나 도시의 폭도들과 같은 비도덕적이거나 暴力的 行爲가 포함될 수 있으나, 말을 실수한 연사에 대한 야유나 축구경기후에

술대를 부수어 버리는 것과 같은 좀더 온건한 행위도 또한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더 흥미 있는 일은 집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원하지는 않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것이다. 1895년에 Le Bon은 폭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정서가 집단으로 퍼지기 때문에 동일한 양식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시사하였다. 한 사람이 어떤 것을 하면, 통상적으로는 그것이 대부분의 집단멤버들에게 용인되지 않는 못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또한 그것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이것을 傳染(contagion)이라고 하였는데, 폭동의 행동을 병에 비유한다면, 감기가 학급멤버들에게 번지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Le Bon과 Freud(1983)는 傳染을 각 사람이 내면화시킨 정상적 통제의 붕괴로 설명하였다. 우리의 행위는

대개 우리가 학습하여 온 우리의 도덕심, 가치체제 및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통제된다. 집단 속에 있으면,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잃는다. 우리는 그 집단과 오로지 그 집단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통제체제는 약해지고 완전히 붕괴된다. 더우기 일단 개인의 통제가 약해지게 되면, 그의 원초적이고, 공격적이고, 성적인 충동들이 마음대로 표현하게 되고, 이것은 폭력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낳는다.

더욱 최근에는, Leon Festinger 와 다른 연구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더욱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었다. 그들은 집단속에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분개성화(deindividuation)를 경험하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적 正體가 상실되고 집단의 목표와 행동에 밀접한 동일시로 대치되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분개성화에는 집단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감수성과 아울러 개인적 책임감의 상실이 포함된다. 이것은 반드시 공격적 충동의 방출을 의미하지는 않고 차라리 집단 속으로 자기가 잠겨 버리는 것이다. 어떤 의미로는, 집단 속에 있는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집단의 행동의 일부가 된다고 여긴다. 이러한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털뜨리게, 그리고 그것이 갖는 결과에 대한 우려를 덜하게 만든다.

분개성화의 한 가지 의미는 집단의 멤버들이 確認될 가능성을 더 적게 만들어 그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집단멤버들의 익명성이 더 많을수록, 그들이 개인으로서 確認될 가능성이 더 적을수록, 그들은 자기자신에 대한 正體感を 덜 느끼고 더욱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폭도 속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으로서 부각되지 않는다. 그들은 한데 뭉쳐져 버리고, 어떤 의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갖지 못한다. 이와 반대로, 그들이 確認될 수가 있고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한, 그들은 자신의 개인성에 대한 느낌을 보유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적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군중행동은 집단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행동하였을 경우보다는 處罰받을 가능성이 더 적다는 사실에 의해서 주로 일어날 수 있다. 한 집단 속에 있는 한 사람은 익명적이게 되고 타인들의 숫자만으로도 보호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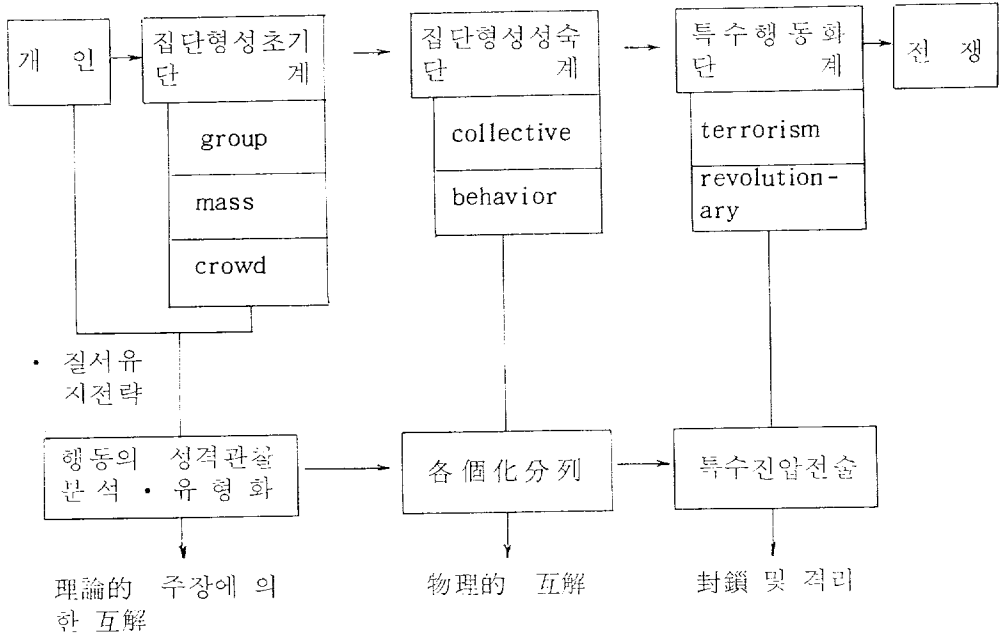
만일 한 사람이 창문에 돌을 던지거나 정치적 반대편의 집회를 공격한다면, 그 사람은 確認되고 체포되기 쉽다. 만일 오백 명의 사람이 돌을 던지거나 정치집단을 공격한다면 그들의 각자는 確認되고 체포될 가능성이 훨씬 더 적게 된다. 따라서, 어떤 개인적인 도덕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 같이 보이는 많은 집단행동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에 행동하기를 두려워하는 가치들과 완전히 일치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집단 속에 있는 사람들이 혼자 있는 개인들보다도 자신의 신념과 더 불일치되게 행동한다는 증거는 없다.

집단의 어떤 행동은 어떤 원인이나 리더에 대한 강한 集團的 信念에 起因된다. 수백 명의 사람이 자살을 저지른 존스타운의 사건은 아마 이 두 요인에 기인되었을 것이다. 존스타운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었고, 카리스마적이고 강력한 리더에 맹종하였다. 몇몇 자살은 위협에 의해 강요되었지만, 많은 자살은 자발적이었다. 이와 비슷하게 테헤란에서 미국대사관을 검거한 이란 학생들은 종교적 및 정치적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로부터 뒷바침을 받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도덕적 규범에 역행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들은 자기들이 높은 도덕성에 행동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19)</sup>

이상의 행동 진행과정을 예방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도식이 가능하다. 즉 행동의 진행단계에 따른 대응이라야 유효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

19) 洪大植, 사회심리학, 박영사, pp.551 ~ 555.

• 집단행동의 전개



5. 社會運動行態 (social movement behavior)

社會運動 (social movement) 은 mass movement 의 subtype 으로서 새로운 질서 창조와 社會制度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目的으로 한 集團的 企劃 (collective attempt) 의 뜻으로 사용되며 때로는 宗教, 政治運動, 女性, 靑少年 運動과 區別하여 쓰여지는 行動範疇의 특수한 형태이다. 즉 그들은 오래 계속되고 mob, masses, crowds 보다는 잘 統攝되어 있고 政治클럽이나 기타 결사단체 (association) 보다는 덜 조직화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사회운동은 公式組織은 가지지 않았지만 조직화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노동운동이 勞組, 政黨, 소비자협의회, 기타 조직들로 구성). 최근 2종의 運動이 역사적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 그 하나가 class movements 와 ethnic group movement 이다. 즉 前者는 中産層과 貴族, 고용주와 근로자, 지주와 농민, 부자와 貧者間의 개선운동이며, 후자는 군주국가의 민족적 소수집단의 政治的 獨立 (유럽), 植民國家의 獨立 (아시아,

아프리카 등), 民族統一運動(19C의 독일, 이태리, 20C의 pan-arabic 운동 등) 異質民族 國家의 市民的·文化的 同質性 회복운동 등이 이어 해당된다.<sup>20)</sup>

이와 같이 사회운동은 비교적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강력한 결속이 성원간에 이루어지며 조직적, 지속적, 장기적 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시초적 의미의 군집행동과 구분되나, 군집행동의 지속형태로 볼 수 있다.

## 6. 示威運動行態(demonstration behavior)

이는 政治的 散對者에게 心理的 壓力를 가하고 自身이 利益을 實現하기 위하여 願이 있다는 것,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支持勢力이 있다는 것 등을 集團的으로 표시하는 행동을 말한다.

특히 政府, 經營者 등에 대해 요구사항을 내세운 勞動者, 學生 등의 示威 中 특히 街頭行進을 데모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 시위는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集團的으로 행하여지는 심리적 위협·협박이며 때로는 激昂, 混亂하여 상대방간에 亂鬪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外國의 경우 시위는 大衆의 意思表示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sup>21)</sup>

Webster의 辭典에서는 同情的, 散對的, 認可的 group feeling에 의한 公衆의 示威라고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sup>22)</sup>

## 7. 集團行態類型 體系

이상과 같이 集團行動의 行態類型을 볼 때 이는 다음과 같이 體系化 할 수 있다. 이 둘의 相互關係와 差異를 비교함으로써 集團行動의 操作的 概念을 구성할 수 있다.(表 2-13).

20) 前掲書, Vol.14. pp. 438 ~ 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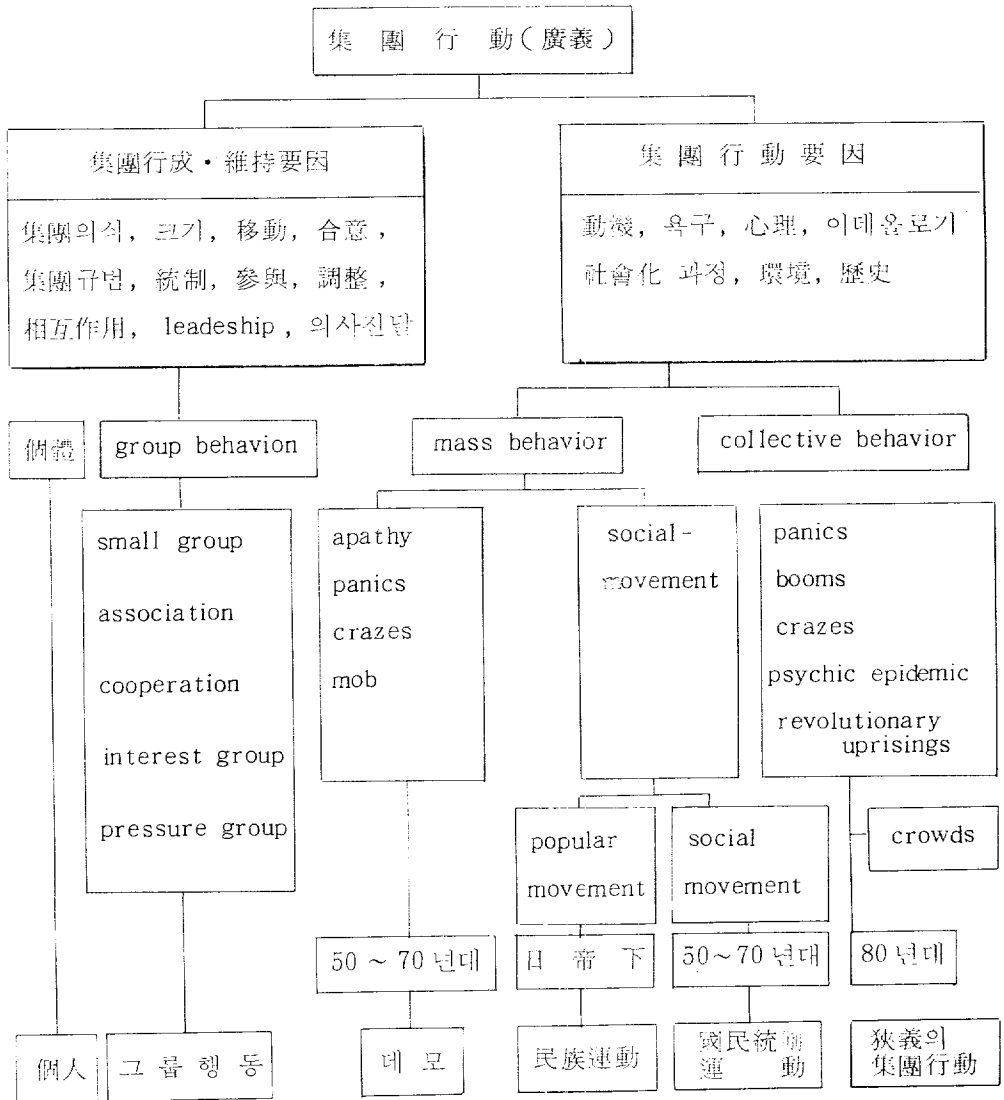
21) 政治學辭典, 博英社, 1980, p.918.

22) Webster's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3ed. Vol.1. Encyclopedia Britanica Inc.

이상의 概念體系, 分類와 行態別 特性에 의하면 group behavior 와 mass behavior 는 集團을 形成하는 方法은 달라도 集團의 行動結束 要因은 trust( 신뢰 )에 있음으로써 集團行動의 가장 중요한 變數가 同質的이라는 共通性을 가졌으므로 mass behavior 와 유사한 點도 있으나 그 行動結束 要因이 各者의 個別 interest

< 表 2-13 >

集團行動의 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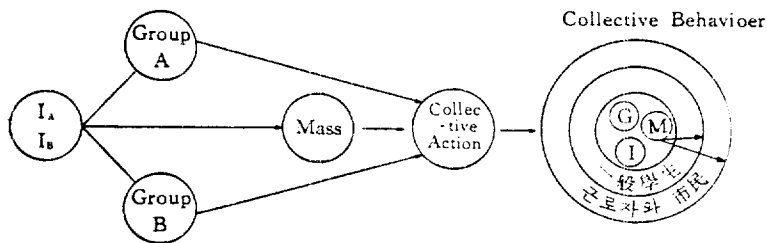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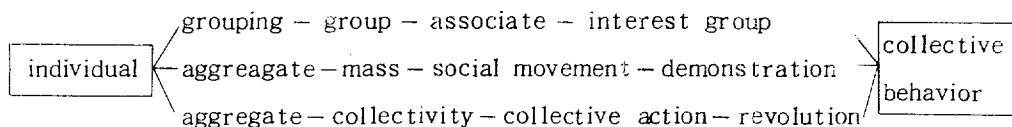


(이익)에 있음으로써 區分되는 행동이며 이의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差異가 있다.(表 2-14).

그러나 行態의 양상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行態의 카테고리가 劃定되어 단일기준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상당한 경우 이들이 複合되어 일어나거나 他行態로 발전되어감으로써 混雜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過程과 圖式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表 2-14 >

	屬 性	結 束 要 因	凝 集 性	利 益 形 態	行 動 作 用	限 界 行 動
group behavior	共 有 性	trust	高 ( H )	그 룹 이 익	壓 力	政 治 的 협 상
mass behavior	同 時 性	trust	中 ( M )	不 特 定 이 익	示 威	시 위 의 과 직 화
collective behavior	協 力 性	interest	低 ( L )	個 別 이 익	鬪 爭	혁 명 적 봉 기



결국 이렇게 볼 때 廣義의 集團行動이란,

主 體
2인 이상이

過 程
그룹형식으로나 集團의 혹은 結合의으로 모여

行 動
共有的 그룹행동을 하거나 同時的 多衆行動 혹은 協 力的 集團行動을 하는 것 을 말한다.

반면에 이 3가지 類型의 行態중 하나 혹은 2이상의 요인이 結合되어 나타나는 형태를 협의적 의미의 集團行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광의적 의미에서 學生集團行動을 다음과 같이 時代別로 나누어 概念을 定義하고 그 用語(terminology)를 한정하고자 한다.

특히 學生들의 集團行動을 通常의 用語로 學生運動으로만 칭하거나 學生테모로만 칭할 경우 實質의 行動이나 行態의 區分이 모호할 뿐 아니라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또 어떠한 行態의 행동이건 學生運動이라는 부류으로써 學生들이 實際 自己의 行動을 오해하거나 合理化하려는 傾向도 있으므로 이를 範疇化(categorize)하여 행동의 評價標準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表 2-15> 集團行動의 유형별 用語(terminology)

年 代	大 分 類	中 分 類	操作的 用語
學生集團 日 帝 下 行 動 50年代~ 70年代 80年代	mass behavior	popular movement <sup>23)</sup>	學生運動
	mass behavior	social movement	學生테모
	group behavior	collective action <sup>24)</sup>	學生集團行動
	collective behavior		

23) popular movement (民衆運動)와 social(mass) movement (大衆運動)는 民衆과 大衆개념을 區分하는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一般적으로 民衆은 우리 사회의 의식적이고 주체적 의미의 긍정적 symbol로서 적극적인 행동의 의미가 강한 反面, 大衆은 無知, 無原理, 無組織한 受動的 군중 의미의 부정적 symbol로 사용하는 傾向이 크다. 그러나 이 개념은 보편적 개념의 규정보다는 時代와 社會的 맥락에서 보아야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24) collective action은 1965. M. Olson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이다.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ory of group,  
Harvard Univ. Press, 1965, pp.7~8.

### 第3節 學生集團 行動의 接近方法

#### 1. 外國의 학생운동에 관한 既存理論들

學生들을 중심으로 한 集團行動 중에서 가장 급세기적인 것은 대학생 운동이라 할 수 있다. S.P(Student Power)운동의 中心國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불란서, 독일, 이태리와 같은 서구사회나 체코, 폴란드와 같은 동구사회는 물론이고 일본, 필리핀, 태국, 월남, 그리고 우리 나라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여러 규모의 學生運動이 60년대 이후 거의 10내지 20년간 빈번히 일어났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시된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학생운동이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이를 비난하기 위한 것들도 있다.

學生騷擾 문제를 비교적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한 것은 Lewis S. Feuer의 oedipus 적 反抗理論과 Zbinmiew Brezesinski & Daniel Bell의 역사적 부정적 이론을 들 수 있다.<sup>25)</sup> 이하에서 손 교수가 분석·비판한 이론을 보면 oedipus 적 反抗理論은 학생소요를 학생들이 아버지와 구세대의 권위에 대한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oedipus 적 적개심이 표현이라고 指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운동에서 발견될 수 있는 폭력적 소요는 욕구가 혼합적으로 表現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운동에서 내거는 理念이나 슬로건은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고 소요의 진정한 이유는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權威에 대한 맹목적인 反抗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등에 기인되는 것이라고 이 이론은 보고 있다.

그러나 精神分析學的 이론은 크게 두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이러한 oedipus 적 反抗은 모든 청소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급세기 특유의 대학생 소요를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는 그 具體性和 歷史性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둘째로는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학생들의 家庭成分을 검토해 볼 때 그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특히 oedipus complex 를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25) 全炳梓, 日本學生運動의 變化 과정에 관한 연구, p.130.

라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런 학생들은 적어도 미국의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원만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이론이 學生運動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되지는 못하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개인적인 불만을 갖고 운동에 참가하는 것도 사실인 이상 전혀 근거 없는 이론으로 배격할 수 만은 없다.<sup>26)</sup>

역사적 부적절 이론에서는 學生騷擾의 원인을 심리학적으로 分析하는 대신에 사회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즉 이는 학생 자신들의 전공의 역사적 부적절성에 대한 반항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사회의 급격한 변동이 학생들의 욕구와 가치를 돌보지 않은 채 무작정 달리고 있는데 대한 반발이 학생소요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소위 원한과 무기력에서 발생하는 浪漫主義의 마지막 현뎅거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학생소요는 진정한 혁명이 아니라 오히려 反革命的인 성격을 띤 것이라는 것이다. 즉 일본주의와 낭만주의의 정신이 상한 학생들의 눈에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강조되는 합리주의, 기계주의 등은 가치와 또 발전위주의 가치가 자기들의 價値觀과는 도쿠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도 학생소요의 動機를 보수적으로 규정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 타당성이 의심스럽다.<sup>27)</sup>

프랙스는 1960년대 이후의 學生運動이 중산층 가정에서 강조한 평등, 정의, 독립심, 관용 등의 가치였는데 이는 당시의 미국 정부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그리고 미국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적 현실과 큰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성의 마찰이 學生運動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경우이고 기타 사회에서는 집단행동 學生들이 오히려 소외된 계층 출신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보편적 타당성은 매우 의심스럽다.

전술한 集團概念의 여러 측면에서 보았듯이 집단의 개념을 sociological theory 와 psychological theory 에서 모아 학생들의 운동동기를 분석한 칼만하임은 學生

26) 前掲書, p.130.

27) Ibid. p.131.

運動을 청년들의 심리적인 요인과 特殊社會의 사회적 요인의 이원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이 심리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의 어느 한쪽만으로 설명하는 이론보다는 훨씬 더 說得力이 있다. 學生運動 現象은 청년들의 발달심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요인과 각 사회의 역사적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요인간의 상호작용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옛날부터도 청소년들의 기성제도에 대한 반발의식은 있었지만 당시의 극도로 保守的인 지배적 가치관이라던지 單純社會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사회화적 효과 등으로 이러한 청소년들의 반발의식이 집단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現代社會에 접어들면서부터 급격한 대학생 층의 형성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교육의 효과, 그리고 다양한 가치가 자유롭게 피력될 수 있는 분위기 등이 합해서 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8)</sup>

## 2.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一般的 性格과 動機

진술한 外國학생운동의 一般的 原因이 여러 이론에서 지적되었듯이 그것은 단일 요소라기보다는 여러 요인의 결합일 수 있으며 또 나라에 따라 다르나.

學生運動이 학구생활에 범위를 벗어나 집단적인 行動으로 政治·經濟·社會·文化의 각 방면에 원심적으로 적극 參與하는 행동으로서 學業(수업 및 연구) 이외의 모든 學生活動의 총칭이라고 볼 때 이는 학교내의 教育的·學問的 活動을 제외한 社會的 運動을 의미하는 것으로 一般 청년운동과 구분된다.<sup>29)</sup>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항상 理想世界를 지향하는 의욕과 투지가 강하므로 現實에 대한 존중이나 妥協보다는 그것을 改革(reform)하려 하며 젊은이로서의 正義感은 도덕을 위한 구실을 찾는 것보다는 계기만 주어지면 行動化(actionism)하는 데 그 특질이 있다.

그러므로 이의 특징은 진보적인 正義觀의 실현을 위하여 대체로 現秩序에 반항하는 수단으로 行動化로 나타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가고 社會運動, 政治運動

28) ibid p.132.

29) 現代韓國史

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行動化가 順 energy 와 한 때와 逆 energy 와 함에 따라 民族, 國家의 發展에 중요한 觸媒作用을 해 왔는데 歷史의 轉換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첫째 學生운동은 反利己主義的인 집 때문에 一般 青年運動과는 달리 현실적 충동으로 일어나긴 하나 現實的 利害關係를 초월하여 오히려 이를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이상의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sup>30)</sup> 그러나 이런 상징도 1900년대 이후 1960년대 초까지는 이런 정신이나 姿勢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도리어 반이기주의가 위장된 反利己主義로 화하여 利己的 要因이 結合形態만 새롭게 갖춘 脚色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이 운동의 理想主義의 標榜 精神에 있다. 理想主義的 정신의 표방은 現實을 인내케하고 行動을 자발적이고 능동화하여 집단의 結集力 즉 凝集力(cohesion)을 크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으로 學生運動은 그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는 一般輿論(public opinion)을 촉발(evoke)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 국가나 사회가 後進水準에 있을 때 輿論을 誘導할 수 있는 매스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낮은 국민의식 때문에 이는 有効한 mechanism이 되지 못하여 오히려 순수성과 진실성이 있는 學生運動이 흡입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5·4運動, 獨逸의 學生結社運動, 3·1운동의 學生參與 그리고 光州學生運動 등은 그 대표적 예가 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學生運動 내지 集團行動을 동기면에서 보면, 즉 學生運動의 內的 動因으로 心理學者들은 青年期의 自我發見에 의한 자기 생각과 비판력 形成 그리고 自我를 새롭게 가꾸어 가려는 충동에서 찾는다. 즉 이와 같은 自我發見+理想主義的 충동이 學生運動의 契機(moment)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학생들의 반항정신에 의해 加速化된다. 學生들의 생리적·신체적 변화와 知識世界에로의 새로운 知的能力的 變化 및 무비판적 수용이 아닌 선별적 수용태도는 항상 현실문제를 반항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光州學生 운동과 反託運動 등은 그 대표적 예이며 위의 自我發見+이상주의적 충동+反抗的 성격 變化의 結合은 學生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의식구조를 이루게 하는 기준이 되며 이 새로운 社會

30) 上揚書

에 대한 의식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學生運動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社會的·文化的 요인이라 볼 수 있는 外的 動因으로는 東洋史나 西洋史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다르나 공통적인 것으로 後進性이 있는 나라일수록 학생운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의 후진성에는 非民主的인 專制性, 産業化가 이루어진 나라일지라도 封建的 特權階級이 支配하고 있는 封建的 과두성 그리고 통일되지 못한 나라와 帝國主義에 의한 植民地를 총칭하는 것으로 학생운동은 이 모두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그 대표적 예가 19C 獨逸의 學生自由와 통일운동, 20C 中國과 日帝下의 한국 학생독립운동, 그리고 日本學生들의 사회운동이 이에 해당되며 이 運動은 때때로 과격할 때도 있기 때문에 學生運動에서 혁명적인 요소를 찾을 수도 있다. 또한 이 운동은 반드시 未來비전을 제시하고 자극하는 리더가 있다는 점과 이 운동이 歷史的 急變期가 있을 때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現實에 적응하는 作用을 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3. 學生運動 및 集團行動의 具體的 接近

學生集團行動의 性格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廣義의 集團行動을 前衛한 類型과 같이 學生運動의 측면, 學生示威(데모)의 측면, 그리고 협의의 集團行動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研究方向과 資料選定의 기준으로 하기로 하고 다음 <表 2-16>의 기준에 따라 分析하기로 한다.

즉 첫째, 歷史的 接近(historical approach)에 의하여 1기에서부터 6기까지의 區分, 과거의 學生集團行動과 現在의 行동을 分析·記述하고 未來의 추세전망에 언급하기로 하며, 둘째 이 歷史的 接近을 토대로 1기에서부터 4기까지는 學生運動의 展開過程, 爭點 등의 특징을 중심으로 그 性格을 간단히 규명하고, 1980년 이후 集團行動 5기에서는 그 性格을 多角的(multi-aspects), 多變因的(multi-variables)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즉 우리나라의 학생집단행동은 외국의 학생운동과는 다른 특징과 양상을 목격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기준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학생운동이나 청년운동은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비 collective 형태의 행동유형으로 발전된, 특히 80년대 이후의 학생행동 형태를 설명하기 위하여는 犯罪經濟學的 接近에 의한 설명이 요청되며, 이속에 政治利

< 表 2-16 > 集團行動의 類型別 接近

1. 歷史的 接近		接近類型	80年 이후 接近
1 期 (1910 ~ 1945)	日帝植民下	學生運動 (movement)	1. 歷史的 接近 ① 日帝下的 學生運動
2 期 (1948 ~ 1961)	1,2 共和國	學生 데 모 (demonstration)	② 1,2 共和國下的 學生 데 모
3 期 (1963 ~ 1972)	3 共和國		③ 3 共和國下的 學生 데 모
4 期 (1972 ~ 1979)	4 共和國		④ 4 共和國下的 學生 데 모 ⑤ 5 共和國 學生集團行動
5 期 (1980 ~ )	5 共和國	集團行動 (collective action)	2. 利益集團的 接近 3. 社會心理的 接近 4. 이데올로기적 接近
6 期 (1990 ~ )			5. 犯罪經濟的 接近 6. 엘리트 接近

益, 심리보상, 이데올로기, elite의 利益觀이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봄으로써 이의 실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 외에 歷史的 接近이 별도의 接近으로 이 문제를 푸는데 하나의 시각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實體的 接近을 利益集團的(interest group approach), 社會心理的 接近(socio-psychological approach), 이데올로기적 接近(ideological approach), 犯罪經濟的 接近(criminal economic approach), 엘리트(elitism approach) 순으로 차례로 보기로 한다.

(1) 歷史的 接近(historical approach)

學生運動은 歷史的 轉換期에 歷史的 必然性이 評價받을 만한 계기가 마련될 때 活性化·促進된다고 볼 때 우리 나라의 學生運動은 日帝植民下의 1910년 이후 1945년 해방까지의 第1期와 해방 이후 1960년까지의 1,2 共和國下的 第2期, 1961.



된 심은 큰 관심을 갖게 한다.

1926. 6.10 萬歲運動 이후 1929.11.3의 光州學生運動은 學生운동사상 가장 급진적 특성을 이룬 특징적 사건이다. 日帝植民下의 조국을 학생 스스로가 구해야겠다는 순수한 조국애가 동기가 되어 전국 학생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이 당시의 구호인 ‘弱小民族解放’ ‘帝國主義托倒’ ‘被壓迫民族解放’ 등은 이를 잘 상징하고 있으나 日帝 總督府 당국자는 이 운동을 社會·共產 계열의 社會主義運動으로 취급하여 다루었다.

결국 1919년 東京留學生 2·8 獨立宣言運動의 3·1 運動에의 前衛的 역할, 1920년대의 문화啓蒙運動의 주도, 1926년의 6·10 만세운동, 1929 光州學生運動과 全國的 反帝運動을 주도한 것은 학생들이었으며 이 중에서 종래 3·1운동 이후 6·10 만세운동까지 주요 투쟁수단이 되어온 罷休의 비조직적 성격을 벗어나 계략적·조직적 학생운동의 효시가 된 것은 1926년의 6·10 만세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일제하에서의 학생운동은 그 동기면에서 보아 대내적으로 근대화를 위한 社會運動, 文化運動, 政治運動 이었고, 對外的으로는 外國의 침략에 대한 弱少民族의 民族獨立運動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民族的 근원적 동인은 일찍이 마을 단위의 ‘洞神’이나 ‘部落祭’ 같은 공동체 의식 행사와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을 지닌 자치조직으로 ‘契’ 또는 ‘두레’라는 共同 協同體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부상조의 정신이 ‘鄉約’으로 發展, 共同體의 식형성에 큰 몫을 다 했으며 이 의식이 특히 民衆社會에서 自然發生的으로 形成되었다는 점이 1900년 近代化 초기에 民族運動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보면 우리 나라 國民 및 學生運動은 유럽의 獨逸, 이태리와 또 다르며, 아시아의 中國·日本과도 차이를 앞 표에서 알 수 있다.

## 2) 解放 이후 1,2 共和國下의 學生대모(1945~1961) : 제 2기

自由黨(1948.8.15~1960.3.26)

民主黨(1960.8.19~1961.5.15)

自由黨 政權下의 政治·行政體系의 환경전 상황은 민주주의의 國家形成의 진통적 과정에 특징이 있다. 즉 封建君主制로부터 美軍政을 거쳐 獨立國家로서 최초의 民

< 表 2-17 > 20C 初 學生運動의 주변국과의 性格比較

		주요사건	성격
독일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世 이래 분산된 諸侯國과 38 개로 구성된 독일연방 조직+전체정치제도에 대한 學生結社 운동 (burschen schaft)</li> <li>○ 1904 칠새운동: 인간자연적 자세회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族統一達成</li> <li>○ 民族國家形成</li> </ul>
중국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강의 반식민국가의 民族自決主義: 5.4 운동</li> <li>○ 중국전통문화탈피, 유교배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族自決운동</li> <li>○ 文化창조운동</li> </ul>
일본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주의 發達에 따른 문제치유의 社會운동 (1次大戰後 日本 學生운동으로: 1918.9. 東京大學의 新人會, 1919년의 早稻田大의 民人同盟會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운동</li> <li>○ 反封建的 운동</li> </ul>
한국	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族獨立爭取</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族運動</li> </ul>
日帝下의 특징		.....	民族性

君主憲政體의 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新生國家形成의 초기에 6.25 라는 전쟁을 맞게 되었고 그 이후 집권자의 1人獨裁體制 영속화를 위한 失政등으로 政治·經濟·社會의 상황은 국가형성은 물론 국민형성(nation building)의 기초를 구축하지 못하고 메스컴, 야당, 그리고 學生의 비판을 받으면서 政權의 국민적 支持를 상실하게 되었다. 즉 이의 구체적 원인인 ① 국민의 支持力 상실 ② 사회질서의 혼란 ③ 각종 이익집단의 어용화 ④ 사법부 경시경향 ⑤ 경제질서의 혼란 심화<sup>32)</sup> ⑥ 3·15 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되어 1960.4.19 學生들의 叛亂과 獨한 투쟁으로 1960.4.26 일 대통령의 사임으로 의거혁명의 章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6.25의 改憲과 8.19 일의 政府構成으로 민주당화의 제 2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이 제 2

32) 安海均, 한국의 政治와 行政分析, 서울大 行政大學院, p.95.

공화국하의 환경 투입 요인으로 비록 學生集團이 비결사적(non-associational) 단체로 4·19혁명의 主體勞力이 되었으나 혁명의 成功 후 즉시 학원으로 復歸함으로써 정치세력으로 집단화하지는 않았으나 새시대의 주체라는 신념과 자신감 때문에 계속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것이 每事를 集團示威化로 관철하려는 信念體系를 갖게 한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의 方法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產業勞組의 시위 및 파업으로 연결되었으며 이와 다음과 같은 集團示威가 당시의 학생데모행동의 대체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2-18 > 제 1,2 공화국하의 학생데모 양상과 성격

	主 要 事 件	性 格
第 1 共和國 (1948.8.15 ~ 1960.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5.8월 : 敵性休職監視委 추출 시청앞 시위 및 내세지</li> <li>○ 54.6월 : 過重學費철폐 탁성여고 2년, 同盟休學</li> <li>○ 54.12. : 유석재단(서울女子의과大學 부패규탄, 성명發表 및 盟休</li> <li>○ 55. 5. : 光州—高교사진 強化요구, 盟休</li> <li>○ 59.12. : 在日교포 送北反對 全國大學生 단식부쟁 同志會</li> </ul>	民族的 愛國運動  教育改革運動  民族的 愛族운동
第 2 共和國 (1960.8.19 ~ 1961.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4.19. : 자유당정권 퇴진</li> <li>○ 60.10. : 財團이사장 퇴진요구→ (서울文理師大), 폭력난동</li> <li>○ 60.11. : 구속학생석방요구→ (延大生), 돌부처</li> <li>○ 60. 8. : 등록금 不當項目 폐지요구 (서울大生) 登錄拒否</li> <li>○ 60. : 서울대, 부산 의 총장·교수퇴진</li> <li>○ 61. 4. : 광복제기진정 : (저신교교)</li> </ul>	學園爭化 및 社會문제 改 善운동
40 ~ 50 년대의 특	.....	政治性+民族性 +社會性

이상의 194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까지의 학생데모모양상에서 보던 역사라는 사실은 반드시 일정한 법칙을 따라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

를 예측하는 척도로서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 역사적 의미는 특히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의 현상과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유사하게 전개되어 그 反復性을 관찰할 수 있고 20년이란 세월이 지난 時差(time lag)와 週期(cycle)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1950년대 초의 6·25전쟁과 50년대 후반의 부정부패, 타락, 폭력으로 얼룩진 自由黨末期는 우리 나라 憲政史의 치욕으로 기록할 수 있다. 自由黨末期의 政治는 權威主義的 官僚制로서 특징지을 수 있다면 이는 下意가 上達되지 않는 정보의 흐름(feed back)이 관료에 의해 선별되고 동시에 왜곡된 것을 말한다.

1952년의 발췌개혁, 1954년의 사사오입개혁, 1960년의 3·15 부정선거의 조작 수단 동원과 집권연장을 위한 '위로 부터의 폭력'인 강패폭력집단의 동원으로 자유당 붕괴의 최후를 장식했으며 4·19는 민족·민중의 승리자적 역할을 한 사건이었다.

4·19 이후 약 4개월의 과도정부와 9개월의 민주당 정권은 下意가 上達되는 정보의 흐름을 지닌 民主型政治制度를 가졌으나 아래로부터의 반응과 지지, 요구와 기대가 폭발했고 3·15 부정선거 주동 반역자 처리문제, 혁신계의 등장과 中立化 통일론, 일부 학생의 상급한 남북회담 주장, 군부내의 整軍運動 기타 社會問題를 대모로서 해결하려고 드는 불안한 政情 으로 '밑으로부터의 폭력'이 난무, 이에 대한 강한 정치지도 영도력의 결여가 가속되어 無政府 상태로 빠지고 말았으니 憲政의 가장 큰 위기였다고 볼 수 있다.<sup>33)</sup>

이상에서와 같이 50년대 말 자유당의 독재권위형 타락과 60년대 초 민주당의 가분수 민주형이 憲政의 不安을 초래케 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진정한 憲政史의 안정장치는 속된 制度를 지속적으로 가꾸는 일이며, 그 다음에는 모든 사회분계층 점진적으로 접근 해결해 나가는 國民 각자의 자세를 수정하고 정형화하는 일이다. 서구 민주주의는 약 200년의 오랜 세월을 두고 市民的 자유→정치적 참여→경제적 권리향유로 제도화되면서 發展되어 왔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현실을 급진적으로

33) 오병호, 한국인, 85.8. p.51.

개선하려는 생각은 위험한 일이다. 동물의 성숙이 인간보다 빠르고 畜의 크기는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변화를 볼 수는 있어도 人間의 생각·태도의 성숙이나 이의 습—에 의한 制度의 성숙은 오랜 시일을 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4·19의 데모가 변혁을 주는 계기로서는 그 의미가 있지만 政府가 붕괴되고 社會가 혼란케 된 것은 그 의미를 半滅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며 데모가 문제 해결의 기본도구가 되어서는 眞正한 民主主義의 發展이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바로 1961년의 5·16 군사혁명으로 다시 문제해결 주체가 학생에서 군으로 바뀌었을 뿐 그 방법이나 성격은 유사한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3) 第3共和國下의 學生데모(63.12.17 ~ 72.12.28) : 제 3 기

약 9개월간 한국은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內閣責任制 중심의 議會民主主義 체제를 구축하려 했으나 집권당의 파벌로 인한 내부 갈등으로 學生들의 데모와 言論의 비판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은 물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市民的요구에 對應하지 못하는 無能政府로 전락하자 5·16軍事革命에 의해 第3共和國으로 이행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 이래 제 3 공화국의 共和黨 政府와 環境間의 投入(input) 및 統制(feedback) 가능 간에도 갈등은 常存하여 學生들은 데모의 형태로 이를 처리하려 하면서 문제는 항상 準解決(quasi-solution) 상태에 놓이게 된 채 학생들의 input 적 의미의 요구와 feedback 적 의미의 改善주장은 日帝下의 학생민족 운동과 1,2 공화국하의 데모 이래 가장 빈도와 강도가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마침 세계적으로 S.P(Student Power = 학생세력)가 문제되는 때이기도 하였으므로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당시의 S.P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樣相으로 전개되었다. 이 학생 세력은 後進國뿐 아니라 先進國에서도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며 既成構造에 도전하는 政治行動者로 개혁의 제 5부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68년 5월을 前後한 3개월 동안에 동안에 세계 20개국에서 개혁을 위한 학생데모가 발생, 36개 대학이 휴교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sup>34)</sup> 이때 학생데모가 극심했던 나라는 11

34) 파키스탄, 反政 데모, 아유브칸大統領 사임요구(69.2), 東亞日報, 68.5.11

<表 2-19> 主要 世界 各國의 student power

국 별	이 슈	양 상
미 국	○越南戰賛反데모 ○大學의 改革	보스톤대, 오레곤대, 캘리포니아 등을 시작으로 '疎外'에서 고차원의 制度改革의 정치적 行動主義者로 변신, 실질적인 目標 達成 위주로 行動하고 大學을 이 社會的 항거와 改革을 위한 役割遂行者로 개조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음.
인 본	○월남전 反戰	동경대 4,000명 과격暴力化
프 랑 스	○官僚體制 및 이로 인한 大學教育의 革新 ○technology의 必要惡的 限界와 저항	개발과 성장의 시대가 지나면서 자부적 technocrats에 대한 염증과 회의가 드골의 관료중심적 體制에 대한 反드골 暴動으로 파리 대학생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소르본느 대학생의 프랑스 大學의 나폴레옹식 教育에서의 奪被와 行動參與 주장이 낭페르 大學의 左翼學生에 의한 수업거부 行爲과 결합되어 暴力化(임시학교廢鎖)
西 獨	○獨裁化 우려	非常大權法案 反對(68.5) 5萬名
벨 기 에		정부교체
이 집 트	○정부부능	나세르 大統領의 內閣改編
동 구 (폴란드·체코)	○自由化	스타린주의 추방하고 自由化 주장(69.2의 反蘇抗爭)
이 태 리		左翼系 學生의 警察잔인 糾彈(3千名)
파 키 스탄	○反政데모	아유브칸 大統領 사임요구(69.2)

라질,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독일,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튀니시아, 멕시코, 에디오피아 및 기타국으로서 주요국의 S.P의 양상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따라서 이 S.P와 관련, 우리 나라의 학생대모의 당시 성격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양상을 알 수 있다.

<表 2-20> 第3共和國下의 學生대모 樣相과 性格 ( 5.16 과도기 포함 )

年 月	主 要 대 모	性 格
61. 5.	反共군사革命환영大會 ( 4月 革命 學生 同志會 )	○學園環境의 改善
62. 6.	韓·美行政協定促求 : 서울大	○選舉糾彈
63. 2.	財團理事陣비난성명 : 成大	
64. 5.	對日 굴욕외교 反對, 韓·日會談 反對 (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大學 )	○外交자세 회담
65.11	서울文理大學生 會長補選 거부	○不正不敗糾彈 등
66. 3.	淑大生 관선 이사실 이전 反對	
67.6 ~ 7.	서울大 등 6·8 不正選舉糾彈 ( 延大, 中大 등 ) 不正不敗 일소 全國 大學生 特委 기말시험 거부, 투석진, 체류탄사용 高大 햇불 demo, 솜뭉치 주전자 등 사용	
68. 6.	서울大 시설개선, 부농교수退進 學生自治活動 교수간접 배제, 盟休	
69.	三選改憲反對 demo	
70.	교련強化反對	
71.	4.27 선거無効 不正不敗糾彈	
72.	학원자유수호, 교련反對	
60年代의 特徵	.....	政治性 + 社會性

4) 第4共和國下の 學生데모 (1972.12.29 ~ 1979.10.26) : 재하기

1970 년대에는 새로운 국제정치상황의 變化와 더불어 美·蘇·日·中共을 중심한 多變적 국제관계가 東北亞에서 形成됨에 따라 國內政治體制의 改組의 必要性이 대두되었고 경제성장 뒷면의 經濟的·社會的 不作用의 連鎖的 發生으로 제4 공화국 政治·行政體制의 環境 條件을 特徵짓는 投入集團의 活動은 어느 期보다 지속적이고 非結社的 集團(non-association group)인 학생, 지식인 層에 의한 體制存立의 부정에 그 목적이 있었다. 즉 政治·行政體制의 權威的인 決定過程 및 構造에 影響力을 행사하려는 努力보다는 체제지체의 轉換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維新體制가 표방한 平和的인 祖國의 통일과 能率的인 國政運營은 制約을 받게 되었다.

한편으로 行政의 合目的性·效果性·生産性을 확보하기 위한 責任保障 mechanism으로 對外的 外部統制 集團의 性格을 가진 學生集團 示威(테코)는 유신 政후의 소강상태를 벗어나 73년 10월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擴大되어 自由民主 體制의 確立과 民族自立 經濟體制의 確立을 주장, 당시의 政府體制를 刷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學生示威는 ‘國家安全과 公共秩序의 유지를 위한’ 大統領緊急措 置가 발표된 75년 이후 다소 줄었으나 계속된 學生들의 유신철폐의 주장은 이어 졌다.

이를 당시 70년대의 주요 學生데모 시위사건을 중심으로 그 性格을 유형화 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2-21> 第4共和國下の 學生데모 양상과 性格

日 時	主要 데모 사건 과 特徵	性 格
71. 72,73	教練反對, 不正腐敗 糾彈 ○ 汎國民의 維新廢廢데모 ○ 73.10. 金大中  납치로 學生데모方向  설정	政 變 改 善 反 政 示 威

日 時	主要 데모사건과 特徵	性 格
74.	民青學聯事件; 全大學聯合 및 社會운동 과 연계下에 데모	反政示威
75. 4.	維新撤廢, 言論自由保障, 고문정치철폐, 석방학생구제	反政示威
75. 5	월남敗亡 후 학생데모 沈滯	反政示威
76.	朴東宣사건의 眞相, 維新撤廢요구	
78. 6.	光化門데모사건, 國民에 대한 宣稱으로 在野社會운동과 연계	大衆봉기의 기폭
79.	釜·馬데모, 78.6 光化門데모 이후 民 衆 봉기의 기폭제가 됨.	//
79. 10. 26.	1979.10.26 ~ 1980.8.27의 危機管理 政府로 過渡體制 유지	體 制 崩 壞
70 년대의 特徵	.....	政 治 性

5) 第 5 共和國 自律化下의 學生集團行動 { 79.10.26 ~ 1980.10.26  
1980.10.26 ~ : 제 5 기  
10.26 事態 이후 5 공화국 탄생 전의 체제는 危機管理政府로 規程되면서 그 目標을 ① 國家保安의 공고화 ② 社會安定과 公共安寧秩序維持 ③ 國民生活安定, 經濟의 成長 ④ 政治的 發展 등에 두었다. 그런데 이 政治行政體制에 대한 實質的인 feedback 활동은 거의 없었고 非結社的인 약간의 아노미이의집단( anomie interest group )의 影響에 그쳤다.<sup>35)</sup>

그러나 大學의 학내분쟁에서 시작되어 政治問題로 확대된 學生데모 및 集團行動은 對政府 feedback의 가장 조직화된 勢力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특히 80.5의 光州事態는 民衆봉기의 鬭爭형태를 제시한 것으로 서울大의 霧林事件, 81년의 全國民主學生 聯盟事件(學林)과 더불어 學生집단행동을 勞動 및 農民 등 民衆

35) 安海均, 危險관리 政府下의 行政體系分析, 서울大 行政論, 19-2. 1981. p.61.

運動과의 연계를 시도한 분기점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過渡期政府體制下에 學生集團行動이 民衆運動과 연계되기 시작한 이후의 學生集團行動은 과거의 단순한 대중·다중적 의미의 학생행동과는 다른 特徵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行動을 誘發하게 하는 直接的인 動機面에서 6~70년대의 학생집단이 성의나 愛國 등의 trust요인에 의해 결속된 것이었다면, 80년 이후의 學生集團의 結束要因 및 凝集力(cohesion)은 interest화 해가는데 있다.

둘째, 目標과 手段·方法上의 변화이다. 목표면에서는 70년대의 政治性(정치적타도)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 政治性이 體制內的 變化보다는 이데올로기적 思想轉換의 色彩를 띠는 뿐 아니라 ‘三民黨’ ‘民民黨’ ‘光黨委’ ‘反民黨’ 등의 組織體系를 갖춘 前衛的 鬭爭機構를 形成한데 그 特徵이 있다.

그리고 이외 社會心理的 갈등과 소외에 인한 行動의 誘發, 犯罪經濟學的 行動判斷의 誤診 등이 結合되어 있음도 80년대 이전의 集團示威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解放 이후 오늘까지 그 爭點은 주로 政治性이었으며 行動主體들의 行態가 時代別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학생들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이 混亂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1 共和國下의 反共·反日의 民族的 民主主義가 52년 7월의 拔萃改憲, 54년 11월의 4사 5입改憲, 60년의 3.15 不正選舉 등으로 非民主的 獨裁政治行態化하였고, 4.19 革命 이후 민주당의 2 共和國의 反獨裁, 自由民主主義 또한 지나친 放任과 理想主義로 弱體·短命政府로 종식되어 祖國近代化의 기치 아래 61.5.16 革命을 낳게 되었고 이에 의한 3 공화국과 4 공화국은 維新前의 民族的 民主主義와 後의 韓國的 民主主義로 표방되었지만 권주주의의 기대감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79.10.26을 전환점으로 80년 제 5 공화국의 民主福祉國家의 실현을 과제로 갖게 된 것이다. 여기에 思考와 行動의 混亂을 가졌은 것은 젊은 세대와 既成間의 價値觀의 異質化 현상이다. 즉 젊은 世代의 理想志向性과 既成世代의 現實志向性의 平行이다.

學生들의 獨自의 判斷에 의거하여 체제 및 사회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던 4.19이 후 世代交替에 의한 世代間的 괴리감을 다소 줄일 수 있었으나 이것 역시 人物交替에 의한 政權담당자의 변화일 뿐 價値觀의 世代交替은 이루지 못한 채 새로운 價値觀의 定立과 제시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즉 6.25 動亂이 混味했던 사상적 對立에 구분을 가져와 自由民主主義的 道義를 指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近代의 思考와 普遍的 心性을 양성하는 한국인의 의식구조에다 진취적이고 積極的인 生活行動方式을 국민 대중에게 확산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學生들은 4.19의 國民的 變化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결국 60년대를 價値觀의 混亂期로 만들어 統合的 全體主義와 制限的 個人主義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국가의 目標과 集團 및 개인의 目標間에 단절과 간통이 同質性(homogeneous) 確保를 어렵게 하였으며 이는 不信과 利己主義로 연결되어 갔고 70년대에 한국적 전통이 재음미되면서 가치관 混亂 극복을 努力했으나 維新體制의 確保 수단이라는 政治性 때문에 국민적 合一이 어려웠으며 學生들은 國民的 目標 제시를 계속 추구하면서 80년대의 새로운 國家目標을 제시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연속적 과정은 日帝시대 4·19, 5·16, 10·26 등을 거치면서 계속적인 비례감의 場을 유산으로 받음으로써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다.(表 2-22)

특히 이상의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의 양상은 1950년대 말과 60년대 초와 유사한 것으로 이는 20년의 時差(time lag)를 두고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再現된 것으로 1979년의 10·26이 弱殺와 暴力의 전형적 사건이었으며, 80년 5월의 光州事態 또한 민중봉기의 시도로서 경제와 사회상을 극도로 沈滯, 混亂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민주화를 지체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해방 이후 80년대에 이르기까지 민주와 자유·평등을 政治理念의 共同善으로 한 政府로부터 가난과 부진서 속에서도 民主政府를 지망하던 政權, 民族中興의 번영과 질서 안정을 주장하던 政府가 獨裁, 부정, 腐敗, 부능의 연유로 崩壞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우리 나라의 現代史的 맥락은 학생문제와 무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속에서 必要的으로 잉태되어 온 것이고, 이것이 우리 나라의 구조적 政治·社會 분해 때문에 膨脹되었고 이것이 일부 급진적 과격학생에 의해 표출된 것이며, 여기에 現代社會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現代人 특히 학생들의 소외, 불만, 성장과정, 심리적 갈등의 공통속성이 각각의 형태로 加味된 것이다. 과거 역사적 유산에 걸림하는 학생들을 전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되, 더구나 과거의 부정적 유산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모든것을 일시에 치유할 수 있는 方法은 어떤 革命的 역사(프랑스 革命期와 부르조아 민족주의 볼셰비키 革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 社會環境 속에서는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일과 제거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社會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학생과 학교가 해야 할 일이 定立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제·사회가 發展되면서 신장하고 있는 國民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며, 學生은 자기 행위의 성숙된 성찰이 편견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수는 보다 소신있는 教育者論으로 行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다음과 같은 中南美, 東南亞의 국가와 같은 民主化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Elite層의 權力승계인 구테타도 市民勢力으로부터의 革命도 아닌, 안전장치로서 정당 간의 競爭에 의한 민주주의를 하나의 제도로서 갖자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 및 民主化의 가치는 소위 革命勢力이 말하는 人民民主主義가 아니므로 向後의 憲政절서는 平和的으로 형성·유지·변형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것이 民主化의 꽃을 피우는 첩경이 되는 것으로 역사적 사건은 우리에게 教訓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事例은 월남, 이란에서는 역설적인 현상으로 최근 라틴아메리카를 휩쓰는 민주화 열풍이나, 필리핀, 아이티 등의 長期獨裁國家에서의 民主主義 도미노현상에서 教訓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같이 짧게는 8年, 브라질같이 길게는 21年, 필리핀의 20年이라는 오랜 군사 및 獨裁政權의 통치를 고하고 민선大統領을 선출, 민주화에서 接近해 감은 平和的인 民主化를 세계질서로 昇華시키는 계기로까지 볼 수 있다. 이를 年代的으로 보면 1974

년의 그리스, 74~75년의 포르투갈 76~77년의 스페인 등 지중해 일안국, 그리고 80년 페루, 82년 볼리비아, 83년 아르헨티나, 84년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과나마, 85년의 니카라과, 우루과이, 브라질, 86년의 아이티 등의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86년 3월의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등이다.

이와 같은 나라의 사태 발전에는 어떤 공통요인이 있다. 즉 거의가 스페인 식민 통치의 경험, 공통의 카톨릭문화, 극심한 貧富差, 저발전, 만성적 군부 및 獨裁政治, 끊임없는 政治不安, 미국의 군사, 경제, 정치적 影響權 등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요인과 변수가 이와 같은 政治變化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나 나라에 따라서는 인종구성, 경제관련 수준, 산업화 시기, 정치·사회구조, 외국 경제依存度의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이질적 요인도 내포하고 있다.

선국 군사우테타에 의한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몇몇 나라, 즉 1964년의 브라질, 1966년의 아르헨티나, 1970년의 칠레 등은 지속적 경제성장이란 국가 목표실천에 失敗함으로써 민주화를 요구하는 民衆의 壓力에 굴복하고, 칠레를 제외한 아르헨티나는 軍政에의 이양이 아닌 포기할, 브라질은 위로부터의 權力이양을, 필리핀과 아이티는 權力 포기할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민주화 과정은 나라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우리 나라 軍政과의 차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군정은 그 나라의 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도시 중산층이 형성되고, 경제적·사회적 선진진입상태에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민주화 과정을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近代化 理論 및 發展論에 依存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경우 60년대의 5·16은 低開發시대에 수립, 開發을 주도했으며, 80년 대의 5공화국은 선진진입을 지속시켰다는 면에서 차이와 유사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요컨대, 脫 獨裁化, 軍政化, 民主化의 과정은 政治·경제의 변수만으로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人間은 어느 정도 富를 축적하면 그에 相應한 자유를 구하기 마련이며, 이것이 정치적 民主化와 경제적 자유와 함께 동시 상호작용한다는 변수간의 역학관계를 볼 수 있다. 필리핀은 이 변수 간의 관계로는 설명이 어려우나 대체로 2,000~4,000 弗 시대가 轉換期라고 볼 수 있으며, 필리핀의 所得은 우리

의 33% 정도밖에 안 되지만 미국의 정치訓練, 그리고 학교 教育의 影響을 크게 받은 나라라고 보면 민주적 자질이나 政治意識이 또한 중대한 변수가 됨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필리핀 등의 동남아국가 등이 軍政, 獨裁의 한계에서 民間政府로 이양되듯 우리 나라도 차기 政府 구성은 平和的으로 이양되어 역사적 사건 등에서 본 混亂이 발절을 지체시키는 사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주는 教訓인 것이며, 다시 20년 시차 뒤에 惡순환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Reagan도 자유지역 안보세계평화라는 美 의회에 보낸 주요 政策 실행을 통해 民主化에 대한 美國의 입장을 천명, 人權과 民主化 실현을 통한 세계 民主主義 達成을 美國 政策의 중요 목표로 삼고 있다.<sup>36)</sup>

中南美에서 軍事獨裁는 사라지고 95%가 자신들 選擇으로 民主主義를 擴散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1900년 이래 85여년 동안의 學生들의 價値形成 및 行動誘發을 정리해 보면 술한 사건을 통하여 價値 및 意識構造가 특히 政治的 統治理念(政治性)과 共通的으로 연관되어 변형 굴절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社會의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을 뜻하며 정치가 가치 및 行動指向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責任이 있음은 勿論 政治의 올바른 規範性과 가치제시가 미래 사회 구성의 핵심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政治성과 直·間接 關係를 가지고 있는 80年 이후의 學生集團 行動의 요인과 성격은 復雜하게 형성된 것으로 一義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다음의 5가지의 接近으로 分析하여 복합적인 것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36) 東亞日報, 86.3.15.

#### 4. 利益集團의 接近方法 ( interest group approach )

##### (1) 概念과 性格

集團行動은 집단에 의한 행동이며 이는 어떤 共通結合 要因에 의한 個體들의 集團體로서<sup>37)</sup> 構成員의 活動, 相互作用 및 感情이 行態構成要因의 중심을 이룬다는 것을 보았다.<sup>38)</sup>

Truman은 現代社會에서 多數의 集團이 競爭할 때 이 과정에서 集團이 利益이 방해되거나 교란되면 이들의 活動이 활발해져 다시 均衡 ( equilibrium )이 회복되고 構成員의 相互作用이 강화되면서 他集團 내지 政府에 대하여 利益의 要求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때 이 집단을 政治利益集團 ( political interest group )이라고 하였다. 이를 A.F.Bentley는 水壓理論 ( hydraulic thesis )으로 설명하면서 公共政策 形成을 相互作用要因과 壓力의 體系로 보았다. 즉 集團의 概念을 物體라는 概念으로 보아 壓力 ( pressure )과 抵抗 ( resistance )의 概念으로 分析하고 社會生活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集團을 分析하는 일로 보았다.<sup>39)</sup>

Truman과 Bentley에 의한 이런 觀點들에 의하면 결국 利益集團이란 하나 이상의 共有態度 ( shared attitude )와 관련된 행동양식을 수립, 유지, 제고하기 위하여 社會의 다른 集團에 대하여 利益을 表明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正義에서 사용된 共有態度는 個人的 集團加入의 動機와 構成員 行動評價의 準據基準 및 다른 집단에 대한 요구 또는 주장의 일치성을 의미한다.<sup>40)</sup> 그런데 이 3가지 요인은 상호작용적이며 따라서 집단의 規範이 個人的 行動의 規範에 影響을 미치고 또 집단으로서 利害關係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共有된 態度가

37) D.B.Truman, op. cit.,

38) G.C.Homans, op. cit.,

39) A.F.Bentley, The Process of Govern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213.

40) Truman, op. cit. PP. 33~34, 및 信澤, op.cit., p.271

이익을 구성한다는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sup>41)</sup> Truman은 이와 같이 利益集團을 정의함으로써 政治分析에 몇가지의 有用性を 밝히고 있다. 즉 첫째, 現存 利益集團뿐 아니라 潛在的 利益集團을 區分할 수 있으며 둘째, 統合的 相互作用의 程度( degree of integrative interaction )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相互作用의 정도가 높은 集團 유지를 더 効果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민도가 強度( strength )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며 셋째, 集團의 公式組織의 重要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하여 相互作用의 정도를 알게 할 뿐 아니라 政治的 행동과 관계되는 적절한 展望을 준다. 요컨대 이와 같은 의미의 利益集團은 항상 政治利益集團이 될 수 있는데 이를 Truman은 結社( association )이라 부르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sup>42)</sup> 즉 각 개인이 소속한 集團間의 利害關係, 갈등, 교란을 조정하기 위한 집단이 생겨남을 말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集團의 分類方式과도 관계되어 전술한 Truman의 集團類型인 民主집단, 潛在집단, 상호작용집단, 제도화된 집단 중 가장 効果성이 큰 것은 制度化된 集團이며, 이것이 가장 안정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集團이 政府를 통하여 政治에 影響을 미치는데 集團構成員間의 共感利害關係가 상대적으로 강한 집단일수록 政策決定에 미치는 効果는 크고 이 경우 理念을 가진 집단이 유리하다는 점이다.<sup>43)</sup> 그리고 利益集團의 活動에 있어서 중심개념은 接近(access)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集團의 結集力, 組織, 地位, 指導性, 富, 地理的 分布 등이 지적되고 있다.<sup>44)</sup>

한편 利益集團이 壓力團體의 lobby 活動에 動員되는 方法으로는 個人通信, 집

41) 信澤, p.271.

42) Truman, op. cit., pp.39~43.

43) M.M.Conway. & F.B.Feight, Political Analysis,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2. P.145.

44) Alan. C. Isaak, Scope and Methods of political Science, Homewood, Ill. The Dorsey Press, 1975. p.205.

단연구결과 통보, 선거운동 등 다양하게 행사되는데 결국 G.Homans의 小集團分析과 D.Truman의 政治利益集團論은 政治現象分析에서는 상호 補完的으로 필요하며, 集團論自體가 ‘利益과 行動’의 集合에 관한 연구에는 반드시 微視的 政治行態分析의 중요 특이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집단적 맥락을 무시하고는 정치현상 및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集團的 行動을 설명, 묘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利益集團類型

이 interest group은 1950년대 말경 서유럽에서 체계적 연구가 시작된 이래 政治過程(the governmental process)에서 초점이 된 것은 美國에서였다. 政治系의 광범한 여러 유형을 연구하는데 基本的 分析개념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복잡한 政治體系 속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는 interest group개념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Almond는 input기능의 利益表明(interest articulation) 구조형태에 따라 集團類型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sup>45)</sup>

- 주 1) 結社的 利益集團(associational interest group): 보통의 이익집단 조직형태
- 2) 非結社的 利益集團(non-associational interest group): 가족, 윤리, 지위, 개인이나 단체 등을 통해 非公式的으로 이익을 표명하는 집단(group) 혹은 집합체(aggregate).
- 3) 아노믹 利益集團(anomic interest group): 폭동과 demo같은 정치체제의 붕괴에 다소간 관계되는 집단
- 4) 制度的 利益集團(institutional interest group): 조직 내의 group이나 立法, 관료, 軍 등

(3) 利益表明方法和 凝集要因

그룹적 의미의 集團은 보통의 특징을 가진 個人들의 集合이다. 여기에는 연령

45) G.A.Almond and G.B.Powell. Comparative Politics, Boston: Little and Brown 1966, pp.74~79.

수준, 소득, 사회지위, 특정지역에 사는 사람, 기타 동질성(농부, 알콜애호가, 문맹자 등)에 의한 요인이 있으며 이것이 기본적인 社會單位로서 강조되는 이유는 이들 행동의 一律性(uniformity)에 있다. 이 uniformity는 관여된 사람들의 相互關係(relationship)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상기 요인들의 유사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family group에서 發見되는 유사한 태도와 형태 또한 물리적, 육체적 유사성이나 인접성이 아니라 그들간의 성격적 상호작용 내지 관계에서 나온 것이며 group 形成과 power 행사의 길을 제공하게 된다. 즉 최소한의 상호작용빈도가 group이 형성되기 전에 필요한 것이다<sup>46)</sup>(예컨대 課, class, 學科, 하숙 등). 그리고 어떤 社會에서든 group 패턴의 어떤 것은 高度의 安定性, 一律性(同質類型의 制度化), 形式性(고도한 조직화) 및 一般性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이것은 습관적으로 制度化 및 기관화라는 용어로 구체화되는데 이 制度化된 group의 특징은 고집성, 지속성에 있다. 이것은 개인의 습관적 행동으로 구성되기도 하나 습관적 사고 행동일 수도 있는데 潛在集團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행동유형으로,<sup>47)</sup> 첫째 type I, 參與者들이 보상적 代替行動이나 逸脫行動을 개인적으로 불평, 소문퍼뜨리기, 알콜중독, 무차별공격에 빠져드는 行爲를 들 수 있다. 이런 유형은 제도화의 광범한 균형이 방해되는 혁명적 상황에서는 두색임한 폭력집단에 개입될 可能性이 있으며, 둘째 type II, 교란된 개인은 개인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른 group내에서 그들의 活動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가족집단 내에서의 不均衡 상태는 직장 그룹이나 동료 그룹 내에서 증가된 상호작용에 의해 報償받게 된다.

끝으로 심한 不均衡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형태의 세 번째 type III은 균형회복을 위한 新 group의 조직이다. 이와 같은 新 group이 그들의 目的 達成을 위해 政治的手段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또 政治 group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상기의 제도화된 group의 분류와 더불어 여러 subcategory가 각기 가능

46) Truman, op. cit., p.23.

47) Ibid, pp.30 ~ 31.

의 상이성을 바탕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이것은 crowds, publics, assemblies, organizations, mobs, primary & secondary group 등이다.

그리고 利益集團(interest group)으로서 상이하게 작용하는 어떤 group 이 어떤 文化 속에서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게 될 때 이를 結社 또는 協會(association)라 부르는데 이의 기능은 親近集團(tangent group) 내의 개인간의 관계를 안정시켜 주는 일을 한다. 근로자와 기업주 간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보상적 장치나 대학의 학생들과 대학당국과의 친근(tangent) 관계를 안정시키는 장치로서 구성되어 있다. 즉 association은 기본적으로 조직화된 group에 있어서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안정시키고 연관시키는 역할을 하며 態度形成(attitude-forming)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 개념으로 되어 있다. 利益集團의 公式組織이 중요한 이유는 group내의 상호작용의 높은 빈도의 지표이며 결집력의 정도를 표시하기 때문이며 또한 안정성과 영구성의 측정 代表值(proxy)를 제시하고 leadership의 형태, 책임배분, 決定方式 등 分業體系를 통해 미래를 가정하게 하고 또 이 공식조직은 초기에 集團的 共有가치를 응결시키기 때문이다.

이 4가지 factors(응집력정도, 항구성 기대, 內部分業體系, 公式화된 가치체계)는 group의 존립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응집력을 유지하고 집단 내 불가피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leadership의 행사 方法은 ① 도전적 소수집단(active minority)을 일차 목적으로 설정하고 ② 反對하는 個人이나 集團에 대해 現實的 제재를 이용할 뿐 아니라 ③ 비밀요구, 비공식(off the record) 토의방식을 채택하고 ④ active minority의 지위를 강화하고 결속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내부선전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보았다. 48)

한편 John Dewey는 個人이 group에 加入하는 태도나 행동의 패턴은 서로 다르며 구체적 행동의 發生條件은 유기적인 것뿐 아니라 교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상이한 욕망이나 목적 및 운동 方法에 관한 表明일 때는 교체적인 면이 크다고 보았고, Gaetano Mosca는 社會 속의 사람은 群集本能이 있고 다른 무리

48) Truman, *ibid.* pp.193~209.

과 싸우는 본능이 있는데 이는 社會間的 갈등뿐 아니라 물리적 갈등과 下位부서간의 구성에서도 비롯된다고 보고 J. Madison은 人間屬性에 뿌리내린 것으로 개인간의 상이한 집단화 경향이 결정한다고 보았다.<sup>49)</sup>

이상에서와 같이 集團論 특히 小集團論(small group theory)이 주로 사용한 기초지식은 社會心理의 概念變數로서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sup>50)</sup>

<表 2-23> 小集團形成要因

概念變數	內 容
1. 리더쉽 (leadership)	一般的 地位를 나타내는 尺度이며 個人的 有名度, 集團目標 達成 公헌도, 社交性 등의 3 层面을 가지고 있다.
2. 役割類型	集團指導者의 行動유형으로서 權威主義(指示型)형과 民主型으로 나뉜다.
3. 분 위 기	集團成員間的 相互作用
4. 性 格	保守性, 공격성, 복종성에 의해 表示
5. 凝 集 力	構成員이 集團에 대해 느끼는 매력도로서 주로 集團員으로서의 위신, 직무의 위신, 他集團員에 대한 호감에 의해 결정
6. 규 범	集團成員 또는 全員에 적용되는 集團社會에 의한 壓力
7. 通 信 體 系	人間社會의 關係는 通信의 關係. 모든 조직이 通信으로 결속되어 있다(정보전달→自己統制, 結集, 統合, 學習, 權威, 창의성).

특히 이상의 변수 중에서도 어떤 집단의 공통이익 達成을 위한 集團成員의 특유한 행동양식을 Homans는 集團規範(group norms)이라고 보고 Person은 制度的 精神(institutional mind)이라고 하여 이것이 政治過程에 參與하면서 때

49) Truman, *ibid.* pp.15~17.

50) 조석준, *조직론*, 法文社, 1981. p.197.

로는 정치과정을 질서화하기도 하고 革命的으로 파괴적 작용을 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集團의 制度的 形態에는 平和的 民主的인 形態가 있는가 하면(美國) 對立的·侵略的 傾向을 띤 暴力的 非民主的인 형태가 있을 수 있다(한국 등).

### 5. 社會心理學的 接近 ( Socio-psychological approach )

前述한 바와 같이 學生集團行動 문제를 理論的으로 說明하려는 것으로 L.S. Feuer의 Oedipus的 反抗理論과 D. Bell의 역사적 부적절 이론을 들었으나 어느 한쪽의 관점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으므로 Karl Mannheim이 주장한 靑年들의 心理的 요인과 특수사회의 사회적 요인의 2元요인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이 접근에 따라 보고자 한다.<sup>51)</sup>

#### (1) 大衆社會와 人間疏外

人間의 社會的 行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社會心理的 觀點은 어떤 특정상황이나 요인이 특정시점에서 공격이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가를 두고 이는 주로 欲求挫折을 당했을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群集性 動物(affiliation)이라 규정하고 왜 군집하는가에 대하여는 그 특수원인 중의 하나로 고립 → 공포 → 군집의 과정을 거쳐 욕구충족을 취하는 것으로 본다.<sup>52)</sup>

그러면 이와 같은 고립과 욕구 좌절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것은 60년대와 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의 病理的 結果요, 大衆社會의 고독한 군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문제들을 서구의 物質文明을 예리한 시각으로 비판한 大衆社會理論으로 조명해 봄으로써 우리 社會의 大學生들의 集團行動에서 그 유사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現代社會의 性格을 ‘大衆社會’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측면은 産業의 發展이 高度化되어감에 따라 合理化, 組織化, 專門化, 集中化, 巨大化 등의 가치가 지

51) Karl Mannheim,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2.

52) 洪大植, 社會心理學, 博英社, 1983, pp.67 ~ 77.

배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고독함과 무력감에 빠지고 삶의 의미를 상실, 소외의식이 심화되어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게 되는 사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大衆社會의 主要 形成要因은 産業化, 都市化, 大衆傳達 등의 3 가지 차원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을 획일화하고 沒個性化하여 소비문화를 高級化, 同質化시키는 위력을 가짐으로써 개인은 고립상태에서 무비관적으로 조작당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고립되고 疏外되는 즉 낯설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외면당하는 현상의<sup>53)</sup> 과정과 원인은 무엇인가?

現代的 意味의 疏外(alienation) 개념은 마르크스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자아의식의 상실에서 오는 不安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소외된 人間은 自己存在의 認定을 위해 大衆의 유행을 쫓고 대중 속에 파고들어 숨어버리는 경향도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집단과 연관을 맺고 異質集團間의 가치나 태도의 對立을 경험함으로써 대중은 自己의 가치관단과 기준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여기에 심리적 미숙을 조장하는 大衆文化와 日帝 36년의 전통적 가치관 박탈과 民族分斷 등이 異質感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大衆 특히 우리 민족은 소외를 거듭한 民族的 自己疏外 속의 大衆이 된 셈이다.

## (2) 人間行動의 自由와 破壞性

인간의 소외현상이 결코 자본주의라는 특수 경제체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E. Fromm에 의해 극복되었다. Fromm은 社會行動 연구에 Freud의 精神分析이 유효하다고 믿고 社會的 性格의 여러양태를 정형화하였다. 즉 동일한 文化 속에 사는 人間은 공통적인 성격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 中核을 社會的 性格이라 보고 이를 생산적인 性向과 非生産的인 性向으로 區分하고 특히 Fromm은 社會化 과정에서 가장 病的이고 非生産的인 性向으로 masochism과 sadism의 성격을 들었다.

53) 김정식, 한국인, 社會發展研究所, 1984, p.49.

인간의 社會化 過程에는 共生的 關係(symbiotic relationship)와 退行的 破壞, 그리고 사랑이라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symbiotic relationship은 고독이라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건전한 자아의 독립을 버리고 무력감에 빠진 나머지 外部의 어떤 힘과 결합하려는 증세이다. 이것은 바로 강력한 權威에 의존하려는 權威主義的 성격을 띠게 되어 무조건적 服從의 자학성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조키즘(masochism) 증상이다. 이들은 대개 강자나 集團에 자기를 맡김으로서 거저된 안도감을 갖고 병적 쾌감을 갖게 된다. 반면 새디즘(sadism)은 남을 학대하고 支配하는 데서 병적 쾌감을 느끼는 태도이다. sadist는 대개 소영웅주의, 과대망상증의 궤모양을 하고 있으나 내심은 무력하고 고독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sup>54)</sup>

그리고 退行은 개인의 無氣力을 극복하기 위해 他人으로부터 거리감을 두는 것을 말하며 破壞性은 퇴행의 적극적 형태로서 外部의 위험을 제거하고 파괴함으로써 자기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파괴적 충동도 正義·愛國의 偽裝下에 파괴의 대상을 찾아 발산하는 激情으로 이 대상을 찾지 못하면 자신을 파괴하는 自殺도 진행하게 된다. 결국 생산적인 건전한 인격이 건전한 社會에서 누릴 수 있는 能力이 Fromm적 의미의 自由개념이며 이 反對의 파괴는 自由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3) 群衆의 集團行動性

人間의 행동은 知性이나 理性, 理想이나 양심에 의하여 규제되기도 하지만 감정, 욕망, 본능, 관습에 의하여 규제되기도 한다. 따라서 現實의 정치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合理的인 기구나 제도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非合理的인 요소를 內包하고 있는 人間行爲의 연구가 필요하다. 政治에 있어서의 非合理性은 群衆現象에서 代表的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즉 群衆은 단순한 개체의 집합이나 거기에는 어떠한 共通感情이 부지부식간에 전파되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合流하게 되면 知性도 感情도 압도되어 상실되고 群衆은 침사리 압식에 의하

54) 신일철, 한국인, 社會發展研究所, 85.9, pp.141 ~ 144.

며 좌우되며 단순 민감하고 충동적 기분에 의하여 行動이 決定된다. 이 行動은 不寬容, 殘忍, 흉악한 폭도로 화하기 쉬우며 흔히 暴動, 데모, 同盟, 罷業, 분신, 자살 등의 群衆心理로 연결된다.

이런 행동성은 政治對象으로서의 그것이 '大衆'일 때 특징적으로 발견된다. 前述한 바 있듯이 대중은 일반적으로 受動性, 消極性, 衝動性, 단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질서와 평화 속에서는 온순하나 어떤 不平, 僞善, 恐怖, 편견, 근시안적 利己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질서가 혼란하고 위험이 절박하고 배신당하거나 정세가 불리해지면 종종 反抗과 暴動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도 大衆이 自發的으로 봉기하는 것은 드물고 leader와 호응하여 가공할 힘을 발휘하게 된다. 리더(leader)가 없다면 대중은 다시 무력해지는 속성을 지닌다.<sup>55)</sup>

## 6. 이데올로기적 接近 ( Ideological approach )

### (1) 이데올로기의 概念과 기능 및 決定要因

이데올로기는 K.Marx에 의해 보급된 용어이며 Hegel 이래 19C의 역사 이데올로기 시대로부터 現代 社會에 이르러 확고하게 정립된 순수한 이론적 활동보다 實踐的 關心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信念體系이다. 그러므로 사상과 그의 동의어로서 사용되기도 한다.<sup>56)</sup> 즉 광의적으로는 Marx의 이른바 社會의 하부구조에 대한 상부구조의(政治, 法律, 哲學 등) 思想, 見解, 制度와 組織을 가리키며 협의적으로는 政治, 法律, 宗教, 哲學, 예술등의 精神的·文化的인 概念形態를 가리킨다.<sup>57)</sup>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떤 個人과 집단 또는 階級(階層)이 社會와 자연에 대하여 품고 있는 어느 정도 體系化되고 一貫性 있는 觀念形態라고 본다. 이것이 體系性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의견과 判斷 및 感情과도 다르며 價值判斷과 未來의 희망을 불가결한 요소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 自然科學 그 자체와도

55) 金雲泰, 政治學原論, pp.224~229.

56) 申一澈,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p.36.

57) 이극찬, 政治學, 法文社, 1978, p.257.

區別된다. 그리고 어떤 個人 또는 個人的 集合體인 집단에 의해 품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現實과 다른 理論的 活動인 理論的 命題와도 구별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전형적인 이데올로기는 統一的이며 體系的인 社會觀으로서 社會思想 또는 政治思想을 들 수 있다.

Watkins는 우리의 근대는 전저히 이데올로기의 時代라고 선언하고 인간의 행동이 정신적 이미지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으며 自由主義, 保守主義, 社會主義, 共產主義, 내셔널리즘, facism 등이 그 예이며 이것을 政治的 이데올로기라 부르는데 藝術文藝思想, 宗教思想, 科學思想 등 기타 관념형태도 역시 이데올로기다. 그런데 이데올로기란 말이 空想, 現實 美化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데올로기 비판이란 말은 적대계급의 정신적 무장해제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사회를 이해하는 인식 方法안으로서가 아닌 自己이익에 부합되는 政治方針에 동조하는 多數를 획득하기 위한 유력한 說得方法으로도 되고 있다. 그러므로써 이데올로기는 近代 社會의 政治權力 획득의 무기로 되었을 뿐 아니라 과거의 宗教와 慣習이 수행에 오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大衆民主主義의 발전에 따라 이 이데올로기의 투쟁이 너무 과열되면 이성적 요소는 非理性的, 情緒的 要素에 압도당하기 쉬우며 現代 이데올로기 투쟁에 있어서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非理性的인 부분이 우세해진다고 보는데 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기능 자체가 支持集團의 連帶感을 강화함으로써 綜合化 기능을 하고 成員에게 사명감과 行動 에너지를 부여함은 물론, 격리·불안을 보호하는 심리적 기능을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이데올로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Marx의 社會의 경제구조에서부터 오늘날은 性, 年齡, 學歷, 收入, 직업, 교육관계, 개개인의 의식구조에서, 集團次元에서는 社會的 性格이, 個人次元에서는 personality가 중요한 分析要因이 되며 이에 따라 Eysenck는 政治的 이데올로기와 personality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Fromm은 이데올로기와 社會的 性格관계를 규명하여 인간의 행동을 분석, 行態類型을 제시한 것이다.

## (2) 이데올로기의 行動에너지

현대 이데올로기의 투쟁이 非理性的 特性이 우세해지면서 점차로 과격하고 혁명적으로 흐르기 쉽고 이는 또 全體主義의 경향을 띠게 되며 이의 대부분은 代用宗教의 性格을 가지게 되어 人間을 열광적으로 만들 수 있는 行動에너지가 된다. 이를 Watkins는 첫째, 현대 이데올로기가 전형적인 유토피아를 지향함으로써 이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엘리트들은 非現實的으로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며 둘째, 이데올로기의 유토피아적 비전하에 자기 주장과 견해는 절대적 眞理로 教條化하고 이의 反對立場에 서는 자는 적대시하는 二分法을 사용함으로써 宗教的 教條에 熱狂性을 배양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이데올로기가 D. Bell의 말처럼 가치를 구체화하고 옳과 옳에 대한 규범적 판단 준거가 되거나 社會 통합 및 접합체로서 正統性의 확보 유인이 된다면 긍정적 기능도 기대되나 共產國家에서는 強制社會의 暴力을 正當化하는 데 큰 구실을 하며 대중에 대한 強制的 過剩同調(over-identification)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비방적·부정적 의미를 지닐 때가 많다.

### 7. 犯罪經濟學的 接近 ( **criminal economics approach** )

人間의 犯罪行態(criminal behavior)를 經濟的 理論으로 說明하는 데 있어 특징적 요소는 犯罪과 결부된 報償의 본질적 不確實性에 있다. 즉 犯罪行爲로부터 얻게 될 不確實한 代價로 구속과 그 다음의 刑罰의 可能性을 合法的 經濟活動에 종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代價와 比較하게 된다는 것이다. Becker's 주장은 個人은 罰罪를 行함으로써 얻게 될 期待效用(expected utility)이 代案的 合法活動에 종사함으로써 얻게 될 효용보다 클때 犯罪를 저지른다는 것이다.<sup>58)</sup> 이것은 바로 범죄의 관여문제가 여러 活動들을 함으로써 얻게 될 편익·비용분석(B/C) 비교의 문제로 된다는 것이다. Becker는 犯罪의 刑事政策을 위한 결론을 이 分析에서 도출하고 犯罪에 參加하는 자체의 行動을 經濟적 이론으로 분석하는 데 關

58) David J. Pyle, The Economics of crime and law enforcement, The Macmillan Press LTD, 1983, p. 10.

心の 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Becker 주장의 기본 論點은 모든 個人은 效用極大主義者(utility-maximisers)로서 犯罪에서 얻게 될 효용과 자원과 시간을 이공하여 合法的 勞動에서 얻게 될 효용을 B/C 分析기법에 의하여 판단하며 개인이 犯罪을 저지르는 것은 動機가 달라 그런게 아니라 犯罪行爲에 대한 B/C 개념의 인식이 다르거나 체포 구속될 확률에 대한 인식 및 위험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59)</sup> 따라서 학생들의 集團行動이 犯罪行態로 특정지워질 때 이들도 行動의 B/C分析에 의해 行動에 參加하거나 結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전술한 Homans의 學習理論의 교환모델(exchange model)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 8. 엘리트 接近方法 ( elite approach )

Elite의 개념은 다의적이거나 오늘날 미국인은 귀족이라는 개념을 一般化하여 社會的으로 확고한 어떠한 한정된 存在로서가 아닌 道德的 存在를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다. 이들은 ‘眞正한 民主主義’라든가 ‘自由保護主義’라는 이름 아래 귀족제의 의미를 擴大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귀족층이란 社會的으로 인정된 特定 계급이 아니라 道德的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분산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sup>60)</sup> 이와 유사한 뜻으로 Gasset와 Viereck도 존귀한 것은 貴族 階級이 아니고 貴族精神이라고 말하고 에티켈과 고귀한 자로서의 義務(noblesse oblige)를 수반한 귀족정신은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의 道德的 시각에서의 elite 개념 외 權力 elite로서 政治的 權力을 소유하면서 社會內의 가장 중요한 결정에 參與를 독점하는 支配階級으로써 엘리트를 정당시하는 견해도 있다. 엘리트 이론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어떤 사회 어떤 집단에서도 그들의 역할은 支配的이라고 주장하고 이들의 연구를 政府活動의 가장 효

59) Ibid., p.11.

60) 진덕규 역, Power elite(C.W.Mills), 한길사, 1979, p.438.

과적인 방법이라 보기도 한다. 集團行動의 소수 정예그룹의 이와 같은 생각과 주장이 政治權力 과정에서 작용할 경우 이에 의한 접근도 集團行動을 주도하는 學生의 行態說明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sup>6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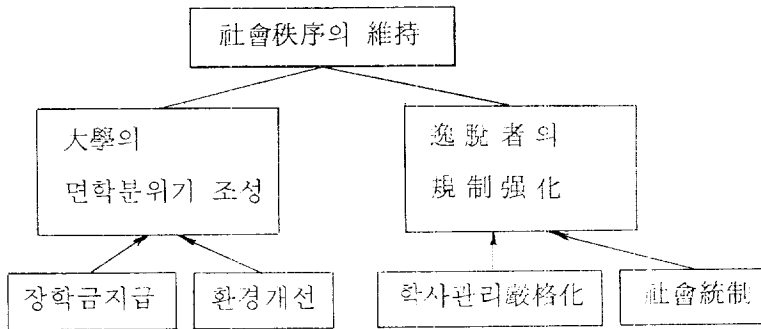
#### 第 4 節 集團行動規制政策의 執行過程分析

##### 1. 順應 Mechanism과 政策構造

政策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狀態를 政策目標이라고 할때 學生集團行動에 대한 規制政策의 目標은 秩序의 유지에 있다고 하겠다. 이는 문제해결로서 도달하는 狀態를 2종류로 유형화한 정정길 교수의 분류<sup>62)</sup> 즉 消極的治應的目標과 積極的創造的目標에서 보면 이는 전자의 소극적 목표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目標간의 上下關係 즉 目標手段의 階層制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圖式化할수 있다.

<圖Ⅲ-2>

目標·手段階層制例示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規制政策의 입장에서 보면 右側의 目標-手段 관계가 유지되지만 大學全體질서유지는 左側의 報償體系가 이와는 별개로 補完的 관계에서

61) 安秉萬, 韓國政府論, 茶山出版社, 1985, p.30.

62) 정정길, 前掲書, p.48.

과적인 방법이라 보기도 한다. 集團行動의 소수 정예그룹의 이와 같은 생각과 주장이 政治權力 과정에서 작용할 경우 이에 의한 접근도 集團行動을 주도하는 學生의 行態說明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sup>6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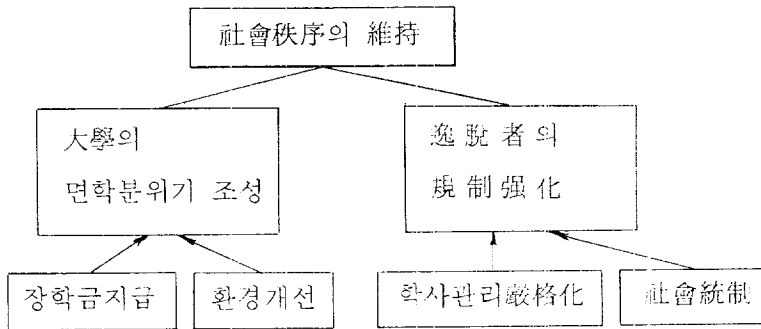
#### 第 4 節 集團行動規制政策의 執行過程分析

##### 1. 順應 Mechanism과 政策構造

政策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狀態를 政策目標이라고 할때 學生集團行動에 대한 規制政策의 目標은 秩序의 유지에 있다고 하겠다. 이는 문제해결로서 도달하는 狀態를 2종류로 유형화한 정정길 교수의 분류<sup>62)</sup> 즉 消極的治應的目標과 積極的創造的目標에서 보면 이는 전자의 소극적 목표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目標간의 上下關係 즉 目標手段의 階層制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圖式化할수 있다.

<圖Ⅲ-2>

目標·手段階層制例示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規制政策의 입장에서 보면 右側의 目標-手段 관계가 유지되지만 大學全體질서유지는 左側의 報償體系가 이와는 별개로 補完的 관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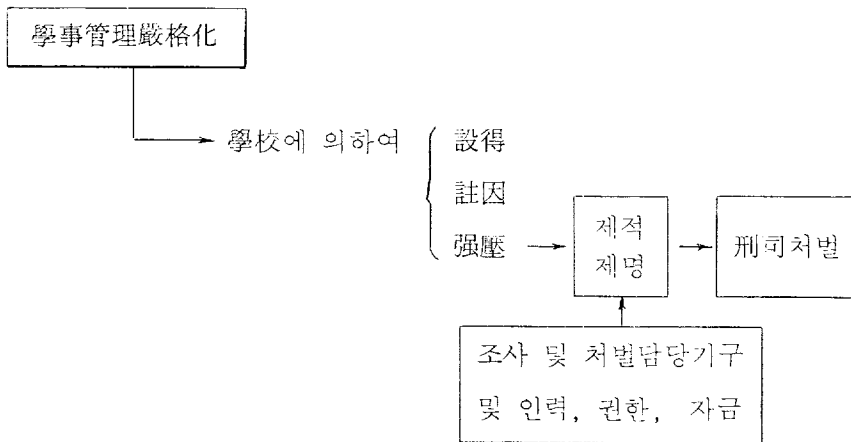
61) 安秉萬, 韓國政府論, 茶山出版社, 1985, p.30.

62) 정정길, 前掲書, p.48.

政策手段기능을 함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上記의 政策目標達成을 위한 政策手段으로서 目標에서와 마찬가지로 政策手段의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데 우선 政策手段의 分類를 實質的政策手段과 實行的(補完的)政策手段으로 나누어 보면 前者는 上位目標에 대하여는 政策手段의 位置에서, 下位手段에 대하여는 目標로서 역할을 하는 政策手段을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정책의 實質的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反面 後者 즉 實行的 補助政策手段은 전자의 實質的政策手段을 실현시키기 위한 手段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계속적으로 具體化시킴으로서 政策手段의 실현이 가능한 狀態에 이르게 되며 이는 다시 實現을 위한 活動이나 作業이 있음으로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계층제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表 Ⅲ-3> 實行補助政策手段의 예시



上記<그림 Ⅲ-3>에서와 같이 集團行動이 大學의 秩序와 社會의 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된다면 학사관리의 엄격화라는 政策手段을 실현하기 위하여 먼저 학생들에게 성적관리·행동관리에 요청되는 행동규범을 통보하고 이에의한 順應確保가 이루어지면 다른 實行政手段이 크게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이에 의한 不應이 야기될 때에는 強壓的으로 대처하여야 하는데 規制政策은 주로 이 手段에 의존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는 Anderson의 주장과 같이 보조적手段이어야 하고<sup>63)</sup> 自發的 順應 Mechanism 즉 說得, 장학금등의 誘引 등이 先行된 후 強壓的手段이 최후 的 手段의 실현이어야 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實行的·補助的 政策手段의 실현에는 上記 그림에서와 같이 이 政策手段의 作業이나 活動에 參與하게 되는 기구와 인력 그리고 公權力, 資金등이 요청되는데 이를 政策手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 역시 實行的·補助的 手段인데 이는 實質的 政策手段이 달라지면 補助的 手段의 내용도 變化하게 된다.<sup>64)</sup> 따라서 實質的 政策手段 즉 中間目標로서의 上位手段을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중요한 課題가 된다고 하겠다. 이하 학생집단행동에서 이를 考察하기로 한다.

#### 1) 刑事司法的 處罰(penalty) 對應

[上記의 政策問題가 좌경·용공 내지 不法집회·시위 그리고 폭력사용이 特徵的으로 규정됨으로서 이에 따른 處罰은 대체로 刑事司法的 處罰政策으로 이루어 졌다.

1985.10.2 일 선고된 美文化院 농성사건은 용공분자가 아니더라도 복귀를 이롭게 하는 주장이나 행동을 하던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 국가보안법등을 적용, 징역 및 자격정지, 집행유예등이 선고되었으며<sup>65)</sup> 서울大民推委사건에서도 보안법위반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罪로 징역과 자격정지가 併科되었다.<sup>66)</sup> 한편 건국대농성점검사건에서도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放火罪, 특수공무집행방해罪,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罪 등이 적용되었으며 이 당시에는 다음表에서와 같이 여러大學의 학생이 관련되었다.<sup>67)</sup> 또한 自民鬪, 民鬪의 사건에서도 복귀노선을 본떠 폭력혁명선동 혐의로 保安法이 적용되었다.<sup>68)</sup>

63) J. E. Anderson, Public Policy-making, 3rd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4), p.102.

64) 정정길, 前掲書, p.57.

65) 東亞日報, 85.10.3

66) 中央日報, 86.1.16

67) 한국일보, 86.12.3

68) 조선일보, 86.8.31

이상 사건의 특징이 여러大學의 多數學生이 關連된 것으로 表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表Ⅲ-16> 主要學生集團行動事件과 關聯者

	관 련 대 학 명	規 制 法 規	기 준
美文化院 검거사건 1)	서울大(8)	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②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③국가안보법 ④특수공무방해치상	선 고
	고려大(4)		
	연세大(4)		
	성 대(3)		
	西江大(1)		
建 國 大 검거사건 2)	서울大(75) 한양大(19)	①保安法 ②放火罪	기 소
	고려大(60) 경희大(15)		
	연세大(60) 國民大(13)		
	한신大(25) 이화大(6)		
	서강大(25) 한성大(6)		
	시립大(25) 숙 대(5)		
	건국大(23) 기타大		
	건국大(23) 기타大		
民 民 歸 · 自 民 歸 사건 3)	서울大(68) 계명大(2)	①保安法	기 소
	고려大(23) 경남大(2)		
	연세大(23) 전남大(2)		
	成 대(18) 한양大(3)		
	서강大(6) 덕성여과(2)		
	이화大(1) 숙 대(1)		
	경북大(4) 中央大(2)		
	기타大		

상기<表Ⅲ-16>의 주요사건의 최근 학생집단행동 관련 구속자 현황을 보면 다음<表Ⅲ-17>과 같다.<sup>69)</sup>

<表Ⅲ-17> 최근주요사건관련 학생구속 현황  
( 86.5.28 현재 )

사 건 명	발행일시	연행자	구속자	기소자
서울大民推委	85.10.19	26	26	26
美商議점거	11. 4	14	14	14
민정당연수원농성	11. 8	191	191	83
光州美文化院	12. 2	9	9	9
서울大연합시위	86. 2. 4	252	223	74
永登浦驛앞시위	2. 5	14	9	5
고속터미널시위	2. 5	17	15	7
全經聯會長室점거	3.18	16	16	16
대구개헌현판식	4. 8	146	12	12
다산·보임기획	4.14	14	14	12
서울大鬻大농성	4.29	123	27	13
仁川시위	5. 3	319	100 (총구속 155)	
부산美文化院	5.21	21	21	
계			677	

그런데 刑事司法處罰政策을 執行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規制政策의 執行의 效率性を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69) 中央日報, 86.5.28

1) 東亞日報, 85.10. 3

2) 한국일보, 86.12. 3

3) 조선일보, 86. 8.31

첫째, 學生集團行動과 관련된 刑事處罰政策의 최종 政策決定인 司法府의 판단에 대한 外部의 介入이 決定을 왜곡시켰다는 점이다. 71년의 司法 動과 88년 6.15 法官서명과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비록 71년의 사법과동이 外勢에 대항한 사법부의 自救策이라 규정하고 6.15 법관 서명이 司法權의 獨立을 위한 司法府內의 正風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다 시국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共通의이다. 즉 71년의 사법과동은 시국사건에 대한 無罪선고 영장기각등에 대한 검찰의 法官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며 최근의 6.15 법관서명과동 또한 72년 10月維新 이후 80년도이래 시국사건의 量型 同一化 현상과 청와대의 量型고수라는 不文律에 법관들이 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70)</sup>

法官의 판결도 하나의 刑事司法政策에 대한 政策決定이다. 따라서 이 政策決定이 政治的 壓力이나 협상으로 이루어 질때 規制政策 Penalty의 正當性, 道德性, 公正性은 상실된다. 다시말하면 양심과 道德心에 의거한 判決에 의함은 물론 法規適用上의 輕重이 行動規定과의 차이에서 나온 處罰의 차이일때 만이 그것이 바로 公正한 것으로 受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道德性과 公正性 등이 모두 거부될 때 법정소란 및 이에 대한 不服과 抵抗이 계속되는 것이다. 최근 법관서명과동 후 保安法위반학생이(시립大K군) 구속 기소되었다.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로 이례적 판결이 나온것은 國家保安法 위반행동에 대한 개념정의와 구성조건의 해석에 있어 政策問題의 범위와 개념정의를 公正하게한 경우로 볼수 있는 것이다.<sup>71)</sup>

이와 같은 法院의 規制處罰에 대한 決定외에도 민정당에서는 國家保安法, 社會安全法, 社會保護法, 集示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改正할 것을<sup>72)</sup> 政策議題化 (Agenda Building)했으며 治安本部도 大學生들의 단순한 反政府시위나 對政府批判등의 活動에 對하여는 국가보안법차원에서 수사하는 지양할 것을<sup>73)</sup> 또한

70) 中央日報, 88.6.18

71) 中央日報, 88.6.23

72) 中央日報, 88.6.16

73) 東亞日報, 88.2.20

政策問題化 하였다는 것은 바로 政策執行이 政策目標을 修正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國家保安法과 社會安全法, 社會保護法, 集會 및 示威에 관한 法規制政策의 內容이 不分明하고 개념이 포괄적이어서<sup>74)</sup> 反政策活動을 反國家行爲로 處罰하는 政策執行機關 및 집행자의 資質上의 問題가 政策執行을 失敗케한 요인으로 作用했음을 인정하는 政策過程上의 誤謬(1,2,3종 오류)와 權威의 남용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일반범죄에 대한 의사결정상의 오류의 크기로 보면 다음과 같다.

治安政策은 주로 國民의 신체와 財産을 保護하고 社會의 安寧秩序維持를 主要機能으로 遂行함을 目的으로 이루어 지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國民의 신체와 財産의 保護를 判斷 내지 決定의 誤謬(Error)로 부터 保護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法律適用 및 證據상의 지식부족이나 情報缺乏에서 發生할 수 있는 誤謬의 範圍와 이 Uncertainty가 어떤 問題를 야기시키는가의 問題제기에 局限한다.

法院의 判事 및 行政府의 法律執行官인 檢事 및 警察이 犯罪의 成立認定이라는 意思決定을 行함에 있어 意思決定의 基準에 對한 主觀的인 判斷, 周圍環境 및 意思決定時 動員되는 情報의 水準등의 要因으로 어느정도의 主觀的 決定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게 된다. 이는 意思決定過程(Decision-making process)에서 오는 2가지의 分明한 위기(Risk)을 갖게 되는데 이를 犯罪問題의 狀態假定과 關聯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2가지 중의 決定(choice) 즉 採擇과 棄却의 關係에서 보면 다음<表Ⅲ-18>과 같은 4가지의 可能的 結果가 나타난다.

<表Ⅲ-18>의 意思決定의 경우 I과 IV의 경우에는 正當한 意思決定이 이루어진 경우가 된다. 즉 犯罪의 認定에 있어서 罪가 없다라고 피고인의 innocent의 주장(H<sub>0</sub>로 귀무 假說의미)을 採擇함으로써 옳은 決定으로 본것이고 IV 또한 罪가 있다는 Guilty의 주장이나 판단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지 않고 採擇함으로써

74)

		犯罪問題의 決定狀態	
代案의 選擇	H <sub>0</sub> 의 採擇	옳은 결정(I)	第2種 誤謬(III)(β오류)
	H <sub>1</sub> 의 棄却	第1種 誤謬(II)(α오류)	옳은 결정(IV)

正當한 意思決定이 이루어진 (H<sub>1</sub>으로 對立假說을 의미)形態가 된다. 그러나 II와 III은 意思決定이 과오(Error)를 犯할 確率이 介入됨으로서 II는 innocent 한 사람(H<sub>0</sub>가 眞)을 Guilty한 것으로 분(H<sub>0</sub>를 기각)으로서 意思決定의 오류를 犯한 경우가 되는데 이를 제1종오류(Type I Error) 혹은 알파오류(α Error)라고 하여 統計學에서 有意水準을 나타내 주는 것을 의미한다. 反面 III은 피의자의 犯罪사실을 인정하는 즉 Guilty한데(H<sub>1</sub>眞인 경우) innocent한 것으로 보아(H<sub>0</sub>를 採擇)석방해버리는 意思決定을 함으로써 행하는 오류이다. 이를 第2種誤謬(Type II Error) 혹은 베타오류(β Error)라고 한다. 상기 2가지 오류 모두가 犯罪의 意思決定面에서 重要的 의미를 지닌다. 罪없는 사람을 있게 採擇하는 意思決定은 人權面에서, 罪있는 자를 석방하는 것은 法秩序維持 側面에서 各各 縮小·제거되어야 하겠지만 보통 統計學에서 주관심의 對象이 되고 또 犯罪問題의 處理에 있어서도 특별히 유념해야 할 意思決定上의 오차 및 과오는 α오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警察·檢察·法院의 犯罪分析統計資料를 바탕으로 이 알파오류(α Error)를 추적해 보면 다음<表III-19>에서 根據를 찾아 볼 수 있다.

<表III-19>

警察과 檢察의 刑法犯意思決定 比較

(單位: %)

		財 產 犯 罪		強·暴力犯罪	
		起 訴	不 起 訴	起 訴	不 起 訴
警察의	意思決定	66.1	33.3	93.7	4.1
檢察의	意思決定	29	68.8	57.9	60.2

즉 <表Ⅲ-19>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起訴와 不起訴의 意思決定을 行함에 있어 起訴權이 檢事에게만 있기 때문에 獨自의 權限行事的 結果라고 보는 사람도 없지 않으나 法執行이 지속적 성질의 것에 국한될때 同一한 法律執行者로서 意思決定을 行함에 있어 이렇게 크게 차이가 發生하는 것은 즉 起訴가 65.1%→29%, 93.7%→57.9%로 縮小된 反面, 不起訴率은 33.3→68.8%와 6.1→40.2%로 각각 增加했을 뿐 아니라 특히 無嫌疑가 增加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犯罪의 인정이라는 意思決定過程에서 information 내지 Evidence의 採擇에 따라 uncertainty에 의한 Type I Error의 發生이 달라짐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또한 法院의 判決이라는 意思決定에서 警察과 檢察의 意思決定上的 오류를 追加確認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表Ⅲ-20>에서 確認할 수 있는 刑法犯에 對한 재판이라는 意思決定이다.

<表Ⅲ-20> 刑法犯裁判意思決定

83年度裁判 接 受	處 理 結 果			
	無 罪	公 訴 起 却	管 轄 違 返	其 他
67,944	334	2,544	3	65,063

資料：法院行政處 司法年監, 1984年 pp.604-605.

주 裁判의 意思決定上的 나타나는 無罪, 公訴起却 등은 警察과 檢察의 犯罪認定에 對한 information 혹은 Evidence不充分에서 오는 Error의 確認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警察의 犯罪意思決定上 誤謬의 擴大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左傾·容共의 용어개선 방침을 시달한 것은 좌경·용공의 概念定義가 人權을 侵害할 수 있는 用語들로서 政策對象集團에 대하여서도 크게 抵抗되어온 점을 시인, 정확한 문제의 概念定義를 시도하고 있음도 處罰의 規制政策決定 및 執行에 있어 큰 要因으로 作用해왔음을 分析할 수 있다.<sup>75)</sup>

75) 中央日報, 88.2.24

둘째, 犯罪者로 規定된 集團行動 위반자들에게 대한 赦免·復權과 석방이 行刑法에 명시된 개전의 정도등의 客觀的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政策決定이 아니라 政治的 계기와 政治的과정에서 이루어진 다는 점이다. 法秩序維持를 目的으로 하는 保護的規制政策 특히 刑罰政策은 漸進主義 model에 의한 協商등으로 政治的合理性에 의존하는 合理Model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때 6.10 南北學生會談 구속학생에 대하여 黨政協議를 통하여 政府에 大幅석방을 건의하는 과정<sup>76)</sup>은 規制政策執行上의 一貫性和 公正性を 파괴하여 失敗要因을 增大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1988.2.27일의 6共和國出凡을 기한 「大和舍」명분의 赦免·復權<sup>77)</sup> 등 70년대 이후 時局사변에 대해 적용되어온 규제정책의 檢證주의적 結정은 規制政策 특히 法에 대한 權威의 상실을 초래하고 順應確保의 失敗요인으로 作用하게 될 수 있다.<sup>78)</sup>

이와같은 政治的 協商에 의한 處罰政策의 운용은 다음 表에서와 같이 政治體制의 變動이 이룰때 대체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動機는 「國民和舍」이었으므로 前述한 主要學生集團行動事件 예컨대 三民騷事件, 서울美文化院사건, 民民鬪, 自民鬪사건, 民正黨연수원방화사건등의 關係자들이 대부분 處罰刑量 및 개전의 정도와 關係없이 석방되었으며 이들의 석방은 역시 다음 사건의 主動자로 다시 규제대상이 됨으로 規制政策의 處罰手段만으로는 惡순환만 거듭했을 뿐 問題해결에 接近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석결과 알수 있다.

지금까지 東示法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속되어 3년미만의 實刑을 선고 받은 사람을 罪質別로 入營시키던 受刑者入營處理指針이 學生들로 부터 政治的 不當징집, 強制入營 등으로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 바꾸기로 한 것은 政策執行과정에서 政策

76) 한국일보, 88.2.27

77) F.S Coombs, op. cit. p. 891.

78) 한국일보, 88.2.27

<表Ⅲ-21> 歷代大統領취임 경축 사면복권 현황표 79)

경 축 대 상	실시시기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비 고
제 2 대 대통령취임	52. 8. 15		3,227		일반감형병행
제 3 대 대통령취임	56. 8. 15	1,140	649		
제 5 대 대통령취임	63. 12. 16	94	16		민정이행
제 6 대 대통령취임	67. 7. 1		1,476		
제 7 대 대통령취임	71. 7. 1	324	3,987		
제 8 대 대통령취임	72. 12. 27	1,203	5,017		유신헌법시행
제 9 대 대통령취임	78. 12. 27	988	3,087		벌금형수형자
제 10 대 대통령취임	79. 12. 23	561	31		일반복권
제 11 대 대통령취임	80. 9. 1	516			
제 12 대 대통령취임	81. 3. 3	2,417	646	167	
제 13 대 대통령취임	88. 2. 27	4,548	835	992	

目標을 수정하고 政策決定을 變更시키는 政策의 循環性을 찾아볼 수 있다. 80) 이상을 규제정책의 修正過程에서 보면 다음表와 같다.

<表Ⅲ-22> 規制法規의 問題點과 政策修正

	政 策 問 題	政 策 修 正
國家保安法	「反國家團體」등의 概念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남용·오용의 소지가 많고 「찬양·고무·동조에 의한 利敵罪등이 統一論議개	政策問題에 대한 概念의 定義를 明確케 하고 目的犯에 한하여 處罰토록 함.

79) 한국일보, 88.2.27

80) 조선일보, 88.7.17

	政 策 問 題	政 策 修 正
	방과 東歐圈과의 交流擴大 등 時 代的  추세에  일치하지  않음	
集會 및 示威 에  관한 法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관한  단 속범규에  의하거나  위반할  우려 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함 으로서  政策問題의  범위와  概念 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 해왔음.  또한  옥내외집회  모두 경찰이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 는  출입조항이  있음.	「  위반할  우려규정을  삭제하고 위반  」하는  집회  또는  시위로  하 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 로  현저한  위험을  주는  집회  또 는  시위로  함으로서  政策問題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함.  금지 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부여함. 집회허산을  경고한후  不應시  해 산토록  하고  옥내집회의  직무수 행상  必要한  때  만으로  한정
社會保安法	보호감호처분은  징역,  금고와  같 은  刑罰인데  行政處分으로  결정 하여  人權侵害의  소지  많았음. 보호감호처분결정시  감호대상여 부에  대한  판단과  감호기간산정 에  법원의  재량권이  制限되어  있 음.	處分權者를  行政府가  아닌  法院 의  決定을  거치도록  함. 법원의  재량폭을  擴大함
경찰관직무 집행법 경범죄처벌법	임의동행요구로  人權侵害 사례가  많음.	임의동행거절.  답변  강요당하지 않음.  장기불법구금제도화

자료 : 한국일보 88.7.1 및 中央日報 88.6.16.

2) 教育政策上的 規制와 誘因

- (1) 卒業定員制 實施
- (2) 卒業論文制 實施
- (3) 政策教科目的 負擔加重
- (4) 分擔指導 教授制
- (5) 獎學制度的 戰略化

3) 學則上的 懲戒處罰등 對應

大學의 學生集團行動에 대한 對應政策은 規制의 완화와 制度的 改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規制緩和對應政策으로서는 학사제명제도의 廢止와 政治活動금지規定의 緩和을 들 수 있다. 학사제명제도를 없애는 대신 성적관리규정을 嚴格히 준수, 敎育의 질관리를 하기로 했으며 종래의 학생은 정치활동을 할수 없다는 規定을 정치활동이라는 제한을 없애는 대신 敎育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은 할 수 없다고 하여 다소 소극적규제에 한정하였다.<sup>81)</sup>

그리고 학생징계문제는 大學의 敎育自律權에 속하면서도 文敎部가 시국관련학생에 대한 처벌시침을 만들어 시행을 강제해온 내용에 의하면 구속기소돼 형확정판결을 받은 학생은 제적, 집행유예학생은 무기정학, 기소유이 또는 혼방된 학생은 유기정학 또는 근신·주의·처분토록 한 것인데 비에 대한 各 大學間의 징계처리 내용 및 절차가 衡平을 유지하지 못하고 一貫性없이 집행됨으로 해서 政策執行과정에서 불만과 갈등이 야기되어 왔는데 文敎部가 새로운 示威확신을 우려하여 各 大學에 징계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各 大學은 징계완화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게 되는 他律的 規制執行이 이루어져 왔다.<sup>82)</sup>

그리고 또한 88.2.27 일 文敎部의 各 大學에 대한 지시로 이루어진 釋放 大學生 特例再入學시침에 따르면 대사면조치로 석방되는 大學生 가운데 학원사대관련자로 개

81) 동아일보, 88.2.20

82) 한국일보, 88.4.9

적된 자는 再入學시키도록 政策指示가 이루어 졌다. 따라서 서울大들은 87年7월 특별재입학조치로 83年12月부터 87.7.16까지의 제적생에 대해서는 학원사태 제적생뿐 아니라 성적不良학사제명자까지도 구제대상에 포함 626명을 재입학 조치함으로써 제명·제적등의 學事規制政策이 一貫性, 公平性없이 이루어졌을뿐 아니라 政策決定機關의 政策指示에 의하여 大學의 규제정책이 左右되어왔던 것이다.<sup>83)</sup>

한편 制度改善에 의한 對應으로는 大學生군사훈련의 改善과 國民倫理등 政策科目의 필수제 폐지건의등의 이루어짐으로서 學生集團行動의 요인을 축소하려는 政策執行活動이 誘因의 形態(incentives)로 이루어져 왔으며<sup>84)</sup> 60年代末과 70년대의 高級公務員(文教部 安企部등)으로의 特採도 한 방편이었다.

셋째, 이상의 두측면에서 分析된 集團行動에 대한 違法性的 決定 및 執行은 政策對象集團인 學生集團으로 하여금 既存가치체계와 갈등관계를 目標와 信念面에서 야기시킴으로서 不應의 요인을 갖게되고 政策目標나 기준이 不明瞭하고 政策의 토대가 正當性에 기초를 두지 않음으로서 權威의 缺如 및 政策執行機關 및 政策決定機關은 예컨대 法院, 行政府, 大學에 대한 不信 및 能力 不足등에서 不應 要因이 反復되어 表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表Ⅲ-23>

서울大의 學生集團行動과 規制政策

時 代 別	서울大中心의 學生運動內容과 對應政策
1940年代의 社會參與	光復과 서울大創建：國大案과동－官僚理事會體制운영, 학생등록거부, 맹휴, 시위등으로 國大案反對 ( 1948.8 ) 學徒護國團結成－政府主導의 準군사적 조직 ( 1948.8.15 )
1950年代의 社會參與	戰亂과 大學의 수난：非常學徒隊, 學徒義勇隊組織－保國入隊 ( 1950.6.29 )

83) 中央日報, 88.2.27.

84) 中央日報, 88.6. 8

時 代 別	서울大中心의 學生運動內容과 對應政策
1960 年代의 社會參與	<p>부산정치파동과 民主守護宣言 : 이승만 계속집권과 독단정치에 反對 1차개헌</p> <p>4.19 革命 : 3.15 부정선거에 항의 文理大生中心으로 자유항거선포 ( 1960.4.19 )</p> <p>새생활 운동 : 국민몽과 생활양식개조를 통한 社會현실개선 ( 1960.6.10 )</p> <p>민족통일운동 : 중립화론, 남북협상론의 평화통일론 주장. 서울大民族總연맹조직 ( 1960.11 )</p> <p>남북학생회담환영 및 통일촉진궐기대회 ( 1961.5.13 )</p> <p>서울大學生會부활 : 서울大總學生會 출범 ( 1960.5.23 )</p> <p>鄉土開拓團운동 : 5.16 革命 - 재건국민운동정책동조 ( 1961 ~ 1963 )</p> <p>韓·美行政協定체결촉구와 軍政연장반대 : 군정下의 언론집회 결사자유제한속에서 자유수호결의대회개최, 군정연장반대 ( 1963.3.19 )</p> <p>韓·日會談 및 韓日協定批准反對운동 : 굴욕외교反對주장 威令發動 ( 1964.3.24 )</p> <p>三選改憲反對운동 : 학원사찰중지 및 음성적개헌공작 철회주장, 무기휴강 ( 1969.6.12 )</p>

時 代 別	서울大中心의 學生運動內容과 對應對策
1970 年代의 社會參與	<p>노동조건개선운동 : 청계피복상가의 非人間勞動현실에 항거 ( 1970.11.13 ), 休業令, 衛 令</p> <p>교련철폐 : 교련수강신청거부</p> <p>維新체제 철폐운동 : 유신철폐운동 자유민주체제확립무장 개헌서명운동, 大統領긴급조치 1 號, 4 號선포 9 號까지발포 ( 1973.10.2 )</p> <p>교련강화反對 및 공명선거운동 : 학원大民主化운동지침 발표 ( 1971.3.2 )</p> <p>釜馬事態 : 반유신民主化운동(부산 : 비상계엄, 마산 : 위수령) ( 1979.10.18 )</p> <p>10.26 사건 : ( 1979.10.26 )</p> <p>學生再入學특례규정 ( 1980. 3 )</p> <p>1974.1.8부터 1979年 12.8일 사이에 제명된자 제적된자 자퇴한자에 대한 재입학허용( 1980.3 )</p> <p>5.17사태 : 1980.11.29 입법회의에서 「 현저히 사회적불안야 기시킬 우려있는 집회 및 시위 」금지조항신설함으로서 학 생시위 사전규제강화의 제도적장치 마련</p> <p>반과소민주투쟁선언 : 이때 문교부는 「 학원질서 확립촉구 」계 고장유 서울大에 보냄 ( 1981.3.19 )</p> <p>학원자율화 : 제적학생복교 ( 1983.12.31 )</p> <p>대학상주경찰병력철폐 ( 1984.2.29 )</p> <p>학원안정법개정추진반대 : ( 1985 여 방학) 학원안정법 저지 감사투쟁위원회 구성</p> <p>全學生총연합회 : 三民鬪, 自民鬪와 民民鬪등 조직 美文化院점 거농성사건발생</p>

時 代 別	서울大中心의 學生運動內容과 對應政策
	교수서명 : (大學의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건해 시국선언문발표) 改憲 및 民主化열기고조 ( 1986.4.11 )

\* 이상의 자료는 서울大學校 40年史 ( 1986.10 ), 서울大 40年史 편찬위원회 pp.38-661 에서 拔萃한 것임.

## 第 4 章 우리나라 學生集團行動의 行態分析 (80年代)

### 第 1 節 集團行動 paradigm의 變遷

우리 나라 學生들의 集團行動은 斷層的 資料나 視覺으로만 보아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 行動自體가 일시적 현상의 빈도적 연장이 아니라 맥락적 연장의 특성을 지니며 이와 연관되는 環境的 요인이 역사적·시대적·疏外的 要素으로 변화와 자극을 주었기 때문이다. 즉 日帝下의 암흑기에는 民族的 民衆運動의 艱苦境으로서 自主獨立의 가치를 旗幟化하였으며, 50년대에는 自由, 60년대엔 社會正義의 聲동을, 그리고 70년대엔 이들 가치가 共存하면서 80년대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80년대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80년대엔 이들 行動行態의 가장 기초적이라 볼 수 있는 paradigm<sup>1)</sup>의 轉換이 있다고 보아지며 이것은 80년대 이전의 것과는 상이한 것으로 거기에는 純善한 政治的 利益集團的 性格, 社會心理的 集合行動의 의미와 政治·文化·宗教 등의 이데올로기적 전환이 있음을 發見하게 되고 行動결정의 犯罪經濟學的 기준 적용요소가 가입된 것으로 이해 다음 분석해

1) 여기에서 패러다임(paradigm)은 集團行動行態의 狀況과 關係되는 變因들의 連綿의 關係를 分析模型의 의미에서 사용한 것으로 分析的 說明에서 가장 共通分母의이고 方法, 理論, 道具 등을 제시하는 母體요 가장 '基調的인 것'을 의미한다.

時 代 別	서울大中心의 學生運動內容과 對應政策
	교수서명 : (大學의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건해 시국선언문발표) 改憲 및 民主化열기고조 ( 1986.4.11 )

\* 이상의 자료는 서울大學校 40年史 ( 1986.10 ), 서울大 40年史 편찬위원회 pp.38-661 에서 拔萃한 것임.

## 第 4 章 우리나라 學生集團行動의 行態分析 (80年代)

### 第 1 節 集團行動 paradigm의 變遷

우리 나라 學生들의 集團行動은 斷層的 資料나 視覺으로만 보아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 行動自體가 일시적 현상의 빈도적 연장이 아니라 맥락적 연장의 특성을 지니며 이와 연관되는 環境的 요인이 역사적·시대적·疏外的 要素으로 변화와 자극을 주었기 때문이다. 즉 日帝下의 암흑기에는 民族的 民衆運動의 艱苦境으로서 自主獨立의 가치를 旗幟化하였으며, 50년대에는 自由, 60년대엔 社會正義의 聲동을, 그리고 70년대엔 이들 가치가 共存하면서 80년대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80년대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80년대엔 이들 行動行態의 가장 기초적이라 볼 수 있는 paradigm<sup>1)</sup>의 轉換이 있다고 보아지며 이것은 80년대 이전의 것과는 상이한 것으로 거기에는 전술한 政治的 利益集團的 性格, 社會心理的 集合行動의 의미와 政治·文化·宗教 등의 이데올로기적 전환이 있음을 發見하게 되고 行動결정의 犯罪經濟學的 기준 적용요소가 가입된 것으로 이해 다음 분석해

1) 여기에서 패러다임(paradigm)은 集團行動行態의 狀況과 關係되는 變因들의 連綿의 關係를 分析模型의 의미에서 사용한 것으로 分析的 說明에서 가장 共通分母의이고 方法, 理論, 道具 등을 제시하는 母體요 가장 '基調的인 것'을 의미한다.

서 입증된다. 특히 集團行動 paradigm의 80년대 이후의 顯在化된 이데올로기적 경향은 1945년 8·15 해방 이후의 潛在的 不純意識의 뿌리에서 그 맥을 이어 올을 알 수 있다.

즉 8·15 해방 직후 서울대의 國立大學反對를 주장한 좌경의식화된 서울대 일부 학생들의 테러행위가 48년 第1共和國의 수립과 더불어 地下化했다가 50년 6·25를 전후로 뚜렷한 좌경集團構成員으로 表面化한 것이 左傾化의 絶頂을 이루었다. 그 이후 60년 4·19의 사회혼란을 이용, 60년 11월 民族統一聯盟을 결성하여 學生시위를 주도하는 등 活動을 계속하다가 61.5.16 군사혁명으로 社會가 안정되자 다시 地下化하여 64,65년의 韓·日會談 反對, 67년의 6·8총선 부정규탄, 69년의 三選改憲反對, 73~79까지의 維新撤廢 등의 社會혼란이 일어날 때마다 學生시위에 적극 가담 혹은 배후선동·조장 등으로 學生은 물론 一般市民의 糾합에 核心을 이루며 그 맥을 지속적으로 승계시켜 意識 및 半意識의 그룹수를 擴充해 왔으며 79.10.26, 80.5.17의 國家的 위기에 그 勞力の 위력을 광주사태와 부산 美文化院事件 등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적 成分의 學生集團은 83년 12월의 學團自律化政策의 發表와 함께 本格的인 意識化 혼란을 착수하여 서울대의 ‘武裝蜂起構想’ 사건과 85년의 美國유학생 간첩단 학원침투사건 등으로 이어지면서 各種 學生集團行動의 사건들에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學生集團行動의 요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동기에 의하지만 80년대 이후의 양상은 이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일부 학생에게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새로운 변화라고 보여진다.

## 第2節 集團行動의 動因

본지에서 사용될 分析의 틀은 集團行動에 관한 小集團論의 社會心理學的 概念變數를 援用 내지 變用한 것이다. 이 이론은 전술한 바와 같이 리더십, 役割類型, 분위기, 성격, 응집성, 規範의 6개 變數로서 集團行動을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同

서 입증된다. 특히 集團行動 paradigm의 80년대 이후의 顯在化된 이데올로기적 경향은 1945년 8·15 해방 이후의 潛在的 不純意識의 뿌리에서 그 맥을 이어 올을 알 수 있다.

즉 8·15 해방 직후 서울대의 國立大學反對를 주장한 좌경의식화된 서울대 일부 학생들의 테러행위가 48년 第1共和國의 수립과 더불어 地下化했다가 50년 6·25를 전후로 뚜렷한 좌경集團構成員으로 表面化한 것이 左傾化의 絶頂을 이루었다. 그 이후 60년 4·19의 사회혼란을 이용, 60년 11월 民族統一聯盟을 결성하여 學生시위를 주도하는 등 活動을 계속하다가 61.5.16 군사혁명으로 社會가 안정되자 다시 地下化하여 64,65년의 韓·日會談 反對, 67년의 6·8총선 부정 규탄, 69년의 三選改憲反對, 73~79까지의 維新撤廢 등의 社會혼란이 일어날 때마다 學生시위에 적극 가담 혹은 배후선동·조장 등으로 學生은 물론 一般市民의 규합에 核心을 이루며 그 맥을 지속적으로 승계시켜 意識 및 半意識의 그룹수를 擴充해 왔으며 79.10.26, 80.5.17의 國家的 위기에 그 勞力の 위력을 광주사태와 부산 美文化院事件 등에서 보여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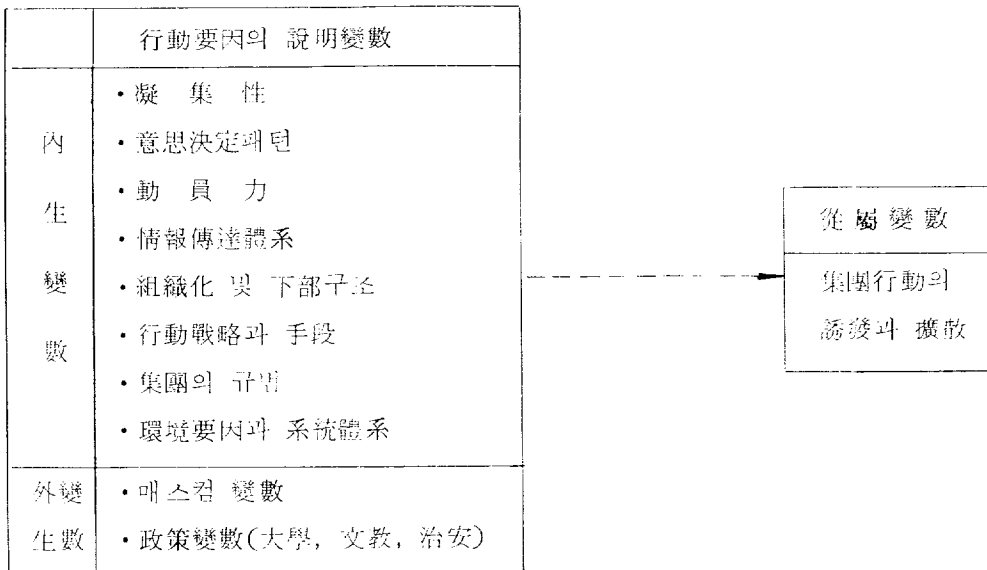
이 이데올로기적 成分의 學生集團은 83년 12월의 學團自律化政策의 發表와 함께 本格的인 意識化 혼란을 착수하여 서울대의 ‘武裝蜂起構想’ 사건과 85년의 美國유학생 간첩단 학원침투사건 등으로 이어지면서 各種 學生集團行動의 사건들에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學生集團行動의 요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동기에 의하지만 80년대 이후의 양상은 이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일부 학생에게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새로운 변화라고 보여진다.

## 第2節 集團行動의 動因

본지에서 사용될 分析의 틀은 集團行動에 관한 小集團論의 社會心理學的 概念變數를 援用 내지 變用한 것이다. 이 이론은 전술한 바와 같이 리더십, 役割類型, 분위기, 성격, 응집성, 規範의 6개 變數로서 集團行動을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同

學生의 集團行動에 관한 연구에서는 細分하여 凝集性, 意思決定 패턴, 動員力, 情報傳達의 體系, 조직화 및 하부구조, 行動戰略과 手段, 集團의 規範, 環境要因과 系統體系의 8개 內生變數와 매스컴과 政策變數의 2개 外生變數를 追加變形하여 사용키로 한다. 왜냐하면 첫째, 小集團論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던 意思決定 pattern이 學生들의 集團行動 쪽에서는 行動을 誘發시키는 결정적인 변수로 다루어지므로 이를 役割類型에서 변형했으며 둘째, 小集團論에서 leadership으로 강조되었던 것을 學生動員 및 參加誘導에의 권위로 보아 動員力 즉 動員의 힘으로 봄으로써 이에 독특한 權威(authority)의 作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끝으로 communication 體系, 下部構造 및 조직화, 行動代案의 선택 등을 追加함으로써 集團行動의 環境的 요소에의 投入(input)과 學生들의 支持와 反對, 요구와 욕구 등을 產出(output)로 轉換(conversion)시키는 과정의 특이성을 能率

< 分析의 틀 >



의 次元에서 보고, 이때 이를 行動者(actors)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및 규범을

동시에 봄으로써 어떤 행동이 가능하리라는 產出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들 變數間의 관계 또한 이상 10 개의 動因變數가 集團行動의 횟수와 양상에 미치는 영향 못지 않게 궁금한데 이들의 상호 영향력의 방향은 一方的이 아니어서 因果模型(causal analysis)의 검증은 어려울 뿐 아니라 論爭의 소지가 있게 되므로 주로 多重回歸分析(multiple regression)에 의존하게 되는데 향후 과제연구에서 주요 分析技法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에서 이들의 關係를 도식으로 제시하면 이상의 表와 같다.

이상의 分析들에서 제시된 變數(variables)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集團行動 凝集力(cohesion)形成과 意思決定 model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일련의 行動에 參加하게 될 때에는 우선 이들이 어떤 요인으로 結集(aggregate or grouping)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모인 집단은 다시 어떻게 結束(cohesion)하게 되며 다음 이 집단은 어떤 意思決定(decision-making) 과정을 거쳐 行動化(action)하는가 하는 過程이 分析해 볼만한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1) 結集要因(aggregation factor)

自律化 이후의 學生集團行動의 結集要因은 行動促發의 요인을 多元化시킨 데 특징이 있다. 우선 일차적으로 그 소재를 市民 및 一般學生의 生活面에서 찾아 이를 刺戟적으로 각색시켜 제시하는 점이다. 즉 軍입대, 동료의 사망, 女學生醜行, 統一, 總選, 광주사태, 勞動, 農民, 庶民生活의 現場調査, 市場 및 產業體에 원정, 택시, 木洞, 勞動사태현장 개입 등으로 參與함으로써 國內에서는 一般學生, 學外에서는 宗教, 勞動, 在野의 자극을 통한 一體感을 形成시킴으로써 結集을 시도한 다음 단순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不滿의 단계를 넘어 우리 社會 體制 全般을 부정하고 體制를 타도하는 社會革命을 주장함으로써 結集된 참가자의 行動目標을 巨

視化시켜 行動을 合理化한다. 이는 82년 4월의 釜山美文化院放火事件, 84년 10월의 民推委事件, 85.5월의 서울 美文化院 점거농성사건, 85.11월의 民正黨 점거농성사건 등에서 目標를 現體制의 폭력에 의한 타도에 돌으로써 結集이 가능케 된 것이다. 이외 民正黨연수원점거사건은 기망·강제에 의한 動員도 상당수 포함 된 경우이다.

## (2) 結束要因(cohesion factor)

다음으로 이들 集團成員을 結束(cementation)시키는 방법상의 특징으로는 행동하기 전에 철저한 精神結合을 段階的 節次에 의하여 形成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大學生들의 意識化이다.

意識化란 意識(consciousness)에서 상징화된 말로서 자각하고 알아차림을 의미한다. 즉 사물을 깨닫고 分別하는 마음의 작용으로 넓기는 知·情·意를 포함한 정신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大學生들의 意識化도 같은 맥락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그것이 부정적 偏頗的이라는 데서 그 깨달음과 分別力이 왜곡된 데에 문제가 있다.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인식하고 意識할 때에는 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며 또 그 內面的 關係는 因果論理가 形成되어 있음에도 그 현상을 일방적으로 보도혹 유도함으로써 사람은 否定的 潛在을 갖게 되며 이에 의한 선입견이나 잠재력은 순간적인 판단을 合理的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지금 大學生들이 集團行動의 結束作用으로 동원하고 있는 의식화는 政治的으로 현 社會制度는 特權層과 資本家계층만 위주로 함으로써 여타 계층은 소외되고 억압 받았다는 것과 經濟力도 수탈당하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차별을 받음으로써 학생, 농민, 근로로자 및 진보적 지식인의 民衆은 스스로 깨어나 원리를 찾아야 한다는 論理로 주장함으로써 이런 行動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意識化 作用은 대체로 6 단계로 進行되는데 1段階는 人物選定 및 良書 권유 단계이며 2段階의 분위기 조성단계, 3 단계의 합숙교육훈련을 거쳐 4段階의 學習實驗과 5 단계의 實踐行動方案 모색이 지나면 최종 6 단계에서 비로소 實行段階에 돌입하게 된다. 이를 대체로 4 단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 단계로 理想化 위주 서클 및 學會活動을 위해 매년 3월 신학기가 되면 이념서클의 멤버들을 學緣과 地緣위주로 임직히 선발한다. 이때 주로 고교성적, 지능지수, 리더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다음으로 가족관계에서 장남이 아닌 자, 지방출신, 소시민 가정출신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新入生 환영회를 통하여 參與意識을 고취시키고 現實의 환상을 꺾고 서클活動을 강조함으로써 '별깨기' 작업이 시작되고 新入生の 순수성과 불같은 情熱, 그리고 냉철한 理性과 높은 理想을 토대로 몇 차례 별깨기 작업의 모임이 있는 동안 社會의 전위역할 의식을 갖도록 한다. 다음 별깨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이때 주어진 교재인 地下新聞, 不法刊行物(깃발 1,2 號·이화언론) 등을 탐독, 發表와 討論을 통해 信念을 확립시켜 나가게 된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MT(membership training), 외부인사초청강연, 현실비판사례조사발표, 현실 풍자마당극, 데모 노래 등을 통해 問題意識의 內心化와 동료간의 一體感을 조성한 다음 실제로 2 단계에서는 農村奉仕活動, 奉奠禮의 위장취업, 캠프행사 등을 통해 자기의식심화와 의식전과를 경험한 다음 3 단계에서 학내소요지지기반을 擴充하고 대학간의 연계 및 학외의 노동, 종교, 재야와의 연계투쟁에 동의한 다음, 집단가두시위를 폭력화 시킴으로써 政治鬭爭에 이르게 된다.

끝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全過程(full course)이 끝나면 이들은 鬭士가 되며 보다 완벽한 지위확보를 위하여 한국 근대사의 연구 및 우리 강제의 마르크스 강제이론에서 본 실체들 從屬理論→解放神學→革命論을 연구함으로써 左傾化 段階에 진입하게 되고 겨울방학에는 후보 日語를 공부하여 좌익서적 탐독에 대비하며 리더로 등장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요원의 양성 및 集團結束體制는 후보 서클 중심임이 특징이다.

### (3) 行動의 意思決定過程과 模型(decision-making)

어려 個人이 關與 및 參與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이의 과정과 유형은 集團의 特性에 따라 달라진다. 즉 構成員의 가정환경, 본인의 가치관, 學校에서의 生活成就水準의 정도에 따라 意思決定過程에서 나타나는 協助나 葛藤의 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때 集團의 특성을 응집성과 合理性面에서 고려할 때 응집성과 合理性이 가장 높은 水準의 것과 그 중간, 그리고 아주 낮은 경우로 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가장 높은 경우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등이 완전히 合心하는 경우가 될 것이며, 그 反對인 가장 낮은 水準에서는 個個人的 생각과 행동이 個別化되어 흩어지는 경우일 것이다.<sup>2)</sup> 이를 조직 및 政策決定論者들이 말하는 의사결정 유형에서 찾아보면 처음 경우는 Allison의 model I (rational actor model)에 가까우며, 두번째의 경우는 Allison model II(organizational process model) 혹은 Firm model에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는 Allison Model III(bureaucratic-politics paradigm)와 Garbage can model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Allison의 모델은<sup>3)</sup> 政府의 政策決定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호배타적인 3모델을 제시한 것이지만 集團의 응집력을 中心으로 결정유형을 설명할 때는 어느 集團의 경우이든 適用이 가능하다고 보아 學生들의 集團行動에 적용해 설명의 도구로 사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Allison은 政府에 대한 假定을 Model I에서는 잘 조정된 有機體로, II에서는 半獨立적인 느슨한 하위조직 등의 結合으로, 그리고 III에서는 서로 독립적인 參與者의 集合體로 취급한다. 이 分析틀에 의할 경우 學生集團行動에 참가하는 자는 個人的 利害關係를 떠나 오직 학생집단행동체의 이익과 目標 등을 위하여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個人的 이익을 고려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이 집단의 결정과정에서 극대화해야 할 目標은 오직 集團目標뿐이며 따라서 개개인 등의 利害關係 충돌은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 그러므로 행동과정에 참여하는 個人은 능력과 의욕이 충분한 것으로 보아 長期的 行動方針 결정에도 一貫性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鄭正信, 集團의 意思決定論, 考試研究, 84-1 pp.177 ~ 179.

3) Allison G.T., *Conceptual Models and the Cuban Missile Crisis*, 1969.

이렇게 볼 때 최근의 學生集團行動이 不法團體인 三民鬪, 民推委, 民民彈 등에 수행될 때 그것도 그 집단내의 凝集要因이 ideology에 가까울 때 그것은 높은 응집성과 일사불란한 행동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Allison의 合理模型과 유사한 의사결정 행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tool에 의한 설명이 최근의 學生集團行爲를 가장 가깝게 설명할 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념화된 서술을 제외한 기타 學生들의 集團行動에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은 다시 2가지 형태로 나누어 설명해 볼 수가 있다. 즉 Model II적인 것으로 학생집단행동의 추진단계 간에 어느 정도의 半自律性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의 추진단계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下位體의 自律的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로 이때 利害關係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상호타협이 불가피해지며 양자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sup-optimum(quas-salution)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5월 혁명을 目標로 했던 全學聯 산하의 서울대의 '民民彈', 고려대의 '反民鬪', 연세대의 '光鬪委', 成대의 '三民鬪委' 등이 각각 目標達成을 위해 上位 조직의 결정에 어떻게 關與하는가? 또 서울대 內의 民推委는 '인친 勞鬪', '勞鬪', '民鬪', '弘報委', '연락책', '깃발' 등의 下位구조와 어떻게 연계를 유지하는가? 등이 이 의사결정 방법과 크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위구조의 의사결정 방법이 조직 전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하부조직들은 不確實生을 회피하여 의사결정의 원활을 위해 규칙을 습득하고 S.O.P와 프로그램 목록을 만들어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集團行動의 綱領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것이 바로 代表的인 集團行動戰術指針書이며 行動요령을 제시한 깃발 1,2 號이다. 이에 의하면 「깃발 1 號」에서 운동권의 統一性 확보 및 대중적 기반의 획득과 더불어 연대부쟁과 학교 밖으로의 進出 및 근로자와의 합동시위를 제시하고 있고 「깃발 2 號」의 目錄에서는 학생운동의 비판과 아울러 앞으로의 鬪爭方向을 제시한 것으로 제압적 모순의 타도할 목적으로 한 民衆支援鬪爭과 對政府 이데올로기 부쟁인 政鬪로 나누어 明洞, 光化門 등 중산층 밀집지역에서의 소

비지鬭爭과 복동 등 빈민층 수재지역에서의 生産地鬭爭 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學生集團行動의 추진 團體는 다음의 行動代案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을 기억장고(memory store)에 보관했다가 이와 유사한 상황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채택된 것이나 마련된 代案에서 즉시 의사결정을 하고 行動을 習慣적으로 행하는 점을 찾아볼 수 있어 최근의 學生集團行動의 의사결정 양태에서는 Allison model II의 특성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끝으로 일부 학생 중에는 개인들이 전혀 응집성이 없이 參與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model III). 構成員 사이의 응집성이 약한 경우 예컨대 集團行動을 하는 目標을 모르거나 자기 개인의 目標이 실부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은 個別的 行動을 하게 되며 個人들 간의 利害關係가 상충되는 경우 갈등이 심화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個人間에 종합조정이나 행동 통일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일사분란한 意見合致에 의한 意思決定과 行動에의 實行은 힘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최근의 學生集團行動시에 이루어지는 이들의 意思決定 모델은 意識化되어 처음부터 이터올로지 요인으로 結束되어 있는 집단에서는 주로 Allison model I에 의한 合理的 行動者의 意思決定에 따름으로써 그 結束 및 凝集이 強하고 이에 따라 行動 또한 흑백논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물론 이 結束을 解體함은 극히 어려운 일로서 별도의 對策이 뒤따라야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처음부터 各 個別그룹으로 이루어졌거나 各 大學別로 聯合하여 만든 system에서 그의 下部단위로 형성된 sub-system으로 구성된 學生團體(예컨대 傘學聯 등)라면 어느 정도 大學別, 서클별 行動單位에 대하여 獨自性을 인정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結束力이나 凝集力面에서는 Allison model I에서 보다 덜하므로 對應과 解體에 있어 各 하위단위의 주동자 내지 리더에 대해 현장으로부터의 격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Allison model III에 대한 說明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은 최근의 학생운동이 政治利益의 個別化 추구와 사회 병리적 심리, elite

의식, 犯罪經濟的 行動判斷 등으로 각 個化現象이 뚜렷해지므로 이들의 表面的 行動은 과격화되고 集團行動규모로 擴大되기도 했으나 內面的 結束力은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응은 강한 制裁와 一貫된 報復원리가 交換的으로 이루어질 때 이는 가능해질 수 있는 것으로 判斷할 수 있다. 다만, 이데올로기 요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슈가 결정적으로 주어질 때 model I에 의한 의사결정이 大學內의 各 下位團體로 그리고 大學間으로 擴散되어 model II에 의한 의사결정 형태로 연결될 때 이때의 의사결정과 行動에의 參與는 위험할 수 있으며 심히 우려될 수 있음도 예견할 수 있다.

## 2. 動員力과 communication 體系

集團行動分析의 要諦는 전술한 結集 및 結束力이 어디에 起因되느냐 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行動의 動因은 결국 그 집단내 리더에게 있으며 이 리더에게는 leadership과 그의 집단내에서의 權威(authority)類型이 또한 문제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情報를 傳達하고 集團을 사실상 움직이는 power인 communication 體系가 무엇인가가 分析의 單位와 對應戰略을 수립함에 핵심이 된다.

前述한 바와 같이 하나의 新入學生이 여러 단계의 洗腦化 過程을 거쳐 反骨 내지 關士가 된 후 女王蜂 교육을 끝내면 리더로 되고 이 리더의 위치는 上部구조가 除籍되거나 사라지면 후계자로서 자동적으로 등장하는 릴레이식 自轉體制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때 leader는 集團行動에 多數의 學生을 動員하여 目的達成 및 集團유지를 위하여 종래의 카리스마적 權威(charismatic authority)에 의한 선동으로 動員力이 설득될 수 없음을 알자 최근의 民主黨 연수원 검거사건 등에서는 야유회 등을 명차하여 숙임수와 강요로 시위 정형이 없는 지학년 등을 參加시키기도 한 것이다. 이외 최근 학생집단행동을 여성운동과 합치시켜 女學生 과워를 강화하면서 교내지위향상에서부터 主導役割까지 담당하게 한다. 이는 80년대 이후의 뚜렷한 현상으로 서울대가 79년 비교 8.4%→23.3%로, 고려대가 8.4%→23.3%로 그리고 연세대가 21%→26%로 여학생입학비율

이 높아지면서 이 중 20~30%가 集團行動에 참가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의 경우 조직이탈의 방지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 결속 상징(symbol)의 무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大學間 연계와 同時多發鬭爭을 위하여 全學聯 三民鬭委 中心의 인제강화, 역정보누설, 논조통일 등으로 노동현장과 도시문제지구엔 김부하여 소외분반 계층을 선동투쟁하고 핵심인사의 교육, 社會 不安유도 등을 하며, 反政府 인사 및 단체와의 연대를 위하여 공개토론, 규탄, 대회개최를 피하며 외국신문기자 등과의 인터뷰, 외국공관접거와 외교관 공개면담요청 등으로 國際的 反韓輿論助成 등으로 communication體系를 연결한다. 특히 忠南大의 우리 文化研究會事件에서는 週一回씩 會員家를 轉轉하거나 除籍生 등의 自炊家를 전전하면서 직접 문제학생들을 糾습하여 地下씨클의 意識化活動을 擴大해 가는 communication 형태를 유지하기도 한다.

특히 學生運動을 勞動運動과 연계시키는 傳達體系로서 勞組가 없는 업체에 들어가서는 勞組를 결성하고 勞組가 있는 업체에서는 既存勞組를 어용화시켜 自己들의 同調者를 조합장으로 추대, 주도권을 장악하는가 하면 社內 유인물 配布, 社內 종교단체 등과 연계활동, 사업주 및 정부비방 농성을 주도함으로써 勞使間 문제를 政致化시키는 傳達體系를 유지해 나간다.

이외 最近의 集團行動學生들의 動員(mobilization)과 傳達(communcation)體系의 특징적 양상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活動과 命令體制가 官僚組織化되어 動員과 意思傳達이 저확적이고 신속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의 職務(job)가 주어지면서 미리 마련된 S.O.P에 따라 다수의 대학이 순서대로 참가해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新入構成員을 확보하는 方法으로 大學의 新入生에 대한 動員 및 傳達體系를 우편·전화로 내용을 전달하거나 선배나 상급생이라는 명목으로 호별 방문을 하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설득시켜 나가는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함으

로써 당사자인 학생뿐 아니라 學父母에게 양해를 구하여 확실한 결속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학교와 경찰에 대한 마타도어手法과 겨울 camp 活動이다. 集團行動圈 學生들은 리더의 보호와 행동의 지속을 위하여 선의의 희생자를 만들 뿐 아니라 大學의 合格者 중 경찰의 과격행동이나 學校當局의 교문쇄쇄 등의 조치에 反感을 갖도록 하는 겨울 camp 集團行動을 전개함으로써 이들의 인식변화의 첫계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어떤 活動 및 集團行動에서는 그 目標달성을 위하여는 構成員을 어떻게 하나의 힘으로 動員하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의사 전달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學生들의 경우 특이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集團行動의 組織化와 下部構造

集團行動을 動態的 過程에서 고찰할 때 組織化는 그 集團行動이 추구하는 目標達成의 핵심적 과제가 될 뿐 아니라 이 集團行動의 公式·非公式의 목표가 사회의 기본적 규범을 벗어날 때 조직화의 여부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組織을 C.Barnard는 어떤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의 힘과 활동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協同體系로 보았다. 그리고 이 조직은 環境 속에서 相互作用的 기능을 수행하는 하부구조 내지 下部體制를 갖는 有機體的인 것으로 그 集團의 目標達成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런 論理에 따라 최근의 學生集團行動도 이 組織化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學生들의 주장을 效率的으로 달성하려는 현상을 볼 수 있다. 歷史적으로는 55년의 敵性休戰監視委, 64년의 對日굴욕외교 反對關委, 74년의 民青學聯 등의 組織化가 있긴 하였으나 이것은 하나의 結成 및 集合的 의미의 名稱이었으며 80년대 특히 85년도의 學生集團은 下部構造(sub-structure)가 동시에 갖추어지는 완전한 조직화의 과정과 구조를 갖추므로써 役割機能의 配分 및 權限責

任이 부여되는 非公認公式조직을 갖춘 것이 특징적이다. 이들 非公認公式 조직의 結成・結束 요인은 전술한 部分的 分析에서 보았듯이 서클중심, 問題學生, 기독교, 4학년, 男學生 지향적이었음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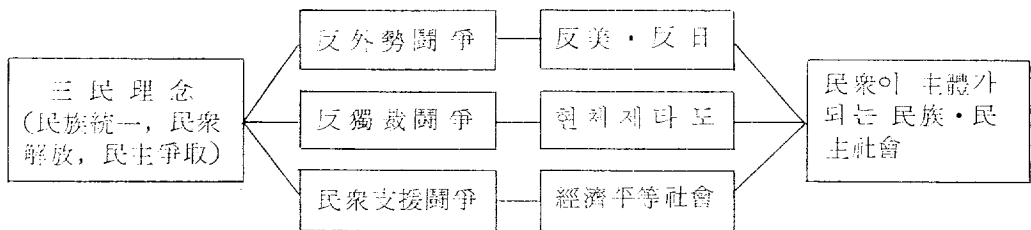
이들 요인을 다시 配列하면 구성원은 非正常 신분자, 기독교, 남여학생(최근 여학생 power 급증)들이지만 集團行動의 母體는 서클에서 출발함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분교부第 발행 學園自律化 이후의 在京 24개 大學의 서클 分析에 의하면 문제서클이 모두 130개에 4,230명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 숫자에는 全學聯과 三民鬪委를 제외한 것으로 현재 全學聯은 42개 대학에서, 三民鬪委는 32개 대학에서 구성되어 活動 중이라고 보고 문제서클로 分類된 이 서클이 주로 學内外의 이슈를 거론하여 示威로 發展시키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4)</sup> 이들 學生集團行動의 조직 중 全學聯과 三民鬪의 組織化 과정과 그 下部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全學聯(全國學生總聯合)은 서울과 지방의 大學聯合組織體이다. 지난 85.4월 전국 23개 대학대표가 참석, 창립 결성한 이 組織體는 各 大學의 지역적 특수성 있는 운동역량을 全國的으로 결집하여 統一性을 확보하고 광범한 연계를 형성하여 他 운동권 및 민중세력과 효율적인 對政府鬪爭을 하는데 그 目標을 두고 있다. 이 全學聯의 산하 하위조직으로 의장 밑에 4명의 副議長 및 中央執行委員會(선전국, 사무국)를 두고 그 밑에는 각 大學 總學生會 내에 구성되어 있는 三民鬪委(民族統一, 民主爭取, 民衆解放鬪爭委員會)와 각 지역평의회가 中央執行委員會 下에 구성되어 있고 지역평의회는 서울, 중부, 호남, 영남의 4지구로, 그리고 서울지구는 동·서·남·북부지구로 다시 細部組織(sub-sub-system)化되어 있다.

한편 三民鬪委는 全學聯의 下部構造(sub-structure)로서 실천적이고 선도적인 투쟁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즉 각 大學 三民鬪委는 全學聯이나 各 大學 總學生會가 大衆組織이라는 속성 때문에 선도적 투쟁을 전개할 수 없다는 데 판단의 기초를 두고 三民(民主・民族・民衆)의 三大理念을 실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선도

4) 조선일보, 85.6.7. (1).

적 투쟁 및 선전·선동활동의 투쟁조직이다.<sup>5)</sup> 이 三民闘委會는 全學聯의 taskforce로서 全國 34(32개)大學 56개 단체, 서울 시내 34대학 중 19개 大學에 38개 단체가 形成되어 있으며, 이들의 행동은 그들의 목표와 다음과 같은 도식에 따른다.



이와 같이 목표와 행동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면서 구성되어 있는 三民闘委會는 그 밑에 sub-system으로서 反外勢民族守護闘委會, 民衆權益爭取委, 光州事態鬭爭委는 美文化院 집거능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 光州事態鬭爭委와 관련된 學生團體로는 광주학살원흉처단위원회, 광주항쟁계승특별위원회, 광주학살진상규명위원회 등이 각 大學에 설치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바 學生集團行動組織化의 특징은 公認公式組織인 總學生會가 非公認公式組織으로 체제와 기능이 轉換되어 總學生會의 公式目標과 實質目標가 상충·왜곡되어 非正常化되고 있다는 것과 全學聯의 sub-system들이 公式組織의 것과 유사한 완벽성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鬭爭戰略과 手段

學生集團行動의 目標達成을 위한 代案의 選擇過程에서 그 구체적인 行動戰略과 그때 動員되는 手段은 集團行動의 目標達成의 주요 關鍵이 된다. 그러므로 學生運動으로 分類된 日常下에서는 3·1 운동 이후 6·10 단서운동까지는 非組織的 性格의 盟休가 주요 전략이요 手段이었으나, 1929년의 6·10 단서운동을 효시로 計略

5) 東亞日報, 85.7.18.(10).

的・組織的・學生運動이 政治・文化・社會運動의 성격으로 일어났다. 그후 2共和國下의 非結社的 團體(non associational group)의 성격으로 4.19혁명을 성공시켰으며 이때부터 學生데모는 盟休가 돌투척, 등복거부, 폭력난동화 하는 양상으로 변모해 갔다. 이는 3共和國下의 60년대 세계적인 S.P(Student Power) 운동세력 영향으로 67년 6~7월의 서울대 6.8不正選舉 규탄에서는 시험거부, 투석전, 채류탄이 사용되었으며 처음으로 햇불 데모에 솜방치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후 4공화국에 접어들면서 74년에는 民書聯이 조직되면서 全大學聯合 및 社會運動과의 연계행동이 시도되었고 본격적인 연계전략과 放火, 화염병 등의 과격행동이 시작된 것은 80년대의 새로운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지난 80.12.9의 光州美文化院放火事件, 82.3.18의 釜山美文化院放火事件, 83.9.22의 大邱美文化院 폭발물사건, 83.11.20의 光州美文化院 화염병투척사건 등이 주요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도표에서 年代別로 보면 <表 3-1>과 같다.

<表 3-1>의 年代記的 흐름에서 본 바와 같이 80年代 이후의 集團行動樣相 및 戰略의 특징은 暴力化, 連擊化, 理念化라고 규정할 수 있다. 우선 手段面에서의 폭력화의 양상으로 ① 경찰장비 및 공용 영조물의 放火 ② 공공건물의 기습적 占據 ③ 기관원 人質 및 경찰장비의 탈취 ④ 화염병・햇불 등 제조 투척 ⑤ 투석 ⑥ 각박, 쇠파이프, 폭탄 등 위험물 소지 ⑦ 落下自害 ⑧ 불온유인물 제작 산포 ⑨ 분신자살 등을 들 수 있다. 放火의 代表的 사건으로는 85.4.12 을지로6가 등에서 서울대생 1,900여명이 경찰순찰차에 화염병 투척한 것을 비롯 용곡동 6개 파출소에 투석하여 유리창 125장 파손한 것 등과 82년 부산 美文化院, 85.11의 民正黨 연수원 放火事件 등이며, 暴力的인 것으로서는 85.4.19 전남대생 650여명이 경찰장비를 탈취 공무집행을 放害한 것 등이 있다. 그리고 공공건물 등의 占據 농성으로는 85.5.23의 서울美文化院占據, 85.6.1의 新民黨中央黨舍 점거, 85.11의 民正黨研修院 점거와 85.12의 光州美文化院 점거농성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85년 11월의 民正黨 연수원 점거방화사건은 全學聯合會의 문체권 혁

〈表 3-1〉 學生集團行動의 年代記 (chronology)의 특징

年代區分	主 要 事 件 名	行動戰略특징	行 動 양 상 特 징
1 期 日帝下 (1910 ~ 1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東京留學生 2·8 宣言</li> <li>• 6·10 만세운동</li> <li>• 光州學生운동</li> </ul>	非組織 運動 ↓ 計略的 · 組織的  //	盟 休  //  //
2 期 1.2 共和國 (1948 ~ 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敵性休戰監視委 축출</li> <li>• 在日교포北送反對</li> <li>• 서울文理師大재단퇴진 (60.10)</li> <li>• 구속학생석방운동(60.11)</li> </ul>	全國大學生시위 全國大學生 단식투쟁 동지회 집 단시위  //	데모 및 배세지 (55.8) 단식투쟁 (59.12) 暴力난동 돌 투척
3 期 3 共和國 (1963 ~ 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 · 日會談反對</li> <li>• 6.8 부정선거규탄(67.6.7)</li> <li>• 三選改憲反對</li> <li>• 교련反對</li> </ul>		시험거부, 투석전, 최류탄, 횡불 demo 숨방치 사용
4 期 4 共和國 (1972 ~ 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青學聯사건 (74.)</li> <li>• 光化門데모사건 (79.6)</li> <li>•釜 · 馬사태 (79.)</li> </ul>	全大學聯合 및 社 會운동과의 연계 在野社會운동과 연계	大學起降起의 기폭  //
5 期 5 共和國 (198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光州美文化院放火 (80.12)</li> <li>• 學林사건 (81.6)</li> <li>• study 클럽사건 (81.3)</li> <li>• 농촌문제연구회사건 (83.1)</li> <li>• 民政黨舍亂入 (84.11)</li> <li>• 부산美文化院放火 (82.3)</li> <li>• 光州美文化院화염병투척 (82.11) (일반인소행)</li> </ul>	全國民主學生聯盟 이념서클조직 농민의식화	放 火 買辦자본주의이데올 로기 暴力에 의한 政權타 도 의식화수련 暴 力 放 火

年代區分	主 要 事 件 名	行 動 戰 略 特 징	行 動 양 상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大邱美文化院폭발사건 (83.9)(용공분자소행)</li> <li>• 서울美文化院점거사건 (85.5)(용공분자소행)</li> <li>• 民正黨연수원점거사건 (85.11)(용공분자소행)</li> <li>• 光州美文化院점거사건 (85.12)(용공분자소행)</li> <li>• 민주화운동(87.6.10)</li> </ul>		<p>放 火</p> <p>暴 力</p> <p>//</p> <p>//</p> <p>대규모군중집회</p>
6 期 6 共 和 國 (198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학생회담 (88.6.10)</li> <li>• 학내문제규탄 (88.10 이후)</li> <li>• 全 · 李체포 처벌투쟁</li> </ul>	<p>全大協, 서건부</p> <p>서총련주관</p> <p>재단비리공개, 총</p> <p>장선출개입, 등록</p> <p>금 동결</p>	<p>//</p> <p>삭발, 점거, 파괴</p>

심각부들이 치밀한 사전 음모로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반입석유와 화염병으로 放火함으로써 가장 폭력성이 두드러진 도시 개털라의 양상을 띠고 있다.<sup>6)</sup>

다음으로 體系面에서 連繫化의 양상으로는 學勞 연계와 宗教 및 在野 연계투쟁이 본격화된 점이다. 최근의 勞動爭議集團行動은 운동권 출신 學生들의 위장취입에 의해서 조종되면서 좌경적 폭력투쟁의 색채를 띠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勞學 연합세력은 비조합원들에게 勞組加入을 강요하다 비조합원들과 충돌하거나 勞總 및 勞動部의 사무실점거농성, 해고운동권 학생의 복직요구 등과 노조탄

6) 東亞日報, 85.12.17.

압사례발표, 근로자 죽음 애도, 노동약법 철폐 등 政治的 집합의 성격을 띤 勞動運動을 연계적으로 전개한다.

最近 三民鬪의 行動 강령인 暴力革命의 論理에 따라 三民의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노동운동, 영세상인·도시민민운동, 농민운동, 지식인文化운동을 肅進시킨 戰略으로 行動目標을 설정하고 이중 勞動運動을 가장 핵심적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의 社內 유인물 배포, 종교단체 등과의 연계도 본격화한다. 學生들의 勞動問題 介入은 70년대의 건태일 사건을 계기로 學生들의 勞動問題에 대한 관심과 介入이 增大되면서 70년대의 高度成長에서 과생된 빈부의 격차 등이 이슈로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70년대 후반의 일부 學生의 지하이념서를 가입과 좌경서적 탐독, 勞動問題의 심층학습, 토론 등으로 勞動問題에 目標과 理論이 정립되면서 더욱 擴大되어 80년대의 근로자 의식화를 勞動現場에 침투, 실시함으로써 대구택시운전사집 단행동, 청계피복노조합법성 爭取大會를 통해 위장취업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문제 종교단체와 學生·근로자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이의 言論·在野와의 연계전략으로 85.4.30 일 全學聯共同記者會見, 85.5.24 言論의 正當한 보도요구를 하는 在野人士(民推協 및 民青聯)와의 共同 기자회견을 비롯, 外部團體 인사와의 연계를 위한 85.5.10 의 서울대 광장에서 光州학생진 상규명 대회시 學生과 市民참여 촉구, 85.6.7 의 在野인사 초청토론회 등은 이의 代表的 예들이다. 그리고 농민의식화활동(農活이라 약칭함)을 통해 농민들에게 혁명 투사로서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참여 學生間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동시 農民과 學生과의 연계를 꾀하고 있다.

끝으로 思想面에서 意識化의 특징적 전략으로 삼고 있는 그 代表的 理論과 투쟁 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진술한 바와 같이 意識化의 戰略은 集團을 강하게 凝集시키는 方法으로 서술活動을 매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理念書籍을 양서로 규정하고 이를 읽고 비판케 함으로써 意識의 自發的 變化를 일으켜 最終行動에 옮겨지는 등 말자 그대로 ‘集團’과 ‘行動’ 개념에 충실한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때 한국의

현실과 사회개혁을 유추비교하고 유물변증법적으로 비판력과 불순의식을 고취시키는 서적 중 ‘네오막시즘’ ‘從屬理論’ ‘해방과 民衆神學’ 등이 있는데 이 중 從屬理論은 20년 전부터 政治學者들 사이에 說明도구로 도입된 이론이지만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學生들의 鬪爭手段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원래 學術用語로서 ‘dependence theory’ 또는 ‘dependency theory’로 번역될 수 있는 것으로 전자는 靜態的 從屬의 뜻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極度로 不均衡한 相互依存性을 가리킨다. 예컨대 A國은 B國에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데 B國은 自身の 必要에 의해 A國에게 從屬되어 있는 관계를 말함으로써 이의 反對 개념은 interdependence(相互依存)이다. 이에 반해 dependency는 autonomy(自律) 혹은 independence(독립)의 反對말로서 自律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때 dependency의 구성요소는 生産요소(자본과 기술)와 제한된 發展代案의 해외 의존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후자쪽에 가까운 것으로 dependency 理論이다. 원래 이 從屬理論의 진원지는 2가지로 하나는 UN의 라틴아메리카 經濟委員會(ECLA)에서 비롯된 構造主義的 觀點과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 레닌 主義的 觀點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觀點에서 본 從屬理論은 ECLA가 제시한 라틴 America의 성장 model이 바로 이 지역의 低發展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不滿이 동기었던 것으로 최근 從屬理論家들은 中心國(産業化한 先進國家)과 周邊國(非産業化國家)의 중간에 中間國群을 따로 두고 新興工業國(NICS)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 서울大 社會科學研究所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토론회를 가진 從屬理論學者 세네갈 다카르大 교수 사미르·아만은 주변국이 중심국으로 進入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 나라 등 신흥공업국은 中南美 諸國과는 달리 中心國進入 가능성이 있다고 봄으로써 中南美 國家的 현상 설명도구인 從屬理論의 限界를 제시했다. 따라서 狀況이나 實情 및 可能性의 정확한 진단이나 分析 없이 맹목적으로 어떤 理論을 적용함은 理論에 의한 行動을 劃一化, 極度의 對立化로 유도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意識化된 集團의 鬪爭方式은 대체로 3段階로 진행된다

고 볼 수 있는데, 그 첫 단계는 민중해방투쟁으로 민중정권을 수립하고 2 단계로 社會主義 혁명을 거쳐 最終的 段階에서 共產主義革命을 성취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sup>7)</sup>

① 제 1 단계 民衆解放鬪爭으로 민중정권 수립

의식화된 노동운동가 포섭 → 진국 각 사업장에 위장침투 → 사회혼란 조성 → 걸출적 시기에 조직근로자의 주도로 지식인, 학생, 서민의 민중 봉기에 의하여 파쇼집단을 붕괴시킨다.

② 제 2 단계 社會主義 革命

반파쇼 투쟁 성공으로 파쇼가 무릎을 꿇게 되면 노동자계층의 주도하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③ 제 3 단계 북괴의 남침통일과 공산주의 혁명

○ 反帝國主義의 투쟁전개시 미국이 개입하고 북괴가 남침하여 판도 변화를 주도한다.

○ 美國, 國內支配集團(파쇼정권, 자본가, 군부)과 초기단계의 정치투쟁 가담세력인 중산층, 종교인, 지식인, 학생들이 적이 되고

○ 노동자, 민중, 하급군인, 극소수 혁명적 인텔리겐차만이 북한에 동조 전쟁가담

○ 북괴와 연합하여 反獨裁鬪爭 성공시 사회주의 통일국가를 성취한다.

이상의 단계별 투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1 단계의 초기양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民衆’을 三民理念에서 제외 투쟁핵심을 가장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 5. 集團行動의 規範

集團行動의 규범이란 集團 및 組織과 그의 構成員間的 關係를 服從關係에서 권

7) 治安本部, ‘意識化란’의 資料에서 정리한 것임.

력과 관여의 두 개념으로 파악한 것으로 일종의 構成員에 대한 압력이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의미의 規範에는 조직이나 집단이 個人에 대하여 強制的 힘에 의해 服從關係를 확보하는 強制權 權威와 個人의 行動結果에 따른 報償으로서의 동 관계를 유지하는 報償의 權威 그리고 조직이 어떤 symbol의 조작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獻身토록 하여 一體感을 형성하는 規範的 權威가 있는데 학생들의 集團行動團體에 대한 規範에는 상기의 3가지 요인이 가변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日帝下の 學生運動이 愛國愛族의 symbol에 의한 行動統一이었음에 비하여 바로 이 80년대 이후의 사건 중 민정당연수원점거 및 放火 때에는 기망 및 強壓的 요인에 의한 多數學生의 動員方法을 택했는가 하면 三民과 蔣에 의한 美文化院점거농성 사건에서는 三民에 의한 民衆政權의 수립만이 ‘民族統一’ ‘民主爭取’의 길임을 제시하고 이를 폭동, 革命, 外勢 배조에 의해 達成 가능한 것으로 行動員들에게 주지시킨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이 목적달성 후의 個人的 報償도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제, 보상, symbol이 동시에 학생들의 行動을 가능케 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elite개념 및 leader의 개념을 애국시킴으로써 前衛的 역할을 맡게 한 것이다.

## 6. 集團行動의 環境의 要因과 系統

開放經濟・開放體制下에서는 학생들의 集團行動의 원인이 되는 促發動因은 내적 요인으로는 80년대 이후 理念化의 뚜렷한 양상을 들 수 있으나 이와 學生行動의 명분이나 구실을 준 外的 環境的 요인도 특이함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 個人的 요인(個性變數)으로는 利益集團의 行動을 전개 하면서 국도의 個人主義的인 立身의 經歷化를 하려는 데 있다. 특히 85.2.12 총선 때에 학생운동 영웅들이 4·19 세대를 비롯 6·3 세대 反維新세대로 이어지면서 國會議員 當選의 國民的 支持를 받았다는 것과 그의 선배들의 관직 및 기타 特殊職에의 特探 등은 集團行動 運動環境에서는 바람직한 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學校成績不良으로 강교

・세력의 제재적 위기상황에서 한편으로 심리적 갈등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는 反항로 이들 集團行動 加擔者들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로 장학금 수여 및 시찰을 대우적으로 취해 왔던 사례들은 오히려 후배들에게는 가치관단의 혼란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환경요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集團行動의 개념 및 행동 범주의 내포나 외연의 無定見을 제시하고 받은 社會, 學校와 學生個人은 학생들의 集團行動에서 오는 효용 및 이익과 正常的 行動과 노력에서 얻게 되는 가치와의 사이에서 그 가치비교 및 판단을 犯罪經濟的 行動化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이념적·이익적·실리적·엘리트·역사적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學校 教育的 要因(教育變數)으로는 前述한 바와 같이 集團行動 學生의 身分 중 재적·휴학·문제학생·경고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學校生活에서의 일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내의 示威 등의 集團行動의 潛在 源이 增加된다고도 볼 수 있는 要因의 變수양상이다. 서울대의 상우 81·2 학기 휴학생이 1,838 명, 1 학기 휴학생이 1,727 명으로 모두 3천 5백 65 명이 휴학생으로 전체 25,352 명 중 15%에 해당되는 것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 원인은 주로 成績不良에 의한 學士除名, 학원사태 관련징계 등이 있으나, 자칫 集團行動에 가담할 수 있는 個人的 要因化 및 중요한 變數가 된다고 하겠다. 또한 여기에 除籍者의 再入學이 허용되어(83.12.21) 84년의 729 명과 85년의 80 명의 학생집단도 직접·간접적인 영향변수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

세째, 사회적 요인(社會經濟的 變數)으로 85.3의 木洞撤去民間運發生, 85.4~5의 야당위원의 대학방문, 대우어패럴 등 勞使問題發生(85.5.6), 就業의 시소 및 불확실 등이 이슈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作用했으며 85.1 학기의 總學生會 구성 5原則의 大學別 시달은 正面 충돌의 원인이 되었고, 光州事態의 진상규명요구는 지속적으로 대학가의 흥분요소가 되어 왔다.

여기에 85.5.23의 三民調委 中心의 73 명의 學生이 美文化院 2층 도서실을 不法占據함에 따라 美대사와의 學生代表 公式面談시사와 그 후의 서울大 訪問에 의한 學生面談도 하나의 外交的 要因으로 學生集團行動을 加熱化시킨 요인들이라 분



어오고 있다(서울대 중심 서클 및 行動體系).

### 7. 매스컴 및 個人媒體에 의한 擴散과 傳達

社會現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인지하거나 實行을 경험적으로 터득한다는 것은 새로운 情報에 의하여 行動에 變化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個人 또는 集團 및 다른 채택·수용단위에 의하여 구체적인 의사소통의 채널을 통하여 時間을 두고 수용되며 그 受容者의 수가 擴大되어 가는 것을 擴散(diffusion)이라고 보고<sup>10)</sup> 이때 媒體(media)는 한 채택단위로부터 다른 채택단위로 情報가 전달되는 수단이며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sup>11)</sup> 새로운 방향으로 태도가 변화되도록 지식을 전달하고 설득한다. 情報의 受容 후 새로운 態度의 決定過程에서 매스컴(大衆媒體)은 知識次元에서 중요하며 對人媒體는 說得次元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수용 및 이로 인한 결정의 蓋然性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通信媒體를 大衆媒體에서 對人媒體로 代替이용해야 할 것이라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sup>12)</sup>

따라서 學生集團行動에 동조하려는 결심을 하는 段階에서 T.V, 신문, radio 등의 대중매체는 상황의 새로운 양상이나 지식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반해 행동에의 적극적 참가 및 實行에 대한 誘發과 態度의 變遷에는 對人媒體가 더 중요한 手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行動에의 參加뿐 아니라 解散에도 그만큼 유효한 手段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對人媒體에 의한 communication은 集團內라는 의미와 前述한 學生主動 세력과 기타 一般學生의 접촉에 의한 설득회유라는 의미에서 集團內生變數에서 說明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外生變數로서 매스컴에 의한 접촉과 영향이 이들 행동양상에 변화를 크게 줄 것이

10) 朴龍治, 革新의 擴散過程, 고려원, 1983. p.22.

11) Ibid., p.25.

12) Everett, M. Rogers with L.Svenning, Modernization Among Pleasants The impact of Communica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1. 朴龍治, 前掲書에서 引用.

〈表 3-2〉 서클 中心의 主要學生集團行動 事件의 系統圖

日帝彈壓期 (1910 ~ 1945)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新幹會 (1972) (民族主義・青年團體)                 </div>
胎動期 (1946 ~ 196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國大案反對 (46.6)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新進會 (57.8)                 </div>
活性期 (1960 ~ 1967)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國民啓蒙期 (60.6)                      ↓                      民族統一聯盟 (60.11)    새생활운동 (60.11)                      ↓                      民族主義比較研究會 (63.9)                      ↓                      Y.T.P 폭로사건 (64.4)    6.3 사태 (64.6.3)    韓國思想研究會 (64.3)                      ↓                      後進國比較研究會 (66.3)    學園自由수호투쟁위원회 (66.11)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民比事件 (67.7)                     </div> </div>
擴大期 (1967 ~ 1974)  潛伏期 (1974 ~ 198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                      汎文理大서클화 (67.7)                      ↓                      文友會 (70.6)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民青學聯事件 (74.3)                     </div>                     ↓                 </div>
極盛期 (1984 ~ )	學林사건 (81.6) 武裝蜂起事件 (83.2) 民青聯 (83. ) 民推委事件 (84.10)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三民關 (85.3)                 </div> 民民彈 (85.6) 光州委 (85. )
변보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全大協                      서총련・서건추                      6.10 남북학생회담 (88.6.10)                      美文化院 검거농성 : 反美 (88.2.25)                 </div>

라고 보고 이를 고려하기로 한다.

Rogers의 情報擴散 및 傳播를 설명하는 변수인 通信媒體의 性格과 유사하게 J.F.Engel도 Rogors의 擴散變數를 인용하여 communication 관련변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對外的 性向, mass media 노출도, 변동역군과의 접촉도, 규모으로부터의 이탈도, 集團參與度, 對人媒體에의 노출도, 여론지도성 등이 그의 분류범주이다.<sup>13)</sup>

이상과 같이 볼 때 學生集團行動의 傳播 및 擴散의 收容體系가 大衆媒體가 집단 및 전파(普拔)에, 個人媒體가 擴散 및 收容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볼 때 學生의 集團行動은 大衆媒體도 그 영향이 크지만 個人媒體 즉 서클, 學級級友, 하숙 및 자취동료, 地域 등의 peer group(동료집단)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고 또 중요변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8. 政策變數에 의한 刺戟

조직이나 집단의 構造, 技術 등은 주요한 內生變數로서 集團의 活動 및 結果에 영향을 미치나 法令과 政府의 規制 및 政策決定의 體制 등은 學生集團行動에서는 주요한 環境變數로서 활동의 양상이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變數이다. 이에 는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일체의 제도나 법령이 이에 해당되며 文敎部의 교육정책 및 제도와 治安政策의 學團介入에 관한 것 등이 직접 연관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외 政治·經濟·社會에 관한 政策變數들이 前述한 쟁점 및 목표변화에 영향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중 특히 대학의 學事運營에 관한 제도나 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教授陣에 의한 變動役軍의 役割은 學生들의 行動決定에 결정적인 촉매가 되는 것으로 ① 社會

13) James.F.Engel, David.T.Kollat and R.P.Blackwell, *diffusion of innovations*, R.R. Rothberg, *corporate strategy and product innovation*, 2nd ed. New York Free Press. 1981. pp. 472 ~ 481. 朴龍治, 前掲書, p.55 재인용.

現象에 대한 認識能力, ② 知識의 축적 및 人格의 成長, ③ 集團構成員과의 交際 및 社會化 등에서 그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教授陣의 變動役軍과 관련된 변수로는 教授의 變動役軍으로서의 강의 서비스의 수준, 학생에 대한 관심, 學生 등과의 感情交互의 정도, 教授와 學生의 접촉도, 양자의 同質感, 人格원양의 노력정도 등이 學生集團行動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事態의 安定 및 中斷에 핵심적인 變數(critical variables)가 될 수 있다.

이 외 대학의 學事運營 중 卒業定員制運用, 成績管理, 報償과 징계의 엄격한 교환지 관리, 학생복지 및 연구시설 등의 확보 등이 大學의 운영과 관련되는 변수들이며, 문교부의 大學政策에 관한 變更이나 不合理的 등이 學園事態의 直·間接의 原因이 되어 왔음은 이슈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學園安定法構想, 大學定員影響, 就業不確實 등). 특히 報償 symbol과 관련하여 경당한 行動에 대한 報償 symbol과 위법·부당한 행동에 대한 報償이 지속적이고 공정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방 이후 몇 번 바뀌면서 위법하다고 司法的 判斷을 구했던 중대한 사건들까지도 正權校替時의 恩典으로 政治的 문제 접근에 의해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학원사태 주동자들이 政府관료나 政治的 選舉의 당선자로 그리고 문제학생들이 호텔 등의 위안과 향응을 받고 장학금을 수여받는 등의 일관성 없는 상벌의 報償 symbol 교환이 學生들의 가치나 태도결정에 왜곡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해 왔음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大學과 치안정책당국자의 變動役軍 간의 役割 갈등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大學의 責任과 경찰의 인내와 지속성 없이 변함에 따라 學生들에게는 감정의 촉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責任과 役割의 엄격한 定立에 의해 대학의 秩序가 확립되어야 함도 그만큼 이 양자간의 변수가 대학문제에 중대한 관건이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 第3節 學生集團行動의 趨勢 및 性格

#### 1. 集團行動의 爭點 (issues) 變貌

전술한 <表 3-1>에서와 같이 80년대의 우리 나라 學生集團行動은 民族的 民衆運動과 多衆的 示威運動(데모) 段階를 벗어난 市民的 民衆運動을 名分으로 한 革命的 企圖段階의 行動으로 轉換되어 가는 混合的 性格을 띠고 있음을 이슈나 接近 方法 및 行動樣式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80년대 이후의 주요 학생집단 행동사건 에서 이를 개관해 보던 다음과 같다.

<表 3-3> 82년 이전의 주요 意識化事件

事 件 名	日 時	概 要 및 이 슈	性 向
霧 林 事 件	81. 1	서울대생 중심 社會主義 國家建設企圖사건	현재제부정→民主社會主義건설
學林事件(全民學聯)	81. 6	全國民主學生聯盟을 조직, 社會주의 國家건설	買辦資本主義 이데올로기 →社會・共產主義
study할 립 사 건	81. 3	학원 내 이념서클의 교회에서의 의식화교육사건	의식화교육을 통해 폭력으로 政權打倒
同學 및 夜學會事件	81. 4	共產서적탐독의식화사건	勞動鬭爭
釜 林 事 件	81. 6	위장취업→기업침투	막스이념에 의한 社會主義
錦 江 會 事 件	81. 7	民族革命 정부수립	反政意識化
서울대 under사건	81.12	反政 투쟁시위농성	反政鬭爭
청 진 회 사 건	80.12	反政府 의식화활동	現體制 모순지적
사 원 회 사 건		불교학생회 좌경의식	사회주의실현

<表 3-4> 83年の 主要意識化 事件

무장봉기구상안건	83. 2	광주사태와 같은 民衆蜂起기도	民衆主體社會主義 국가건설
민족교육연구회사건	83. 1	노동자에대한 의식화 擴散	現政權의 타도
농촌문제연구회사건	83. 1	노동문제·농민문제 의식화 수련	의식화수련 주도
연세대 경제 학회사건	83. 3	후진국 경제론 등에 의한 의식화	학원사태 주도
忠南大 우리 문화 연구회사건	83.11	제적·휴학생의 政權타도	社會主義 국가건설
慶北大 지하서클사건	83. 5	政權의 正該性 否認	//
서울대 6개서클연합사건	83. 1	現政府를 獨裁政權으로 규정	政權打倒

<表 3-5> 學園自律化(83.12) 이후의 集團行動

• 軍入隊者위령연합행사기도사건	84. 5	광주사태 위령, 김태훈 위령제 명분으로 시위	政致性向
• 訪日反對	84. 9	} 政治鬭爭의 名分 學自推委→學民鬭委로	政治性向
• 民韓黨舍亂入	//		//
• 호국단거부, 학생회 부활 요구			//
• 학과조정반대	84.10		학내문제의 이슈화
• 유신독재타도 기념 및 군사정권 퇴진	//	} 現實介入	//
• 民正黨舍亂入	84.11		//
• 美文化院占據	84. 5		//
• 新民黨연수원점거	85. 6		
• 民正黨연수원점거	85.11		//
• 光州美文化院점거	85.12		
• 서울대연합시위	86. 3	헌법철폐	

• 全經聯회장실점거	86. 3	매관독점재벌응징	대규모시위 // 점거, 농성 감금
• 민주화운동	87. 6	6.10 민주항쟁	
• 남북학생회담	88. 6	6.10 남북학생회담	
• 학내민주화	88.10	등록금동결, 재단비리공개	

이상의 學生集團行動 중 學園自律化(83.12) 3년째인 85년의 상황은 심각한 편이었다. 즉 방학 중 2.12 총선 때에는 이미 現實政治에 구체적인 힘으로 작용하여 選舉의 狀況에 큰 변화를 느끼게 하였으며 개학과 더불어 學内外의 示威를 포함하여 기습점거, 放火, 投石, 농성 등의 豫測不許의 手段으로 가히 自由自裁의 行동을 구사한 셈이다. 즉 大統領의 訪美反對, 4·19, 5·18의 시위에 이어 5월 23일엔 서울 미문화원은 不法占據, 농성했으며 6월의 新民黨농성, 11월의 民主黨中央政治研修院 난입, 12월의 光州美文化院 점거농성사건들이 85년의 學生集團行動의 주요 代表의 사건이었다. 이외 勞學, 農學 연계를 위한 위장취업이나 농촌계몽활동 및 放學中 camp 등 의식화 活動은 學園사태에 계절과 장소가 없음을 말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政策當局의 5원칙을 둘러싼 總學生會 구성시비도 그 진원지가 되었다.

이와 같은 行動은 全學聯을 形式的 外延으로 삼아 三民闘가 實質的 母體가 되어 이윤의 무장, 行動의 聯合化의 성격이 두드러지면서 깃발, 梨花言論, 일보전진 등의 강령에서 좌경의 색채를 띠우면서 그 性格의 전위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즉 大學가의 유인물인 ‘깃발’을 제작 배포하고 민족민주혁명이념(NDR)을 내세운 서울대 이념서클 ‘민주화추진위원회’(民推委) 결성과 관련 利敵團體構成罪가 적용 판결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대체적 흐름과 성격의 判斷을 토대로 이의 性向과 趨勢를 分析하면 다음

14) 中央日報, 1986.1.16.

과 같다. 즉 意識化의 추세가 83년의 上半期の 경우 뚜렷(59%) 해지면서 서울 中心的인(81%)을 알 수 있었고, 學生 신분상으로는 문제학생이, 학년상으로는 高學年이, 종교상으로는 기독교가 특성요인으로 나타났다(表 3-6).

〈表 3-6〉 83 上半期 集團行動性向 分析

總 關 聯 者		意識化關聯者 155(42) 59%	參 加 動 機					
			서 클 :125 (40) 81%	個 別 : 6(2) 4%	成績 : 18 12%	家庭 : 2 1%	친구 의 리 : 4 2%	
學生身分	제 적	10 (1)	地	서 울	60	大	서 울	58
	휴 학	34 (1)		부 산	11		고 려	42
	문 제	30 (1)		대 구	8		연 세	31
	경 고	48 (6)		인 천	5		성 대	44
	일 반	140 (33)		경 기	42		서 강	5
宗 教	기독교	20 (3)	域	강 원	9	學	건 국	9
	천주교	12 (1)		충 북	10		경 회	4
	불 교	7		충 남	19		단 국	4
	무	223		전 북	27		동 국	7
學 年 別	1	17	別	전 남	31	別	외 대	3
	2	54		경 북	28		전 남	12
	3	90		경 남	27		경 북	9
	4	95		세 주	3		기 타	
	일 반	6						
性 別	男	231						
	女	31						

〈表 3-7〉 80年代 集團行動趨勢 分析

年 度 別	意識化事件數	總 集 團 行 動 數		
		期 間	級 數	月 平 均
81	26			
82	32			
83	42	83.12~84.8	707	88.4
84		84.9~85.2	792	132
85		85.3~85.8	1,438	239
		85.9~85.9	184	184

Year	Total Group Action Count
'81	26
'82	32
'83	707
'84	792
'85	1,438
'85.9	184

2. 集團行動性格 變貌

(1) 歷史的 의미의 民族運動과 國民統制

우리 나라의 學生集團行動을 行態面에서 特性을 說明하고 이해하기 위하여는 時代別 상황에 따라 그 目的과 實行方法을 中心으로 역사적 觀點 (historical approach)에서 먼저 보아야 設明力이 높아진다. 이 말은 斷面만을 가지고 劃一的으로 규정하여서는 現象의 說明도 實體의 分析도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수립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우선 1900년을 우리 나라 近代적 초기의 外勢 영향 發端기로 보았을 때 이 이후 1945년 解放되기까지의 半世紀 동안에 學生들이 民族的 獨立運動을 不단하게 결행해 왔던 것은 행동의 방향과 목표가 지배국을 제외한 全世界人들의 主張에 의하여도 그 正當性이 입증되었던 것이며 더구나 外勢인

日本敵軍과 抗爭하면서도 全民族이 合心한 精神的 싸움이 核을 지탱하면서 非暴力 示威方法을 택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의 集團行動은 발전적 의미에서의 變化추구로 규정할 수 있고 이를 大衆的 學生運動 즉 movement 의미의 內包와 外延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후 1948~1960년까지의 1,2 共和國下의 學生集團行動의 행태는 民族的 愛國운동으로 學園의 淨化 및 사회문제를 개선하는 민족적 정신이 강하게 작용하는 學生集團의 共同意思表示로 볼 수 있어 운동(movement)과 시위(demonstration)의 內包가 結合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愛族愛國的 次元의 國民統制의 일환이요 여론(public opinion)으로서의 意思傳達이었다.

그러나 60년대와 70년대의 3,4 共和國下의 學生集團行動의 양상은 그의 완전한 정도의 주장을 集團의으로 表示하면서 다소 그 강도가 가속·극심해지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고 세계적인 S.P운동(Student Power)과 格을 유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70년대 末의 과격했던 集團行動이 주장의 傳達이나 國民統制的 의미의 피드백(feedback) 기능으로 보다는 폭력에 의한 폭동의 양상으로 發展되었기 때문에 憲政秩序가 다시 中斷되는 間接的 動機로까지 된 것으로 보아 4·19가 같은 의미로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발전적 헌정질서를 이어주지 못했던 것과 같이 이 또한 헌정면에서 보면 좋은 계기를 傳承시켜 준 것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아 學生集團行動은 그것이 운동적 의미(movement)를 지녔던 때를 제외하고는 의사표시로서의 통제적 의미를 지니면서 그것이 폭력을 수반했을 때에는 도리어 破局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50년대·60년대·70년대의 學生集團行動은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歷史的 의미를 더고 있는 學生運動과 데모는 80년대에서는 현격한 行態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다음에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 學生들의 總學生會 구성을 위한 선거운동이 不法集會로 행하리질 뿐 아니라 선거유세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건전한 言動은 學生會 구성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정치적 작태로서 교육과 연구를 기본적 기능으로 하는 大學에서 이와 같은 유사

政治活動을 행함은 大學이라는 조직의 설치 目的에서도 正當化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方法이 知性人의 긍지와 大學人의 自尊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규정한 서울대 學長一同의 自制公告文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 (2) 利益集團의 政治行爲

80년대 이후의 우리 나라 學生集團行動은 justice나 trust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interest에 의한 특징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 80年代 이전의 集團行動, 즉 데모(demo)와 區別된다. 즉 부정부패의 社會改善, 民主主義 및 資本主義下의 矛盾 등의 시정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 政策決定에의 영향력 행사나 그의 具體的 利益表明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集團行動을 政治家로서의 experience와 career로 생각, 부모들마저도 支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利益表明을 넘어선 극도의 利己主義的 行動으로 發展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外國의 利益集團(interest group)이 權益을 쟁취하고 地位를 확보하기 위한 結社(association)의 형태로 조직화하는데 반해 우리 나라의 學生集團行動은 非結社的(non-association)이지만 機關化(institutionalize)된 조직과 그 下部구조를 가지고 바로 압력단체(pressure group)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an-omic interest group으로 화하여 폭동과 데모 같은 정치체제의 붕괴와 관련되는 行動을 보이는 다소 변칙적이고 정형이 정해지지 않는 利益集團의 特性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學生集團이 利益集團으로 分類될 수 없으나 이슈나 目標 및 手段戰略面에서 보면 利益集團의 政治行動의 양상을 띠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 (3) 急進이데올로기적 信念體系

人間은 어떤 社會에 있어서나 어떤 價値에 기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를 찾는다. 이는 原始人에게는 宇宙論이 되고, 세계의 체계가 되고, 宗教的 신앙이 되고, 現代人에게는 역사적 질서, 정치적 질서를 낳는 信念이 된다. 특히 現代社會가 이데올로기의 시대라고 함은 人間의 行動이 정신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그 信念體系가 어떻게 形成되느냐에 따라 自由主義, 保護主義, 社會主義, 共產主

義 社會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大衆 民主主義가 擴散됨에 따라 이데올로기의 투쟁이 격렬해지면 非理性的, 非論理的 行動이 전부를 차지하게 되며 이것이 신화되면 맹충에서 오는 파괴, 죽음 등도 理性的 判斷을 벗어나게 된다. 最近의 學生集團行動에서는 일부의 학생들이 內心的으로는 社會・共産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轉化되어 가는 양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集團行動의 cohesion (結束 및 응집)을 강화하고 참여를 促求하기 위하여 배포하는 것발이나 이화연론 및 구호, 反省하는 學生의 反省文 등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行動戰略과 動員手段面에서 그것은 방어적이기보다는 공격적인 代案의 구사며 평범한 도구이기보다는 특수한 장치와 준비물들이기 때문에 急進左傾思想에 물들어 가는 變化를 우려케 할만한 集團行動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형태의 양상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集團行動이 여러 요인이 혼합된 것으로 나타나나 이에는 唯一無二의 單純요인만이 있음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 (4) 社會病理的 心理에 의한 疎外恐怖의 退行的 拒絕行動

群集性 동물이요 大衆社會 속의 競爭主體인 人間이 能力에 의한 配分이나 成就가 불가능해짐으로써 活動隊列에서 逸脫하게 될 때 고립감을 갖게 되고 이는 恐怖로 변하여 공격이나 폭력을 구사하거나 自虐하는 心理에 이르게 된다. 欲求不滿 → 孤立 → 恐怖 → 분노 → 적의 → 抑壓 등의 轉位の 力學이 成立된다. 學生들이 集團行動을 통하여 의사전달이나 주장을 合法的이고 正當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無批判的이고 물개성적으로 파괴하거나 진인해지는 것은 정치・경제・사회 등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近遠因이 있겠지만 급속한 기술응용(technology)의 수용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데다가 이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방만하게 하여 研究나 學習活動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결국 學校에서는 成績이, 社會에서는 적응이 어렵게 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分析된다. 이것이 바로 Fromm이 말한 masochism이고 sadist 한 心理的 行動으로 연결되어 集團行動에서도 이에 의한 行動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대해 D. Bell은 한국 학생들의 行動과 軼화를 南北대치 현상에서 오는 政治기능의 욕구불만과 大學人口의 팽창에서 오는

知的·情的 結合度の 弱化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구조이론(social structure theory)에서 지적된 아노미(anomie)는全體社會에 연결되는 개인의 의식붕괴상태로 전통적인 rule이나 권위의 상과를 지적하는 心理的 無政府狀態를 의미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의 도덕적 기반이 뿌리 뽑힌 채 아무런 규율도 없이 오직 분열적 충동만을 가지고 사실의 연관성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민족의식도 의무관념도 갖지 못한다. 이 아노미 정후를 지닌 자는 비생산적 사고로 일관하며 他人의 추구가치를 부정하는 否定的 哲學으로서 未來도 비전도 없이 오직 가냘픈 감각적인 矚에서 不安하게 생을 이어가는 정신생활을 하게 된다.<sup>15)</sup>

마키버는 아노미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첫째,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습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연속적으로自己 神념체계에 동요가 일어나는 것 같은 충격에 처했을 때와 둘째, 어떤 심각한 환멸을 느끼게 된 결과 否定的 논리에 압도된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적 속성을 그레지아(Grazia)는 單純 아노미(simple anomie)와 急性아노미(acute anomie)로 분류하고 이들의 문제해결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즉 單純아노미는 被治者側의 의무 및 계약위반으로 생기는 이데올로기의 갈등 내지 神념체계의 약화와 이로 인한 不安을 의미하므로 愛情, 상호접촉, 정서함양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반면 急性아노미는 支配者側의 보호의무가 위반됨으로써 被支配者가 갖게 되는 心的 혼란으로서 自殺, 精神병, 대중운동, 과시증의 형태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發散하려 한다고 보았다.<sup>16)</sup>

74년 5월 대대적인 구속자 석방과 유신 철폐 데모과정에서 서울농대 축산과 4학년 학생이 시국성토대회중 양심선언을 發表하고 割腹自殺한 사건 등 몇몇 政治的 주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음은 단순아노미적 요인과 急性아노미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는 急性아노미적 요인이

15) R.M. Maciver, The Ramparts we guard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6), p.84.

16) S. Grazia, The Political Community; A Study of Anomy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48.), pp.74 ~ 157.

충격적으로 작용, 공통 가치와 감정적 유대의 결여, 고독과 상실감, 가치기준의 결여, 목적이나 方向감각의 상실, 생의 의미상실이 가져온 경우라 볼 수 있다.

죽음이나 주검의 symbol 은 살아서 實踐하는 것보다 그 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86년 3월 서울공대 건축공학과 2학년 학생이 연탄가스로 自殺한 것은 전망이 적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學校成績不良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7)</sup> 이상과 같은 심리적 이노미 현상은 다음 표의 專攻適性 不適應者와 농약포기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캠퍼스 내의 교육상 문제가 증가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자신의 적성이나 취미에 관계없이 學力과 點數에만 맞춰 지방학과를 결정했다는 학생이 절반이 넘는 54.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대 學生生活研究所가 올해 신입생 4천 9백 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것으로 이는 갈수록 극심해지는 대학입학 지원과정의 눈치와 배정지원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으며 현행 大學入試制度가 빚은 병폐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대 學生生活研究所가 밝힌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서울대 신입생 중 자신이 원한 學科에 입학했다고 밝힌 학생은 40.2%인 반면 자신의 적성이나 취미에 관계없이 학력고사점수에만 맞춰 지방학과를 결정했다는 학생은 54.1%로 밝혀졌다.

이 같은 調查結果는 평상시 지방학과를 결정하지 못하고 마감장구의 지원 상황에 따라 우선 불교 보자는 지원 경향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처럼 적성을 무시하고 신학한 大學生들은 소속 학과에 애착을 갖지 못하는 등 적응을 못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이다.<sup>18)</sup>

그리고 서울대 합격자 155명이 신체검사에 불응, 합격을 포기했다. 신체검사 불응학생은 지난해(79명)의 2배 가량으로 농대가 89명으로 가장 많고 자연대 18, 사회대 8, 공대 7, 수의대 7, 경영대 2, 가정대 4, 간호학과 1명 등으로 나머지 19

17) 中央日報, 86.3.15.

18) 東亞日報, 86.2.21.

명은 인문대 사대 합격자이다.

신체검사 과정에서 이처럼 많은 新入豫定者가 합격을 포기한 것은 올해 처음 있는 일로 지난해에는 79명, 84 학년도에는 88 명이었다.

서울大 측도 이번 입시에서 마감 직전까지 눈치를 보는 합격 위주의 安全支援 현상이 두드러져 3 백 점대에 가까운 고득점 층에서까지 눈치작전이 확대됐고 이들이 합격 후 學科選擇에 불만을 갖게 돼 합격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도 이유라고 분석했다.<sup>19)</sup>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自由民主主義와 자본주의적 체계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이 達成해야 할 두 가지 근본 과제는 첫째는 代議政治이면서 參與的 民主主義의 實質을 살리는 일과 둘째, 資本主義이면서 자유경쟁원리와 分配的 正義의 現實을 어떻게 조화있게 達成하는가 하는 것이라 볼 때 이는 결국 自由民主主義의 根本的 이념이 自由와 平等이고 보편 이를 實現하는 경제체제로는 자유경쟁을 통하여 인간의 潛在能力을 개발촉진하고 富(wealth)를 창조하는 것이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는 전체주의적 체제보다 자유경쟁 체제가 우월하며 이는 自由民主主義에서 찾아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역사가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창조가 分配的 正義와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자유경제 체제는 民主主義 체제를 보장할 수 없게 되고 도리어 위협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誘因動機(incentive)에 근거한 자유경쟁에 의해서 富의 창조(pie size)가 극대화되면서 경제적 平等인 分配가 정의롭지 못할 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더욱 유지 발전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배정의가 실현되지 못할 때는 기득권을 가진 안정된 계층과 소외된 계층, 富者和 貧者,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分列 → 對立 → 社會不安 · 혼란되어서 민주사회의 發展원리인 계속과 변화의 조화를 통한 漸進的 改革(reform)이 어렵고 급진적 혁명(revolution)에 의한 社會 변혁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民主主義 정치 체제가 자유경제 체제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강조되는 패러다임은 이제 경쟁(competition)만이

19) 中央日報, 86.1.30.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協同(cooperation)과 共同作業(teamwork)의 새로운 창의적 협동방법의 개발인 것이다.

이것이 조직 내에서는 집단민주조직(collective democratic organization)의 형태로 종래의 권위보다는 봉사, 단결, 협동이 중시되고 보상보다는 사랑·봉사 정신이 중시되는 조직内の 새로운 민주주의이며, 산업에서는 산업민주주의의 형태로, 大學에서는 教育民主主義로 연결되면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나라의 산업의 경제나 大學의 교육은 그 속성이 까다롭고 환경과의 교류에 취약함으로써 충격을 주거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위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민의 혼란은 방지되어야 할 것이며 民主社會 내에서는 中産層이 조직 내에서는 건전한 보통인이 두터운 중간계층을 形成할 때 이 취약함이 보전되리라 믿어 마르크스 이후에 자본주의 체계가 스스로 제도적인 배려로 中間 계층을 育成하는 것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중요한 것은 中間 계층은 自尊 의식을 갖춤으로써 근면과 성실, 원리 원칙에서 어긋나는 일의 배척 정신과 당지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를 가능케 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새로운 진서를 창조할 수 있는 變革的 리더십이 요청되는 것이며 2000년대에는 이것이 加速化될 것이다.

이상의 부분적 퇴행적 거절형태와는 달리 우리 나라의 靑年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식조사에서 보면 향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어둡지않은 않을 것임을 이들의 사고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의식지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20)</sup>

#### 1) 人間과 自然과의 관계에 대한 가치지향

오늘날 우리 靑年세대가 대체로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가치지향을 보인다는 것은 자연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이용하려는 보다 진취적인 자세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를 학력별로 보았을 때 고졸(50%)과 대졸(47%)층이 중졸 이하보다 이의

20) 18~39세 靑年層 가치성향 조사, 조선일보, 86.3.5.

성향이 강한 면을 볼 수 있어 大學生의 자연관에 대한 가치지향, 즉 大學生이 보편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그들의 행동이나 사고에 질서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類型化된 원리가 희망적임을 알 수 있다.

### 2) 시간에 대한 지향

시간에 대한 지향은 대체로 현재지향(47%)적이며 다음으로 미래지향(28%), 과거지향(2%), 無定型(23%)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통적 사회에 대한 과거지향에서 近代的 사회에 대한 미래지향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現在指向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여성(33%)이 남성(24%)보다, 低學年보다 高學年이 상대적으로 더 미래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

### 3) 행동에 대한 가치지향

행동에 대한 가치지향은 욕구실현과 성취지향으로 양극화시켜 볼 때(욕구실현·지향은 인간의 욕구충동의 자연스런 표현이며 성취지향은 사회·조직등이 마련한 척도에 따른 성취의 결과와 관련된 행동) 대부분 우리 나라 청년세대는 成就 지향적 가치지향이라 하겠다(79%). 이때 욕구성취지향적 가치지향을 근대적 가치지향이라고 할 때 우리 나라 청년세대의 행동에 대한 가치지향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에도 여성(84%)이 남성보다(75%) 더 성취지향적이며 남성(26%)은 여성(16%)보다 더 욕구실현지향적으로 나타났음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미래지향적이었음과 유관한다고 하겠다.

### 4) 人間關係에 대한 가치지향

대체로 水平的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65%). 그 다음이 개인주의 지향(2%)과 수직관계(7%)로 나타나 여기서 수직관계는 권위주의적 성격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며 수평적 관계는 계층적 지배가 아닌 同等한 관계지향을 뜻하며 개인주의적이란 이기적 요소보다는 개개인의 개체를 존중하는 서구적인 합리적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나 규범에 따르면 수직적 인간관계가 大宗을 이루어 왔으나 이와 같은 규범체계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청년세대의 인간관계지향 역시 전통사회적인 인간관계(수직적)에

서 근대 사회의 인간관계(개인주의적)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런 지향에서는 모든 일의 결정과정에서 권위주의적 요소를 배격하며 사회나 集團의 구성원의 승인을 존중하게 된다고 하겠다. 이 역시 사회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分析해 보면 남성(69%)이 여성(60%)보다 더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고 여성(25%)이 남성(16%)보다 더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원칙적 생각과 예외적 생각

국민민족관은 國際시대에도 불구하고 國益을 최우선시 하고(37%) 社會체제는 正義福祉의 自由民主社會 추구(79%)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에 대한 자 존심을 갖고 있는 건실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社會체제에서 11%는 고전적 자유방임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10%는 절대평등의 사회를 이상적으로 봄으로써 극소수의 극한적 내지 낭만적인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5) 犯罪經濟的 行動決定

오늘날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犯罪性 集團行動에 대한 참가와 과격화는 Becker's Model에서 지적한 犯罪結果와 正常活動結果間의 B/C 分析的 判斷에 의한 요소가 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Becker는 인간의 合法的 행동과 不法的 行動의 追求에 있어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두고 '時間의 할당'에 관계되는 model을 제시했는데 이는 심리적 비용과 편익(B/C)을 富와 同等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Becker의 개념에 의하면 犯罪를 저지름에서 나오는 기대효용인 이득(gain)을 다음 equation에 따라 判斷한다.

$$EU = pU(Y-f) + (1-p)U(Y) \dots\dots ①$$

EU : 개인의 기대효용

p : 체포될 수 있는 주관적 확률

f : 체포되었을 때 처벌의 금전적 상당액

Y : 犯罪로부터의 이익

$U$  : 개인의 효용지수

즉  $EU$ 가 +로 되면 개인은 犯罪를 저지르게 되며 -가 되면 분명히 犯罪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f > Y$ 고,  $p$ 가 충분히 클 때는  $EU$ 가 -가 되므로 ).

그러나 이 假定은 처벌(刑罰)의 적정크기 선택의 分析에 있어서 논란이 있어 이를 좀 변경시켜 보면,

$$EU = pU(\bar{W} - L) + (1 - p)U(\bar{W} + G) \dots \dots \textcircled{2}$$

$\bar{W}$  : 개인의 現在富

$G$  : 犯罪로 인한 잠정적 수입

$L$  : 체포시 손실

$p$  : 체포확률

$U(\bar{W})$  : 어떤 代案의 효용

즉, 個人은  $EU > U(\bar{W})$ 일 때 犯罪行爲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위협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L, G, p$ 변수의 크기에 대한 결정은 도박에 가까우므로 개인이 富의 限界效用이 감소되는 위험회피를 생각한다면<sup>21)</sup>  $p$ 와  $L$ 이 확실히 낮고  $G$ 가 충분히 클 때만이 바람직한 판단이 될 것이다.

즉, 오늘날 大學生들의 集團行動의 參加에 대한 個人的 意思決定은 犯罪性 集團行動에 참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行爲의 結果인 처벌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이는 正常的인 學業活動에서 기대되는 효용이나 成就와 비교하여 行爲를 결정, 결국 集團行動에 參加하는 것이 報償이 더 크다고 보고 行爲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상당기간 동안에 集團行動을 한 자에게 형사처벌 후의 社會에서의(주로 政界, 官界) 厚待는 물론 學校內에서도 호텔 등애의 초치 위로와 장학금 부여등의 變則的 規範 적용에서 비롯된 예들이 이들 行爲決定에 準據로 되어 왔던 것이다.

다시 말하던 犯罪형태의 형태학적 이론과 경험적 연구 그리고 犯罪에 관한 공공

21) Pyle D.J. op cit, p.11.

정책 經濟學은 최소성 條件下의 人間行態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이 최소성의 존재가 경제적 행동 혹은 극대화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이 중요한 전제이다. 따라서 各自의 행위는 행동극대화에 의해 특정지워지며 犯罪行態 역시 最小성 조건하의 人間行態의 경우이다. 개인은 犯罪를 저지름으로써 어느 정도 만족될 수 있는 욕구(wants)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犯罪를 저지른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費用(cost)發生을 內包한다.<sup>22)</sup>

- 즉, {
- 체포와 처벌될 위험(risk)
  - 有罪로부터의 고통(suffering)
  - 다른 활동에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benefit)의 포기(opportunity cost)

따라서 犯罪行態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선택을 내포하고 있고 그러므로 경제분석을 사용함으로써 分析될 수 있는 것이다. 犯罪를 처리하는 公共政策(public policy) 역시 경제적 선택을 내포한다. 犯罪는 社會에 費用을 부과하고 社會는 이런 비용 등을 줄일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비용을 發生시킨다.

즉, 犯罪의 총량을 줄이는 것은 法 집행(혹은 재활개선프로그램 및 경당한 기회부여)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한다. 따라서 犯罪처리에 있어 적절한 public policy의 이슈는 犯罪 총량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純利益(net benefits)을 극대화하는 것 중의 하나다. 즉, 犯罪 때문에 社會에 부과되는 총비용(total cost)을 극소화하는 방법을 고찰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經濟分析은 犯罪에 관한 政策公衆정책의 分析때 역시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

- {
- 처벌(형벌)의 犯罪 억제효과
  - 처벌의 여러 형태에 대한 사회비용
  - 犯罪의 특수형태에 관련된 여러 법집행전략의 사회비용등이 대상이 된다.

22) W.A. Luksetich, M.D. White, Crime and Public Policy. Little Brown and Company p.1~4.

이렇게 볼 때 이들의 B/C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表 3-8>

	이 익 (benefit)	비 용 (cost)
일반적인 경 우	금전이익 작업환경개선 평생소득력증가 작업시간축소 제도, 타인에의 복수	체포와 처벌의 위험성 (risk) 유죄의 처벌로부터의 고통 (suffering)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미래 소득 등
學生행동	권위에의 도전 제도개선 정치적 立身 증가 장학금등 수혜 심리적 불만 해소 이데올로기의 정립 엘리트의 주장성취	○ 수업결손 ○ risk ○ suffering ○ opportunity cost : 수업결손, 미래 불투명, 취업곤란등

이는 결국 犯罪的 행동 및 향후 학생행동에 대한 報償 symbol 을 公共政策 (public policy) 분야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처벌의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보상받는 symbol 에 교환가치를 어떻게 인정하게 하느냐에 관건이 걸려 있는 것이다. 學生들이 合理的 사고로 행동을 일관한다면 B가 C보다 큰 한에선 집단행동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6) elite로서 사명의식과 왜곡

學園의 소요는 前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이 結合되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學生들의 正義感의 발로에서 찾을 수 있다. 社會現實과 既成世代에 대한 불만 등이 접진 것으로 學生들의 양식과 正義感에서 보면 개선 및 개혁의 욕구를 갖게 되고 前述의 學生運動의 一般的 性格에서 보았듯이 이에 대한 變革은 오직 學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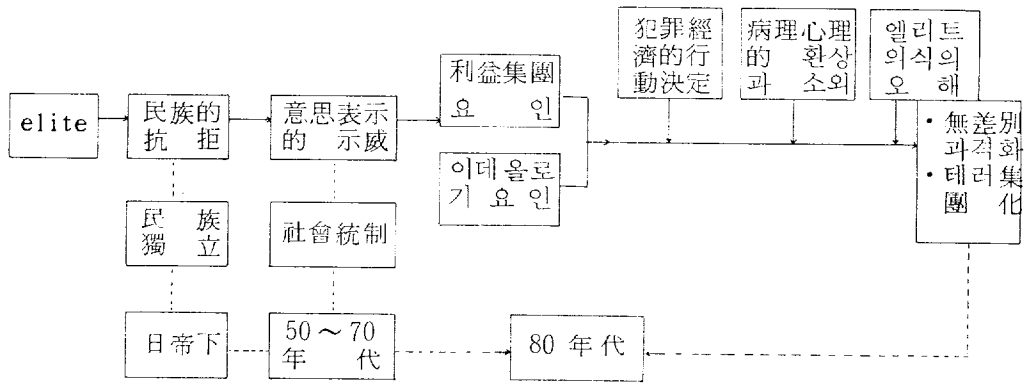
自身뿐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聯合戰略을 구사하고 意識을 擴散하면서 結束을 다져 끝내는 과격한 행동으로써라도 社會矛盾을 개선 하인다고 주장함으로써 社會구조를 양극화시켜 ‘적과 우리’로 고정시키는 부정적 행태가 있음이 여러 가지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다.

本來 elite란 보통 衆民에 대칭되는 말로서 한 나라와 사회의 文明 또는 文化的 遺産의 繼承能力을 가진 우수한 선택된 사람들로서 이를 리더 혹은 elite로 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支配階級으로서 選拔된 指導者를 의미하며 그들에게는 noblesse oblige, 즉 귀한 신분에 상응한 社會的 義務를 부여한다는 말이다. 그들은 평소 보통 衆民이 못하는 어려운 일을 해야 하며 국가나 社會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身命을 바쳐 싸우다가 생사를 같이 해야 되는 道德的 存在로서 위치와 역할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수의 학생은 이 道德的 存在로서 指導的 支配階級으로서 位置와 役割을 왜곡시키거나 환상(illusion)적으로 생각함으로써 行動決定이 非合理的으로 이루어지고 끝내는 道德的 存在가 아닌 파괴적 비도덕적 존재로까지 發展하게 되는 양상을 최근 우리 大學生의 집단행동등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는 noblesse (귀한 신분)만 알지 oblige (의무와 사명)를 모르는 경우의 행동으로서 특히 名門化되어 있는 大學集團일수록 이 소수그룹에 의한 집단행동의 횡수와 양상이 격렬화되어 갑을 전술의 行動動因分析에서 볼 수 있었다. 이는 분명히 엘리트환상(elite illusion)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적 특유의 양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상의 6가지의 문제 接近을 토대로 하여 한국학생들의 集團行動을 概念圖式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으며 그 性格은 複合的인 것으로 對應戰略 역시 多角的이어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상의 과격화 등의 요인은 日帝下の 體制에 대한 抗拒세력群과 同調勢力群이 6·25 전후의 左翼 잔재와 結탁할 수 있었고 3,4 共和國下の 정치꾼 및 不正蓄財 잔재와 더불어 정리되지 않은 채 80년대 産業·多元社會의 次要인과 結合됨으로써 學生集團行動에 그대로 表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3. 우리 나라 學生集團行動 行態의 特徵

우리나라 大學生 集團行動의 行態特性은 ‘集團性’과 ‘行動性’에 있다. 日帝 下の 集團性이 내쇼날리즘(nationalism)에 기초한 것이라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信念的(trust) 요인으로 이루어진 集團性으로 볼 수 있으며 80년대 이후는 個別利益的(interest)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集合性(aggregate)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던 80년대 이후의 學生集團行動의 性格과 양상의 特徵은

첫째, 性格要因인 精神, 心理, 動機, 欲求의 근본적 性向에 관한 것이 個別利益化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政治利益의 추구, 심리적 소외와 갈등, 이데올로기적 신념체계, 역사적 저항유산, 犯罪經濟的 보상심리 등이 內在해 있으며 이것이 elitism으로 表出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行動方式 및 樣相面에서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규정할 수 있다.

#### ① 全天候集團行動

계절, 휴일, 방학, 일기조건, 장소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全天候型集團行動이다.

② 多發烽火式行動

市街, 建物, 學校, 市場, 教會, 外國공관 등에서 同時發生을 기도하는 양상이다.

③ 中高原(peaked cycle) 持續型

少數 核心學生들은 日日行事式으로 행사를 지속할 뿐 아니라 이를 연중, 매년 반복하고 있다.

④ 名門校先發效果型

소위 名門校에서 集團行動이 先行되면 이의 확산이 타대학으로 전달되는 양상으로 진행된다.

⑤ 8大 妨害企圖型

授業妨害(學校), 生産妨害(產業), 秩序妨害(市街), 商業流通妨害(市場), 公務妨害(公共建物), 生活妨害(大學 주변촌), 體制妨害(政府), 외교·安保妨害(외국공관 및 미군철수)

⑥ 共同戰線構築型

勞組, 教會, 他校, 地域社會, 政黨, 利益團體, 壓力團體, 在野와 연계하여 共同전선을 구축하는 전략을 취한다.

⑦ 手段의 暴力化와 準 terror 型

破壞, 放火, 占據, 봉쇄(blockade) 등의 類似 terror 手段을 취하고 있다.

세제, 集團行動 類型面에서 group 행태 + mass 행태를 띠며 mass는 다시 구체적으로 movement적인 것과 무질서와 부화뇌동의 양상을 띠는 데모로 나타났고 여기에 80년대 이후에는 collective 행태를 띠고 있음이 그 특징이며 이는 특히 crowds 행태에서 출발, 크게는 準革命的 양태를 띠고 있어 행태가 가변적이고 불규칙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日帝下의 학생운동은 popular movement로, 50년대 말과 60년의 4·19 학생운동은 革命的인 행동행태로, 그리고 60년대 ~ 70년대의 것은 social movement의 社會統制的作用으로, 79년 10.26 이전의 부·내 사태 등은 준혁명적 방기로 그리고 80년 이후 지금까지의 행동은 collective action으로 볼 수 있어

group 행태가 內包되어 있는 오늘날의 학생행동을 분석하면 group+mass+collective behavior가 혼합되어 있고 그 進行段階가 불규칙하고 결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오늘날까지도 구분없이 ‘학생운동’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행동행태는 그 행태의 특징적 속성과 양상에 따라 카테고리화하여 유형화된 행태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日帝下의 민족운동(popular movement)의 성격을 띤 것은 ‘학생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60~70년대에 지속된 행동은 社會改善과 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우리가 통상적 용어로 사용해 온 ‘데모’(demonstration : 시위)로 규정할 수 있으며, 80년대 이후의 과격화된 양상으로까지 발전된 학생운동은 group+mass가 혼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 나타난 collective 행태를 띠고 있어 이것을 우리는 group+mass가 혁명적 봉기(revolutionary uprising)나 테러리즘(terrorism)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초기 개념으로서 이를 협의의 ‘集團行動’으로 규정한 것이다(전술의 形成과정, 행동양태 참조). 그러므로 ‘학생운동’이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할 경우 행동의 오해가 내포되어 예컨대 무법자적 행동(mob)을 하는 사람이 자기는 상에서 분류된 학생운동의 좋은 의미의 행동에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더 열광적일 수 있으므로 이상의 정의에 따른 용어의 사용이 구분되어야 되리라 본다. 즉 일제하의 것은 ‘學生運動’으로, 50~70년대의 것은 ‘데모 혹은 다중시위운동’으로, 그리고 80년대 이후 오늘의 것은 ‘集團行動’으로 보면 그 행태의 성격에 따른 용어의 구사가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용상으로는 이러 유형이 혼합되어 있지만 지금의 행동 행태는 ‘운동’도 ‘데모’도 아닌 ‘집단적 행동’의 성격이 지배적인 것으로 봄이 바른 표현이다.

네째, 집단행동의 形成過程面에서 group이 核心이 되어 mass로 發展했다가 collective한 것으로 變形되는 것이 과거 分析의 일반적 경향이었으나 시대별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반드시 시계열이 일정하게 발행순서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집단화의 과정에서도 대체로 6가지 요인의 변형양상을 다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이나 즉 수렴적인 것으로 일시에 한 장소에 물리적으로 물리거나 동일한 목표하에 이해당사자로서 평소에 잠재해 있던 생각이 행동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conversion) 心理傳染(contagion)을 통한 사고마비의 정신상태에 이르거나 스스로가 지도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여 행동하고 때로는 폐지어 빙빙돌기(milling)를 계속하다 여기에서 에코(echo)를 살피 분위기를 순환시킨 다음 집단적 흥분상태를 조성하여 행동참여자를 동원함으로써 사회적 진염을 확산시키는 전염이론의 단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 빙빙돌기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하거나 기타 물리적 제재가 가해지면 극도의 흥분이 유발되고 混亂(demoralization)이 계속되면서 거체적 행동반응을 돌맹이 및 화염병 투척으로 계속하면서 잠시 후에는 이 양상이 集團防禦(collective defence)로 변한다.

이 집단방어는 견고한 반응을 보이면서 양극화(polarization)되어 경찰의 작용에 따라 그 相對的 反作用을 보이면서 集團轉向(mass conversion)으로 급변하여 생각이 일치하고 행동의 단결이 굳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별다른 생각없이 참여했던 학생, 근로자, 일반 시민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태도가 바뀌면서 처음에 단순한 反應(response)이 크게는 혁명적 봉기(revolutionary uprising)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우리 나라 학생집단행동의 形成 및 發展過程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第 4 節 集團行動과 順應決定要因分析

##### 1. 研究假說의 設定

本 經驗的 研究에서 分析될 規制政策의 政策對象集團에 대한 順應 및 不應程度의 決定要因의 理論的 論議는 前述한 順應決定要因의 要因性에서 본 바와 같이 個人的 利益性, 法執行의 強制性, 政策의 正當性, 補償등의 誘因性과 處罰에 의한 犯罪抑制效果影響要因分析에서 본 法에 대한 道德性, 處罰의 確實性, 同僚그룹의 影響이 있음을 보았다. 이를 順應決定 B/C Mechanism에서는

이나 즉 수렴적인 것으로 일시에 한 장소에 물리적으로 물리거나 동일한 목표하에 이해당사자로서 평소에 잠재해 있던 생각이 행동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conversion) 心理傳染(contagion)을 통한 사고마비의 정신상태에 이르거나 스스로가 지도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여 행동하고 때로는 폐지어 빙빙돌기(milling)를 계속하다 여기에서 에코(echo)를 살피 분위기를 순환시킨 다음 집단적 흥분상태를 조성하여 행동참여자를 동원함으로써 사회적 진염을 확산시키는 전염이론의 단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 빙빙돌기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하거나 기타 물리적 제재가 가해지면 극도의 흥분이 유발되고 混亂(demoralization)이 계속되면서 거체적 행동반응을 돌맹이 및 화염병 투척으로 계속하면서 잠시 후에는 이 양상이 集團防禦(collective defence)로 변한다.

이 집단방어는 견고한 반응을 보이면서 양극화(polarization)되어 경찰의 작용에 따라 그 相對的 反作用을 보이면서 集團轉向(mass conversion)으로 급변하여 생각이 일치하고 행동의 단결이 굳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별다른 생각없이 참여했던 학생, 근로자, 일반 시민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태도가 바뀌면서 처음에 단순한 反應(response)이 크게는 혁명적 봉기(revolutionary uprising)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우리 나라 학생집단행동의 形成 및 發展過程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第 4 節 集團行動과 順應決定要因分析

##### 1. 研究假說의 設定

本 經驗的 研究에서 分析될 規制政策의 政策對象集團에 대한 順應 및 不應程度의 決定要因의 理論的 論議는 前述한 順應決定要因의 要因性에서 본 바와 같이 個人的 利益性, 法執行의 強制性, 政策의 正當性, 補償등의 誘因性과 處罰에 의한 犯罪抑制效果影響要因分析에서 본 法에 대한 道德性, 處罰의 確實性, 同僚그룹의 影響이 있음을 보았다. 이를 順應決定 B/C Mechanism에서는

$Bc - Cc > Bnc - Cnc$  : 順應

$Bc - Cc < Bnc - Cnc$  : 不應

( $Bc$  : 順應利益,  $Cc$  : 順應費用,  $Bnc$  : 不應利益,  $Cnc$  : 不應費用)으로 보았다. 이들을 土臺로 分析의 틀을 順應影響變數를 獨立變數로 ① 政策의 正當性, ② 執行機關의 信賴性, 正確性, 公正性, ③ 執行의 一貫性으로 定하고 ① 道德性, ② 處罰, ③ 誘因을 媒介變數로 하되 處罰教育人을  $B/C$ 의 크기에 의한 行動決定要因으로 보아 從屬變數인 規制政策에의 不應 즉 學生集團行動에의 參考로 設定하였다.

이에 따라 獨立變數와 媒介變數가 從屬變數에 미치는 影響을 政策對象集團(Policy Target Groups)인 學生集團行動그룹별(意圖的 參加그룹, 單純偶然的 參加그룹, 不參그룹)로 어떤 關係를 維持하는가를 보기 위해 前述한 理論的 論議와 既存의 經驗的 研究에 根據하여 다음과 같은 假說을 設定할 수 있다.

1) 人口統計學的變數와 學生集團行動과의 關係

[假說 1] 大學生의 學年이 높아짐에 따라 意圖的 參加性向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假說 2] 專攻에 따라 參加性向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假說 3] 家庭環境과 就業展望의 정도에 따라 集團行動參加類型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假說 4] 平等의 價値를 選好할수록 意圖的 參加性向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2) 規制政策의 不應影響變數와 學生集團行動과의 關係

[假說 5] 規制政策의 正當性에 대한 認識은 集團行動參與그룹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假說 6] 法的·行政的規制, 政治이데올로기의規制, 經濟的規制에 대한 認知判斷은 集團間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假說 7] 信賴性·公正性·一貫性의 知覺은 集團間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假說 8] 道德性, 處罰, 誘因性의 知覺은 集團間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調查方法

1) 變數의 操作化와 設問의 作成

調查設問紙의 作成은 先行研究의 不在로 既存資料의 參考가 어려웠으므로 理論的 根據를 토대로 獨창적으로 作成하였다.

質問의 形式은 應答의 範疇들을 간단히 選擇하도록 하는 閉鎖型質問(closed-ended questions)中 選擇型과 重要度選好排列方式을 택하였으며 各 問項에 대한 應答은 Likert의 5點評定尺度(5-point rating scale)에 의하였으며 選好順位 賦與問項은 가장 우선시 하는 것으로부터 順位를 ①~⑤까지 부여하도록 하였다. 대체로 政策에 대한 態度를 묻는 質問에는 序列尺度가 다음과 같은 利點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음 各 測定水準의 特徵과의 比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各 測定水準의 特徵

	範 疇 的 特 性			
	相互 排除性・ 包括性	序 列 性	標準測定單位 有無	零의 意味有無
명 목 척 도	○			
서 열 척 도	○	○		
능 간 척 도	○	○	○	
비 율 척 도	○	○	○	○

出處 : Loether. H. J., Mcrtvish D.G.,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Boston, 1974, p.19.

최초로 作成된 調查表는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의 1학년 학생을 對象으로 豫備 調查한 結果 몇개의 문항 예컨대 學生團體의 活動에 대한 質問이 있어서 이를 具體化하였으며 이를 修正한 後 調査員 4名과 最終討論을 거쳐 問項을 確定했으며 이를 變數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別添調查表 參照).

獨立變數	規制政策 正當性 : v13, v 16 - ①~⑦, 信賴性 : v17, v18, 一貫性 : v19
媒介變數	道德性(政策一般評價) : v1 - v 10, v11-12-2 處罰 : V22, 23, 誘因 : v16 - ⑧ - ⑫, v 24
從屬變數	順應·不應의 정도 : v 25 ( v 26 )
分類變數	v 14, v 15, v 27, v 28, v 29, v 30, v 31 (平等 vs 非平等) X 21-2.

2) Sampling 方法과 調查活動

우리나라 大學生의 集團行動의 行態要因을 分析하기 위한 本 論文의 母集團은 우리나라 全體大學生이며 이의 標本은 全國的으로 確率標集 또는 非確率標集이 이루어져야 되나 大學生이라는 同質性和 歷史的 脈絡에서 본 學生集團行動의 동기의 同質性 때문에 서울大學校 學生을 母集團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本 研究者가 檢證하고자 하는 데모에의 參加類型別 集團間 態度的 차이를 보기 위해 데모頻度가 많은 大學의 學科와 그러 하지 않는 大學의 學科 그리고 중간정도라고 判斷된 學科를 서울大學校 學生課의 幹部와의 面接에서 確認한後 이들 學科의 就業現況資料를 獎學擔當官室에서 入手하여 이들 學科中 就業率이 높은 學科와 낮은 學科 그리고 就業의 國家統制가 이루어지고 있는 學科 그렇지 않은 學科를 選定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標本調查對象學科

所屬大學	所屬學科
人文大學	哲學科, 東洋史學科, 西洋史學科, 國史學科
社會科學大學	社會學科, 政治學科, 外交學科, 經營學科 (포함)
法科大學	法學科
師範大學	教育學科, 國語教育科, 獨語教育科, 佛語教育科
其他	其他專攻

'87 學年度 卒業生就業現況('88.3.1 基準)

大 學 區 分	純 粹 就 業 率		
	男	女	其 他
人 文 大 學	32.9	31.8	32.6
社 會 科 學 大 學	24.6	34.0	25.5
※ 經 營 大 學	51.5	57.1	51.6
法 科 大 學	69.6	72.2	69.8
師 範 大 學	39.3	50.3	45.2

資料 : 서울大學校 獎學擔當官室

또한 이상의 標本選定은 서울시 警察局이 管内 學園事態를 分析한 ('87年 1年 동안) 資料에서 提示된 拘束者가 제일 많은 大學(서울大 138名, 14%)과 專攻別로는 人文系列(329名, 33.7%), 商經系列(163名), 社會系列(101名), 師範系列(50名), 法學(49名)으로 分布된 點도 參考가 되었다. 學年別로는 3學年(33.7%), 2學年, 4學年, 1學年順이었으며 出身地域은 서울이 221名(22.6%)으로 가장 많아 서울地域에 局限했으며 保護者職業 또한 商業, 農林水産, 會社員順으로 提示되어 있어 '87學年度의 學生데모의 人口統計學的資料가 Sampling 選定에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이상의 調査方法은 層化標本抽出方法(Stratified sampling)으로 同質的인 下位集團에서의 標集誤差가 異質的인 集團에서의 誤差보다 작다는 데에 論理的 根據를 두었으며 마지막 段階에서의 就業率등의 母集團이 갖는 特性의 比率에 맞추어 標本을 抽出함으로써 非確率標集의 割當標集(Quota sampling)方法도 考慮하였다.

이에 따라 標本の 크기는 650名으로 하였으며 이중 633名이 回收되어 分析對象으로 하였다. 이들의 人口社會學的統計特性은 다음과 같다.

〈分析對象者의 人口統計學의 特性〉

區 分	應 答 者 數		비 率
專 攻	人文	137 (24.6)	
	社會	185 (33.2)	
	法學	80 (14.4)	※ 除外 76
	師範	41 ( 7.4)	
	其他	114 (20.4)	
學 年	1 學年	127 (21.4)	
	2 "	135 (22.7)	
	3 "	124 (20.1)	※ 除外 38
	4 "	122 (20.5)	
	復學生	87 (14.6)	
生活水準	上	38 (6.26)	
	中	400 (65.9)	※ 除外 26
	下	169 (27.8)	
就業展望	上	197 (33.3)	
	中	316 (54.5)	※ 除外 42
	下	78 (13.2)	
價 值	平等	150 (25.4)	
	其他 (사랑, 통일등)	442 (74.6)	※ 除外 41

그리고 調査員의 선발과 訓練은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에 勤務中인 助教를 통하여 該當大學 및 該當學科의 學生을 調査要員으로 選拔하였다.

이에따라 行政大學院 在學生 2名과 國史學科 및 社會學科 學生 各 1名을 調査要員으로 確定하고 行政大學院 行政調査研究所에서 調査時 주의사항 특히 學期末 試驗과 추위등의 環境不適合要因 說明과 質問自體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說

明會를 가졌다.

이후 調査要員들이 각기 10여일에 걸쳐 調査를 進行하였다.

### 3. 檢定結果와 解釋

#### 1) 人口統計學的變數와 集團行動類型과의 關係

우리나라 大學生의 人口統計學的變數와 集團行動類型 즉 集團行動(데모)에의 意圖的 參加形態와 單純偶然的 參加形態, 非參加形態間의 關係는 유의할 것이라는 假說 1-4 는 Chi-Square( $\chi^2$ )分析으로 檢證되었다.

#### ① 學年別 데모參加類型과의 關係

學年別 參加類型表

Frequency Row Pct Col Pct	① 1 學年	② 2 學年	③ 3 學年	④ 4 學年	⑤ 復 學	Total
①非 參 加	34 32.38 26.77	20 19.05 14.81	22 20.95 17.74	19 18.10 15.57	10 9.52 11.49	105
②單 純 參 加	37 22.16 29.13	40 23.95 29.63	35 20.96 28.23	37 22.16 30.33	18 10.78 20.69	167
③意圖的參加	56 17.34 44.09	75 23.22 55.56	67 20.74 54.03	66 20.43 54.10	59 18.27 67.82	323
Total	127	135	124	122	87	595

Frequency Missing = 38,  $\chi^2 = 16.255$ ,  $p = 0.039$ , Df = 8

假說 I 의 學年(授業年限)이 높아짐에 따라 積極的으로 集團行動에 參加하려는 의도가 强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p > .05$  水準에서  $H_0$ 는 棄却되고 學年別 차이가 있음이 檢證되었다. 다시 말하면 1학년은 非參加集團의 比率이

26.77%인 反面 2,3,4, 復學生의 경우에는 54% ~ 67%까지의 比率에 해당하는 學生이 積極的 意圖參加集團에 속하고 있음으로써 高學年이 될수록 集團行動 參加性向이 目的志向의이며 積極的인 傾向을 띠고 있다. 그러나 1학년도 參加를 決定한 경우에는 단순한 參加보다는 積極的 參加傾向을 띠고 있어 高學年 學生의 데모參加傾向을 닮아가는 傾向을 發見할 수 있다.

따라서 假說 I 은 有意的 差異를 보이고 있어 妥當化 되었다.

② 專攻別 데모參加類型과의 關係

Frequency Row Pct Col Pct	① 人 文	② 社 會	③ 法 學	④ 師 範	⑤ 其 他	Total
①非 參 加	17	32	17	10	24	100
	17.00	32.00	17.00	10.00	24.00	
	12.41	17.30	21.25	24.39	21.05	
②單 純 參 加	50	28	31	17	38	164
	30.49	17.07	18.90	10.37	23.17	
	36.50	15.14	38.75	41.46	33.33	
③意 圖 參 加	70	25	32	14	52	293
	23.89	42.66	10.92	4.78	17.75	
	51.09	67.57	40.00	34.15	45.61	
Total	137	185	80	41	114	557

Frequency Missing = 76,  $\chi^2 = 38,624$ ,  $p = 0.000$ ,  $Df = 8$

假說 2의 專攻別 데모參加性向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 것도 有意味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p < .001$  水準에서  $pr$ 가 0.000으로 이때  $\chi^2$ 의 값이 38,624로 나타났다.

이의 性向을 보면 人文·社會科學分野의 學生들이 의도적 참가에 강한 態度 (51%와 68%)를 보인 반면 法學科와 師範大學의 학생들이 單純參加 (38% -

41%)와 非參加(21% - 24%)이 상대적으로 크게 分布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師範大學은 單純參加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法科大學과 師範大學의 學生들이 大學生에의 正當성이나 이에 의한 의도가 缺如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卒業後 就業에 대한 國家統制 즉 面接 및 任用에 대한 不利益措置에 대한 態度留保의 性向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大學生들은 의도적 참가경향을 띠고 있으나 專攻別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假說은 妥當化되었다.

③ 生活水準別 集團行動參加類型과의 關係

Frequency Row Pct Col Pct	① 上	② 中	③ 下	Total
① 非 參 加	4 3.67 10.53	80 73.39 20.00	25 22.94 14.79	109
② 單 純 參 加	18 10.53 47.37	111 64.91 27.75	42 24.56 24.85	171
③ 意 圖 參 加	16 4.89 42.11	209 63.91 52.25	102 31.19 60.36	327
Total	38	400	159	607

Frequency Missing = 26,  $\chi^2 = 11.188$ ,  $p = 0.025$ ,  $Df = 4$

大學生의 生活水準에 따라 集團行動類型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假說도 0.05 水準에서 有意味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chi^2 = 11.188$ ). 三觀的 輿論이지만 生活水準이 上 이상인 사람은 單純參加의 態度를 보인 반면 中·下의 水準에 있는 學生은 52%와 60%의 강한 意圖의 態度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大學生의 家庭形便이 좋은 學生과 보통이하인 學生들의 學生대오에의 參加性向은 차이가 있

음을 보여주며  $p < .05$  水準에서  $H_0$ 는 棄却되고 集團間 有志的 차이를 發見하게 된다.

④ 就業展望別 데모參加類型과의 關係

Frequency Row Pct Col Pct	① 上	② 中	③ 下	Total
① 非 參 加	36 33.64 18.27	59 55.14 18.67	12 11.21 15.38	107
② 單 純 參 加	64 37.87 32.49	87 51.48 27.53	18 10.65 23.08	169
③ 意 圖 參 加	97 30.79 49.24	170 53.97 53.80	48 15.24 61.54	315
Total	197	316	78	591

Frequency Missing = 42,  $\chi^2 = 3.995$ ,  $p = 0.407$ , Df = 4

假說 3의 家庭形便과 關聯하여 就業展望에 의한 데모參加性向을 檢證한 결과 이 는  $p = 0.407$ ,  $\chi^2 = 3.995$  로 ( $p > .407$ ) 有意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최초의 데모發生頻度和 各科의 就業率과의 相關關係를 보고자 했던 의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의 關係가 直接的이지 못함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傾向은 就業率 및 展望이 좋을 때에는 단순참가의 경우까지 이르나 就業展望이 中·下에 이룰수록 意圖的 參加가 상당한 크기로 增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54%와 62%).

假說 4의 質問은 平等, 사랑, 地域, 門閥, 民族統一의 價値中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을 選擇토록 한 價値性向에서 平等을 其他 價値에 비하여 중히 여기는 性向이

⑤ 選好價値別 데모參加類型과의 關係

Frequency Row Pct Col Pct	① 平等	② 사랑·통일등	Total
① 非參加	23 21.50 15.33	84 78.50 19.00	107
② 單純參加	41 24.70 27.33	125 75.30 28.28	166
③ 意圖參加	86 26.96 57.33	233 73.04 52.71	319
Total	150	442	592

Frequency Missing = 41,  $\chi^2 = 1.314$ ,  $p = 0.518$ ,  $Df = 2$

데모의 의도적 참가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났다(57%). 그러나 이를 其他價値와 2分하이 보았을 때에는  $\chi^2 = 1.314$ ,  $pr = 0.518$  로  $p > .518$  로 되어 有意的인 차이를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確實한 것은 平等主義者들이 데모에 강한 의도를 지니고 있음을 示唆한 情報로 評價할 수 있으므로 本 假說에서는 統計的 意味와 統計值에서는 ( $\chi^2 = 1.314$ ,  $pr = 0.518$ ) 로  $p > .518$  의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 볼 수 없으나(其他價値와의 關係) 平等의 價値 하나만의 集團間 性向에는 차이가 있는 즉 意圖的集團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2) 規制政策의 不應影響變數와 集團行動類型과의 關係

假說 5~8은 規制政策의 不應 및 順應에 影響을 주는 變數로서 이들 각각의 데모行動決定要因과의 關係를 본 것으로서 이는 ANOVA 分析技法에 의한 F Test의 結果이다. 이들 各各의 關係를 檢證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總括表 및 個別變數와의 關係表).

〈總括表〉

影響變數에 의한 데모參加類型과의 關係

X 14 와 關係	① 非 參 加	② 單 純 參 加	③ 意 圖 參 加	F	pr	F
X 13 (正當性)	3.4074	3.4464	3.7157	7.77	0.0005	*** p < .001
X 16 ①~⑤ (法·行政的規制)	2.7762	2.4177	2.3072	18.37	0.0001	*** p < .001
X 16 ⑥~⑦ (政治的 이데올 로기規制)	3.8032	4.0178	4.2469	24.45	0.0001	*** p < .001
X 17 (信賴性)	3.7615	3.8555	4.3049	24.82	0.0001	*** p < .001
X 18 (公正性)	3.9727	4.0058	4.5549	38.75	0.0001	*** p < .001
X 19 (一貫性)	3.435	3.431	3.588	1.82	0.1624	p > .1624
X 1-10 (道德性:一般)	3.7927	3.9310	4.2640	41.08	0.0001	*** p < .001
X 11 (道德性)	2.5045	2.1897	1.7583	48.26	0.0001	*** p < .001
X 12-1(正當性)	2.473	2.451	2.633	1.68	0.1867	p > .1867
X 12-2( // )	3.071	2.816	2.657	8.14	0.0003	*** p < .001
X 22 (處罰)	2.3714	2.1235	1.8834	15.46	0.0001	*** p < .001
X 23(處罰效果)	3.904	3.854	4.230	10.59	0.0001	*** p < .001
X 16-3(誘因)	3.8491	3.7803	4.0343	8.30	0.0003	*** p < .001
X 24 (誘因)	3.011	3.117	3.325	3.27	0.0388	* p < .05
X 25 (參加)	2.8444	2.2222	1.6585	85.67	0.0001	*** p < .001
X 26 (個人利益)	2.135	2.170	2.032	1.42	0.2425	p > .2425

상기 總括表에서 보면 데모參加의 類型을 決定하는 變數 14 와의 關係를 各各의 獨立變數에서 보면 X 13 (正當性), X 16 - ① - ⑤ (法・行政的規制), X 16 - ⑥ - ⑦ (政治的・이데올로기規制), X 17 (信賴性), X 18 (公正性), X 1-10 (一般的 道德性), X 11 (道德性), X 12-2 (正當性), X 22 (處罰性), X 23 (處罰效果性), X 16-3 (誘引), X 25 (參加)의 變數는 0.001 水準에서 아주 유의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X 24 (誘引)는 0.05 水準에서 유의미한 반면 X 19 와 X 26, X 12-1 은 유의미한 차이를 發見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學生들의 데모原因을 政策의 正當性, 政治的・이데올로기적 규제, 政策의 信賴性, 公正性, 道德性, 誘引性에 대한 不信과 正當한 評價가 주어지지 못했음을 意味하며 이에 處罰 및 處罰效果성도 지나치게 이루어졌거나 또 效果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從屬變數 X 25 와 獨立變數 X 26 의 關係

$$X 25 = \alpha + \beta \times X 26 \rightarrow X 25 = 1.47 + 0.259 \times X 26$$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ob Value
INTERCEP	1	1.470807	0.09102273	16.159	0.0001
X 26	1	0.259648	0.03976114	6.530	0.0001

상기의 回歸方程式 (General Linear Model)은 犯罪豫防, 違法行動禁止, 民主化, 亂情秩序維持등의 社會的 利益 (Social Benefit)이 個人的 利益 (individual Benefit)에 직결되어 결국 데모에의 參加가 바람직했으며 하게 되었다는 것이 prob = 0.0001, T = 6.530 의 값으로 아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關係式으로 X 26 의 그와같은 생각이 강할수록 데모에의 參加 (X 25)가 강하게 (커진다) 나타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獨立變數 (X 25)에 影響을 미치는 有效한 影響變數는 다음 표에서와 같이 X 13, X 19 를 제외한 나머지 變數는 X 25 에 影響을 크게 미친다고 볼 수 있다.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ob Value
INTERCEP	1	5.125336	0.32570034	15.736	0.0001
X 13 - 1	1	-0.019618	0.03851067	-0.509	0.6107
X 16 - 2	1	0.102040	0.04982559	2.048	0.0411
X 16	1	-0.308619	0.06410949	-4.814	0.0001
X 17	1	-0.170083	0.04556499	-3.733	0.0002
X 18	1	-0.295109	0.05156927	-5.723	0.0001
X 19	1	-0.017027	0.03559765	-0.478	0.6326

4) 變數 26 에 影響을 미치는 變數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ob Value
INTERCEP	1	3.649638	0.38194239	9.555	0.0001
X 13	1	0.002210	0.04411571	0.050	0.9601
X 16 - 1	1	0.006267	0.05826860	0.108	0.9144
X 16 - 2	1	-0.022023	0.07432754	-0.296	0.7671
X 17	1	-0.156678	0.05183329	-3.023	0.0026
X 18	1	-0.216902	0.05831849	-3.719	0.0002
X 19	1	0.020132	0.04110621	0.490	0.6245

그리고 上記와 關聯하여 X26 에 影響을 미치는 變數로는 X17 과 X18 만이 有意味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두 -0.157과 -0.217 의 부정적 값을 지니고 있다.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ob Value
INTERCEP	1	2.794286	0.47544125	5.877	0.0001
X - 1	1	-0.129451	0.08509329	-1.521	0.1288
X 11	1	0.058070	0.05495342	1.057	0.2911
X 12 - 1	1	0.007822	0.03630215	0.215	0.8295
X 12 - 2	1	0.067571	0.04521491	1.494	0.1357
X 22	1	0.131723	0.04861394	2.710	0.0070
X 23	1	0.008304	0.04224168	0.197	0.8442
X 16 - 3	1	-0.182705	0.06164903	-2.964	0.0032
X 24	1	-0.026939	0.03392915	-0.794	0.4276

이의 X 22 와 X 16-3 만이 媒介變數Ⅱ(X 26)에 影響을 미치는 有意味한 變數로 測定되었다. 이때의 값은 X 22 는 0.132 을, X 16-3 은 -0.183 로 나타났다.

## 第 5 章 結語 및 提言

우리나라 大學生의 集團行動의 形態를 決定하는 요인은 巨視的觀點(Macro approach)에서 보면, 反獨裁, 民主化, 富의 均等分配, 立法制度改善등이라 볼 수 있으며, 최근의 國民意識調查에서도 韓國民主化에 貢獻한 集團으로 學生을 지적한 사람들이 42.2%로서 야당 19.9%, 在野 11%, 여당 10.8%보다 단연 압도적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sup>

그러나 사람의 행동결정요인은 그자체의 목적이 아무런 타당적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實定法上으로도 制度 및 관례상으로 그 手段實現方法이 禁止 내지

1) 한국일보 '88.8.17.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ob Value
INTERCEP	1	2.794286	0.47544125	5.877	0.0001
X - 1	1	-0.129451	0.08509329	-1.521	0.1288
X 11	1	0.058070	0.05495342	1.057	0.2911
X 12 - 1	1	0.007822	0.03630215	0.215	0.8295
X 12 - 2	1	0.067571	0.04521491	1.494	0.1357
X 22	1	0.131723	0.04861394	2.710	0.0070
X 23	1	0.008304	0.04224168	0.197	0.8442
X 16 - 3	1	-0.182705	0.06164903	-2.964	0.0032
X 24	1	-0.026939	0.03392915	-0.794	0.4276

이의 X 22 와 X 16-3 만이 媒介變數Ⅱ(X 26)에 影響을 미치는 有意味한 變數로 測定되었다. 이때의 값은 X 22 는 0.132 을, X 16-3 은 -0.183 로 나타났다.

## 第 5 章 結語 및 提言

우리나라 大學生의 集團行動의 形態를 決定하는 요인은 巨視的觀點(Macro approach)에서 보면, 反獨裁, 民主化, 富의 均等分配, 立法制度改善등이라 볼 수 있으며, 최근의 國民意識調查에서도 韓國民主化에 貢獻한 集團으로 學生을 지적한 사람들이 42.2%로서 야당 19.9%, 在野 11%, 여당 10.8%보다 단연 압도적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sup>

그러나 사람의 행동결정요인은 그자체의 목적이 아무런 타당적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實定法上으로나 制度 및 관례상으로 그 手段實現方法이 禁止 내지

1) 한국일보 '88.8.17.

不許容될 때에는 行動의 決定이 어렵게 된다. 이것이 바로 社會要求가 體制와 구조를 바꾸어 수용하기를 바라는 學生들의 集團行動에 의한 政治體制의 投入의 한 요소였던 반면 政治體制는 1910년 이후 지금까지 外勢 및 內部 體制의 固着固守로 도리어 社會要求(Social demands)를 억압과 방괴를 계속하여 왔던 것이다. 이것이 time lag 를 두고 반복한 것이 바로 危機와 變遷을 거두한 1, 2, 3, 4, 5, 6, 共和國政府의 變動이었다. 理想의 社會要求를 非結社의 集團行動에 의해 주장했던 주도 세력이 바로 學生들이었으며, 軍의 介入은 體制延長의 elite 交替만을 이루어 왔던 것이다.

이와같은 危機(crisis)의 요인은 正當性, 正體性, 參與性, 統合性의 요인에 의해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으나, 87.6.29 宣言은 民主化의 大憲章으로 제시되어 이에 國民 모두가 合意하고 統合, 正體, 正當性 參與의 위기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 民主化의 社會要求, 體制의 變化要求를 수용한 것으로 이 이상은 또다시 社會要求의 주장으로 體制의 變動을 시도하려는 어떤 명분과 주장도 수용할 수 없는 限界를 설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 이후에는 法執行機能이 회복되어 이에 대한 對處, 즉, 規制政策의 實效性이 確保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規制政策의 正當性을 確保한 토대가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規制政策의 實效性 確保는 바로 政策對象集團의 順應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의 지지 즉, 順應이 아닌 反對 즉 反應이 發生할 때에는 이의 順應保障裝置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課題가 되며, 學生들의 集團行動이 더이상 規制政策에 不應하는 事態를 예방·차량하기 위하여는 集團行動에 參加하는 大學生들의 個別行動水準에서 이들의 規制政策에 대한 不應의 態度에 대한 分析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토대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規制力 確保가 실현되는 것이다.

다라서 본 論文에서는 規制政策의 기초를 提示하고 이에 의한 政策에의 不應 요인을 理論的 論議에서 도출, 變化하여 이의 조작되된 變數로 실제 學生들의 態度를 測定하였으며, 이에 학생 개인의 人口統計學的 變數와 관련하여 分析의

태도로 삼았다. 이에 의하면 데모에 적극적으로 參加하는 學生集團(Group) 과 단순한 우연적 參與形態와 非參加하는 集團間에 여러 變數에 의한 차이가 유의적으로 검증되었다.(이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政策的提案을 하던(內容은 本文參照)

첫째, 학생들은 87.6.29 以後에도 政策的 正當性, 道德性, 信賴性 등에 아직 불신하고 있는 정도가 심함으로 政策信賴의 回復이 급선부임을 알 수 있다. 이 요인만 해소되면 動機自體가 없어지므로 政策的인슈로 인한 秩序破壞등은 줄어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둘째, 학생들의 상기와 같은 데모에 의한 效果와 명분이 아무리 강하고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적 내면세계의 인간의 손해와 이익의 기대차 차이에 의한 행동의 合理的 極대화 요인이 就業, 處罰등에서 集團間, 즉 적극적참가와 비참가, 단순참가 집단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個人行動에의 B/C요인적 處方政策이 부단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고시 합격자의 3차면접시험(데모불이익), 기업체면접시험시 데모불이익조치등과 처벌이 가쳐오는 조사임용시 불이익등이 해당학생들의 행동을 自制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음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최근의 학생운동에 대한 조사에서는 국민의 71.4%가 불만족하게 생각함으로써 작년의 42.2%의 지지에서 反轉되고 있음도 民主化 이후의 國民政治意識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때 이제 學生運動 및 集團行動은 學園 본래의 모습, 즉 명확하는 행동으로 바뀌어 할 것이다.

2) 한국일보 '88.8.17.

1. 各國別 學生運動 樣相比較表

1) 國別學生運動의 總體比較

韓國	日本	比較證據를	프랑스	美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民族自主獨立(45이전)</li> <li>教育·社會改革 (60년대)</li> <li>反政·反體制(70~80年代)</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社會 및 反封建體制 (1910년대)</li> <li>安保鬭爭(60년대초)</li> <li>大學分科 및 反戰 (60년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슈 (issu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既存權威體制的 刷新 (60년대)</li> <li>(大學·政府官僚制) (68년 5월 사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民權運動(50년대)</li> <li>越南戰反戰運動(60년대)</li> <li>福祉事業·過多支出反對 (60년대)</li> </ul>
政治性	社會性 → 政治性	性 格	社會改善	政治性·社會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學生自治會自律化</li> <li>維新體制否定</li> <li>光州事態구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美·日安保條約 反對</li> <li>오끼나와 返還요구</li> <li>核試제 美함대 임항 反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發 原 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태극대의 학생·경관의 충돌(근방, 구타 체류탄 사용이 근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越南戰의 消耗不滿</li> <li>福祉 豫算증가에 따른 勤勞意慾 喪失</li> <li>흑인등 소수 民族 차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牟定制 등에 의한 心的 壓迫</li> <li>政治·經濟·社會問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大學體制 不滿(學生 數 增加 → 미 elite화 → 교수집속 不滿)</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內 在 原 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大學의 改革</li> <li>既存 價値觀에 대한 革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大學 및 교수에 대한 不滿</li> <li>核實驗 反對</li> </ul>

韓	日	本	比較遊據	프랑크	美國
<p>不漸</p> <p>○自由·民主 이데올로기의變質</p> <p>全學聯 → 三民閣, 三民閣, 三民閣</p> <p>○全大學의 連繫</p> <p>○學·勞體系 維持</p> <p>○大學內 施設 및 公共  건물 占據</p>	<p>○既權威 否定 및 人間 疏外</p> <p>全學聯 → 全共閣</p> <p>○授業 및 試驗取消의 스톱라이프 現象</p> <p>○대학정분, 교내, 학생 회관  등의  봉쇄와  점거로 학생  등의  대학  관리화</p>	<p>○校內問題 改革과 民主 化의 추상에는 一般學 生 參與·지지받았으나 大學의 封鎖·占據등과  ick의 단계에 선 外面  離脫</p>	<p>行動主體</p> <p>行動戰略</p>	<p>(大學教授, 大學管 理  장부권료제,  장기  집권)</p> <p>없음</p> <p>○勞動者 및 勞動組合  과  連繫 (勞動總聯盟인 CGT  의  共同戰線形成)</p>	<p>○學生의 政治活動 保障</p> <p>없음</p> <p>○平和大行進</p> <p>○大學建物 破壞 및  점거 (버클리대)</p> <p>○R.O.T.C 반대, 교수  파업유도</p>
<p>○政治·經濟·社會·教 育  問題의  추상에는  지지가  自發性이  강하  나,  집기·暴力등엔  全수  이데올로기화  요  인으로  限定的  行動을  보임.</p>	<p>○校內問題 改革과 民主 化의  추상에는 一般學 生 參與·지지받았으나 大學의 封鎖·占據등과  ick의 단계에 선 外面  離脫</p>	<p>○警察과  중물시  우발  적  參加者 多數</p> <p>○破壞的  행동관이  아  닌  自律示威</p>	<p>○시위,  교내시선  파괴·  침거  등이  大學單位別  (버클리, 샌프란시스  스코 등도  이루어짐)</p>		

韓 國	日 本	比較遊據點	프 랑 스	美 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 50년대의 단순示威</li> <li>○ 67.6~7 投石戰 체류 단 켈테모, 추봉지 사용</li> <li>○ 80년대의 投石, 화염병, 켈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년대의 示威(단순)</li> <li>○ 60년대의 角木, 쇄파 이프, 농, 밭 외, 農藥(68, 69), 硝酸(68, 69), 화염병(68, 69), 고무줄세움(6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動員 手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호, 플래카드, 벽, 해손</li> <li>○ CGT와 연계에 의한 파업으로 生必品不足 交通마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大學建物 占據</li> <li>○ 市廳占據</li> <li>○ 교수파업유도(샌프란시스코大)</li> <li>○ 학교신문편집인 暴行(샌프란시스코大)</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授業명해  등에 의한 사용</li> <li>○ 인종대내 動員 및 벽보의 固着化에 의한 心理的 閉鎖</li> <li>○ 自民間의 民間團들의 의견 對立</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건파, 비판파의 對立과 제3서클 등장으로 自體理論 무상해체</li> <li>○ 社會의 學生, 學生과 學生, 派內붕괴와 分裂</li> <li>○ 大學 占據, 封鎖 등 長期化에 임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瓦解要因 및 微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大統領의 대학점거사실 默認</li> <li>○ 大統領의 放送을 통한 自製호소</li> <li>○ 經濟·社會 混亂에 대한 자각인식</li> <li>○ 警察의 自製, 짐작, 냉정 태도 견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위 學生의 외부와의 연계 차단한 후 自製解散 誘導</li> <li>○ 大學自律 解決方案 摸索(샌퍼스 警察制)</li> </ul>

韓	日	本	比較證據들	프랑스	美國
<p>○政府：卒定制 自律 幅擴大 ·學園安定法 검토 유보</p> <p>○大學：學事懲戒의 強化</p> <p>○警察：集團行動의 사전봉쇄·近隣鎮壓 占據強制 解散</p>	<p>○政府：臨時 大學 問題 審議會 設置 ·大學運營 臨時 措置法(69.8)</p> <p>○大學：東京大 新入生  선발 포기</p> <p>○警察：·학생운동 指揮 部の 內部對立 조장 및 宗종 ·강력한 警察力 維持로 點據 封鎖를 解體</p> <p>·CR, PR에 의 한 市民說得</p>	<p>○政府：大統領의 自制 促求</p> <p>○大學：大學白體의 改 革(교수, 관리, 교과 과정등)</p> <p>○警察：체류단, 곤봉 등을 사용했으나, 침착성과 냉정태도 유지</p>	<p>○政府：大統領 諮問機關 設置 (수지사, 警察局長, 言論人, 教授, 辯護士)</p> <p>○大學：캠퍼스警察制 設置 運營</p> <p>○地域協議體 構成 運營 (教授, 學生, 地域行 政機關長)</p> <p>○警察：騷擾惡化時 캠퍼스警察 支援 (各種 委員會 構成 參加)</p>	<p>○GNP：2,214불(1968年)</p> <p>○國際地位：先進工業 國</p>	<p>○GNP：4,352불(1968)</p> <p>○國際地位：先進工業國</p>
<p>○GNP：2,000불(1984)</p> <p>○國際狀況：南北緊張 閉途國</p>	<p>○GNP：1,436불(1968년)</p> <p>○國際地位：先進工業國</p> <p>※ 1,947弗(1970년)</p>	<p>環境 (GNP)</p>	<p>○GNP：2,214불(1968年)</p> <p>○國際地位：先進工業 國</p>	<p>○GNP：4,352불(1968)</p> <p>○國際地位：先進工業國</p>	

韓國	日本	比較證據點	공공	美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공건불평화, 파괴 (2億7千萬원) : 85 上半年</li> <li>○ 人命負傷 (85.3~8) (警察 : 2,214, 教職員 : 6, 學生 : 7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염병, 投石 등으로 一般市民 外面과 損害 發生</li> <li>○ 市民 1人 死亡, 300人 傷害 (68, 69年)</li> </ul>	<p>影響</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社會黨執權 (81.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福祉豫算 削減으로 労働 意欲 鼓吹</li> <li>○ 越南戰撤收</li> </ul>
<p>大學內 問題의 政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勞·學의 連繫固爭</li> <li>○ 集團示威延長 → 暴力化</li> </ul>	<p>大學內 社會問題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學生團體의 獨自 鬪爭</li> <li>○ 集團示威消滅 →  일부 테러화</li> </ul>	<p>共通 및 差異點</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共通 : 學·勞運動의 連繫化</li> <li>○ 差異 : 일시적 運動으로 終了</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共通 : 大學의 改革에서 시작, 制度改革의 政治的 行動化</li> <li>○ 差異 : 60年代 S.P運動으로 終了</li> </ul>

2) 國別學生運動年代記的(Chronological)變遷樣相

	日	美	國	韓	國	東	歐	東	南	亞
1940年 代以前	<p>社會界 反對建 運動</p> <p>서클중심 의 運動</p>		<p>民族獨 立運動</p> <p>宣言文 採擇議 決表</p>							
1950年 代	<p>全學聯 중심의 과격學 生運動</p> <p>公共機關 亂入·人 質·殺人</p>	<p>民權 運動</p>	<p>教育界 社會改 革運動</p> <p>登錄拒 否盟休 力 暴</p>	<p>1956年 東歐의 勞動者 青年· 學生의 自由化 運動</p> <p>集團利 益表出</p>						
	<p>全共闘 中心의 革命闘 爭</p> <p>農 藥 (59,60) 稻 酸 ( " ) 鹽化劑毒 ( " )</p> <p>↓</p>	<p>反戰 運動</p> <p>교내시 선전회 · 古據 · 暴行 · 罷業 誘導</p>	<p>부싱규 단·改 憲反對 · 교련 反對 등 의示威</p> <p>해방대 모 (67) 수용처 사용 (67)</p>	<p>既存 權威 反對</p> <p>勞組와 連繫 暴力化</p>	<p>1968年 의체코 의改革 運動</p> <p>1968年 의 폴드 의 렌사 시대</p>			<p>싱가폴 : 65年 의 말아 레 지아 로 필지 립 시까 남 양대 학 시대</p> <p>同盟 休學</p>		

	1960 年代 화염병 (88, 89) 쇠파이프 ( " ) 돌맹이 ( " )	“大學 運營에 관한 臨時措 監法” 東京大生 新選 新 포 警察의 CR, PR	“경찰 鎮壓”	“경찰 鎮壓”	“全國民 的 改革 運動”	國內保 安法에 大學人 學統制 規定 69年의 파키스 탄反政 데모 아유브 칸 大 統領 시임 요구	東 南 亞 東 歐 東 亞 프 앙 스 國 韓 美 國 日 本
	↓ 消滅	↓ 消滅	↓ 消滅	↓ 消滅			

	日	本	美	國	韓	國	프	랑	스	東	歐	東	南	亞
<p>1970 年代</p> <p>테러集團으로 일부殘存</p> <p>공공기관 기능정지</p>				<p>維新體制反對示威</p> <p>가두시위 校內 단식 鬪爭</p> <p>계엄령에 한 休校</p>	<p>CGT 의 총 파업</p> <p>罷業</p>	<p>1970年의 풀렌드事態</p> <p>反體制</p>	<p>중공의 學生 勞動者시 위 (85.12)</p> <p>시위</p> <p>대화 (체포·구금 없음)</p>							
<p>1980 年代</p> <p>日極左派난동 (中核派 : 日本 미르크스주의 學生同盟) 中核</p> <p>→ 通信케이블 단·회선</p>			<p>暴力事態行動</p> <p>서울美文化院 黨인수원 건 85.11</p> <p>화염방 放火·據</p> <p>·大 學自 律化</p>	<p>1981年의 풀렌드事態</p> <p>풀렌드 학원사 태 (85.7.25)</p> <p>集團利益 表出</p> <p>高等教育 改革 大學自 律權 限制 · 警 察 內 臟</p>	<p>CGT 의 총 파업</p> <p>罷業</p>	<p>1981年의 풀렌드事態</p> <p>풀렌드 학원사 태 (85.7.25)</p> <p>集團利益 表出</p> <p>高等教育 改革 大學自 律權 限制 · 警 察 內 臟</p>	<p>중공의 學生 勞動者시 위 (85.12)</p> <p>시위</p> <p>대화 (체포·구금 없음)</p>							



## 2. 설문서(양식)

( 학생데 모에 대한 정부규제의 불응요인분석 연구 )

안녕하십니까?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면학에 증진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금번 문교부 자유공모학술연구과제를 상기와 같이 정하고 그간 이론적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경험적연구(분석)의 도움을 받아 완성하게 되면 우리 나라의 오랜 숙제에 대한 최초의 연구논문이 발표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본연구의 관건이 됨을 이해해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 설문은 익명의 통계자료료만 활용됨을 부언합니다.

1988.11.

연구책임자 ; 이 상 안

※ 다음의 문항들은 우리나라정부의 정책활동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견해와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정부의 활동인 정책이 일반적으로 보아 정의의 실현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다. 그렇다. 중간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정부는 일반적으로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 그렇다. 중간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정부의 정책결정은 일반적으로 국민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정말 그렇다. 그렇다. 중간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정부의 정책이 일반적으로 소수 실력자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말 그렇다. 그렇다. 중간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정책의 시·공간적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편이다.  
(정말 그렇다. 그렇다. 중간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정책으로부터의 혜택이 국민 각 계층에 공평하게 배분된다고 보십니까?  
(정말 그렇다. 그렇다. 중간 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7. 정부의 정책은 사회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한다고 보십니까?  
(정말 그렇다. 그렇다. 중간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8. 정부는 국가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한다고 보십니까?  
(정말 그렇다. 그렇다. 중간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9.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있다.  
(정말 그렇다. 그렇다. 중간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 정책이 특정집단의 이익보다 국민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편이다.  
(정말 그렇다. 그렇다. 중간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다음은 학생데모 및 활동과 규제정책에 관련된 견해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견해와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1. 나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정말그렇다. 그렇다. 중간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1. 학생데모는 정부로 하여금 올바른 일을 하게끔 자극하는게 목적이 있다.

(정말그렇다. 그렇다. 중간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2. 학생데모는 정부로 하여금 실제로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말그렇다. 그렇다. 중간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 최근의 학생데모에 대한 규제는(학칙포함)은 성공적이어서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다.

(정말그렇다. 그렇다. 중간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 귀하의 입학이후 데모참가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불참. 1회. 2회. 3회. 4회이상)

15. 데모참가로 인하여 규제받은 내용은 어느 것입니까? (불참자 제외)

(없음. 경고. 근신. 정학. 제적. 구속. 형사처벌)

16. 다음은 학생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지원정책의 내용별 시행강도 표입니다. 느낀 정도를 ○표 해주십시오.

규제 및 지원 정책	시행 강도 (수준)				
	아주 강했다	강했다	중간	약하다	아주 약했다
① 학생단체의 설립·가입상 법적 규제정도					
② 단체활동 허가과정상의 행정적 규제정도					
③ 단체의 규정을 만들때 학생요구의 반영정도					

규 제 및 지 원 정 책	시 행 정 도 (수 준)				
	아 주 강했다	강했다	중 간	약했다	아 주 약했다
④ 학생간부 임면시의 행정개입정도					
⑤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재정 및 조직 통제정도					
⑥ 단체활동에 대한 외부정보기관의 개입정도					
⑦ 통일·안보등 이데올로기에 의한 규제정도					
⑧ 장학금의 확충을 통한 지원정도					
⑨ 기숙사등 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원정도					
⑩ 국내의 교육훈련을 통한 지원 정도					
⑪ 학생분담지도 교수제에 의한 데모참가 규제정도					
⑫ 취업을 위한 지원정도					

※ 다음은 학생데모 및 활동으로 인한 규제조치와 효과에 대하여 자신의 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견해와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7. 최근 대학에 휴업(휴교)조치없이 빈학할 수 있는 것은 성공적인 정부의 규제정책의 결과이다.

(정말그렇다. 그렇다. 중간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8. 데모를 한 학생에 대한 처벌이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그렇다. 그렇다. 중간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9. 데모에 참가하여 제적되거나 구속등의 처벌을 받을 경우 곧 규제가 해제되어 복학 및 석방되리라 생각하였습니까?

(정말그렇다. 그렇다. 중간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 데모에 참가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요인을 다음중 5가지만 골라 중요순서를 매겨 주십시오.

[ ( ) 부모은혜보답, ( ) 장학금 수혜, ( ) 국가발전, ( ) 취업용이(특채), ( ) 민족통일, ( ) 지역사회발전, ( ) 민주제도개선, ( ) 역사적유산 청산, ( ) 새로운 지도자의 부각, ( ) 애국적 행동후의 만족감 ]

21-1 데모에 참가함으로써 손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요인을 5가지만 골라 중요도별로 순서를 매겨 주십시오.

[ ( ) 불안, ( ) 구속의 고통, ( ) 학교공부손해, ( ) 질서파괴, ( ) 제적, ( ) 취업불이익, ( ) 예산낭비, ( ) 최루탄공해, ( ) 민주화후퇴, ( ) 대미관계악화 ]

21-2 데모참가의 직접동기는?

(애국적사명감, 동료와의 의리, 평소주장의 관철, 과잉진압에 대한 분노 사회제도불만 ……… )

22. 데모참가로 인한 형벌 및 학칙에 의한 처벌이 어느정도 실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심하게, 심하게, 중간정도, 심하지 않게, 아주 심하지 않게)

23. 상기의 처벌이 어느정도 데모방지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크게, 크게, 중간정도, 적게, 아주적게)

24. 데모에 참가할 때, 장학금·기숙사입사등 수혜대상에서의 배제여부가 고려되십니까?

(정말그렇다. 그렇다. 중간 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5. 결국 데모에의 참가가 바람직했거나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말그렇다. 그렇다. 중간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6. 범죄예방, 위법행동금지, 교통질서유지, 민주화 등이 개인의 생활이익 및 효용에 직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말그렇다. 그렇다. 중간정도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7. 귀하의 학년은?  
(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복학 )
28. 전공분야는?  
( 인문, 사회, 법학, 사범, 기타 )
29. 가정의 생활정도 ( 상, 중, 하 )
30. 졸업후 취업전망 ( 상, 중, 하 )
31.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 ( 평등, 사랑, 지역, 문벌, 민족통일 )

